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2003年

西江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朴 哲 柱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2003年

西江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朴 哲 柱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指導教授 徐 禎 穆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月 日

西江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朴 哲 柱

차 례

영문초록 -----	5
국문초록 -----	9
 1. 서론 -----	 1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1. 2 연구의 방법 -----	5
1. 3 연구사 -----	10
1. 4 논의의 구성 -----	12
 2. 大明律直解의 特徵 -----	 14
2. 1 문체상 특징 -----	14
2. 2 번역상 특징 -----	16
2. 3 편집상 특징 -----	25
 3. 서술어 중심 구문 구조 분석 -----	 28
3. 1 認知 構文 -----	28
3. 1. 1 도입 -----	28
3. 1. 2 ‘知 構文’ -----	29
3. 1. 3 ‘知想只- 構文’ -----	31
3. 1. 4 ‘知不得爲- 構文’ -----	33
3. 1. 5 ‘知乎不冬 構文’ -----	36
3. 1. 6 요약 -----	38
3. 2 話法 構文 -----	41
3. 2. 1 도입 -----	41
3. 2. 2 ‘白傍是- 構文’ -----	42

3. 2. 3 ‘云- 構文’ -----	44
3. 2. 3. 1 ‘是如 云- 構文’ -----	45
3. 2. 3. 2 ‘亦 稱云- 構文’ -----	46
3. 2. 4 ‘現告爲- 構文’ -----	49
3. 2. 5 요약 -----	53
3. 3 存在・所有 構文 -----	56
3. 3. 1 도입 -----	56
3. 3. 2 ‘有- 構文’ -----	58
3. 3. 3 ‘在- 構文’ -----	63
3. 3. 4 ‘無- 構文’ -----	73
3. 3. 5 요약 -----	80
3. 4 思惟・經驗 構文 -----	84
3. 4. 1 도입 -----	84
3. 4. 2 思惟 構文 -----	84
3. 4. 2. 1 ‘望白齊 構文’ -----	85
3. 4. 2. 2 ‘向入- 構文’ -----	85
3. 4. 2. 3 ‘的是- 構文’ -----	87
3. 4. 3 經驗 構文 -----	89
3. 4. 3. 1 ‘聞 構文’ -----	89
3. 4. 3. 2 ‘見 構文’ -----	90
3. 4. 3. 3 ‘食爲- 構文’ -----	90
3. 4. 4 요약 -----	91
3. 5 使役・被動 表現 構文 -----	93
3. 5. 1 도입 -----	93
3. 5. 2 使役 表現 構文 -----	94
3. 5. 2. 1 ‘令是- 構文’ -----	95
3. 5. 2. 2 ‘使內- 構文’ -----	105
3. 5. 3 被動 表現 構文 -----	108
3. 5. 4 요약 -----	110
3. 6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 -----	113
3. 6. 1 도입 -----	113

3. 6. 2 ‘推問爲- 構文’ -----	113
3. 6. 3 ‘捕捉爲-構文’ -----	114
3. 6. 4 犯罪・處罰 構文 -----	116
3. 6. 4. 1 犯罪 構文 -----	116
3. 6. 4. 2 處罰 構文 -----	154
3. 6. 5 요약 -----	194
3. 7 受與 構文 -----	206
3. 7. 1 도입 -----	206
3. 7. 2 收入 構文 -----	206
3. 7. 3 給與 構文 -----	208
3. 7. 4 요약 -----	213
3. 8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 -----	215
3. 8. 1 도입 -----	215
3. 8. 2 移動 構文 -----	215
3. 8. 2. 1 ‘進-’ 구문 -----	216
3. 8. 2. 2 ‘來爲-’ 구문 -----	220
3. 8. 3 方位 構文 -----	223
3. 8. 4 요약 -----	224
4. 통사적 구조 중심 구문 분석 -----	227
4. 1 否定 構文 -----	227
4. 1. 1 도입 -----	227
4. 1. 2 指定 構文의 否定 -----	228
4. 1. 3 ‘爲乎事 構文’의 否定 -----	229
4. 1. 3. 1 是乎事 否定 構文 -----	229
4. 1. 3. 2 爲乎事 否定 構文 -----	230
4. 1. 4 ‘爲- 構文’의 否定 -----	237
4. 1. 4. 1 ‘不冬 爲- 構文’ -----	238
4. 1. 4. 2 ‘安徐 爲- 構文’ -----	241
4. 1. 4. 3 ‘不得 爲- 構文’ -----	245
4. 1. 4. 4 ‘免 爲- 構文’ -----	249

4. 1. 5 二重 否定 構文 -----	250
4. 1. 6 요약 -----	252
4. 2 引用 構文 -----	256
4. 2. 1 도입 -----	256
4. 2. 2 ‘是如 構文’ -----	256
4. 2. 3 ‘亦 構文’ -----	258
4. 2. 4 요약 -----	259
4. 3 爲乎事 構文 -----	261
4. 3. 1 도입 -----	261
4. 3. 2 ‘爲乎事 構文’ -----	262
4. 3. 3 ‘爲行臥乎事 構文’ -----	270
4. 3. 4 ‘是乎事 構文’ -----	273
4. 3. 5 ‘令是乎事 構文’ -----	273
4. 3. 6 ‘無乎事 構文’ -----	275
4. 3. 7 ‘使內乎事 構文’ -----	276
4. 3. 8 요약 -----	277
 5. 결론 -----	 281
 참고문헌 -----	 289
 부록 -----	 296
1. 본문 이두색인 -----	296
2. 문헌색인 -----	313
3. 구문구조 -----	314

ABSTRACT

A Study on Sentence Structure in Daemyongryuljikhae

Park, Cheol-ju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nuary, 2004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materials of the 4th year of Taejo's reign, Choseon can be said to show the Korean looks after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by linguistic conservativeness though they are Korean materials of the beginning of Choseon at the close of the 14th century. Thus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and understanding the Korean sentence structure after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before the 15th century.

Studies on modern Korean and Korean sentence structure after the 15th century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However, the study on the sentence structure of the pre-15th century Korean has not been addressed due to the limitation of Korean materials. but for the pre-15th century Korean, studies on morphology, phonology and vocabulary.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are Korean materials prior to the creation

of Hoonminjeongeum, so they were written only in Chinese character and Idu. For that reason, the study was concentrated on borrowed characters(借字).

On one hand, the study on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was neglected.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and re-compose the Korean looks about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are composed of vast amount of total 30 volumes. So they are limited to one data, but they have a lot of amount of sentence structure used at that time. And written by many authors, they are the materials showing the coherent language of that time.

Thus the linguistic consciousness and syntax about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can be infer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sentence structure.

Chapter 2 of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form, translation and compilation revealed at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Chapter 3 focusing on the predicative sentence structure of the sentence structure of "Daemyongryuljikhhae" (大明律直解), classified the predicative sentence structure and analyzed the structure.

The sentence structures classified by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predicative are 'acknowledgement', 'narration', 'existence and possession', 'thinking and experience', 'causative and passive expression', 'trial, arrest, crime and punishment', 'dative' and 'transfer and direction'.

Of them, 'acknowledgement sentence structure' were sub-divided and analyzed to 'Ji'(知), 'Jisangji'(知想只), 'Jibuldeukwi' (知不得爲), 'Jihobudong' (知乎不冬). Similarly, 'narration' was divided to 'Baekgoshi' (白俵是), 'Woon' (云), 'Shiyewoon' (是如云), 'Yeochoingwoon' (亦稱 云), 'Heongowi' (現告爲), and 'existence and possession' was 'Being'(有), 'Existence'(在), 'Non-existence'(無), and 'thinking' was divided to 'Baek'(白), 'Hyangip'(向入), 'Jeokshi'(的是), and 'experience' was divided to 'Hear'(聞), 'See'(見), 'Shilwi'(食爲).

And 'causative and passive expression' was classified to 'Youngshi'(令是)

and 'Sane'(使內). For 'Trial, arrest, crime and punishment', the former two were divided to Chumoonwi(推問爲) and Pochakwi(捕捉爲), and the latter two were to Crime(犯罪) and Punishment(處罰). And for 'dative' and 'transfer and direction', the former was divided to 'Acceptance'(收入) and 'Giving'(給與). And for 'transfer and direction', the former was divided to Advance(進) and Coming(來爲).

Remarkable thing of them was that at 'acknowledgement',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had no Idu language corresponding to 'do not know', so 'do not know' composed of Idu language like the structure of negative sentence. And at 'narration', 'Shiyeowoon(是如云) sentence structure' was used as simple direct narration, and 'Yeokchingwoon(亦稱云) sentence structure' was used as simple indirect narration, and 'Yeoching Woon sentence structure' was used as double indirect narration. And another characteristic was that double indirect narration like 'Jogyechingwoon(足如稱云)' was not used. On one hand, 'Heongowi sentence structure' was narration sentence structure used as there was no quoted original text.

In causation, there were not causative sentence structures combined with causative suffixes such as '-ie-, -hie-, -rie-, -gi-, -woo-, -goo-, -choo-' to verb roots, or those combined with 'ge hada' to the stem of predicative verb. Similarly, in passiveness, there were not passive sentence structures composed of predicatives combined with suffixes like '-ie-, -hie-, -rie-, -gi-'. Instead, there were sentence structures indicating causation and passiveness with the predicatives containing causative and passive meanings. The causative and passive sentence structures expressed with these predicatives were made as 'causative expression' and 'passive expression'.

'Trial, arrest, crime and punishment sentence structures', characteristic sentence structures seen at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were originated from the point that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is a regulatory book distinctly from other Korean materials.

Chapter 4 analyzing the sentence structures of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focusing on syntactic structure, classified them to 'negation' and

'quotation' and 'Wihosa sentence structures'.

'Negation' was divided to negation of 'designated sentence structures', 'Wihosa sentence structures', 'Wi sentence structures', and 'double negation'. Of them, the negation of 'Wihosa(爲乎事) sentence structures' were sub-divided to 'Shihosa' and 'Wihosa' negation. And the negation of 'Wi sentence structures' were sub-divided to 'Boodongwi(不冬爲)', 'Anseowi(安徐)', 'Boodeukwi(不得爲)', and 'Myomwi(免爲) sentence structures'.

The analysis of 'Quotation' sentence structures was limited to 'Wi-' predicative sentence structures whose predicatives in the main sentences do not narration verb. 'Quotation' sentence structures were divided to direct quotation sentence structures whose predicative of quoted complementary sentence is 'Shiyeo' and indirect quotation sentence structures where 'Yeok(亦)' is used for the predicative of quoted complementary sentence, and analyzed.

'Wihosa(爲乎事)' sentence structures were subdivided to 'Wihosa', 'Wihaengwahosa(爲行臥乎事)', 'Shihosa(是乎事)', 'Youngshihosa(令是乎事)', 'Moohosa(無乎事)', 'Sanaehosa(使內乎事)'.

The special content addressed at chapter 4, was that in negation sentence structures, various negation expressions such as 'Boodong', 'Anseo', 'Myon' etc. were used. And actually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used double negation sentence structures. And the most remarkable thing was that noun phrase was used like predicative. This is 'Wihosa(爲乎事)' sentence structure, which play a role of predicative at the end position of a sentence though is not a predicative. This is shown only at "Daemyongryuljikhae"(大明律直解), where 'Wihosa(爲乎事)' plays a role of predicative by syntactic use, not a predicative. So 'Wihosa(爲乎事)' is a predicative in its use, but it was addressed t chapter 4 analyzing syntactic structure.

As above arguments, the mechanism and features of Korean sentence structures after the middle of the 14th and before the 15th century were briefly dealt with.

국 문 초 록

조선 태조 4년(1395)의 자료인 “大明律直解”는 14세기 말의 조선 초기 국어 자료이나 언어의 보수성에 의해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14세기 중엽 이후 15세기 이전의 국어 구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현대국어와 15세기 이후의 국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한 구문 연구는 국어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음운론적, 어휘론적인 연구가 있었다.

“大明律直解”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자료이므로 한문과 이두만으로 쓰여졌다. 때문에 그동안 借字에 대한 연구가 주력되었다. 반면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大明律直解”의 구문을 분석하여 14세기 중엽 무렵의 국어 모습을 재구해보고자 한다.

“大明律直解”는 총 30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이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자료에 국한되지만 그 시기에 사용된 구문에 대해서는 풍부한 양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필자에 의해 쓰였으므로 그 시대의 일관된 언어가 나타난 자료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의 구문 분석을 통하여 14세기 중엽 무렵의 언어의식과 더불어 구문 구조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大明律直解”가 보이는 문체상 특징과 번역상 특징 그리고 편집상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제3장은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한 서술어 중심 구문 구조 분석으로서 서술어에 의해 구문을 분류하고 그 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구문은 ‘認知 構文’, ‘話法 構文’, ‘存在・所有 構文’, ‘思惟・經驗 構文’, ‘使役・被動 表現 構文’,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 ‘受與 構文’,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이 된다.

이 중에서 ‘認知 構文’은 다시 ‘知 構文’, ‘知想只- 構文’, ‘知不得爲- 構文’, ‘知乎不冬 構文’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話法 構文’은 ‘白傍是- 構文’, ‘云- 構文’, ‘是如 云- 構文’, ‘亦 稱云- 構文’, ‘現告爲- 構文’으로 나누었고, ‘存在・所有 構文’은 ‘有- 構文’, ‘在- 構文’, ‘無- 構文’으로, ‘思惟・經驗 構文’ 중 ‘思惟 構文’은 ‘望

白齊 構文’, ‘向入- 構文’, ‘的- 構文’으로, ‘經驗 構文’은 ‘聞 構文’, ‘見 構文’, ‘食爲- 構文’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使役・被動 表現 構文’은 ‘使役 表現 構文’과 ‘被動 表現 構文’으로 나누되 ‘使役 表現 構文’은 다시 ‘令是- 構文’과 ‘使內- 構文’으로 분류하였다.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에서는 ‘審問・逮捕 構文’을 ‘推問爲- 構文’과 ‘捕捉爲- 構文’으로 분류하였고, ‘犯罪・處罰 構文’은 ‘犯罪 構文’과 ‘處罰 構文’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受與 構文’은 다시 ‘收入 構文’과 ‘給與 構文’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에서 ‘移動 構文’은 ‘進- 構文’과 ‘來爲- 構文’으로 하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認知 構文’에서 ‘모르다’에 해당하는 이두어가 “大明律直解”에 없어 마치 부정문 구조처럼 이두어를 구성하여 ‘모르다’라는 어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話法 構文’에서는 ‘是如 云- 構文’은 단순 직접 화법으로 쓰였고, ‘亦 稱- 構文’은 단순 간접 화법으로, ‘亦 稱云- 構文’은 2중 간접 화법으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직접 화법에서 ‘是如稱 云-’처럼 2중 직접 화법은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한편 ‘現告爲- 構文’은 인용 보문이 없이 쓰인 화법 구문이었다.

使役에 있어서는 동사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되어 사동 구문을 이루거나, 서술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사동 구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被動도 어근에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된 서술어에 의하여 생성되는 피동 구문은 없었다. 대신 서술어 자체에 사역이나 피동의 의미가 들어 있어 서술어의 의미로써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는 구문이 있었다. 이러한 서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사동 구문과 피동 구문을 여기서는 ‘使役 表現 構文’과 ‘被動 表現 構文’으로 하였다.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도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구문으로서 이는 다른 국어 자료와는 다르게 “大明律直解”가 律書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4장은 “大明律直解” 구문에 대하여 통사적 구조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否定 構文’과 ‘引用 構文’ 그리고 ‘爲乎事 構文’으로 분류하였다.

‘否定 構文’은 다시 ‘指定 構文의 否定’과 ‘爲乎事 構文’의 否定 그리고 ‘爲- 構文’의 否定과 ‘二重 否定 構文’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爲乎事 構文’의 否定은 ‘是乎事 否定 構文’과 ‘爲乎事 否定 構文’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爲- 構文’의 否定도 ‘不冬 爲- 構文’과 ‘安徐 爲- 構文’ 그리고 ‘不得 爲- 構文’과 ‘免 爲- 構文’으로 하위 분류하

여 다루었다.

‘引用 構文’의 분석에 있어서는 모문의 서술어가 화법 동사에 속하지 않는 ‘爲-’ 서술어 구문에 한하였다. “引用 構文” 연구에서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이어서 직접 인용 구문이 되는 것과, ‘亦’이 인용 보문 서술어로 쓰여 간접 인용 구문이 되는 두 가지 유형의 인용 구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爲乎事 構文’도 다시 세분하였는데, ‘爲乎事 構文’, ‘爲行臥乎事 構文’, ‘是乎事 構文’, ‘令是乎事 構文’, ‘無乎事 構文’, ‘使內乎事 構文’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 다루는 것 중 특이한 내용은 부정 구문에서 ‘不冬’, ‘安徐’, ‘不得’, ‘免’ 등 다양한 부정소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 부정 구문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가장 특기할 것은 명사구가 마치 서술어처럼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爲乎事 構文’인데 ‘爲乎事 構文’은 서술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최종 말미에서 서술어 없이 놓임으로써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오직 “大明律直解”에 서만 보이는 것으로서 ‘爲乎事’가 서술어라기 보다는 통사적 사용에 의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爲乎事 構文’은 그 쓰임이 서술어임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는 4장에서 다루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14세기 중엽 이후 15세기 이전의 국어 구문 구조와 그 특징을 단면적으로나마 밝혀 보았다.

1.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大明律直解”의 구문분석을 통해 14세기 중엽 이후 15세기 이전의 국어 구문을 이해한다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의 국어에 대한 구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大明律直解”를 통하여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 구문에 대한 구조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과 체계성을 고려하면, 借字로 표기된 자료에서 우리 옛 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강영 1998, p.8). 그리고 김상대(1993)가 말했듯이 이것은 吏讀가 오늘날의 국한문체의 전 단계의 모습 혹은 그 濫觴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현대국어의 구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통문법, 구조문법, 변형문법, 문태규문법, 범주문법 등의 틀 속에서 부단히 이루어진데 반하여 중세국어는 주로 전통문법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문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문법형태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한재영(1996)에서 16세기 국어의 구문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김정아(1993)의 15세기 국어의 비교구문 연구에 이어 이현희(1994)에서는 15세기 국어의 구문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국어에 대한 구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14세기부터는 국어 자료가 훈민정음이 아닌 漢字의 借字인 吏讀와 漢文으로만 되었기 때문이다.¹⁾

물론 吏讀는 조선 후기에도 쓰였으나 훈민정음으로 된 자료도 병존하였기 때문에 吏讀로 된 자료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14세기 국어에서는 훈민정음으로 된 자료가 병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인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해서는 借字 그 자체에 대하여 연구가 주 대상이었

1) 안병희(1987, pp.9-10)는 우리의 한자를 이용한 문자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우리말 語順이나 借字가 쓰이지 않은 ‘純粹한 漢文’, 漢字語句와 吏讀를 포함한 문체 전부를 이르는 ‘吏文’, 借字로 표기된 고유어로서 吏文의 문맥을 밝혀주는 語句나 吏文集例와 儒胥必知에서 吏頭 또는 吏吐라 하여 한글로 독음을 표시한 ‘吏讀’, 官衙에서 주고 받는 關, 牒 등과 민간에서 官衙에 제출하는 所志, 文券, 法律文 등에 사용되는 ‘吏讀文’ 등으로 나누고 있다.

다. 구문의 연구보다는 우선 그 借字부터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借字에 대한音を 재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이를 기반으로 借字表記로 이해되는 고대국어의 문법체계에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강영 1998, p.9).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한 연구에는 借字에 대한 연구와 구문 자료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것은 반면 15세기 이전 국어의 연구에서 구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借字의 해독이라는 문제가 선행 과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5세기 이전의 국어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며 다양하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한 구문 연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어느 시기에 대한 구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일시기에 동일한 언어로써 쓰인 다양하고 풍부한 구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5세기 이전의 국어자료는 15세기 이후의 자료에 비해 양적 및 수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15세기 이후 국어에 비해 15세기 이전 국어의 구문 연구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15세기 이전 국어의 구문에 대한 연구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쓰인 借字에 대하여 현재 많은 연구와 업적이 이루어졌다. 이는 借字에 대한 연구에 주력을 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교적 자료가 많은 14세기 국어에 대해서는 비록 음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보이더라도 그 의미와 쓰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통일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大明律直解”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태조 4년(1395)의 자료인 “大明律直解”는 비록 조선시대에 쓰인 것이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자료이며 15세기가 아닌 14세기에 간행되었다. 언어의 보수성을 감안한다면 “大明律直解”가 14세기 말의 자료이지만 실제로는 14세기 중엽 전후의 국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 대한 구문 연구는 14세기의 국어를 15세기 국어로 잇기 위한 전초적 단계인 언어적 교두보를 구축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15세기 이전의 국어자료에는 일관된 언어에 의해 쓰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그 양 또한 빈약하다. 때문에 일관된 언어로써 쓰인 구문과 그 구문에서 동일 구조를 추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구문이 요구되는 연구는 어렵다 할 수 있다.

15세기 이전의 국어자료가 대량으로 확보되기 전에는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해

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비롯되는 풍부한 구문으로써 구문의 구조를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5세기 이전의 국어에 대한 구문 연구를 할 때 다양한 자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의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는 그 시기의 일관된 언어를 보여야 하며 풍부한 구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된 吏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대체적으로 같은 분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료는 바로 “大明律直解”이다. 이 자료는 조선 초에 간행되었지만 번역작업은 고려 말에 시작되었을 것이므로 고려시대의 吏讀體系를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존 吏讀 자료 중 가장 풍부한 어휘형태 및 문법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극히 귀중한 국어사 자료이다(고정의 1992, p.1).

“大明律直解”는 비록 하나의 자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필자에 의해 쓰였으므로²⁾ 그 시대의 일관된 언어가 나타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의 구문이 한 사람의 언어습관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이 공통된 문형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곧 그 당시의 일관된 언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大明律直解”는 정형화된 吏讀의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강영 1998, p.8).

“大明律直解”는 총 30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이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자료에 국한되지만 그 시기에 사용된 구문에 대해서는 풍부한 양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明律直解”에서 사용된 吏讀에 대해서는 강성일(1966), 김태균(1968, 1971a, pp.57-107, 1971b 1972), 배대운(1984, 1988, pp.67-122, 1989, pp.107-138), 이강로(1984, pp.3-52), 안병희(1985, pp.1-22), 박희숙(1984), 박성중(1987, 1996), 고정의(1992), 한상인(1993, 1998) 등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되어 음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그 외의 의미나 문법적 쓰임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된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大明律直解”는 정확한 의미와 문법적인 특성을 알 수 있으므로 구문의 연구를 가늠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5세기 이전 국어, 즉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 대한 구문의 구조를 “大明律直解”에 의해 추출해낼 수가 있다.

또한 “大明律直解”가 당시 사람들의 모든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律書라는 점에서 고대인들의 정신세계와 그를 표현하는 언어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강영 1998, p.28).

2) “大明律直解”는 高士璣, 金祇이 直解하였고, 鄭道傳, 唐誠이 潤色을 하였다.

“大明律直解” 吏讀의 연구에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매듭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의견의 차를 보이는 것은 직해 吏讀에서 보이는 음가에 대한 것이므로, “大明律直解”의 구문 구조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와 그 쓰임 뿐이지 음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왕성하게 이루어진 지금은 초기의 “大明律直解”에 대한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구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즉, 漢字 借字表記가 한글 표기와 관련하여 완전히 극복된 가상적 상황에서 보면 吏讀는 국한혼용문체 표현에 해당하므로(김상대 1993), 충분히 이에 대한 구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大明律直解”는 吏讀라는 借字表記 수단을 이용한 우리 말 어순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비록 “大明律直解”에서 주로 조사나 어미 등에 국한하여 吏讀가 쓰였으나 어순은 우리말이므로 “大明律直解”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조선초기 우리 말의 구조를 추출해 낼 수가 있다.³⁾ 더구나 吏讀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여 전시대의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고대국어 및 전기 중세국어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대국어 및 전기 중세국어의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借字表記 자료에 대한 연구는 고대국어는 물론 전기 중세국어의 해명과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정의 1992, p.1).

혹자는 “大明律直解”의 吏讀가 조사나 어미에 불과하므로 이의 구문에서 우리 말 구문 구조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⁴⁾ 그러나 이 나머지의 표기에서도 반드시 중국어(한문어순)와 우리말의 어순에 대한 상호분석이 선행하여야 한다. 중국어와 우리말의 어순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는 한문에 대한 借字表記 사용에 의한 어순 재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明律直解”의 구문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조선초기의 학자들이 우리말의 구문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엿볼 수가 있다.

국어는 교착어이므로 체언의 곡용과 용언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립어인 한자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인식하여 “大明律直解”에서의 곡용과 활용을 담당하게 한 것이 吏讀이다. 비록 “大明律直解”에서 한자어가 어휘로 쓰였

3) 한상인(1993, p.157)은 “大明律直解” 이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이두사 및 고대 및 전기 중세국어 연구에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4) “大明律直解”에서 吏讀는 주로 조사나 어미에 쓰이고 있으나, 이 외에 체언과 용언 및 부사 등에서도 쓰이고 있다. 때문에 배대운(1997, p.23)은 이두는 단순히 토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문장 혹은 문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더라도 吏讀에 의해 이들이 이끌어지고 있다면 이는 중국어(한문어순)가 아닌 우리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문에 한자어가 쓰인 “大明律直解”라 할지라도 이의 구문에 대한 구조는 국어의 구문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大明律直解”는 향찰과는 다르게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이며 읍서로서 지니게 되는 다소 정형화된 문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14세기 중엽 이후 국어에서의 구문 구조를 폭 넓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⁵⁾

그러나 “大明律直解”의 구문 분석을 통해 14세기 국어의 구문 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15세기 이전의 국어 구문 연구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과 15세기 이후의 국어 구문 연구에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1.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大明律直解”의 구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어는 서술어 중심 언어이므로 구문의 연구는 서술어에 의해 분류토록 한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구문연구에 있어서 한글자료에 대한 구문분석과는 다르게 품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吏讀字로 된 어휘의 품사가 아니다. 吏讀와 결합된 한자어, 특히 ‘爲’와 결합된 한자어의 품사가 문제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爲’와 같은 경우에 ‘爲’의 선행 한자어에 대한 품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爲’는 현대국어로 본다면 ‘-하’와 같은 것인데, ‘爲’의 선행 한자어에 대한 품사처리 문제는 현대국어에서 ‘X하-’의 ‘X’를 NP로 처리하느냐, VP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경우 ‘X’의 품사처리에 대하여 동사와 명사로 양분되었다. 서정수(1975, pp.71-79)의 경우는 예를 들어 ‘공부하다’에서 ‘-하다’를 형식동사로 보고 ‘공부’는 본동사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흥빈(1979, pp.55-76), 이광호(1988, p.191)의 논의에 의하면 ‘공부하다’의 경우 이를 본동사로 처리하고, 여기서 ‘공부’가 어근분리되어 주제화된 것으로 분석한다.

5) 강영(1998, p.11)은 “大明律直解”가 법률서인 만큼 정형화된 표현이 주를 이루므로 당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희(1986, pp.47-77)는 ‘X하-’ 앞의 X를 동작성 명사(명사서술어)인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김의수(1999, pp.987-1018)도 ‘X하-’에서의 ‘X’를 실질적인 술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공부하다’에서 ‘공부’는 서술성 명사(verb noun)라고 말하고 있다. 고재철(1999, p.146) 역시 ‘공부’를 명사로 보고, ‘공부하다’에서 ‘하-’는 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가 아니며 ‘공부’라는 명사가 협성된 동사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어가 그 자체로서 형태의 변화 없이 성조만으로 명사에서 동사로, 또는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는 이중품사이기 때문에 이를 국어에서 차용할 때 한자어를 명사로서 혹은 동사로서 아니면 명사와 동사로서 받아 들이게 된다(남풍현 1972a, p.11)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이는 NP로 혹은 VP로도 기능을 하는 한자어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한자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명사로서 받아 들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동사로 사용할 때는 동사로서 차용한 것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어를 동사로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미사 ‘-하다’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남풍현 1972a, p.7).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爲-’의 선행 한자어를 VP인 것으로 처리한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모두 생략되는 경우가 흔하게 보인다. 즉, 하나의 단문에서 거두절미하고 오직 서술어만이 놓이는 것이다.

- (1) 가. 申聞安徐齊(1:12)
- 나. 勿論爲去乃(1:15)
- 다. 鉞字安徐齊(1:20)
- 라. 重爲去等(1:29)
- 마. 不告爲旅(3:8)
- 바. 鉞面安徐爲旅(5:5)

(1)은 ‘申聞爲齊’, ‘論爲齊’, ‘鉞字爲齊’, ‘重爲齊’, ‘告爲齊’, ‘鉞面爲齊’ 등의 서술어들로서 단문의 내용으로는 이들 서술어와 부정소 ‘安徐’, ‘勿’, ‘不’이 모두이다. 이들만으로는 구문의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1)은 다음과 같이 앞의 구문과 연결된 구문이다.

6) 漢字語의 차용에 대해서는 남풍현(1971, pp.53-77. 1972a, pp.3-22. 1972b, pp.7-30. 1973, pp.75-126)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가. 犯人乙依律坐罪遣申聞安徐齊(1:12)

[범인을 율법에 의하여 坐罪하고 申聞은 아니 한다(하을 일이다)]

나. 罪狀乙必于施行爲遣勿論爲去乃(1:15)

[죄상을 비록 시행하고 論罪 아니 하거나]

다. 他罪乙良單衣以決罰爲遣鋁字安徐齊(1:20)

[다른 죄는 홑옷으로 처벌하고 刺字刑은 아니 한다(하을 일이다)]

라. 先發罪以相等爲去等勿論遣重爲去等更良論罪爲(1:29)

[먼저 발생한 죄로 相等하거든 논죄 아니 하고, 重하거든 다시 논죄하여]

마. 同官及仰官弋只知想只遣不告爲旆(3:8)

[同僚 또는 所管上司가 알아차리고도 아니 고하며]

바. 竊盜例以論罪遣鋁面安徐爲旆(5:5)

[절도의 예로써 논죄하고 刺字刑은 아니 하며]

(1)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의 구문을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구문의 분석은 오직 단문에 한한다고 하였을 경우 “大明律直解”에서 분석될 수 있는 구문의 수는 대단히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구문의 분석을 위하여 그 대상을 단문에 한하지 않고 필요에 의하면 중문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 잡기로 한다.

다음은 구문에서 생략된 주격 조사를 표기함에 있어 ‘亦’을 쓰기로 한다. “大明律直解”에서 쓰이는 주격 조사는 ‘亦’ 이 외에 ‘是’와 ‘弋只’, ‘戈只’ 등이 있으나 ‘弋只’와 ‘戈只’에 대하여 그 정체가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은 오직 “大明律直解”에서만 보이며, ‘弋只’가 ‘亦’과는 기능상 어떤 차이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戈只’는 주격 조사인 것은 확실하지만 ‘弋只’의 誤記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是’는 주격 조사 ‘이’를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단 네 곳에서만 보일 뿐이다.⁷⁾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는 대표적인 주격 조사는 절대다수로 쓰이고 있는 ‘亦’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략된 주격 조사를 재구할 때에는 ‘亦’을 쓰기로 한다.

“大明律直解”에는 오직 하나의 용례만이 보이는 吏讀가 있다. 즉, ‘退是’는 ‘물리다,

7) “大明律直解”의 주격 조사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박희숙(1984, pp.99-102)에 언급되었다.

되하다, 기한을 연장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김두황 1994, p.116), “大明律直解”에서 만 보이는 吏讀로서 하나의 용례만이 있다.

(3) 徒囚乙良原犯徒年乙退是計數(27:3)

[徒刑 罪囚는 原犯의 徒刑 年數를 물리고 年數를 계산하여]

이처럼 하나의 용례만을 보이는 吏讀는 이 외에도 ‘見’, ‘岐等如’, ‘收’, ‘入’, ‘望’ 등 여럿이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吏讀’가 명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 구문을 동사에 의해 분석하기 때문이다. 구문의 구조화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를 지닌 구문이 많을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용례가 하나뿐일 경우에는 그것이 그 시대 구문의 구조인지 그 사람만의 저술상 특성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吏讀가 비록 동사라 할지라도 하나의 용례만을 보이는 吏讀인 경우는 구문 구조 분석에 있어서 그 구문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용례가 한 번만 나타나는 吏讀일지라도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그 吏讀와 용법에 있어서 비교되는 다른 구문의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다루었다. 예를 들면 ‘是乎事’는 “大明律直解”에서 단 한 차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爲乎事’에 비추어 분석될 수 있으므로 ‘是乎事’가 쓰인 구문은 구조 분석을 하였다. 이는 ‘不喻是乎事’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不喻是乎事’ 역시 용례가 하나 밖에는 없지만, ‘爲乎事’나 ‘是乎事’처럼 문장의 끝에서 보이고 있어, 이들에 비추어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용례가 하나뿐이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모든 구문을 구조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吏讀字의 독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직 吏讀字의 독법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爲等如’의 경우 김태균(1975, p.137)은 ‘흐드려’로, 박희숙(1984, p.203)은 ‘흐트러’, 한상인(1993, p.73)은 ‘흔들 곧’, 김두황(1994, p.187)은 ‘흐드여’로 읽고 있다.⁸⁾

8) 吏讀字에 대한 讀音 再構가 어려움은 강영(1998, p.9)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의 吏讀字 讀音 再構에 대한 말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借字表記의 자료는 音借가 아니면 訓借된 경우로 나타나므로 우선은 音借된 경우인지 아니면 訓借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音借로 인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借字의 시기에 따라 借字가 중국 어느 시대, 어느 지방의 음이며 또한 이 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반영되면서 어떻게 변화되

그렇다면 독음서의 경우는 어떠한가? 吏讀연구에 있어서 근대의 傳來讀音書의 자료들도 흔히 이용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시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독음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 각각인 경우가 많다.⁹⁾ 그리고 많은 경우에音が 명시되지 않아서 이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강영 1998, p.9).

때문에 吏讀語인 ‘爲等如’에 대한 ‘傳來讀音書’의 독음은 ‘허트리(儒必, 羅麗)’, ‘흐트리(吏師)’, ‘하트다(吏集)’, ‘흐트려(吏便)’에서와 같이 제 각각이다. 이 연구는 吏讀字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기존의 讀音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音を 제시하거나 이 연구에서 별도로 讀音을 분석하지 않고 讀音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¹⁰⁾

한편, 吏頭의 품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학자마다 다르게 되고 있다. 때문에 “大明律直解”에 있어서 품사별 개수가 학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的是’의 경우, 이승재(1989, p.130)에서는 ‘的’을 명사로, ‘是’를 계사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두황(1994, p.111)에서는 ‘的是’를 동사로 보았다.

이러한 경우는 ‘斜是’에서도 찾아진다. 박희숙(1984, p.62)은 이를 ‘官衛의 증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풀이하였다. 하지만 이승재(1989, p.131), 고정익(1992, p.98), 김두황(1994, p.102)에서는 ‘증서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말하고 있다. 이

있는가하는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借字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끊임없는 韻書의 편찬 작업과 오늘날의 중국 내 각 지방 간의 방언차를 생각하면 音借字에 대한 再構作業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訓借字에 대한 경우도, 漢字가 가진 본래의 의미대로 借字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借字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수용하는 쪽의 인식체계가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借字의 의미가 변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면 訓借字의 再構作業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9) 제반 이두 학습서에 수록된 이두와 독음에 대해서는 고정익(2003, pp.223-252)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이두 학습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두의 讀音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자의 새김을 알아야 하는데, ‘千字文, 訓蒙字會, 類合, 百聯抄解’ 등처럼 이의 새김이 밝혀져 있지 않을 경우 한자의 새김에 확실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이두의 讀音을 밝히는데 난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기문(1989, p.98)은 이에 대해 “고대 삼국의 漢字의 새김은 길은 疑雲에 싸여 있다. 아마도 이 구름은 영원히 걷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두의 讀音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므로 구문을 분석하는 이 연구에서는 讀音은 다루지 않는다.[이기문(1989, p.98)은 한자의 새김을 밝히기 위한 방안으로 A, B, C, D 등 네 부류의 새김들로 나누었다. A類는 고대 자료 자체에 새김이 분명히 제시된 것들이고, B類는 새김을 밝혀 주는 실마리가 고대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들, C類는 本名과 後代의 漢式改名이 새김을 추측하게 하는 것들, D類는 고대 기록에서는 새김에 관한 아무런 암시도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다.]

경우 ‘的是’는 이 연구에서 다루었다. 비록 이승재(1989, p.130)에서 ‘的’을 명사로 풀이했지만, ‘是’를 계사로 봄으로써 ‘的是’에 내포된 서술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김두황(1994, p.102)에서와 같이 용언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斜是’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斜是’를 명사로 본 시각과 동사로 본 시각에서, 계사와 동사의 관계처럼 유사 품사관계로 볼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斜是’가 명사인지는 동사인지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된 뒤에 밝혀질 일이다. 따라서 품사에 있어 학자간에 최소한의 공통된 분석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吏讀가 쓰인 구문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있어서 학자간의 의견차이는 吏讀의 의미 풀이에서도 보이고 있다. 즉, ‘進叱有在’의 경우 김두황(1994, p.114)은 ‘해당되는, 합당한’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박성종(1996, p.225)은 ‘나아가 있는’으로, 장세경(2001, p.308)은 ‘나아간, 잘 되어 간, 진행된’의 의미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吏讀의 의미 해석을 여러 학자들의 분석에서 비교적 공통된 의미로써 행하였다. 이 경우 ‘進叱有在’를 ‘나아간’으로 풀이하였다.

끝으로, 구문 구조의 분석과정에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大明律直解”의 한문본도 제시하였다.

1. 3 연구사

“大明律直解”에 대한 연구는 吏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루어졌다. “大明律直解”는 단일 吏讀資料로서 가장 방대하고, 또한 정제된 吏讀가 사용되고 있어 吏讀研究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大明律直解”의 연구는 중추원(1936)에서 ‘校訂 大明律直解’를 펴내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장각본을 비롯한 여러 판본을 對校한 ‘校訂 大明律直解’는 판본에 대한 서지적 설명을 실은 ‘大明律直解解説’과 “大明律直解”에 있는 吏讀에 대하여 설명한 ‘吏讀略解’를 부록으로 담았다.

이후 法制處(1964)에서 “大明律直解”를 펴냈으나 이는 한문원본을 해석한 것으로 吏讀研究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률 전문용어와 생소한 한자어 등에 대한 주해를 곁들이고 있어 “大明律直解”의 구문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부사와 조사 그리고 어미 등으로 쓰인 吏讀를 대상으로 하여 吏讀의 목록을 정리한 것은 강성일(1966)이 있다. 그는 吏讀의 색인에 있어 자획순 배

열을 하였고 이에는 권수와 면수 그리고 빈도수까지 표시하였다.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註解는 김태균(1968)에서 이루어졌다. 김태균(1971a, pp.57-107)은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형태별 분류에 이어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시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김태균 1971b). 그리고 김태균(1972)은 “大明律直解”에서 쓰이는 ‘在’의 용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았다. 이러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在’에 대한 논의는 이강로(1984, pp.3-52)에 이어 논의되었다.

홍순탁(1974)의 ‘吏讀研究’는 비록 “大明律直解”만을 다룬 연구는 아니나, “大明律直解”를 중심으로 그 전후시기의 吏讀資料를 대상으로 하여 吏讀字를 연구한 것으로서 “大明律直解”를 다룬 연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배대운(1984)의 연구도 “大明律直解”만을 다룬 연구는 아니나, 그는 조사로 쓰인 吏讀의 연구에 있어서 “大明律直解”와 ‘養蠶經驗撮要’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大明律直解”와 비교되어 연구되는 ‘養蠶經驗撮要’는 왕명을 받은 韓尙德이 元나라의 ‘農桑輯要’를 吏讀로 번역한 책이다. 이 ‘養蠶經驗撮要’는 “大明律直解”에서와 같이 한문본과 함께 번역문이 수록되었다.

태종 15년(1415년)에 1권 1책으로 간행된 ‘養蠶經驗撮要’는 “大明律直解”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大明律直解(1395)’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大明律直解”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정형화된 吏讀를 보인다는 점으로 “大明律直解”와의 대비로써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김두황(1994)에서도 조선초기의 吏讀를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어미, 부사로 나누어 고찰함에 있어 “大明律直解”와 ‘養蠶經驗撮要’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희숙(1982, pp.1-20)은 ‘大明律直解의 吏讀文에 대한 연구’에 이어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1985)”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는 “大明律直解”만을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의 효시이다. 박희숙(1984)은 “大明律直解”에 대한 서지적 고찰과 더불어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하여 체언류, 조사류, 부사류, 용언류, 용언어간, 용언어미 등으로 분류하여 어학적 고찰을 해보았다. 안병희(1985, pp.15-22)도 “大明律直解”에 대하여 서지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여기서 誤記로 쓰인 吏讀字를 지적하고, “大明律直解”의 吏讀에서 보이는 통용과 혼용 등을 설명하였다.

“大明律直解”의 吏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박희숙(1984) 외에 고정희(1992)와 한상인(1993)을 들 수 있다. 고정희(1992)는 “大明律直解”에 대한 서

지적 고찰과 함께 吏讀의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吏讀에 대해서 명사류 吏讀, 조사류 吏讀, 동사류 吏讀, 부사류 吏讀, 어미류 吏讀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해 보였다. 한상인(1993) 역시 吏讀에 대해 품사별로 분류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품사별 분류는 고정익(1992)에서와 동일하나 어미류 吏讀에서 연결어미를 두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외에 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배대온(1984)은 조사로 쓰인 吏讀字와, 부사로 쓰인 吏讀字(1988, pp.67-422), 그리고 명사로 쓰인 吏讀字(1989, pp.107-138)를 분석하였고, 박성종(1987, pp.239-259)은 ‘旨是絃 無亦’와 ‘旨是絃以’란 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강영(1998)은 “大明律直解”에서 어말어미로 쓰인 吏讀에 대하여 이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분류한 후, 이것을 다시 서술종결어미, 의문종결어미와 제약어미, 불구어미, 나열어미, 의도어미, 도급어미, 전환어미, 가치어미로 세밀히 분류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大明律直解” 이두의 관독 및 용법에 대한 연구로서, 비록 구문이 다루어졌으나 이두 구문에 대한 연구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김태균(1968)에서 “大明律直解”의 시제를 다룬 바 있으나 구문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의 구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분석은 없는 상태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구조와 구문상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4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하여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하여 기술토록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14세기 국어의 구문 구조를 “大明律直解”의 구문연구를 통해 고찰해 본다는 것을 본 연구의 의의로 두었음을 기술한다.

제2장은 “大明律直解”가 지닌 문체상 특징과 번역상 특징 그리고 편집상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3장은 서술어 중심 구문 구조 분석으로서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認知 構文’, ‘話法 構文’, ‘存在・所有 構文’, ‘思惟・經驗 構文’, ‘使役・被動 表現 構文’,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 ‘受與 構文’,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으로 나누어 연

구한다.

제4장은 통사적 구조 중심으로 구문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否定 構文’과 ‘引用 構文’ 그리고 ‘爲乎事 構文’으로 분류하여 연구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론에서 전개한 논의를 총괄하여 요약해 보인다.

2. 大明律直解의 特徵

2. 1 문체상 特徵

“大明律直解”의 문체는 “大明律”을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 문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을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체보다는 정형화된 문체를 보인다.¹¹⁾ 하지만 어말어미에 있어서는 다양함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강영(1998, p.33)은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조항의 文尾 처리에 있어서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로 끝내지 않고 ‘爲乎事’(1가~다), ‘是乎事’(1라~바), ‘齊’(1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끝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1) 가. 所在官司明文捧上爲在隱不在此律爲乎事(1:19)

나. 招引爲有如外人乙良凡盜爲從例乙用良杖七十爲乎事(1:33)

다. 又他人乙陷害得罪令是乎爲使內在乙良犯法人罪以同爲乎事(24:6)

라. 去任段政滿遞還是去乃在喪是去乃致仕等類是乎事(1:16)

마. 次序適當爲在乙用良改立令是乎事(4:4)

바. 飲酒食肉爲在乙良家長乙杖八十遣僧道乙良同罪還俗令是乎事(12:8)

사. 差等以遞減科斷爲臥乎等用良此律乙不用爲乎事是齊(1:35)

아. 凡一日亦稱云者百刻以通計齊(1:43)

자. 須只起謀引入人乙推問爲乎矣的是爲去等並只斬齊(15:4)

그리고 이 외에 하나의 단어(구)로써 구문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

11) 강영(1998, pp.32-33)은 “大明律直解” 吏頭의 문체적 성격으로서, 대부분의 문장은 사건으로 주어진 상황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이 ‘-하면 -하게 처리할 일이다’(~爲在乙良 ~爲乎事是齊)의 문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문체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 내용이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 규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12) 고려시대 이두표기의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서종학(1993, pp.33-44)이 ‘-之, 齊, 如’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如’는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쓰인다고 한다. 한편, 연결어미는 ‘平矣, 遣弥, 良, 良尔’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 (2) 가. 使令斗尺庫直等亦知不得爲在乙良不論罪(7:7)
 나. 監臨官吏亦知而不告爲在乙良罪同齊不知者勿論罪(7:9)
 다. 若娶乙之姑舅兩姨者杖八十並離異(6:5)
 라. 總麻服制以上叔母果姪女果姊妹等乙交嫁爲在乙良各犯奸罪以論遣並只離異(6:6)
 마. 次知官吏亦知而不告爲在乙良罪同齊不知者不坐罪(7:3)
 바. 同僚亦知而不告者罪同齊不知者不坐罪(7:10)
 사. 自矣私物乙用良官物乙回換者罪同(7:5)
 아. 糾察官亦糾察不冬爲在隱罪同(12:3)
 자. 官物壞失例以與罪生徵納宜(7:6)
 차. 同人等當爲別乎生徵納宜(7:9)

그런데 (2)의 경우 이들 단어(구)의 뒤에는 ‘爲乎事’나 ‘齊’가 생략된 것이다.¹³⁾ 이는 다음의 구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 (3) 가. 並只直日乙論罪爲乎事(13:2)
 나. 冒弄已成雙者乙良離異令是齊(6:3)
 다. 女家乙良不坐罪爲齊(6:7)
 라. 官民之家亦故只禁止不冬粧飾令是在隱罪同齊(26:5)
 마. 右人乙當爲生徵納官爲齊(7:11)

따라서 우리는 (3)의 예문을 통해 적어도 (2가, 나) 구문에서 文尾에 생략된 것은 ‘爲乎事’가 되며, (2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구문의 文尾에서 생략된 것은 ‘齊’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에서와는 다르게 文尾가 어떤 단어나 구가 아닌 수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13) 강영(1998, p.33)은 “大明律直解”에서는 대체로 대단위의 律目을 마감하는 경우에 ‘-爲乎事’로 문장이 끝나고, 하나의 律目 안에 있는 세부적인 條文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齊’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 (4) 가. 一年己只畢納不得爲在乙良人戶及里長等乙杖一百(7:2)
 나. 門直官吏等亦搜探現捉不得爲在乙良杖一百(7:5)

하지만 이 경우에도 (5)의 예문에서 보듯이 수사의 뒤에 ‘齊’가 생략된 것이다.

- (5) 過行爲在乙良杖六十齊(15:1)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는 ‘爲乎事’나 ‘齊’의 생략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외에 “大明律直解”의 통사구조상 특징을 보면, 현대의 문 구성과는 다르게 각각 다른 주어에 대해서 동일한 서술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前文의 서술어는 생략하고 後文에만 서술어를 부여하고 있다(강영 1998, p.34).

- (6) 子孫等亦已死爲在祖父母父母果奴婢傭人等亦家長矣已死屍體乙用良他人亦殺
 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9:7)

그래서 (6)의 구문에 대해서 강영(1998, p.33)은 주어 ‘子孫’과 목적어 ‘祖父母, 父母’하고, 주어 ‘奴婢, 傭人’과 목적어 ‘家長의 이미 죽은 屍體’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술어를 한 번만 사용하였으므로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 2 번역상 특징

“大明律直解”에서는 모두 네 가지의 번역형태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술어의 생략’, ‘소극적 번역’, ‘적극적 번역’, ‘의역’이다.

첫 번째 번역형태인 ‘서술어의 생략’은 구문의 文尾를 한문원문의 모습 그대로 하여 이두 서술어를 구문에 쓰지 않는 것이다.

- (7) 가. 한문원문:其犯十惡者不用此律
 나. 이두구문:十惡乙犯爲在隱不用此律(1:8)

이때는 (7나)의 문미에 ‘爲乎事’ 또는 ‘爲乎事是齊’가 생략된 것이다. 그런데 (7나)의 경우 우리는 두 가지의 풀이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첫 째는 (7나)에서 ‘爲乎事’를 엄두에 두지 않고 문미의 ‘不用此律’만을 대상으로 한문구문의 풀이에서와 같이 이를 하나의 동사구로 취급하여 풀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7나)의 ‘不用此律’을 하나의 명사구로 보고 뒤에 생략된 ‘爲乎事’를 감안하여 풀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와 같이 뒤에 서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하여 풀이할 수 있는 경우는 현대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8) 가. 엄마, 난 더운 밥!

나. 여기 모임은 모두 몇 사람?

다. 김선수 일회전을 가볍게 승리.

(8가)는 ‘밥’ 뒤에 서술어 ‘주세요’가, (8나)는 ‘사람’ 뒤에 ‘있지요’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8다)는 ‘승리’ 뒤에 서술어 ‘하였다’를 생략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서술어를 감안하여 (8)의 구문을 풀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나)의 경우는 뒤에 서술어 ‘爲乎事’가 생략된 것으로 하여 이를 엄두에 두고 풀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8)에서는 문미의 명사구에 동사가 없다. 이는 (7나)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비록 (7나)를 명사구로서 취급하여 뒤에 서술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 안에는 엄연히 동사 ‘用’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두 번째 풀이 방식으로 하여 분석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不用此律’은 현대국어에서 동사구를 하나의 명사구로 바꾸어 주는 명사화소 ‘-음’이나 ‘-기’가 쓰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사구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不用此律’은 있는 그대로 동사구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서술어가 올 필요가 없다. 만일 서술어가 온다면 그 것은 蛇足에 불과하다. 그럼 (7나)의 경우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만일 (7나)를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동사구 뒤에 서술어가 쓰인 모든 구절은 다 蛇足を 달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大明律直解”가 단순히 한문본에 우리말 蛇足を 달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7나)와 같은 경우는 모두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를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7나)를 한문구문처럼 풀이하지 않는다면 文尾의 ‘不用此律’을 명사구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까? 우리는 다음의 漢字語가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단어 즉, 명사로 쓰이고 있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9) 가. 歸家
- 나. 斷水
- 다. 洗顏
- 라. 潛水

(9)의 漢字語는 한문식 구문으로 본다면 하나의 구문이 되지만 우리말에서 구문에 쓰일 때는 명사이다.

- (10) 가. 영화는 오늘도 歸家가 늦었다.
- 나. 시에서는 어제부터 斷水를 실시하고 있다.
- 다. 게으른 영호는 꼼꼼한 洗顏보다 고양이 세수를 자주하는 편이다.
- 라. 潛水에 있어서 명심할 것은 겁 먹지 말라이다.

그런데 (10)의 ‘歸家, 斷水, 洗顏, 潛水’들은 그 자체로서 한문구문으로 취급한다면 모두가 동사구이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분명히 명사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은 동사형 명사구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不用此律’도 우리말 속에서는 하나의 동사형 명사구가 되는 셈이다. ‘不用此律’은 ‘用(此)律’의 반대말이고, ‘用律’은 (9)에서와 같은 구조이므로 동사형 명사가 된다. 따라서 이의 반대말인 ‘不用此律’ 또한 동사형 명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不用此律’이 우리말에서는 명사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풀이에 있어서 두 번째 식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나)의 文尾가 한문원문인 (7가)와 동일하다는 데에서 이를 쉽게 수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7나)와 동일한 文尾에 ‘爲乎事’가 쓰인 예가 있으므로 ‘不用此律’은 반드시 동사구로서만 처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7나)의 경우는 동사구로서 풀이하고, ‘爲乎事’가 쓰인 경우에는 명사구로서 풀이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풀이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不用此律’을 동사구로 본다면 해석은 ‘이 (法)律을 쓰지 않는다’로 되지만, 이를 명사구로 하고 ‘爲乎事’를 서술어로 한다면 풀이는 ‘이 (法)律을 쓰지 않을 일(이다)’가 된다. 이 둘의 경우 뜻은 ‘이 (法)律은 안 쓴다’로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전자는 사실규정이지만 후자는 행위규정이다.

때문에 사실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爲乎事’를 사용하지 않고, 행위를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爲乎事’를 쓴다고 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7나)의 경우에는 ‘爲乎事’가 생략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爲乎事’가 쓰이지 않은 (7나)의 구문은 ‘爲乎事’가 쓰인 구문에 비해 다른 또 하나의 구문 양식이 된다.

이처럼 (7나)를 하나의 구문 양식으로 볼 수도 있음을 고려하는 것은 ‘不用此律’만으로도 구문을 끝낼 수 있으며, 의미전달에서도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漢字語 뒤에 서술어가 없는 경우 구문을 끝낼 수도 없으며 의미전달도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7나)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1) 가. ²영희가 아침에 洗手
 나. ²민호가 食水
 다. ²경수도 問病

(11)에서 漢字單語를 하나의 한문구문으로 한다면 (11가, 나, 다)는 모두 문장이 성립하며, 이로써도 구문이 완성된다. 그러나 문제는 (11)과 같은 경우의 漢字語에 대하여 우리는 언어관습상 단어로서 다루지 구문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2)와 같이 우리말은 한자어 뒤에 어떤 서술어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12) 가. 영희가 아침에 洗手 싫어한다.
 가'. 영희가 아침에 洗手 잊었다.
 가". 영희가 아침에 洗手 피했다.
 나. 민호가 食水 사왔다.
 나'. 민호가 食水 얼질렀다.
 나". 민호가 食水 쏟았다.

다. 경수도 問病 갔다.
다'. 경수도 問病 왔다.
다". 경수도 問病 꺼려한다.

따라서 (7나)의 경우에도 漢字語 뒤에 서술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나)의 경우에는 (11)과는 다르게 서술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에서 보듯이 서술어가 생략되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는데 반해 (7나)는 漢字語 뒤에 서술어가 없어도 의미가 분명하다. 따라서 (7나)는 (11)과는 다르게 의미가 분명하므로 (11)과는 다른 양식의 구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大明律直解”는 法律書이므로 문체가 정형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곧 서술어를 생략하여도 문체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뒤에 생략된 서술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7나)에서는 서술어가 생략되었더라도 의미에 있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14)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11)에서와 같이 漢字語 뒤에 서술어가 생략되었어도 漢字語 뒤의 서술어가 규정화되어 있으면 구문이 성립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13) 가. 총무 부서 전원 昇級
나. 한국 등반대 마침내 에베레스트 登頂
다. 해군은 하반기에 募兵

(13)에서 생략된 서술어는 ‘이다’ 혹은 ‘하다’이다. 따라서 생략된 서술어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13)는 文尾에 서술어가 없어도 구문이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7나)의 경우도 (13)과 같은 경우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7나)는 서술어없이, 한자구문으로 풀이하는 또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서술어가 생략된 형태인 것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漢字語 뒤의 서술어가 고정적이고 이 서술어가 생략되었을 경우, 漢字語에 대해 내면적으로는 한문구문식으로 풀이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전적인 한문구문식 풀

이는 아니다. 漢字語 뒤의 생략된 서술어를 잠재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구문형태를 보기로 하자. 첫 번째 구문형태가 漢字語 뒤에 서술어를 생략하는 것이었으므로 두 번째 구문형태는 漢字語 뒤에 서술어를 吏讀로 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14) 가. 한문원문:罪故云不用此律

나. 이두구문:以上罪去等不用此律爲乎事(1:38)

(14나)는 ‘不用此律’ 뒤에 생략된 ‘爲乎事’가 표기된 구문이다. 이는 ‘不用此律’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두고 ‘爲乎事’만을 덧붙인 경우로서 (14가)에서는 구문인 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14나)에서 단어화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소극적인 번역자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 번째 형태는 (14나)에서와는 다르게 한문원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꾼 다음 吏讀로써 구문을 마치는 것이다.

(15) 가. 한문원문:費用不存者追徵足色

나. 이두구문:費用不存爲良置本色以還徵爲乎事(1:26)

이러한 구문형태는 소극적 번역형태인 (14나)에 비해 적극적인 번역자세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양식은 한문원문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 넣어 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문원문의 漢字를 빼기도 하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한문원문이나 이두구문이나 동일하다.

(16) 가. 한문원문:朦朧交收在內者罪亦如之

나. 이두구문:朦朧捧上在置爲在乙良罪同齊(3:10)

(16나)에서는 한문원문인 (16가)에 있는 ‘者’와 ‘亦’ 字를 삭제하고, ‘如’ 字를 ‘同’자로 바꾸었다. 이는 (16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윤색한 것으로 일종의 의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는 모두 네 가지의 번역형태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7나)에서와 같은 서술어의 생략과, (14나)와 같은 소극적 번역 그리고 (15나)에서 보이

는 적극적 번역과 (16)나의 의역이 바로 그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의역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에 비해 우리말이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중국식 한문문장의 이해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나)의 吏讀文은 의역으로서 ‘理馬人’이 주어인데, 이는 (17가)의 ‘雇’을 풀이한 것이다.

(17) 가. 한문원문

其受雇醫療畜產及無故觸之而被殺傷者不坐罪

나. 이두구문

理馬人亦工錢捧上理馬爲如可殺傷令是旣無緣故自觸被殺傷爲良在等不坐
罪齊(16:6)

하지만 (17가)에서는 주어로 ‘雇’만을 썼을 뿐 이를 ‘理馬人(獸醫)’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雇’를 ‘理馬人’으로 해석하여 서술한 부분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醫療畜產’에 대하여 ‘畜產乙診療’와 같이 직역하지 않고 우리말인 ‘理馬爲如可’로 풀어 보이고 있다. 이 역시 ‘醫療畜產’에 대한 의역으로서 주어의 행위에 대한 풀이이다. 그리고 (17가)에는 없는 ‘自’字를 ‘觸’字 앞에 넣어 구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원문에 없는 글자를 넣었으므로 이것도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보는 (18나)의 吏讀 구문도 의역으로서 이 역시 한문원문인 (18가)에는 없는 글자를 보태어 풀이하고 있다.

(18) 가. 한문원문

若故放犬令殺傷他人畜產者各答四十追倍所減價錢

나. 이두구문

故只惡犬乙放出爲他矣馬牛畜產乙殺傷令是在乙良答四十遣所減價錢乙生
徵給主(16:6)

(18)에서 吏讀文인 (18나)는 (18가)의 ‘犬’을 ‘惡犬’으로하여 대상의 성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18가)에서 단지 ‘畜產’이라 한 것을 ‘牛馬畜產’으로 바꾸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8가)에서 단지 ‘倍’라고 표현한 것을 ‘生徵給主’로 번역하여 ‘倍’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말로 풀어주고 있다.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의역으로서 (18나)는 의역이 주로 된 구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률용어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소 생경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혹 다른 한자어로서 번역하기도 하였다.

(19) 가. 大明律

刺

나. 大明律直解

ㄱ. 刺字爲乎事(18:4)

ㄴ. 鋟面爲乎事(7:7)

(19가)에서 보이는 “大明律”의 ‘刺刑’은 주로 절도죄를 범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로서 얼굴, 즉 이마에 ‘盜’字 등을 새겨넣는 벌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벌에 대해 사람에 따라서는 생경하여 형벌의 내용을 알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는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하여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으로 죄인을 찌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刺’字에 ‘字’를 덧붙여 번역하거나, ‘鋟面’이라 하여 아예 다른 漢字語로 번역하고 있다. 이 경우 (19나)의 ‘ㄱ’은 소극적인 번역이고, (19나)의 ‘ㄴ’은 비록 한자어로 되었지만 일종의 의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역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하였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이 외에도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부득이 의역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다음에 보는 의역이 그것으로서 “大明律”에서 보이는 ‘流三千里’라는 형벌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상 실시하기 어려운 형벌이다.

(20) 가. 韓文原文

杖一百流三千里

나. 이두구문

杖一百爲限遠流遣(3:9)

때문에 ‘三千里’라는 형벌을 ‘遠流’라고 바꾸어 의역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大明律直

解”에서는 의역을 자주 행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는 동일한 한문원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그 예를 ‘各從重論’을 통해서 보기로 하자.¹⁴⁾

(21) 가. 各各重罪以論決爲乎事(2:7)

나. 各各重罪以論爲乎事(3:7)

다. 各從重論罪爲乎事(23:7)

라. 各從重論爲乎事(3:5)

마. 重罪以論爲乎事(13:8)

바. 從重論爲乎事(28:14)

이와 같은 현상은 譯者가 두 명이고 潤色者 또한 두 명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번역의 혼란(고정의 1992, p.11)으로 보기 보다는 이러한 구문이 모두 통용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各從重論’의 번역에 쓰일 수 있는 구문의 구조가 다양하였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개인간의 번역능력 차이에 의해 다양한 구문이 나왔고, (21)의 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번역능력 미달에 의하여 語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編譯者 사이에 용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編譯者가 이해 못하는 또는 틀린 구문이라고 말하는 구문을 私書도 아닌 官書에 굳이 신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21)의 다양한 구조가 실렸으므로 編譯者들 사이에 (21)과 같은 구조가 모두 용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이상에서와 같이 “大明律直解”는 단순히 “大明律”을 번역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정과 정서에 맞게끔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최대한 고려하여 편역된 저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당시의 문법관을 알려주고 있다.

14) 본문 (21)의 예문은 고정의(1992, p.11)에서 보이고 있다.

15) 編譯者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맡은 번역부분에 대해서는 관섭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번역한 부분을 읽어서 보았을 것이므로 최소한 誤譯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교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3 편집상 특징

“大明律直解”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의역 외에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大明律”의 내용을 재편집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官制名도 “大明律”의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의 제도명칭에 맞추기 위해 바꾸었다.¹⁶⁾

(22) 가. 名例律

中國官制	朝鮮官制
五軍都督府	都評議使司
諫院	臺省
刑部	刑曹等官
管莊	舍主
佃甲	田作
吏典	令吏色員
首領官	郎廳官

(23) 나. 吏律

中國官制	朝鮮官制
都指揮使	都節制使
總兵將軍	兵馬使等軍官

(24) 다. 戶律

中國官制	朝鮮官制
斗級	斗尺
庫子	庫直

16) “大明律直解”의 제도명칭은 박희숙(1984, p.27)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라. 工律

中國官制	朝鮮官制
人工	人突
提調官	次知官員

한편, “大明律直解”의 譯者들은 “大明律”의 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문의 법률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한 것으로 본래 “大明律”의 법률보다 더 세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가 단순히 중국의 “大明律”을 베낀 아류물이 아닌 한층 더 발전시킨 법률서임을 보인다.

(26나)와 (27나)에서 밀줄친 부분이 “大明律”에는 없는 법률로서 “大明律直解”에서만 보이는 법률이다.

(26) 가. 한문원문

朦朧交收在內者罪亦如之

나. 이두구문

朦朧捧上在置爲在乙良罪同齊凡矣外員及官庫雜物良中踏印不冬爲去等亦用此律爲乎事(3:10)

(27) 가. 한문원문

卽從其姓若立嗣雖係同宗

나. 이두구문

卽從其姓爲乎矣遣棄小兒叱段親生父母亦難便棄置小兒是去有乙時亦中父母俱存民財富足爲在人華亦貪利爲要自矣子息乙他戶良中強置冒稱遣棄小兒爲臥乎所毀亂風俗爲臥乎事是良亦不在此限齊必干同宗人乙作子傳繼令是良置

뿐만 아니라 “大明律直解”에서는 우리의 현실정에 맞지 않은 법률을 과감히 삭제하기도 하였다.

(28) 가. 한문원문

其子亦貴宗改立應係之人若庶民之家存養奴婢者杖一百卽放從良

나. 이두구문

其子乙良還父母遣次序適當爲在乙用良改立令是乎事(4:3)

(28가)에서 밑줄친 부분은 이두구문에서는 삭제된 법률이다. 이처럼 “大明律直解”는 중국의 “大明律”의 법률에 대하여 가감하여 편집을 행하였다. 이것은 비록 중국법률을 들여오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맞게 재편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본에 손질을 하였다는 것은 원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만일 14세기에 중국에 대하여 절대적 맹종과 사대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중국에서 편찬한 “大明律”의 내용에 대하여 손을 댈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는 그 자체로 “大明律直解”라는 또 다른 법률로서 우리의 자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껏 “大明律直解”를 단순히 崇明觀에 의한 “大明律”의 번역물로 취급해왔던 시각에 대하여 再考해야 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3. 서술어 중심 구문 구조 분석

3. 1 認知 構文

3. 1. 1 도입

‘認知’란 이미 존재하는 영역을 수용하는 정신작용이다(한재영 1996, p.293). 그러므로 ‘認知 構文’은 ‘무엇인가를 알다’이거나 ‘무엇인지 모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이 된다. 따라서 이에 쓰이는 서술어들도 ‘알다’ 또는 ‘모르다’라는 뜻을 공통적으로 가진다.¹⁷⁾

“大明律直解”에서는 구문을 ‘認知 構文’으로 만드는 서술어로 ‘知’, ‘知想只-’, ‘知不得爲-’, ‘知乎不冬’ 등이 보인다.¹⁸⁾ 여기서 ‘知’, ‘知想只-’은 평서문 ‘認知 構文’을, ‘知不得爲-’, ‘知乎不冬’은 부정문 ‘認知 構文’을 이끈다.

이들 서술어를 살펴보면, 먼저 ‘知’는 漢字語 뜻과 마찬가지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서술어 ‘知’는 구문에 쓰임으로써 이를 ‘認知 構文’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아서 여기다’라는 의미의 ‘知想只-’ 역시 漢字語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서술어 ‘知想只-’은 구문을 ‘認知 構文’으로 이끈다.

한편, ‘知不得爲-’는 앞서와는 반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이 서술어는 구문을 부정 ‘認知 構文’으로 만든다. 그런데 ‘알다’의 반대말은 ‘모르다’이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모르다’에 해당하는 이두어가 없다. 대신 ‘知’의 반대어 개념으로서 ‘知不得’이 쓰이고 있다. ‘知不得’은 한자어 개념으로 풀이하면 ‘알지 못하다’가 되지만, 이는 ‘알다’의 반대어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모르다’의 의미로 사용

17) 인지동사에 대해 이현희(1994, p.465)는 “인간은 내적 사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식 활동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다. 그러한 인식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를 우리는 인지동사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18) 이현희(1994, pp.465-481)는 15세기 국어에서 ‘알-’과 ‘모르다’를 인지동사로서 다루었다. 그리고 한재영(1996, p.293)은 16세기 국어의 ‘認知 構文’ 서술어로 ‘알다, 모르다, 너기다’를 들고 있다.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知’와 ‘知不得’의 관계를 ‘알다’와 ‘알지 못하다’로 보기 보다는 ‘알다’와 ‘모르다’의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知不得’을 ‘모르다’로 취급하기로 한다.¹⁹⁾ 따라서 ‘NP亦 知’와 ‘NP亦 知不得’을 ‘~가 알다’와 ‘~가 모르다’인 것으로 분석한다.

‘모르다’라는 의미인 ‘知不得爲-’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知乎不冬’의 경우는 자신이 아닌 남이 모르도록 한다. 이는 ‘知乎不冬’의 의미가 ‘아뢰지 아니 하다’이기 때문이다. 의미에 있어서 ‘知不得’과는 다소 다르지만 ‘알다’에 대하여 부정적인 뜻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되었다 할 것이다.

3. 1. 2 ‘知 構文’

타동사 ‘知’는 한자어 뜻 그대로 ‘알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안다’는 것은 아는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술어 ‘안다’가 오는 구문에는 그 안다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어로 온다. 따라서 구문 구조는 ‘NP₁亦 NP₂乙 知’가 된다. 실제로 (1)의 예문에서는 목적어가 구문에 놓이고 있다. 다만 주어는 중세국어에서 주어 없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듯이 여기 “大明律直解”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되었다.²⁰⁾

19) 시정근(1998, p.220)은 ‘모르다’를 ‘못 알’로 어휘분해하고 있다. 그가 보인 ‘모르다’의 어휘분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모르다 → NEG([+NPI], [-가능], [-능력]) + AL
* NPI: Negative Polarity Items(부정극어)

여기서 ‘모르다’가 부정소와 동사로 분리되어 분석되고 있음에 주목할만 하다. 이는 ‘知不得’을 ‘모르다’에 대한 표기로 다루는 본 연구와도 상통된다 하겠다.

20) “大明律直解”에서는 격조사의 생략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大明律直解”가 律書이기 때문이다. 즉, “大明律直解” 구문은 법조문이라는 한정이 주어져 있으므로 내용에 있어서 주어와 목적어로 이해될 성분이 거의 관용화되었다. 그리고 법조문은 긴 문장을 가진다는 특성에 의해 이미 그 앞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이므로 격조사의 생략은 찾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홍종선(1999, pp.83-112)의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다. 홍종선(1999, pp.106-107)은 격조사의 무표지 현상에 대해 관용적인 근거에서의 회복 가능성으로 보았는데,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해 보이고 있다.

(1) 가. 强竊盜賊矣偷取物色乙知遣故只交易爲在乙良(18:17)

[강도 및 절도의 훔친 물건을 알고 짐짓 交易하거들란]

나. 罪人矣在處乙知遣捕捉不冬爲在乙良罪人罪良中減一等齊(27:1)

[죄인의 있는 곳을 알고 체포 아니 하거들란 죄인의 죄에서 減一等한다(하올 일이다)]

다. 官司亦罪人乙追捉爲臥乎所乙知遣其事乙漏通爲罪人乙逃亡令是在乙良(27:6)

追捉:죄인을 들추어 잡아 옴

[官司가 罪人을 推捉하는 바를 알고 그 사실을 漏泄하여 죄인을 도망시키거들란]

(1)의 예문에서 ‘知’의 앞에는 ‘偷取物色’과 ‘在處’가 목적어로서 오고 있다. 그리고 (1다)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所’가 목적어로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 구문 구조에서는 물건이나 장소 또는 어떠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목적어가 된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知 構文’에서는 (2)와 같이 우리말 어순이 아닌 한문어순도 보인다.

(2) 知情隱藏令是在乙良杖一百充軍齊(14:12)

[情況을 알고 隱匿시키었으면 杖一百하고 充軍한다(하올 일이다)]

(2)도 주어가 생략된 ‘知 構文’인데²¹⁾ 목적어와 서술어의 놓임이 우리말 어순이 아

(1) 영호 미애 사랑해.

(2) 쥐구멍 별 들었어.

홍중선(1999, pp.106-107)은 위의 구문에서 (1)은 자연스럽게 들리는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담화상에서 이에 관련하여 상당한 전제 정보가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 즉, 화맥상에서 이미 ‘영호’는 [agent]로서, ‘미애’는 [patient]로서 등장하여 ‘관용성’을 얻은 상태로서 ‘영호’가 주어가 되며 ‘미애’가 목적어가 된다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는 일반적인 언어 표현에서 이미 관용성을 가진 표현인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을 근거로 하여 ‘관용성’을 전제하므로 문맥상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 맨 앞에 놓인 명사구에 처격이 오며 후행하는 명사구에 주격이 오는 식의 구문 형태인 ‘쥐구멍에(도) 별이 들었어’라는 다소 덜 일반적인 문장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처격 ‘-에’와 주격 ‘-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다고 말한다.

21) 이승욱(1969)과 채완(1976, p.99. 1977, p.24)은 ‘주어생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승욱(1969)은 국어의 기본문형이 ‘서술어문’이므로 서술어의 주변적 성분인 주어에 대하여 ‘주어생략문’이니 ‘무주어문’이니의 설정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채완(1976, pp.96-101. 1977, p.24)은 주·

니라 한문어순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는 우리말 어순과 한문어순을 병용하는 특색을 지녔음을 볼 수 있다.

목적어가 구문에 놓이는 것은 ‘知’²²⁾가 타동사이므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知’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의 생략이 이루어진다. 다음에서 보는 예문에는 주어가 보이는 대신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3) 里長亦知遣先告不冬爲在乙良各答四十爲乎矣(11:4)

[里長이 알고 먼저 고발 아니 한 경우에는 각각 答四十하오되]

3. 1. 3 ‘知想只- 構文’

‘知想只-’는 단일동사로서(이승재 1989, p.123) 동사어간이다. ‘知想只-’ 역시 무엇을 안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知想只-’의 앞에는 목적어가 놓인다. (4)의 예문에서 주어는 생략되었다.

(4) 가. 官司亦推問次良中沙叔是乎所知想只在乙良(1:39)

是乎所(이온바):이온 바

[官司가 申聞 次에야 叔父이온 바를 알아차린 경우에는]

나. 偽造乙知想是遣知情用使爲在乙良依本律科罪爲乎事(7:1-2)

用使爲在乙良(빠브헝견으란):사용한 것은

[偽造를 알아차리고 情況을 알면서 사용한 것은 本律에 의거하여 科罪하올 일]

다. 他人亦偷用借用爲乎爲庫外已出爲乎所知想只遣(7:8)

爲乎爲(헝운삼):하려고, 知想只遣(알스치고):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이 훔쳐서 사용하거나 빌려서 사용하려고 창고 밖으로 이미 내온 바를 알아차리고]

(4가, 다)에서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所’가 목적어이고, (4나)에서는 ‘偽造’가 목적어이다. ‘知想只- 構文’도 ‘知 構文’에서와 마찬가지로 2항 술어로서 구문 구조가

술관계보다 더 상위의 구조로서 화제·평언 관계(topic-comment relation)를 상정하여, 생략되는 것은 화제이며 주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될 수 없다고 말한다.

22) ‘知’는 석독구결에서 항상 ‘알-’로 훈독된다.

‘NP₁亦 NP₂乙 知想只-’으로 된다. 그런데 ‘知想只-’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5)의 구문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고 있다.

(5) 同官及仰官弋只知想只遣不告爲拊同意作弊者乙良罪同齊(3:8)

作弊:폐를 끼침

[同僚官員 및 所管上司가 알아차리고 告하지 아니하며, 뜻을 같이하여 作弊한 자는 같은 죄이다]

(5)에서 ‘同官及仰官’은 주어로서 이의 구문에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知想只-構文’에서 목적어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필수 논항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4)와 (5)의 구문을 통해 주어 혹은 목적어가 생략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知想只-構文’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知想只-構文’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생략된 구문이 찾아진다. 이는 ‘知構文’에서도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생략된 예가 없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知想只-構文’에서 주어와 목적어 모두가 놓이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6) 가. 知想只乎矣故只推考不冬爲在乙良盜賊以同罪齊(7:8)

知想只乎矣(알너지오되):알아차리되

[알아차리되 짐짓 신문 아니하거들란 도적으로서 같은 죄이다]

나. 萬一互相知想遣隱匿爲卽時申報不冬爲在乙良(14:3)

知想遣(알너지고):알아차리고

[만일 서로 알아차리고 隱匿하여 즉시 고하여 아뢰지 아니 한 경우에는]

(6)은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생략된 ‘知想只-構文’이다.²³⁾ 이처럼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전부 생략한 채 서술어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大明律直解”의 구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편, ‘知想只-構文’은 다른 구문에서와는 다르게 그 앞에 ‘爲乙去’를 선행시킨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23) 이승재(1989, p.123)는 ‘知想只’에 대해 ‘知’와 ‘想只’의 복합동사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 가.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遣現告爲旃罪人亦逃亡爲旃(1:28)

爲乙去(홀가):~할까, 知想只遣(알너지고):알아 여기고,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것을 알아차리고 (자진) 신고하며, 죄인이 도망하며]

나.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遣物主處還給爲在乙良減罪二等齊(1:29)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알아 여기고 물건의 주인집에 돌려주거들란 죄 2等を 減한다(하울 일이다)]

이것은 서술어 ‘知想只-’에 남의 행동에 대하여 인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知想只-’은 ‘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를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다. 이때 남이 행할 행동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우려되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우려되는 행동에 대하여 ‘爲乙去’로 받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구문 구조는 ‘S爲乙去 知想只-’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1. 4 ‘知不得爲- 構文’

‘知不得’은 ‘爲-’와 결합하여 ‘知不得爲-’로 되어 ‘모르다’라는 의미의 서술어로서 쓰인다. 따라서 ‘知不得爲- 構文’에는 알지 못한 내용이 목적어로서 놓이는 ‘NP₁亦 NP₂乙 知不得爲-’라는 구문 구조를 가진다.

(8) 가. 大祀神御之物是乎所乙知不得爲乎等用良唯只常盜例以同論齊(1:39)

[大祀神御之物이온 바를 알지 못하므로 오직 일반 절도의 例로써 동일하게 論罪한다 (하울 일이다)]

나. 父亦從前良中子乙知不得爲有如可毆打後良中沙始知其子爲在乙良(1:39)

[아버지가 종전에 자식을 알지 못하였다가 구타 후에야 처음으로 그가 아들임을 알았으면]

다. 拒捕殺傷人及行姦事乙並只知不得爲在乙良(18:7)

[체포에 항거하며, 사람의 살상 및 강간한 일을 모두 알지 못한 경우에는]

라. 父母妻妾子孫等亦造毒事乙知不得爲在隱(19:4)

蠱毒:뱀, 지네, 두꺼비 등의 毒, 爲在隱(헉건은):~한 것은,

[父母나 妻妾이나 子孫 등이 蠱毒을 造畜(製造 및 蓄積)한 일을 알지 못한 것은)]

(8)에서는 ‘大祀神御之物是乎所’, ‘子’, ‘事’가 각각 ‘知不得-’의 목적어로 오고 있다. 그런데 ‘知不得- 構文’에는 (8)의 경우와는 반대로 목적어가 없이 바로 주어만 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행절에 이미 설명되어 있어서 목적어가 구문에 올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겠다.

(9) 가. 叔果姪果亦各處生長爲相知不得爲如乎等用良(1:39)

爲如乎等用良(ㅎ다온돌쓰아):~하던 것으로써

[숙부와 조카가 딴 곳에서 生長하여 서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 使令斗尺庫直等亦知不得爲在乙良不論罪(7:8)

斗尺(말치):말잡이(양곡의 수량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庫直(고지기):창고지기

[使令과 말잡이 및 창고지기 등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논죄 아니 (한다)]

(9)에서 목적어가 없이 주어만이 구문에 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知不得- 構文’에서도 주어와 목적어는 수의적 성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知不得- 構文’역시 주어와 목적어가 구문에 모두 놓이거나 놓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10)의 구문은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놓인 구문이다.

(10) 被毒人矣父母妻妾子孫等亦造毒事乙知不得爲在隱遠流不冬齊(19:4)

[蠱毒에 중독된 사람의 父母나 妻妾이나 子孫 등이 蠱毒을 造畜(製造 및 蓄積)한 일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遠處에 流配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이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구문에 놓이는 구조를 가지지 못한 ‘知 構文’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주어와 목적어 둘 다 구문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 (11)에서 보는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구문들이다.

(11) 가. 免罪不得爲乎事知不得爲誤殺傷人爲跡(1:17)

[면죄를 못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며]

나. 減二等爲遣知不得失錯亦試取爲在乙良感三等爲乎事(2:4)

試取: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음

[2等を 減輕하고, 알지 못하여 실수와 착오로 試取한 경우에는 3等を 減할 것]

다. 犯人以同罪論齊知不得爲在隱減三等(13:7)

[범인과 같은 죄로 論罪한다. 알지 못한 경우에는 3等を 減(한다)]

라. 犯人罪以同齊知不得推考不冬爲在乙良並只與罪不冬爲乎事(16:6)

[범인의 죄와 동일하다. 알지 못하여 신문 아니 한 경우에는 모두 죄를 주지 아니 하울 일]

마. 價本乙良生徵沒官齊知不得爲在乙良不坐罪遣價本生徵給主爲乎事(18:13)

[값은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不坐罪하고 값은 강제징 수하여 주인에게 還給하울 일]

바. 同宗親屬亦中決給爲乎矣知不得爲在乙良不坐罪齊(18:15)

[同宗親屬에게 歸屬하오되 알지 못한 경우에는 不坐罪한다(하울 일이다)]

(11)의 구문들은 모두 주어는 물론 목적어도 놓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知不得爲-’가 다른 명사구 없이 홀로 구문에 놓인 경우로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선행절에 들어 있다. 때문에 ‘知不得爲-’의 앞에는 ‘누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논항이 놓이지 않아도 재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知不得爲- 構文’은 주어와 목적어가 전부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은 ‘知不得爲-’의 선행 명사구를 ‘良中’이 통합하고 있는 경우의 구문을 보기로 한다. 다만, (12나)는 ‘良中’이 보이지 않으나 (12가)에서 ‘時’에 ‘良中’이 오고 있다는 것과 의미상으로 보아서 (12나)에서도 ‘時’를 ‘良中’이 통합한다고 보아야 한다.²⁴⁾ 따라서 (12나)는 ‘良中’이 생략된 구문이 된다.

(12) 가. 犯時良中知不得爲在乙良凡人例乙依准論爲乎矣(1:39)

[犯行時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를 의지하여 견주어 論罪하오되]

나. 逃亡時知不得爲在乙良五人是去等答二十(4:8)

[逃亡時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다섯 명이거든 答二十]

다. 罪囚乙押送爲如可中路良中知不得逃亡令是在乙良(27:5)

[罪囚를 押送하다가 中途에서 알지 못하고 도망시키거들란(도망하거들란)]

(12)의 구문에서는 ‘良中’이 시간과 통합하고 있다. (12다)에서 ‘中路’는 ‘길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닌 ‘行路中’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良中’이 ‘知不得爲-’의 선행 명사구를 통합하는 구문의 구조는 ‘NP良中 知不得爲-’가 된다. 이 구조에

24) 국어의 조사는 통사적 어사로서 어휘적 의미는 없고 통사적 의미만이 있으므로 조사의 의미라 하면 곧 통사적 의미를 가리킨다(최호철 1999, p.329). 따라서 생략된 조사는 통사적 의미에 의해 드러나게 되므로 생략된 조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서 ‘NP’는 ‘良中’의 통합을 받으므로 장소가 올 수도 있으나, “大明律直解”의 ‘知不得爲- 構文’에서는 장소가 ‘NP’로 놓이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3. 1. 5 ‘知乎不冬 構文’

이번에는 ‘아뢰지 아니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知乎不冬’이 서술어로 쓰인 구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知乎不冬’은 그 의미상 알리지 않을 대상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3)의 예문에서는 여격어가 ‘知乎不冬’의 앞에 놓이는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 구조를 지니고 있다.

(13) 軍人亦頭目亦中知乎不冬私丁出外虜掠爲良在等爲首乙良杖一百(14:6)

知乎不冬(알외 안들):아뢰지 아니 하다

[軍人이 頭目(直屬上官)에게 아뢰지 아니 하고 사사로이 밖으로 나가 노략질하였거든 首唱者는 杖一白]

(13)에서 ‘軍人’이 알리지 않을 대상은 ‘頭木’이다. 그러므로 (13)에서는 ‘頭木’이 ‘知乎不冬’의 선행어로 오고 있다. 그런데 다음 예문에서는 여격어에 조사가 오지 않고 있다.

(14) 凡同居族下人等亦尊長知乎不冬爲趣便以家財等乙等用下爲在乙良二十貫是去等答二十(4:9)

[무릇 동거하는 아랫 사람되는 친족들이 尊長에게 아뢰지 아니 하고 자의로 집안의 재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20貫이거든 答二十]

(14)에서 ‘尊長’은 여격어이다. 비록 ‘尊長’에게는 여격 조사 ‘亦中’이 표지되지 않지만, 주어인 ‘同居族下人’과 ‘知乎不冬’의 사이에 놓여 있으므로 ‘尊長’은 여격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亦中’의 표지는 임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어가 생략된 ‘知乎不冬 構文’이다.²⁵⁾ 그런데 이 구문은 ‘知乎不冬’의 앞에

25) “大明律直解”는 律書이므로 구문의 주어는 대체적으로 범죄자 아니면 법관이 되기 때문에 법률을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어는 전달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장성분의 생략은 전

목적어가 바로 오고 있다.

(15) 其矣形體乙知乎不冬他矣財物乙潛取爲臥乎所爲竊取皆名爲盜齊(18:18)

[그의 形體를 알리지 않고 남의 재물을 몰래 취하는 것을 소위 竊取라 하여 모두 도둑이라 이름한다]

하지만 목적어 ‘形體’와 ‘知乎不冬’의 사이에는 ‘知乎不冬’이 서술할 여격어가 생략되었다. 이는 ‘知乎不冬’은 여격어나 처격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15)에서 구문의 내용상 생략된 것은 ‘他人’이므로 여격어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15)는 여격어가 생략됨으로써 목적어 ‘形體’는 ‘知乎不冬’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5)는 ‘NP₁乙 NP₂亦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가 된다.

물론, 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므로 여격어가 목적어의 앞에서 생략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에서 보듯이 여격어가 ‘知乎不冬’의 앞에 놓인 예가 있으므로 여기서도 여격어가 ‘知乎不冬’의 앞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의 구문은 알리지 않을 대상이 ‘知乎不冬’에 선행하고 있어 ‘~가 ~을 ~에게 아뢰지 아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知乎不冬’이 목적어와 여격어(처격어)를 모두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의 구문 구조인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에서는 목적어가 ‘知乎不冬’의 앞에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인가에게 모르게 하는 일’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知乎不冬’의 뒤에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NP₁乙 NP₂亦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는 ‘모르게 하는 일’이 명사구의 형태로 구문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는 ‘모르게 하는 일’이 ‘知乎不冬 構文’의 밖으로 나와 뒤에서 서술의 형태로 놓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에서는 ‘知乎不冬’의 선행어가 여격이 아니라 처격이 되고 있다.

(16) 着印官封物色乙初亦着封官司知乎不冬趣便以開閉爲在乙良杖六十(7:9)

[官印을 찍고 봉해 놓은 물건(문서)을 처음에 도장을 찍고 봉해 놓은 官司에 알리지 않고 자의로 開閉한 경우에는 杖六十]

명사구 ‘着封官司’가 목적어 ‘着印官封物色’과 서술어 ‘知乎不冬’의 사이에 놓여 있

달가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여하에 달린 것이므로(박양규 1980, pp.1-25), “大明律直解”에서는 주어가 자주 생략되고 있다.

고, ‘着封官司’가 사물이 아니고 처소이므로, 이는 ‘NP₁乙 NP₂良中 知乎不冬’의 구문 구조가 된다. 때문에 ‘着封官司’는 비록 처격 조사 ‘良中’이 없지만 처격임이 확실하다. 여기서 알리지 않을 내용이 목적어로서 ‘知乎不冬 構文’의 내에 위치하는 것은 ‘NP₁乙 NP₂亦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에서와 동일하지만 이 구문 구조에서는 알리지 않을 대상이 사람인 여격어이고 ‘NP₁乙 NP₂良中 知乎不冬’ 구문 구조에서는 장소인 처격어가 알리지 않을 대상이 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하겠다.

3. 1. 6 요약

認知 構文이란 ‘무엇인가를 알다’ 혹은 ‘무엇인지 모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認知 構文을 이루는 서술어들은 ‘알다’ 또는 ‘모르다’라는 뜻을 공통으로 지닌다.

“大明律直解”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구문을 認知 構文으로 만드는 서술어로 ‘知’, ‘知想只-’, ‘知不得爲-’, ‘知乎不冬’ 등을 찾을 수 있었다.

‘知’와 ‘知想只-’는 평서문 認知 構文을 만들었고, ‘知不得爲-’와 ‘知乎不冬’은 부정문 認知 構文을 만들었다.

여기 3장에서는 이러한 구문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구문 구조를 제시하였다. 먼저, 타동사 ‘知’에 대하여 분석을 하면 ‘知’는 한자어의 의미 그대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므로 이의 구문에는 아는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이 서술어의 앞에 목적어로서 놓였다. 다만, “大明律直解”에서 ‘知 構文’의 주어와 목적어는 수의적으로 생략되었다.

서술어 ‘知想只-’은 ‘무엇을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구문에도 ‘知想只-’의 앞에 목적어가 왔다. 한편, ‘知想只- 構文’은 경우에 따라 서술어 앞에 의문문을 선행시키기도 하였다. 이때 이 구문에서는 우려되는 행동을 의문문으로서 나타내어 주의를 환기시켰다.

‘爲-’와 결합된 ‘知不得爲-’는 ‘모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이 구문에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목적어로서 ‘知不得爲-’의 앞에 놓였다. ‘知不得爲-’가 서술어로 쓰인 구문 중에는 ‘知不得爲-’의 앞에 놓인 명사구를 ‘良中’이 통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구문에서는 ‘良中’의 통합을 받는 ‘NP’는 無形은 물론 有形의 장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와 같은 구문 구조의 구문에 有形의 장소가 ‘NP’로 오는 예가 없다는 특이함을 보였다.

서술어 ‘知乎不冬’이 쓰인 구문은 이 서술어의 의미가 ‘아되지 아니 하다’이므로, 이 구문은 알리지 않을 대상을 요구한다. 때문에 이의 구문에는 여격어가 ‘知乎不冬’의 앞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가 ~에게 아되지 아니 하다’라는 구문 구조를 보였다. ‘知乎不冬’의 앞에는 알리지 않을 대상이 선행하였다. ‘知乎不冬 構文’이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은 서술어 ‘知乎不冬’이 목적어와 여격어(처격어)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知乎不冬 構文’이 항상 여격어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우에 따라 ‘知乎不冬 構文’은 여격어 대신 처격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구문에서는 알리지 않을 내용이 목적어로 왔다. 지금까지 분석한 구문 구조를 정리하여 보이면 (17)과 같다.

(17) 1. ‘NP₁亦 NP₂乙 知’

‘NP₂’에는 물건이나 장소 또는 어떠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온다.

2. ‘NP₁亦 NP₂乙 知想只-’

주어는 물론 타동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도 생략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주어와 목적어 모두 생략되기도 한다. 반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표기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3. ‘S爲乙去 知想只-’

‘知想只-’에는 ‘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리다’라는 의미가 있어 ‘知想只-’의 앞에 ‘爲乙去’를 선행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4. ‘NP₁亦 NP₂乙 知不得爲-’

‘모르다’라는 서술어가 동사구 ‘知不得爲-’의 형태로서 쓰이는 특색을 보인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알지 못한 내용이 ‘NP₂’의 자리에 놓인다.

5. ‘NP良中 知不得爲-’

‘NP’에는 시간에 관계되는 어휘가 온다. ‘NP’가 ‘良中’과 통합하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가 ‘NP’로 올 수 있으나, “大明律直解”에서는 그러한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6.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

누구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구문이므로 ‘NP₂’에는 알리지 않을 대상이 놓이고 ‘NP₁’에는 사실을 숨기고자하는 사람이 온다. 숨기려고 하는 내용은 오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7. ‘NP₁乙 NP₂亦中 知乎不冬’

사실을 숨기는 자의 숨기려 하는 내용이 목적어로서 놓인다. ‘NP₂’는 숨김을 당할 사람으로서 생략이 된다.

8. ‘NP₁乙 NP₂良中 知乎不冬’

알리지 않을 대상으로 사람이 아닌 장소가 되는 구문 구조이다. 따라서 ‘NP₂’에는 장소가 놓인다.

3. 2 話法 構文

3. 2. 1 도입

話法 構文은 대화를 의미하므로 話法 構文을 만드는 화법 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이다(이현희 1994, p.329). 따라서 話法 構文을 이끄는 서술어는 공통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話法 構文은 인용 보문을 가졌을 경우에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뉜다. 현대국어에서 직접 화법은 직접 인용 조사 ‘-라고’가 이끌고, 간접 화법은 간접 인용 조사 ‘-고’가 이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물론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인용절 표지가 없다. 때문에 話法 構文이 인용 구문일 경우 인용절 표지에 의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구분해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大明律直解”에서는 구문을 話法 構文으로 만드는 서술어로 ‘白傍是-’와 ‘云-’ 그리고 ‘現告爲-’를 들 수 있다.²⁶⁾

‘白傍是-’는 존대어로서 ‘고백하고 다짐하다’라는 의미를 지녔으므로 구문을 話法 構文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고백’과 ‘다짐’은 곧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白傍是- 構文’의 내용은 진실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된다.

‘云-’은 漢字語에서와 같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역시 구문을 話法 構文으로 만드는 서술어라 할 수 있다. ‘云- 構文’ 중에서 ‘是如 云- 構文’의 ‘云’은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이므로 ‘그가 말하기를’이라는 표현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경우도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云 -’은 화법 동사가 된다.

‘現告爲-’는 ‘고발하다’, ‘일러바치다’의 뜻을 가진 서술어이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를 표현하는 화법 동사와 동일한 쓰임을 지닌 서술어이다.

단, ‘現告爲- 構文’에서는 여격어가 아닌 처격어만이 보이고 있으나 이때의 처격어는 청자의 구실을 하므로 ‘現告爲- 構文’은 話法 構文이다.

26) 15세기 국어에서의 화법동사에 대해 이현희(1994, p.329)는 ‘니르-’, ‘묻-’, ‘出令하-’, ‘命하-’, ‘讚歎하-’, ‘과하-’ 등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편, 한재영(1996, p.348)은 16세기 국어에서 ‘告하다, 글다, 니르다, 말하다, 묻다, 열잡다’ 등의 서술어들을 화법 동사로 보고 있다.

3. 2. 2 ‘白傖是- 構文’

존대어 ‘白傖是-’²⁷⁾ ‘고백하고 다짐하다’ 또는 ‘사뢰어 자백하다’란 의미의 吏讀이다.²⁸⁾ 따라서 무엇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구문에 나타난다.

(1) 가. 一人亦被捉爲在逃人是沙爲首如白傖是遣更良證見無去等現捉人乙之次罪以論決後良中(1:36)

是沙(이사):이야말로, 白傖(웁다):고백하고 다짐두다, 更良(가식아):다시, 無(어오):없다, 去等(거든):거든, 以(로):~로

- a. [한 사람이 체포되어, “도망한 사람이야말로 주모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에 대하여) 다시 반증이 없거든 현재 잡힌 사람을 종범죄로 논결 후에]
- b. [한 사람이 체포되어, 도망한 사람이야말로 주모자이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에 대하여) 다시 반증이 없거든 현재 잡힌 사람을 종범죄로 논결 후에]

나. 現捉人乙之次罪以論決後良中在逃人乙現捉推問次前人是沙爲首是如白傖是臥乎事是良尔推問爲乎矣(1:36)

良中(아히):~에, 是臥乎(이누온):~한, 是良尔(이아금):이기에, 爲乎矣(호오되):하오되

- a. [현재 잡힌 사람을 之次罪로 논결한 후에 도망하였던 사람을 잡아 추문하는 중에 “먼저 사람이야말로 주범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온 일이기에 (먼저 사람을 다시) 심문하오되]
- a. [현재 잡힌 사람을 之次罪로 논결한 후에 도망하였던 사람을 잡아 추문하는 중에 먼저 사람이야말로 주범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온 일이기에 (먼저 사람을 다시) 심문하오되]

(1)은 모두 진실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구문들로서 ‘NP₁是沙 NP₂是如 白傖是-’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서술어 ‘白傖是-’가 쓰인 구문은 ‘~이야 말로 ~이다’라는 강한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을 인용하여 이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된다.

여기서 피인용문의 서술어인 ‘是如’의 처리가 문제된다. (1)에서 ‘a’는 직접 화법의

27) 국어 경어법의 변천에 대해서는 서정목(1994, pp.253-290)을 참고하라.

28) ‘白傖是-’에 대해서 박희숙(1984, pp.50-51), 고정의(1992, pp.40-41)는 ‘白傖’를 명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상인(1993, p.64)은 ‘臥’가 동작동사나 존재사 ‘有’에 통합되므로 ‘白傖是-’는 동사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박성종(1996, p.229)도 ‘-臥-’는 일반적으로 계사와 통합하는 일이 없다면 ‘白傖是-’가 동사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白傖是-’가 동사인 것으로 한다.

로 풀이한 것이고 ‘b’는 간접 화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是如’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인데, 직접 화법의 경우는 ‘是如’를 ‘-이다’로 읽은 것이고 간접 화법의 경우는 ‘-이라고’로 읽은 것이다.

“大明律直解”에는 인용절 표시어가 없기 때문에 ‘如’의 독법은 학자에 따라 ‘-다’와 ‘-라고’로 대별되고 있다. 박희숙(1984, p.227), 김두황(1994, p.88), 배대온(2003, p.215)은 ‘如’를 ‘-다’로 읽었고, 한상인(1993, p.106)도 이를 訓音借한 ‘다’로 본다고 하였다. 반면 고정익(1992, p.161), 박성종(1996, p.267)은 ‘-라’로 풀었다. 이 외로 ‘如’를 ‘-다’ 혹은 ‘-라’ 어느 쪽으로도 확정하지 않은 견해로 이승재(1989, p.173)가 있다. 그리고 ‘-다’와 ‘-라’ 양 쪽으로 풀이하는 것에는 장세경(2001, p.129)이 있다.

그런데 박희숙(1984, p.227)은 ‘如’를 비록 ‘-다’로 읽었지만, ‘如’가 間接 話法에서 인용을 나타내는 ‘-다(라)고’에 일치한다면서 ‘是如’ 보문을 간접 화법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김두황(1994, p.88)도 ‘是如爲脉’는 ‘이다함’으로 읽지만 ‘이라고 하며’의 뜻이라면서 ‘是如’ 보문을 간접 화법으로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박희숙(1984)과 김두황(1994)의 견해와 ‘如’를 ‘-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1)의 구문들은 간접 화법인 ‘b’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내포문 서술어 중에서 유일하게 ‘-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是如’를 ‘-이라’로 풀이한다면 “大明律直解”에는 인용 보문이 ‘-이다’로 끝나는 직접 화법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같은 논리로 ‘是如’를 ‘-이다’로 풀이하여 그 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大明律直解”에는 오직 직접 화법만 있고 인용 보문이 ‘-이라고’로 되는 간접 화법은 없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是如’ 구문에 대하여 선불리 어느 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하기에는 학문의 견지에서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3. 2. 3에서 살펴 볼 ‘云- 構文’에 주목하게 된다. ‘云- 構文’ 역시 화법 구문으로서 인용 구문이 된다. 그런데 ‘云- 構文’에는 ‘是如 云- 構文’과 ‘亦 稱云- 構文’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是如’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亦稱’에서 ‘亦’은 조사가 아닌 어미이다. 이러한 ‘亦’에 대해서 김두황(1994, p.145)은 ‘-이라(고 하다)’로 해석되며 인용 내포문을 종결한다고 말한다. 박성종(1996, p.266)은 계사에 ‘-아/어’가 덧붙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계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인용 표지로 작용한다고 한다. 장세경(2001, p.171)은 남이 한 말을 전하는 연결어미라 하며 이를 ‘-라고’ 또는 ‘-고’로 풀이하고 있다. 배대온(2003, p.246)도 인용어로 쓰인 경우로 설명하고 ‘이라(고)’로 읽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亦’에 서술어로서의 기

능과 인용 조사로서의 기능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亦’이 오직 구문 종결의 기능만을 가진 ‘-다’로서는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접 화법에서의 피인용문 서술어에는 구문 종결의 의미만 들어 있을 뿐 직접 인용 조사와 통합되는 기능은 없다. 직접 인용 조사는 구문 전체와 통합할 뿐 피인용문의 서술어와 통합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간접 화법에서는 피인용문의 서술어는 간접 인용 조사와 직접 통합한다. ‘亦’은 서술어의 기능과 더불어 인용 조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인용 조사 기능은 서술어와 통합되는 간접 인용 조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亦’은 간접 화법의 피인용문에 쓰이는 서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亦 稱云- 構文’은 간접 화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是如’를 ‘-이다’로 본다면 ‘是如 云- 構文’은 직접 화법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어적 경제로 본다면 동일한 표현의 간접 화법 구조를 구태여 ‘亦 稱云- 構文’과 ‘是如 云- 構文’ 두 가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云- 構文’에서 직접 화법은 ‘是如 云- 構文’으로서 나타내고, 간접 화법은 ‘亦 稱云- 構文’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제 역으로 ‘是如 云- 構文’이 직접 화법이라면 ‘白俵是- 構文’의 ‘是如’ 구문도 직접 화법의 보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그렇다면 (1)의 구문들은 ‘a’와 같이 직접 화법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에서 말하는 자는 체포당한 사람이고, 듣는 자는 법관이다. 그리고 법관에게 전하는 내용은 주범에 대한 자백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話者는 ‘白俵是- 構文’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 또한 聽者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오직 전하는 내용만이 ‘白俵是- 構文’을 이루고 있는 특이함을 보인다.

다만, ‘NP₁是沙 NP₂是如 白俵是-’ 구문 구조에 해당하는 구문이 “大明律直解”에서는 두 예만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의 분석을 행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3. 2. 3 ‘云- 構文’

‘云’은 “大明律直解”에서 처음 사용된 吏讀로서(김두환 1994, p.103), ‘말하다’라는

29) 인용 보문인 ‘是如 構文’이 직접 화법의 보문이라면 ‘-이라고’로 풀이되는 간접 화법의 보문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나, 이는 ‘亦’이 담당한다고 본다.

의미를 지녔다(박희숙 1984, p.189).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云’이 홀로 구문의 서술어로서 쓰이지는 않고 ‘是如’나 ‘亦稱’과 같은 서술어를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가 말하다’와 같이 ‘말하다’가 단독으로 구문의 서술어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是如’가 ‘云’에 선행할 때는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에서 보이고, ‘亦稱’이 ‘云’에 선행하는 경우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의를 인용할 때이다.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는 의미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의 ‘云-構文’ 양상이 찾아진다. 이들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므로 話法 構文이 된다.

3. 2. 3. 1 ‘是如 云-構文’

吏讀語 ‘云’은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녔으나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現實의 話者 말에는 쓰이지 않고 元話者의 말을 인용할 때 쓰였다.³⁰⁾ 즉, ‘내가 말하기를’에 쓰이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에 쓰인 것이다.

이 구문에서 ‘是如 構文’은 피인용 구문으로서 ‘云’에 앞서 놓이는 보문이다. 따라서 ‘云’의 앞에는 피인용문의 서술어 ‘是如’가 항상 놓이게 되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NP 是如 云-’이 된다.

(2) 가. 虛事以祖父母父母及父母老病是如云遣(12:8)

[거짓된 일로 “조부모 및 부모가 늙고 병환이다”라고 말하고]

나. 他矣物色乙吾矣物色是如云於他人矣錢物乙用謀取要爲於(18:12)

物色:물품 · 물건, 云(니르):말하-,

[“남의 물건을 나의 물건이다”라고 말하며, 타인의 금품을 음모를 써서 얻으려 하며]

(2)에서 인용 보문의 NP는 인용되는 내용이며 ‘云-’은 화자가 인용하는 자의 말이다. 때문에 이 구문에서는 내용만이 보일 뿐 화자나 청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술어 ‘是如’는 ‘A는 B이다’에서와 같이 정의를 내리는 서술어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2가)의 구문에서는 ‘祖父母父母及父母’가 ‘老病’이라는 사실을 정의하고, (2나)에서

30) 인용문은 元話者, 元聽者, 現實의 話者, 現實의 聽者를 전제로 이루어진다(이상복 1986, pp.132-149).

는 어떤 ‘物色’이 ‘吾矣物色’임을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NP₁矣 NP₃乙 NP₂矣 NP₃是如云-’이라는 구문 구조를 가진 (2나)는 어떤 지정이나 결론을 받을 대상으로 ‘NP₃’를 두고 있다. 그러나 ‘NP₁’의 ‘NP₃’는 비록 ‘NP₂’의 ‘NP₃’와 동일하지만 지정 혹은 결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 대상이 되는 것은 ‘NP₂’의 ‘NP₃’이다. (6)의 구문 구조에서 ‘NP₁’과 ‘NP₂’는 각각 ‘NP₃’의 소유주이다. 그러나 ‘NP₁’과 ‘NP₂’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법칙이나 진실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일개 개인의 언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참된 정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NP是如 云-’의 구문 구조는 진실에 대한 정의가 아닌 거짓일 수도 있는 개인의 주장에 대한 인용에서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是如 云- 構文’에서 인용 보문은 직접 인용 보문이 되는 ‘是如 構文’이므로 ‘是如 云- 構文’은 직접 화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용 보문인 ‘是如 構文’은 ‘白俵是- 構文’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白俵是- 構文’에서의 ‘是如 構文’은 元話者が 고백하는 내용이고, ‘是如 云- 構文’에서의 ‘是如 構文’은 元話者が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다르다. 때문에 ‘白俵是- 構文’에서는 고백하고자 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NP가 ‘是如’의 선행 NP가 되고, ‘是如 云- 構文’에서는 주장하는 사물이나 상황이 ‘是如’의 선행 NP가 된다.

3. 2. 3. 2 ‘亦 稱云- 構文’

‘云- 構文’에서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로서 ‘是如’가 쓰이지 않는 구문도 볼 수가 있다. 대신 이런 구문에서는 ‘亦’이 서술어로서 쓰이고 있다.³¹⁾

(3) 凡一日亦稱云者百刻以通計齊(1:43)

[무릇 1일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百刻으로써 通計한 것이다]

(3)에서 ‘亦’이 ‘稱’의 앞에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亦’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주격 조사가 아니라 연결어미의 기능을 가진 서술어이다. 따라서 의미로는 대략 ‘-이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3)은 간접 화법 구문이다.

(3)에 대해서 해석하면, ‘무릇 1일이라고 칭하여 말하는 것은...’으로 된다. 이는 어

31) 강영(1998, p.55)은 ‘亦’을 계사 ‘-이’와 종결어미 ‘-여’가 한데 녹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면 내용이나 사실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NP是如 云-’ 구문 구조와는 다른 구조의 구문이다. 따라서 이를 ‘NP是如 云-’ 구문 구조와 구분하여 ‘NP亦 稱云-’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구문 구조에서도 화자나 청자는 나타나 있지 않다.

(3)에서 ‘稱’도 말하다라는 뜻이고,³²⁾ ‘云’도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들이 서술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稱’이 서술하는 것은 ‘一日’이나, ‘云’이 서술하는 것은 ‘稱’이다. 즉, ‘云’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3)은 두 번 인용되었으므로 일종의 2중 인용문이라 할 수 있다.

이현희(1994, p.329)는 話法 構文에는 여격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한다고 말한다.³³⁾ 하지만 (4)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가. 흰자질은 다른 말로 단백질이라고 (말)한다.

나.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4)를 話法 構文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話法 構文의 구조에는 맞기 때문이다. 즉, (4)에서 누가 는 정의를 말하는 화자일 것이고, 누구는 그 정의를 듣는 청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정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4)는 다음 (5)와 같은 구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흰자질은 다른 말로 단백질이라고 말을 한다.

나. 삼촌이 조카에게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말을 한다.

(5)에서 여격어와 목적어가 모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가 생략된 것이 (4)의 구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본다면 話法 構文에서 여격어와

32) ‘稱’은 ‘일컫다, 이르다, 부르다, 설명하다, 칭찬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은 광의의 뜻으로 본다면 일괄하여 ‘말하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3) 그러나 이현희(1994, p.331)가 동사구 내에서 여격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화법동사라고 제시한 ‘니르-’ 구문에서는 여격어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예문은 이현희(1994, p.331)에서 보인 구문이다.

(1) 이젻 邪訖 사르미 得道호라 妄히 닐오딕(楞嚴 10:28)

(2) 自說은 무르리 업시 즈개 니르실 씨라(月釋 12:30)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여격어와 목적어가 표지된 구문만을 話法 構文이라고 한다면, 주어와 여격어의 생략이 잦은 중세국어에서 話法 構文에 속하는 구문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다음 예문인 (6)에서는 주어와 여격어가 생략되었다. (6)에서 주어는 법률 제정관 정도가 될 것이고, 여격어는 법률 집행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현희(1994, p.329)에서 제시한 話法 構文의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大明律直解”에서 찾을 수 있는 話法 構文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6) 가. 凡一日亦稱云者百刻以通計齊(1:43)

[무릇 1일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百刻으로써 通計한 것이다]

나. 一年亦稱云者三百六十日乙通計齊(1:43)

[1년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360일을 통계한 것이다]

다. 衆亦稱云者三人以上是齊謀亦稱云者二人以上(1:44)

[집단(衆)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세 사람 이상이고 謀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라. 凡道士女冠亦稱云者僧人果尼僧以同齊(1:44)

[무릇 道士, 女冠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은 중과 여승으로서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話法 構文의 조건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놓인 구문’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NP亦 稱云-’ 구문 구조를 가진 (6)에서의 ‘稱云’은 ‘~칭하여 말하다’로서 2중 간접 인용 구문을 이끈다. 그런데 ‘云- 構文’에서는 단순 간접 인용 구문도 보이고 있다. 이 경우는 2중 간접 인용 구문으로 만드는 ‘云’을 쓰지 않음으로써 나타내고 있다.³⁴⁾

34) 본문의 (6)에서 쓰이는 ‘亦’과 ‘云’은 한문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亦’과 ‘云’은 우리말식 표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 直解:凡一日亦稱云者(1:43)

原文:凡稱一日者

나. 直解:一年亦稱云者(1:43)

原文:一年者

다. 直解:衆亦稱云者(1:44)

原文:稱衆者

라. 直解:凡道士女冠亦稱云者(1:44)

(7). 가. 凡監臨亦稱者隱內外官司亦文字行移爲臥乎所轄處所果必于百姓乙親管處不喻良置(1:43)

轄處所:문서로써 간섭을 할 수 있는 곳, 親管處:직접 소관에 해당하는 곳, 不喻良置(아닌디라두):아니라도

[무릇 監臨이라고 칭하는 것은 內外官司가 공문조회하는 곳인 轄處所와 비록 백성 을(에 대한) 親管處가 아니라도]

나. 主守亦稱者隱大抵文券乙令史色員是沙主掌齊(1:43)

是沙(이사):이야만은

[主守라고 일컫는 것은 무릇 文券(文書)을 令史 및 色員이야만 主掌(主管)하며]

(7)에서 ‘云’이 쓰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구문의 해석은 ‘~이라고 칭하는 者는’으로 되어 단순 간접 인용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NP亦稱-’으로서 2중 간접 인용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云- 構文’은 간접 화법에서 단순 인용 구문과 2중 인용 구문 모두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화법에서의 ‘云- 構文’은 ‘NP是如稱 云-’과 같은 2중 인용 구문 구조는 쓰이지 않았다.

3. 2. 4 ‘現告爲- 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現告爲-’가 쓰인 구문을 볼 수 있다. 이 구문에서 ‘現告爲-’는 ‘고발하다’, ‘일러바치다’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現告爲-’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를 표현하는 화법동사와 동일한 쓰임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임을

原文:凡稱道士女冠者

그런데 본문 (7)의 경우에도 (7)의 한문본은 (6)의 한문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이두본에서는 ‘云’ 자를 쓰지 않고 있다. 이는 한문본을 우리말로 풀어쓰는데 있어서 (6)과는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여 ‘云’을 쓰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2) 가. 直解:凡監臨亦稱者(1:43)

原文:凡稱監臨者

나. 直解:主守亦稱者

原文:稱主守者

알 수 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現告爲- 構文’은 話法 構文이라 할 수 있다.³⁵⁾

그런데 ‘現告爲- 構文’은 인용 구문을 이루지 않는 화법 구문이므로 앞서 분석한 ‘是如 云- 構文’이나 ‘云- 構文’하고는 구별되는 구문이다.

‘現告爲- 構文’은 (8)의 예문에서 보듯이 처소가 청자 대신 놓인다는 특색을 보인다. 즉, 일반적인 화법동사 구문에서 보이는 요소인 화자와 청자 그리고 내용이 아니라 화자와 처소 그리고 내용이 구문의 요소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告爲- 構文’에서의 처소는 화자의 말을 듣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곧 청자와 같다. 따라서 청자가 아닌 처소가 놓인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話法 構文이다.

(8) 가. 凡有人亦本管官司良中現告爲乎等用良差使捉來推問爲去乙(1:12)

有:어떤, 現告:범죄 사실을 해당 관아에 즉시 알림

[무릇 어떤 사람이 本 管轄 官司에 고소한 바로써 差使가 잡아와서 審問하거늘]

나. 里長及切鄰人等亦官司現告檢屍不冬令是遣他處移置爲旆(18:15)

[이장 및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官司에 現告하여 시체의 검사를 아니 시키고 다른 장소에 옮겨 두기를 하며]

(8)의 예문에서는 화자와 처소는 있으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現告爲- 構文’에서는 화자와 처소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모두 구문에 놓인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들 중 한 요소 또는 두 개의 요소가 생략된 채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요소 모두를 생략하기도 한다.

(9)의 ‘現告爲- 構文’ 예문은 화자와 내용은 있으나 청자의 역할을 하는 처소가 보이지 않는다.

(9) 가. 同居及大功以上親矣事果奴婢亦家長矣事乙現告爲旆互相自告爲(1:27)

[同居 및 大功 이상 친척의 일과 노비가 家長의 일을 고소하며, 서로 자백하면]

나. 監臨官亦遲晚看審現告不冬爲在乙良減三等答五十爲限(7:13)

看審:자세히 보아 살핌

35) “大明律直解”에서는 숨겨둔 비밀의 탄로를 염려하는 구문이 보인다. 이 구문은 발설에 의한 비밀탄로를 염려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요인에 의한 비밀탄로를 염려한다. 따라서 이 구문은 ‘現告爲-’가 아닌 ‘發露爲-’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 官員書吏令史亦其矣所犯事發露爲去聞知爲遣遲錯事乙回避爲要文案改補爲良在等(3:8)

[監臨官이 늦장 看審으로써 現告 아니 한 경우에는 3等を 減輕하고 笞五十에 한하여]
 다. 駟官駟吏等亦隱匿現告不冬爲在乙良各杖一百齊(17:3)
 [驛官 및 驛吏 등이 은닉하고 現告 아니 하거들란 각각 杖一百한다(하울 일이다)]

이 외에도 ‘現告爲- 構文’은 화자와 처소 및 내용 중에서 두 개의 요소를 모두 생략하기도 한다. (10)의 예문은 화자만이 구문에 놓이고 있고 나머지 요소인 처소와 내용은 생략되었다.

- (10) 가. 逃亡背叛罪人亦必于現告不冬爲良置本處良中還歸爲在乙良減罪二等齊(1:28)
 [도망하거나 배반한 죄인이 비록 자수 아니 하여도 本處에 歸還하거들란 죄를 2等を 減한다(하울 일이다)]
 나. 父母乙奉養不冬爲去等祖父母父母現告爲良沙坐罪爲乎事(22:11)
 爲良沙(하아사):하여야만
 [부모를 奉養 아니 하거든 祖父母나 父母가 고소하여야만 坐罪하울 일]

(11)의 예문은 내용은 있으나 화자와 처소가 생략되었다.

- (11) 가. 贓數乙盡數亦現告不冬爲去等不盡贓數乙計爲(1:28)
 亦(여):부사과생접사 ‘~히’
 [장물의 數를 盡數亦(장물의 數가 모두 드러나도록) 자백 아니 하거든 빼놓은 장물의 數를 계산하여]
 나. 凡謀反逆叛事乙現告爲去等官司亦即時接狀捕捉不冬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22:2)
 [무릇 반역의 모의 및 반역의 일을 신고하거든 官司가(에서) 즉시 소장을 접수(受理)하여 체포 아니 한 경우에는 杖一百하고 3년간 徒役한다(하울 일이다)]
 다. 不忠不孝等惡逆事乙現告爲良在等接狀推考不冬爲在乙良杖一百齊(22:2)
 [不忠不孝 등 極惡無道한 일을 신고하였거든 소장을 접수(受理)하여 신문 아니 한 경우에는 杖一百한다(하울 일이다)]
 라. 殺人強盜事乙現告爲良在等接狀推告不冬爲在乙良杖八十齊(22:2)
 [살인이나 강도 사건을 고소(신고)하였거든 소장을 접수(受理)하여 신문 아니 한 것을 杖八十한다(하울 일이다)]
 마. 爭鬪毆打婚姻田宅等事乙現告爲良在等接狀推告不冬爲在乙良(22:2)
 [爭鬪, 毆打, 婚姻, 田宅 등의 일을 고소(신고)하였거든 소장을 접수(受理)하여 신문

아니 한 경우에는]

바. 人命殺害爲乎等事乙現告爲去等聽許接狀推考爲遣(22:11)

[인명을 살해하온 등(살해한 것 등)의 사건을 고소(신고)하거든 (이를) 듣고 (고소 함을) 허락하여 소장을 접수(受理)하며 신문하고]

그리고 (12)의 ‘現告爲- 構文’은 화자와 내용이 생략되고 단지 처소만이 나타나 있다.

(12) 가. 他矣財物乙偷取爲遣本主處現告爲旆(1:29)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본래 주인에게 고백하며]

나. 初亦所屬官司良中現告爲良在等接狀推考不冬爲弥(22:3)

[처음에 소속 관사에 고소하였거든 문서를 접수(수리)하고 신문 아니 하며]

심지어 ‘現告爲- 構文’은 화자, 처소, 내용 등의 요소 모두를 생략하기까지 한다.

(13) 가. 一人亦二人乙能捉爲現告爲在乙良皆得免罪齊(1:31)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능히 체포하여 자수하거들란 (본 범죄와 도주죄) 모두 죄의 사면을 득한다(하올 일이다)]

나. 凡公事乙失錯亦使內遣自以省覺現告爲在乙良免罪齊(1:35)

使內遣(버리고):시키고, 自以(스스로):스스로

[무릇 공사를 잘못 시키고 스스로 살피 깨달아서 자진 신고하거들란 면죄한다(하올 일이다)]

다. 其中一人亦自以省覺現告爲在乙良他餘人乙並只免罪齊(1:35)

[그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살피 깨달아 자진 신고하거들란 다른 나머지 사람을 모두 면죄한다(하올 일이다)]

라. 官員亦其後必于省覺現告爲良置並只免罪不冬爲遣(1:35)

[官員이 그후 비록 살피 깨달아 자진 신고하여도 모두 면죄 아니 하고]

마. 一人亦自以省察現告爲良在等並只免罪爲遣(1:36)

[한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여 살피 자진 신고하였거든 모두 면죄하고]

바. 掌務令史亦自覺現告爲在乙良並只減二等爲乎事(1:36)

[掌務令史(擔當 主務者)가 스스로 깨달아 자진 신고하거들란 모두 2等を 減하올 일]

(13)의 예문에서 ‘現告爲-’의 앞에는 ‘爲遣’ 또는 ‘爲良’ 정도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13)의 ‘現告爲- 構文’은 오직 서술어 ‘現告爲-’만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現告爲- 構文’은 話法 構文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인 ‘화자’, ‘처소(청자)’, ‘내용’의 생략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 ‘現告爲- 構文’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목적어가 처격어에 선행하느냐, 처격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느냐의 문제로서 ‘화자-내용-처소’의 순으로 된 구문 구조와 ‘화자-처소-내용’ 순으로 된 구문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 목적어가 처격어에 선행하여 있는 ‘現告爲- 構文’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14) 凡爭訟事乙須只官司良中現告受決爲乎矣(20:8)

[무릇 爭訟事件을 모름지기 官司에 고소하여 受決(判決 받음)을 하오되]

이로써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는 ‘화자-내용-처소’의 순으로 ‘現告爲- 構文’을 운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 본 ‘現告爲- 構文’의 구조는 (NP₁亦) (NP₂乙) (NP₃良中) 現告爲-’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구문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 처격어가 목적어에 선행하는 예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상정한 것으로 반드시 목적어가 처격어에 선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2. 5 요약

話法 構文은 대화가 그 내용인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話法 構文을 만드는 화법 동사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大明律直解”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話法 構文의 서술어로는 ‘白俵是-’와 ‘云-’ 그리고 ‘現告爲-’가 있었다.

‘白俵是-’는 ‘고백하고 다짐하다’ 또는 ‘사뢰어 자백하다’란 의미의 吏讀이므로 무엇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구문에서 보였다. 따라서 단정하는 내용을 인용 보문으로 두고 자신의 말을 다짐하든가 선행절의 내용을 자백하였다. 인용 보문은 ‘是如 構文’이어서 화법은 직접 화법이 되었다. 다만, ‘白俵是- 構文’은 “大明律直解”에서 두 예만 보였다.

‘말하다’라는 의미의 ‘云’은 “大明律直解”에서 처음 사용된 吏讀로서 내포문 없이 쓰

이지 않았다. 때문에 인용 보문의 서술어인 ‘是如’나 ‘亦’이 항상 ‘云에 선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현대국어에서 ‘~가 말하다’와 같이 ‘말하다’가 경우에 따라 보문 없이 단독으로 구문을 이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용법이었다.

‘云’은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가 되었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亦’이 되었다.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일 경우에는 ‘是如’에 의해 직접 화법이 되었으나,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亦’일 경우에는 ‘亦’이 서술어와 간접 인용 조사가 결합된 ‘-이라고’로 분석되므로 간접 화법이 되었다.

‘是如 云- 構文’에는 ‘白俵是- 構文’과 마찬가지로 ‘是如 構文’이 피인용 구문으로서 오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是如 云- 構文’의 내포문인 ‘是如 構文’은 元話者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나 ‘白俵是- 構文’에서의 ‘是如 構文’은 元話者가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是如 云- 構文’에서는 ‘是如’의 선행 NP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상황에 해당하는 명사구였고, ‘白俵是- 構文’은 고백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是如’의 선행 NP로 되었다.

‘是如 云- 構文’이 단순 인용 구문인 것과는 다르게 ‘亦 稱云- 構文’은 인용 보문 서술어 ‘亦’ 외로 ‘稱’과 ‘云’이라는 서술어 두 개가 쓰이고 있어서 2중 인용 구문이 되었다.

‘云- 構文’에서 2중 간접 인용 구문인 ‘亦 稱云- 構文’ 외에 단순 간접 인용 구문인 ‘亦稱 - 構文’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是如 云- 構文’의 2중 직접 인용 구문이라 할 수 있는 ‘是如稱 云-’과 같은 구조의 構文은 쓰이지 않았다.

서술어 ‘現告爲-’는 ‘고발하다’, ‘일러바치다’의 의미를 가져 화법동사가 되었다. 다만 ‘現告爲- 構文’에는 여격어가 아닌 처격어가 놓인다는 점이 일반적인 話法 構文과 달랐다. 그리고 ‘現告爲- 構文’은 인용 보문을 두지 않는 구문이라는 특색을 보였다.

‘現告爲- 構文’은 ‘화자’, ‘처소(청자)’, ‘내용’에 있어서 이들 요소가 하나 혹은 둘 또는 모두 생략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구문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면 (15)와 같다.

(15) 1. ‘NP₁是沙 NP₂是如 白俵是-’

‘~이야 말로 ~이다’라는 강한 단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로서 직접 화법이 된다. 話者는 체포된 사람이고, 聽者는 법관이다. 그리고 인용 보문의 내용은 주범에 대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話者와

聽者是 ‘白俵是- 構文’ 내에서 보이지 않고 오직 전하는 내용만이 구문에 놓인다. 두 예만 보이고 있어 극히 드문 구문 구조이다.

2. ‘NP是如 云-’

직접 화법으로서 ‘云’의 앞에는 피인용문 서술어 ‘是如’가 항상 놓인다. 인용되는 내용은 보문의 NP이며 ‘云-’은 화자가 인용하는 자의 말이다. 내용만 나타날 뿐 話者나 聽者是 보이지 않는다. ‘A는 B이다’와 같이 정의를 내리는 내용이 인용 보문으로 온다. 그러나 개인의 주장이므로 정의는 거짓일 수도 있다.

3. ‘NP₁矣 NP₃乙 NP₂矣 NP₃是如云-’

‘NP₃’는 어떤 지정이나 결론을 받을 대상이다. ‘NP₁’의 ‘NP₃’는 ‘NP₂’의 ‘NP₃’와 동일하지만 지정이나 결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NP₂’의 ‘NP₃’가 그 대상이 된다. ‘NP₃’의 소유주는 ‘NP₁’과 ‘NP₂’가 되지만 ‘NP₁’과 ‘NP₂’는 동일인이 아니다.

4. ‘NP亦 稱云-’

간접 화법 구문으로서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을 인용하여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구문 구조에서도 話者나 聽者是 나타나지 않는다. ‘稱云’은 ‘~칭하여 말하다’이므로 이 구문 구조는 2중 간접인용 구문의 구조가 된다.

5. ‘NP亦 稱-’

‘NP亦 稱云-’가 2중 간접인용 구문 구조라면 이 구문 구조는 단순 간접인용 구문 구조이다.

6. ‘NP是如稱 云-’

직접 화법에서의 단순 인용 구문 구조가 ‘NP是如 云-’이므로 이의 2중 직접인용 구문 구조는 ‘NP是如稱 云-’이 될 것이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구문 구조가 쓰이지 않았다.

7. ‘(NP₁亦) (NP₂乙) (NP₃良中) 現告爲-’

“大明律直解”에서는 ‘화자-내용-처소’의 순으로 ‘現告爲- 構文’을 운용하였다.

3. 3 存在 · 所有 構文

3. 3. 1 도입

存在 · 所有 構文이란 경우에 따라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이 있거나 없는 상태를 말하거나, 누가 어떠한 것을 지녔는가 아닌가를 말하는 구문을 뜻한다. 이러한 구문을 만드는 이두에는 ‘有-’와 ‘在-’ 그리고 ‘無-’가 있다. 이들 서술어가 쓰인 구문은 서술어에 따라 저마다 ‘有- 構文’, ‘在- 構文’, ‘無- 構文’ 으로 불리나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의미가 존재 · 소유이므로, 여기서는 ‘有- 構文’, ‘在- 構文’, ‘無- 構文’ 을 통틀어 存在 · 所有 構文이라 하여 이들을 한데 묶기로 한다.

이두 서술어 ‘有-’, ‘在-’, ‘無-’는 각각 15세기 이후 국어에서 ‘잇-’, ‘겨시-’, ‘없-’에 대응된다. 먼저 15세기 국어에서 ‘잇-’, ‘겨시-’, ‘없-’이 존재의 의미로 사용된 구문이다.

(1) 가. 내 그 中에 잇다이다(釋譜 24:44)

나. 부테 舍衛國에 겨시거늘(月釋 10:27)

다. 설본 일들히 업스시다 듣즁노라(月釋 10:26)

(1)에서 ‘잇-’, ‘겨시-’, ‘없-’ 등은 한결같이 주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잇-’, ‘겨시-’, ‘없-’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2) 가. 나라 다스릴 사르미 功이 한 사르미게 이쇼딘(金三 1:32)

나. 太子 | 므숫 罪 겨시관딘 이리 ㄷ외어시뇨(釋譜 24:51)

다. 王이 아드리 업스실썩(釋譜 11:17)

(2)에서 ‘잇-’, ‘겨시-’, ‘없-’ 등은 존재가 아닌 소유의 의미로써 쓰였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은 존재상태를 의미하지만 (4)는 소유여부를 나타내고 있다.³⁶⁾

36) 현대국어에서는 ‘계시다’에 소유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3) 가. 돈은 금고에 있다.
나. 영희가 집에 없다.

(4) 가. 나는 만원이 있다.
나. 민호는 극장표가 없다.

(3)과 (4)에서 보이는 동사 ‘있다’와 ‘없다’는 (3)에서나 (4)에서나 동일한 동사이지만 구문의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有-’와 ‘在-’ 및 ‘無-’도 존재의 의미 외에 소유의 의미로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⁷⁾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소유의 의미로 쓰인 ‘有-’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無-’와 ‘在-’가 존재와 소유의 의미 양쪽으로 다 쓰였으므로 비록 ‘有-’가 “大明律直解”에서 소유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이도 그 당시에 소유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有-’가 소유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은 “大明律直解”가 법서라는 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획일적인 법률구문의 사용에 의하여 다양한 양태의 구문이 쓰이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처럼 존재 혹은 소유의 의미를 지닌 ‘有-’, ‘在-’, ‘無-’의 구문에 대해 분석한다.

37) 하나의 동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의미로써 그 동사를 사용할 때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제거 혹은 은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동사가 본래의 의미와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을 경우에는 부차적인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본래의 의미도 함유됨을 볼 수 있다.

위의 ‘잇-’, ‘겨시-’, ‘없-’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들은 본래의 의미가 존재이고 부차적인 의미가 소유인 동사들이다. 때문에 소유의 의미로 쓰인 본문 (2)의 경우에도 소유의 의미 외에 다르게 존재의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재영(1996, p.182)은 ‘잇-’, ‘겨시-’, ‘없-’을 다루면서 존재동사와 소유동사의 구문 형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그들이 공유하는 구문구조가 상당수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미 차이가 구문구조에 기댄다기보다는 의미해석과정에서 드러난다는 데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현희(1994, p.141)는 이들의 구문을 구분하고 있다. 즉, 존재구문은 ‘NP₁에 NP₂이 잇-’으로, 소유구문은 ‘NP₁이 NP₂이 잇-’인 것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3. 3. 2 ‘有- 構文’

‘有-’는 鄉歌와 “大明律直解”에서 동사어간으로 쓰였으며(홍순탁 1974), 고려시대에서도 동사어간으로 쓰였다(이승재 1989, p.118). ‘有-’는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이러한 ‘有-’는 대체로 무정명사인 비존칭주어에 호응되고,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인원’과 같은 不定稱의 사람에 사용되고 있다(김두환 1994, p.107).

‘有- 構文’어 存在 · 所有 構文이므로 ‘NP₁亦 NP₂亦 有-’를 기본 구문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의 ‘有- 構文’에는 ‘주어+보어+서술어’의 유형은 찾아지지 않고 대신 ‘주어+서술어’ 유형을 볼 수 있다. (5)의 구문에서 주어는 ‘者’, ‘事’, ‘他盜’, ‘干連人’ 등이다. 그런데 이들 구문에서는 한결같이 처격어가 없이 주어만이 놓이고 있다. 이는 구문의 내용상 처격어가 필요없는 구문이기 때문이다. (5)의 구문에서 서술어 ‘有-’는 존재의 의미이다.

(5) 가. 權攝後良中沙望受實職者有去等(2:1)

權攝:임시 직무대리, 良中沙(아히사):에야

[임시로 직무를 대리한 후에야 실제의 직책을 받기를 바라는 자가 있거든]

나. 須只刑獄及錢糧打算親臨監督造作事有去等沙進來親問爲遣(2:6)

須只(모로미):모름지기, 有去等沙(이시거든사):있거든이야

[모름지기 형옥 및 錢糧을 타산(함에 있어) 親臨하고 감독 및 조작할 일이 있거든이야 소환하여 친히 심문하고]

다. 凡賊人亦曾只鋌面爲有如是去等還本籍官門不離他盜有去等蹤跡推尋令是乎矣(18:19)

曾只(일즈기):일찍이, 爲有如(ㅎ있다):하였다는, 令是乎矣(시기오되):시키오되

[무릇 도적이 일찍이 鋌面(刺字刑을 받음)하였다는 사람이거든 本籍의 官門에 돌려 보내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도적질 죄가 있거든 종적을 추심시키오되]

라. 獄中在囚亦被問次更良他事乙首告爲干連人有去等告者乙良准首告遣(22:11)

更良(가시아):다시

[옥중에 있는 죄수가 被問次에 다시 다른 일을 자수하고, (이에) 관련인이 있거든 자수한 자는 자수한 (例에) 准하고]

위의 ‘有- 構文’에서는 처격어가 놓이지 않았으나 存在 · 所有 構文에서는 구문상의 주어가 위치하는 처격어를 구문에 둘 수 있다. 이때 구문 구조는 ‘NP₁亦 NP₂良中 有

-’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 구조는 보이지 않고, (6)에서 보듯이 처격어가 주어 앞에 놓이는 ‘NP₂良中 NP₁亦 有-’의 구문 구조가 찾아진다.

(6) 凡本條良中罪名亦有去乃斷例以不同爲在乙良(1:38)

有去乃(있거나):있거나, 斷例:判決의 先例

[무릇 本條에 죄명이 있거나 斷例로써 같지 아니 한 경우에는]

(6)의 구문에서는 ‘有-’의 선행어로 비존칭 무정명사인 ‘罪名’이 주어의 자격으로서 오고 있다. 그리고 ‘本條’가 처격어로 놓여 있다. 즉, (6)은 ‘~에 ~이 있-’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구문은 (6)의 예문 외에도 다음 (7)에서와 같이 볼 수 있다. (7)의 ‘有- 構文’은 (5)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존재의 의미로서만 쓰이고 있다.³⁸⁾

(7) 가. 本條內良中皆字有去等首從勿論爲(1:33)

有去等(있거든):있거든

[本條 내에 ‘皆’字가 있거든 首從을 論하지 않으며]

나. 並只處分抄軍例以論齊諸王所管道內良中草賊起色有去等(14:2)

處分抄軍:함부로 軍馬를 징집하여 출동하는 것, 草賊起色:草賊이 발생할 김새

[모두 處分抄軍의 예로써 논죄한다. 모든 왕의 所管道內에 草賊의 기색이 있거든]

다. 軍情事是去等不減齊公貼良中錯書庫有去等書人乙坐罪遣(17:4)

錯書庫:受信人을 잘못 記載

[군사기밀의 일이거든 減刑하지 못 한다. 공문에 錯書庫가 있거든 글을 쓴 사람을 坐罪하고]

라. 軍情事是去等不減齊公貼內錯書庫有去等罪坐錯書之人遣奉使人乙良不坐罪爲乎事(17:6)

[군사기밀의 일이거든 減刑하지 못 한다. 공문 내에 錯書庫가 있거든 글을 잘못 쓴 사람을 坐罪하고 奉使人은 不坐罪하올 일]

마. 定限日移葬齊所居地境內良中死人有去等(18:15)

[한정된 날짜를 지정하여 이장시킨다. 거주하는 지역 내에 죽은 사람이 있거든]

(7)에서 ‘字’, ‘草賊起色’, ‘錯書庫’, ‘死人’은 비록 주격 조사 ‘亦’이 없다 하더라도 모

38) 이현희(1994, p.148)는 단순화한 존재구문의 유형에 대해서 ‘NP이 있-’으로 보이고 있다.

두 주어이다.³⁹⁾ 그리고 (7라)에서 ‘公貼內’도 조사가 없지만 이는 (7라)의 구문을 보아 알 듯이 처격어가 된다.⁴⁰⁾

그런데 (7) 예문에서 모든 구문들은 주어의 선행어인 ‘本條內’, ‘所管道內’, ‘公貼’, ‘公貼內’, ‘所居地境內’를 ‘良中’으로써 표지하고 있다.⁴¹⁾ 즉, 처격어가 주어의 앞에 선행하고 있는 것이다. (7)과 같은 구문의 구조에서 주격 조사 ‘亦’과 처격 조사 ‘良中’

39) 주격 조사의 표지 문제에 대해 이필영(1982, pp.417-431)은 조사의 비실현이 주문보다는 관계관형화 내포문에서 잘 일어난다며 주어 명사구를 지정할 때 ‘-가’를 생략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를 담화상의 문제로 해석한 김지은(1991, pp.69-87)은 문장이나 담화상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주어의 확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즉 동사의 논항이 많거나 비교나 대조되는 명사구가 있을 때에는 주격 표지의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

40) 이처럼 격조사가 표지되지 않은 것(Default Case)에 대해서는, 안병희(1966)는 ‘무표지’에 문법적 격 개념을 부여하여 ‘부정격(Case Indefinitus)’이라 하고 통합함으로써 격이 표시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하였다. 민현식(1982, p.16)은 ‘무표격(unmarker case)’, 이남순(1988 p.22 1998, p.228)은 격표지의 비실현으로, 강명윤(1992, p.26)은 무정격이라 칭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환(1994, p.471), 유형선(1995, pp.103-104)에서는 ‘무표격’이라 부른다.

이 외에 격조사의 무표지에 대해 지배결속이론의 관점으로써 이해한 배희임(1999, p.612)은 이를 격조사의 비실현이라고 하며 이는 격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고 비실현을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아도 격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덜 받는 격은 주격과 대격인데 이들은 모두 구조적으로 통사격이라면서, 격이 통사적 구성에 의해 실현되는 정도가 클수록 문법성을 띠고 어휘성이 클수록 격표지에 많이 기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41) 처격 조사 ‘良中’은 처소의 뒤에만 놓이지는 않는다. 다음에서 보듯이 ‘良中’은 시간적 의미를 지닌 논항을 통합하기도 한다.

(1) 初亦徒役時無病爲有₁如₂限內良中廢疾有在乙良(1:23)

初亦(초역):처음에, 無(어오):없다, 爲有₁如₂(헝잇다가):하였다가, 有在乙良(이시견으란):있거들란
[처음에 徒役할 때에는 無病하였다가 (徒役의) 기한 내에 廢疾이 있거들란]

위의 구문에서 ‘限內’는 장소가 아닌 기간이다. 하지만 조사는 처격 조사인 ‘良中’이 놓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문이 아니다. 시간적 의미를 지닌 기간에도 국어에서는 처격 조사가 이를 통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현대국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영호는 이번 학기에 유학간다.

나. 영이는 집에 아기가 있다.

(2가)의 ‘학기’는 기간이고, (2나)의 ‘집’은 처소이다. 하지만 이들을 통합하는 조사는 모두 ‘-에’이다. 따라서 ‘限內’가 비록 처소가 아니지만 처소를 통합하는 ‘良中’의 통합을 받을 수 있다. (1)의 구문은 본문의 구문 구조에서와 같이 ‘NP₁良中 NP₂亦 有-’의 구문 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有- 構文’에서 ‘良中’의 선행어를 처소로 한정하지 않고, 단지 조사만을 한정한다면 (1)과 같은 구문도 ‘有- 構文’의 구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수의적으로 생략된다.⁴²⁾

국어는 자리가동이 자유로운 언어이므로 처격어가 주어의 뒤에 놓일 수 있다. 이를 현대국어의 예로써 보자.

(8) 가. 서울에 한강이 있다.

나. 한강이 서울에 있다.

이처럼 주어가 처격어에 앞서는 것은 국어에 있어서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⁴³⁾ 때문에 주어가 처격어에 선행하는 구문은 15세기 및 16세기의 자료에서도 보인다.⁴⁴⁾

(9) 가. 내 그 中에 잇다이다(釋譜 24:44)

나. 즈시기 지비 피난히 이쇼물(續三 孝:6)

(9가)는 15세기 자료이고, (9나)는 16세기의 자료이다. 이들 두 자료에서는 모두 주어가 처격어에 앞서고 있다. 물론 15세기나 16세기의 자료에서 처격어가 주어의 앞에 놓이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10) 가. 閻浮提예 큰 因緣이 잇느니(月釋 21:171)

나. 眞實 므스매 疑心이 이시면(蒙山 33)

(10가)는 15세기의 자료이고, (10나)는 16세기의 자료이다. 이처럼 15세기 및 16세기는 물론 이후 현대국어에서도 주어와 처격어는 자리의 바꿈이 자유로움을 볼 수 있다.

42) 이관규(1999, p.293)는 격조사를 구조적 조사로서 문장 안에 있는 일정한 성분과 서술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허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수의적인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43) 주어와 처격어의 자리바꿈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다.

44) 본 연구에서는 “大明律直解”가 14세기 말의 국어자료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교되는 국어로서 15세기 국어를 들었다. 그리고 15세기 국어와 비교되는 것은 16세기 국어이므로 16세기 국어도 함께 다루었다. 그러나 17세기 국어 이후부터는 “大明律直解”와 너무 연대상으로 멀어지므로 이들과는 연관시키지 않았다. 다만, “大明律直解”와 현대국어와의 차이 분석은 필요하므로 현대국어는 “大明律直解”와의 비교로서 다루었다.

그러나 (6)이나 (7)에서 볼 수 있듯이 “大明律直解”에서는 주어가 처격어에 앞서는 구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국어가 어순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과 (7)의 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가 처격어 앞에 놓이는 구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11) 가. 皆字(亦)本條內良中有去等
 나. 申聞人員(亦)上前良中有去等
 다. 造作爲乎所(亦)凡宮殿內良中有去等
 라. 草賊起色(亦)諸王所管道內良中有去等
 마. 錯書庫(亦)公貼良中有去等
 바. 錯書庫(亦)公貼內(良中)有去等
 사. 死人(亦)所居地境內良中有去等

(11)의 구문 구조는 ‘NP亦 NP良中 有-’로서 存在・所有 構文의 기본 구문 구조이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 (11)과 같이 주어가 처격어에 앞서는 구문은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구문이 내포문이어서 처격어가 주어에 앞서는 것도 아니다. 국어에서는 내포문일 경우 모문의 주어와 겹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어가 아닌 다른 논항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 (12) 가. 영호가 강에 물고기가 많다고 소리쳤다.
 가’. 영호가 물고기가 강에 많다고 소리쳤다.
 나. 아버지가 집으로 할아버지가 가신다고 알려왔다.
 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집으로 가신다고 알려왔다.
 다. 옆집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누가 끌고 갔다고 알려주었다.
 다’. 옆집 아주머니가 누가 강아지를 끌고 갔다고 알려주었다.

(12)의 예문은 모두 정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문에서 언어 직관상 (12가’, 나’, 다’)보다는 (12가, 나, 다)의 구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과 (7)의 경우도 내포문이기 때문에 모두 처격어가 주어에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과 (7)은 내포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6)과 (7)에서 처격어가 주어에 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포문의 경우에 의거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⁴⁵⁾ 따라서 이

45) “大明律直解”에서 ‘有’가 오는 구문 중에 내포문으로 보이는 구문이 하나 있다.

에 대해 “大明律直解”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有-’는 밀착성이 강하여 다른 성분이 개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하지만 15세기 및 16세기 또는 현대국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있-’과의 사이에는 다른 성분, 즉 처격어가 놓일 수가 있다. 이것은 이들의 밀착성이 높지 않아 ‘NP₁’이 초점을 받아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 ‘有-’의 강력한 밀착성은 15세기 및 16세기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3. 3. 3 ‘在- 構文’

이두어 ‘在-’는 ‘있다’의 높임말로써 ‘겨시다’의 어간 ‘겨-’이다. ‘在-’는 15세기 이후에 보이는 ‘겨시-’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존재 혹은 소유의 의미를 지닌다. “大明律直解”에서의 ‘在-’ 또한 존재나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1) 凡各司及州縣長官及出使人員亦所在去處良中有犯罪爲去等(28:15)

[무릇 각 官司의 州縣長官 및 出使한 사람이 (자신의) 所在處나 出使處에서 범죄한 것이 있거든]

(1)의 밑줄친 부분은 ‘所在去處에 犯罪가 있다’로 해석된다. (1)의 구문은 ‘무릇 각 司 및 州縣長官 및 出使人員이 所在去處에 犯罪가 있다 하거든’이 된다. 그러므로 ‘所在去處良中有犯罪’는 내포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所在去處良中有犯罪’는 내포문이 아니다. 이는 이의 한문본을 보면 알 수 있다.

- (2) 凡在外各衙門長官及出使人員於所在去處有犯者

[무릇 在外 각 衙門의 長官 및 出使한 사람이 所在處나 出使處에서 범죄한 것이 있는 者]

한문본에 의거하여 (1)을 다시 해석하여 보면, ‘무릇 각 司 및 州縣長官 및 出使人員이 所在去處에서 犯罪하거든’이 된다. 그러므로 (1)에서 밑줄친 부분은 내포문이 아닌 것이 된다.

앞에서 밑줄친 부분이 내포문으로 해석된 것은 바로 ‘有’ 字 때문이다. 漢文本에서는 ‘有’의 통합을 받는 논항인 ‘者’가 있다. 따라서 ‘有犯者’는 ‘범죄한 자가 있다’가 된다. 그러나 吏讀本에서는 ‘者’ 字가 생략된 채 ‘有’ 字만이 있다. 그래서 ‘者’를 서술해야 할 ‘有’가 그만 ‘犯罪’를 서술하여 ‘犯罪가 있다’로 분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의 밑줄친 부분이 내포문이 아니라는 것은, 이를 내포문으로 하였을 경우 漢文本하고는 다른 말이 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漢文本에서는 범죄자가 所在去處의 관리이다. 그러나 (1)에서 밑줄친 부분을 내포문으로 하면, (1)의 所在去處의 관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적발해낸 관리가 된다. 따라서 (1)의 밑줄친 부분은 내포문이 아니다.

한편, (1)의 구문을 자칫 ‘有- 構文’에서 주어가 처격어에 선행하는 구문의 예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의 구문은 ‘有- 構文’이 아니라 ‘者’ 字의 생략과 더불어 생략시켜야 할 ‘有’ 字가 생략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구문일 뿐이다.

‘在- 構文’에서 기본 구문 구조가 되는 ‘NP₁亦 NP₂亦 在-’ 보다 더 단순한 기본 구문 구조를 본다면 ‘NP亦 在-’가 될 것이다. 여기서 ‘NP’는 話者에 의해 존대받을 대상이 된다.

(13) 가. 爲等如眞亦犯罪爲在乙良逢音有旨在白教是良置並只不赦(1:17)

爲等如(헛트리):통틀어, 眞亦(진여):참으로

[통틀어서 참으로 범죄한 경우에는 마침 사면령이 겨웁실지라도 모두 不赦]

나. 一日五十里以合計爲乎六十日程途是去乙六十日未滿爲有旨在白教是去等已行爲乎遠近不問爲並只放赦爲乎矣(1:18)

爲乎(헛운):하기에

[1일 50리로 합계하기에 60일 정도이거늘 60일 미만하여 사면령이 겨웁시거든 이미 행하온(행로의) 遠近은 불문하고 모두 사면석방하오되]

(13)에서 ‘有旨’는 모두 주어이다. 그리고 이의 앞에는 어떤 명사구도 놓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앞서 存在・所有 構文의 기본 구문 구조로서 ‘NP₁亦 NP₂亦 有-’의 구문 구조를 든 바 있다. 그런데 ‘有- 構文’에서 이러한 구문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하였다. 하지만 ‘有-’의 존대형인 ‘在-’에서는 기본 구문 구조인 ‘NP₁亦 NP₂亦 VP’의 구문을 볼 수가 있다. 이때의 ‘在-’는 존재가 아닌 소유의 의미이다. (14)에 제시된 예문에서 ‘在-’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4) 一家內三人乙殺害爲在人等亦逢音有旨在白教是良置放赦不得爲乎流罪人矣家口乙良不許聽還爲乎事(1:16)

在白教是良置(견습이시라두):겨웁실지라도

[一家 내에 세 사람을 살해한 사람 등이(에게) 마침 사면령이 겨웁실지라도 放赦 아니 하온 流罪人의 家口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聽許 아니 하올 일]

(14)의 구문 구조는 ‘NP₁亦 NP₂亦 在-’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NP₂’가 된다. 서술어 ‘在-’는 화자에 의해 존대받을 대상이 구문에 있을 경우에 쓰인다. 그렇다면 (14)에서 존대의 대상은 살인범이 아닌 임금의 有旨이므로 ‘在-’는 ‘有旨’에 대해 서술한다. 따라서 살인범은 보어이다. 즉, (14)는 보어가 주어의 앞으로 도치된 구조인 것이다. 다만 “大明律直解”에서는 주어가 보어 앞에 놓이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存在・所有 構文’에서는 주어의 앞에 주제가 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在- 構文’에서도 ‘NP₁隱 NP₂亦 在-’의 구문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15) 殺一家三人爲在人等隱必干有旨在白教是良置流配合當爲在乙並只不赦爲乎事

(1:19)

爲在乙(헝견을):하거늘

[一家 내에 세 사람을 살해한 사람 등은 비록 사면령이 겨웁실지라도 流配가 합당하거늘 모두 사면 아니 하올 일]

(15)에서도 ‘在-’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人’은 소유자가 되고 있다. 여기서 (14)에서와는 다르게 ‘亦’이 아닌 ‘隱’이 소유자를 통합하고 있으므로 이 구문은 ‘주제-평언’의 관계를 갖는 구문이 된다. 즉, (15)에서 ‘人’은 주제이고 ‘有旨在白教是良置’는 평언이다. 그리고 신정보인 ‘有旨’는 주어가 된다. 그런데 주제구문을 통해 우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밀착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5)의 구문에서 부사 ‘必干’이 주어 ‘有旨’와 서술어 ‘在-’의 사이에 놓이지 않고 ‘有旨’의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서술어 ‘在-’의 앞에 어떤 부사도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大明律直解”에는 아래와 같이 ‘良中’이 접미사 ‘次’와 통합된 구문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개의 ‘在- 構文’이 있는데, 부사가 없는 (13나)를 제외한 이들 모두에서 부사는 ‘在-’의 앞에 놓이지 않았다.

(16) 凡徒流人亦路次良中逢音有旨在白教是去等行路日數亦限日已過已只未到爲在乙良

不許放赦齊(1:18)

逢音(맞춤):마침, 在白教是去等(겨웁이시거든):겨웁시거든, 已只(긱지):까지

[무릇 徒刑囚나 流刑囚가 行路次에 마침 사면령이 겨웁시거든 行路의 일수가 기한 일에 이미 지날 때까지 도착 못 한 경우에는 사면석방을 불허한다]

부사가 서술어를 한정하는 성분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구문에서 보이는 부사 ‘逢音’, ‘必干’이 ‘在-’의 앞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어느 구문에서도 그러한 배열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은 서술어 ‘在-’가 존재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구문으로서, 형벌을 이행하러 가는 중에 ‘有旨’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良中’은 ‘~에서’라는 처격의 의미가 아닌 ‘~하는 과정 중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16)에서 ‘在

白敎是去等’이 서술하는 대상은 ‘宥旨’이지 ‘徒流人’이 아니다. ‘徒流人’은 죄인으로서 존대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宥旨’는 임금의 御旨이므로 존대의 대상이다. 따라서 ‘宥旨’는 ‘在白敎是去等’의 주어가 된다. 그리고 ‘徒流人’은 서술어 ‘未到爲在乙良’의 주어이다. 그러므로 (16)에서 보이는 ‘在- 構文’ 역시 앞의 ‘在- 構文’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연이어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의 구문에서 주어인 ‘宥旨’에 주격 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13), (14), (1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在- 構文’ 역시 선행 명사구인 주어와 서술어와의 결합력이 강하여 주격 조사의 표지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 ‘在-’는 서로 강하게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나무그림으로써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다.⁴⁶⁾ 먼저 격조사가 표지되는 경우의 나무그림을 본다. 다만, 분석을 위하여 그림 (1)에서는 (16)의 ‘宥旨’에 주격 조사가 표지된 것으로 가정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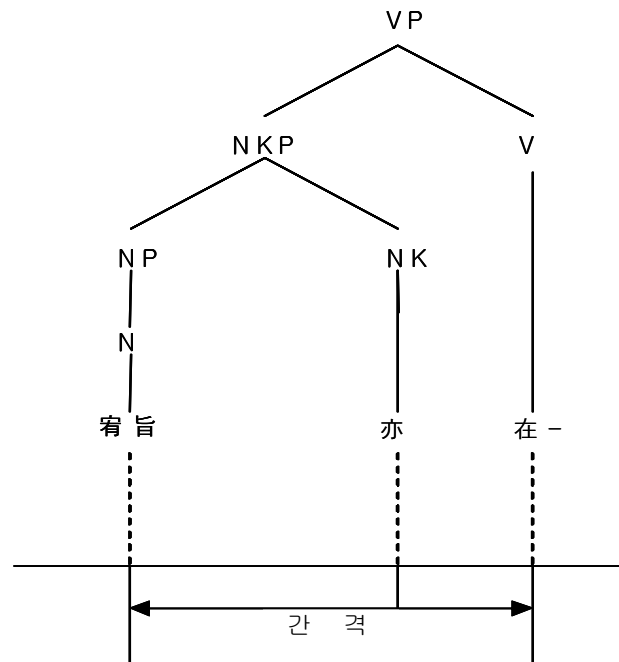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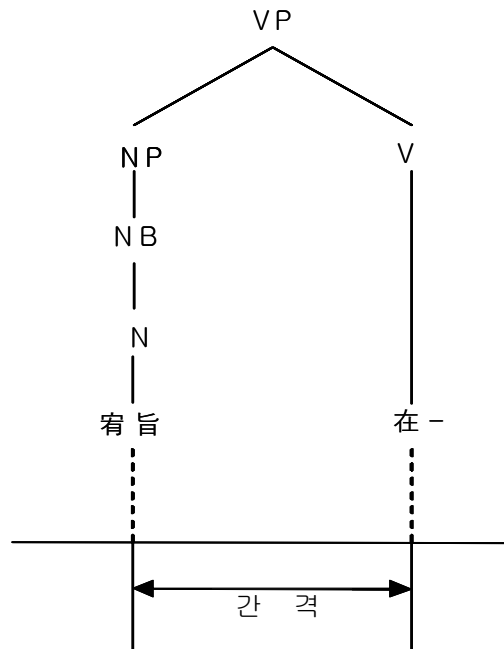
그림 (1)은 ‘宥旨’에 주격 조사가 통합하였을 경우인 ‘宥旨亦在白敎是去等’의 나무

46) 나무그림에 의한 분석은 임흥빈 외(2002, pp.239-258)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주어 ‘宥旨’와 서술어 ‘在-’의 사이가 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의 바로 앞에서 주어가 주격 조사를 표지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조사가 놓일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宥旨在白教是去等’와 같이 주격 조사가 표지되지 않은 구문에 대한 나무그림 (2)를 보면 격조사가 놓일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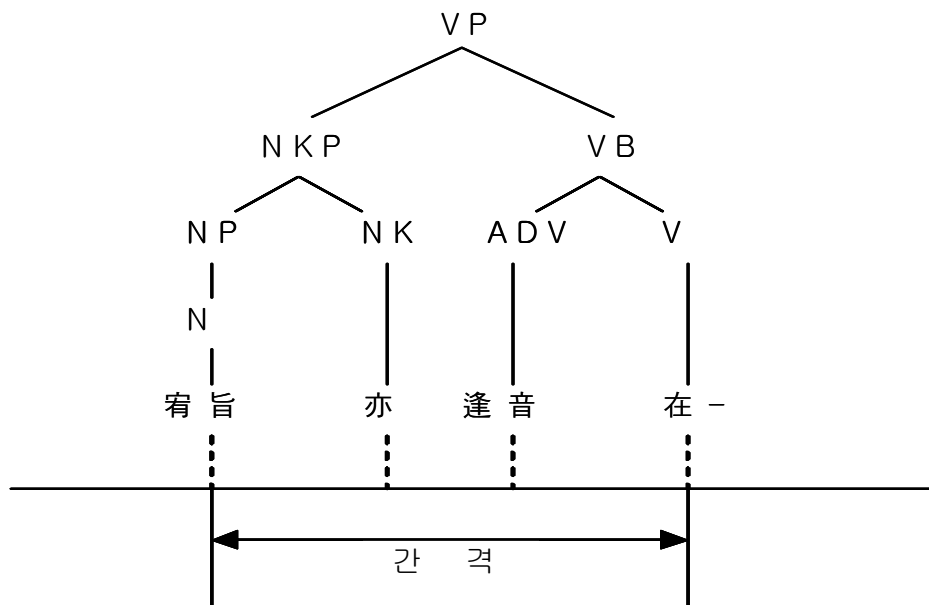


따라서 그림 (1)은 현대국어처럼 격조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서 표지되는 경우의 구조이고, 그림 (2)는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격조사가 표지되지 않는 구문의 구조이다. “大明律直解”에서 간혹 격조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서 표지되는 것으로 보아 그림 (2)의 구조에서 그림 (1)의 구조로 막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격조사 외에 부사도 서술어의 바로 앞에 놓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현상 역시 주어와 서술어간의 강한 결합력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 서술어의 앞에 위치할 부사가 놓일 공간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나무그림으로써 확인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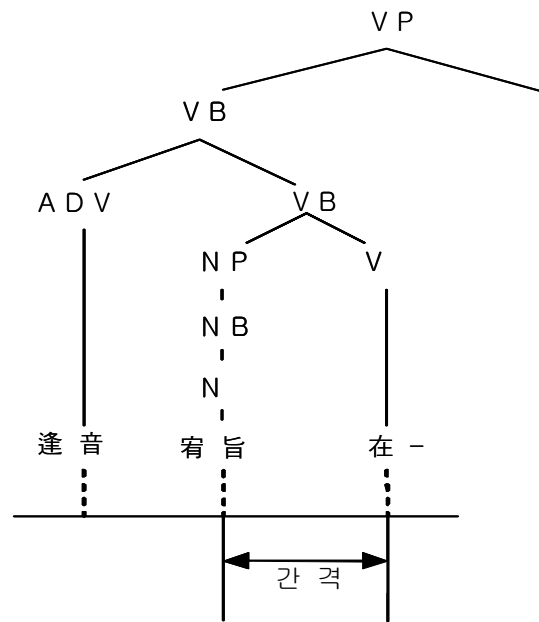
그림 (3)은 부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놓였을 경우를 가상하여 그 구조를 나무그림으로써 나타낸 것이다.

3)



‘有旨亦逢音在白教是去等’의 구문을 나무그림으로써 도해한 그림 (3)에서 우리는 격조사는 물론 부사도 놓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주어와 서술어간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16)의 구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사가 놓일 수 있는 자리는 서술어와 주어의 사이에는 없고 주어의 밖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무그림은 그림 (4)와 같이 도해한다.

4)



우리는 구문 ‘逢音有旨在白教是去等’를 도해한 그림 (4)에서 주어와 서술어 간에는 부사가 놓일 공간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大明律直解”에서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부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주어와 서술어와 결합된 상태에서 다른 논항이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이지 못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가 있다. ‘存在・所有 構文’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항상 연이어 놓이는 상태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해 서술어와 주어의 강한 결합력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명사구 역시 주격 조사나 부사처럼 이들 사이에 놓이지 않음에서도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16)의 구문은 다음에서 보듯이 서술어 ‘在-’의 앞에 구문상 다른 명사구, 즉 여격어가 놓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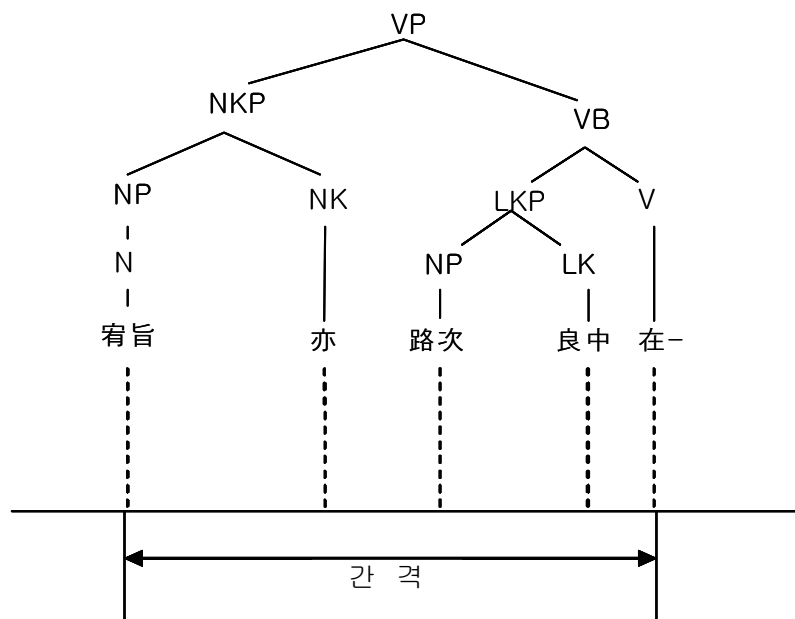
(17) 路次良中逢音有旨亦徒流人亦中在白教是去等

그러나 (17)과 같이 쓰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주어가 아닌 다른 명사구가 ‘在-’의 앞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在- 構文’에서는 그러한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어와 서술어간의 강한 결합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들의 이런 결합력 때문에 서로의 거리가 좁아 다른 논항이 놓일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한다.

이를 나무그림의 도해로써 보기로 한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다른 논항이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 나무그림을 도해한다. 도해의 예문은 ‘宥旨亦路次良中在白教是去等’인 것으로 한다. 이의 그림 (5)에서 우리는 주어 ‘宥旨’와 서술어 ‘在-’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 주격 조사는 물론 처격어와 처격 조사도 놓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

5)



그러나 (16)을 비롯한 ‘在- 構文’의 구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은 구조가 아닌 그림 (6)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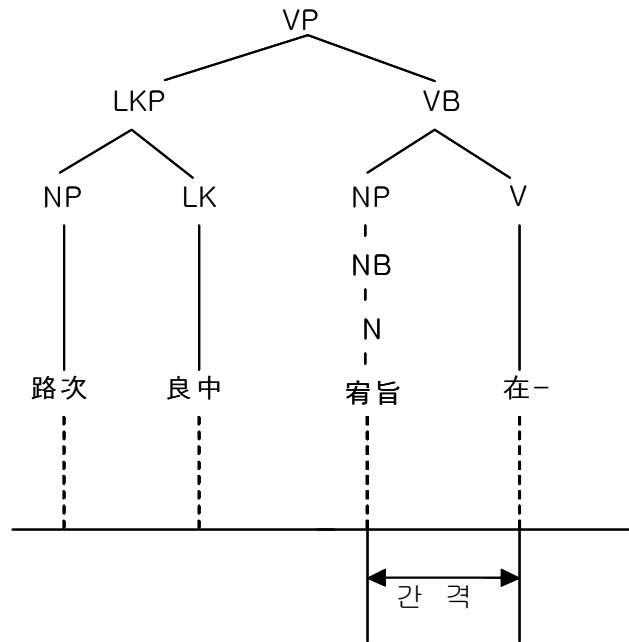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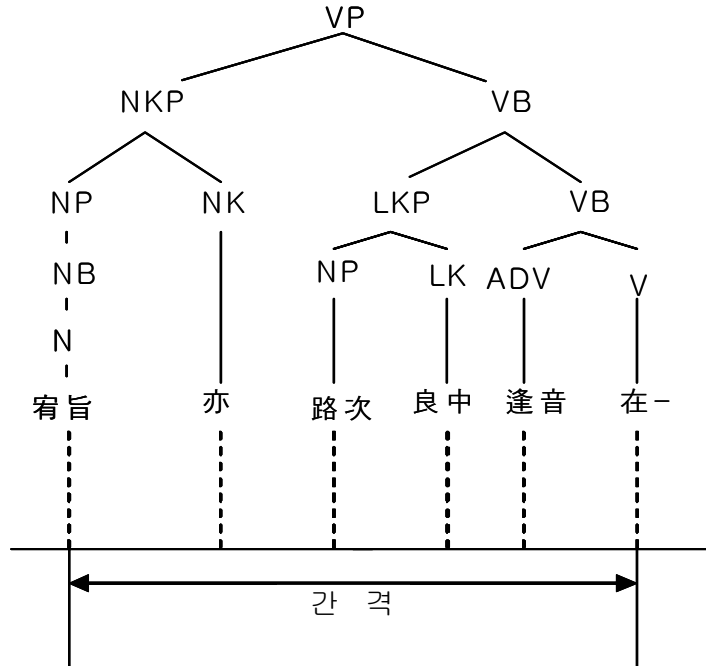


그림 (6)에서 주어 ‘有旨’와 서술어 ‘在’의 사이에는 ‘路次良中’이 놓일 공간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다. 결국 ‘路次良中’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주어 밖의 공간뿐이다.

때문에 ‘路次良中逢音有旨在白教是去等’과 같은 구문은 그림 (6)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 ‘路次良中’은 주어의 밖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16)을 비롯한 ‘在- 構文’의 구문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간의 강한 밀착성 때문에 이 둘의 거리가 짧다고 하였다. 이것은 반면에 주어가 문두에 놓였을 때는 주어와 서술어간의 밀착성이 가장 떨어지며 거리 또한 가장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나무그림으로써 확인해보자.

7)



‘在- 構文’의 구문인 ‘有旨亦路次良中逢音在白教是去等’의 나무그림인 (7)에서 주어와 서술어간의 간격이 구문상 최대한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반면 그림 (2)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그림 (2)는 격조사조차도 개입될 수 없는 간격을 지녔음을 보였다. 그림 (2)와 같은 구조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大明律直解”에서와 같은 격조사의 무표지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는 주어가 비록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격조사의 표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 앞의 논항이 격조사를 표지하는 예가 드물며, 부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도 주격 조사의 무표지 현상은 있다. 그러나 격조사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大明律直解”의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의 격조사 무표지는 격조사의 자리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나, “大明律直解”에서의

격조사 무표지는 격조사가 위치할 자리가 없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 “大明律直解”에서도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의 구문이 있으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구조와 그림 (7)과 같은 구조가 병존했으리라고 이해한다. 그러다 점차 그림 (2)와 같은 구조가 소멸하여 오늘 날에는 그림 (7)과 같은 구조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는 주어가 문두에, 서술어는 문미에 위치하는 언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어의 어순과는 다르게 주어가 서술어와 연이어 놓임으로써 문미에 위치한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3. 3. 4 ‘無- 構文’

‘無-’는 ‘有-’에 반대되는 의미의 서술어로서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역시 존재나 소유에 관하여 언급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無- 構文’은 存在・所有 構文에 속한다. 그리고 용법에 있어서도 ‘無-’는 ‘有-’와 동일성을 보인다. 다만 ‘有- 構文’은 存在・所有 構文임에도 불구하고 “大明律直解”에서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나 ‘無- 構文’은 무존재와 무소유의 의미 모두를 보이고 있다.

‘無- 構文’에서 가장 단순한 기본 구문 구조를 보인다면 ‘NP亦 無-’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구문은 (18)에서 보듯이 서술어 ‘無-’의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 외에는 다른 명사구가 놓이지 않는다.

(18) 가. 祖父母父母弋只年老有病是遣犯斤侍病男丁無在乙良其矣所犯罪名乙(1:19)

弋只(이기):이/가, 犯斤(버금):버금, 無在乙良(업견으란):없거들란

[조부모나 부모가 연로하며 병이 있고 (범인에) 버금가게끔 병구완을 할 男丁이 없거들란 그의 범죄한 바의 죄명을]

나. 同著署公事乙決斷爲乎矣差錯分是遣私情無在乙良(1:33)

分是遣(뿐이고):뿐이고

[文案에 함께 서명하고 公事를 決斷하오되 실수와 착오뿐이고 私情이 없거들란]

다. 首從勿論爲科罪齊皆字無去等依首從爲論齊(1:33)

無去等(업거든):없거든

[首從(主犯과 從犯)을 論議하지 아니 하고 科罪한다. (本條 내에) ‘皆’字가 없거든 首從(主犯罪와 從犯罪)에 의거하여 論罪한다]

라. 首如白倂是遣更良證見無去等現捉人乙之次罪以論決(1:37)

[主犯이라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다시 (이 진술에 대한 반증의) 증거가 보임이 없거든 현재 잡혀 있는 사람을 從犯罪로 論決]

마. 嫡次子孫乙傳襲令是齊嫡次子孫無去等妾妻長子孫乙用良傳襲令是齊(2:2)

令是齊(시기저): 시키다

[嫡系の 다음 子孫을 傳襲 시킨다. 嫡系の 다음 子孫이 없거든 妾의 長子孫을 써서 傳襲시킨다]

바. 凡妻亦可黜可絕之事無去乙黜送爲在乙良杖八十齊(6:9)

[무릇 처가 가히 물리쳐지거나 가히 (因緣을) 끊을 일이 없거든 黜送한 경우에는 杖八十(하울 일)이다]

서술어 ‘無-’가 무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18)에서 서술어 ‘無-’의 앞에는 주어만 놓일 뿐 다른 어떠한 명사구도 놓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NP亦 無-’ 구문 구조는 서술어 ‘無-’가 무소유의 의미를 지닐 때에도 볼 수 있다.

(19) 가. 趣便以宮城內及宮殿門內良中直入爲跡公狀無亦關津良中過越爲跡(1:33)

趣便以(취편으로):자의로, 關津:관문 나루, 過越:넘어가다

[자의로 宮城內 및 宮殿門內에 直入하며, 공문서 없이 關津에서 過越하며]

나. 杖一百充軍齊旨是絃無亦私丁兵器持是弥金城門內直入爲在乙良杖一百遠方充軍齊(13:5)

持是弥(디니며):지니며

[杖一百하고 充軍한다. 上命 없이 사사로이 兵器를 지니며, 金城門內에 直入하거들랑 杖一百하고 遠方에 充軍한다]

다. 刑罰乙議論次所見錯誤分是遣受贓物爲乎情狀無齊(28:11)

[형벌을 의논차에 소견의 착오뿐이고 장물을 받은 情狀이 없다]

(19)의 구문에서도 (18)의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無-’의 선행 명사구는 하나 뿐으로서 이 명사구는 주어이다.

‘주어+서술어’의 구문 구조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본 구문 구조는 ‘NP₁亦 NP₂亦 VP’이다. 이의 구조에서도 서술어 ‘無-’는 무존재 혹은 무소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먼저 서술어 ‘無-’가 무존재의 의미로 쓰인 구문을 보자.⁴⁷⁾

47) ‘無-’는 養蠶經驗撮要에서 ‘無去等, 無不冬, 無不冬爲去有等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20) 收養父母亦佗子息無去乙背恩捨去者乙良杖一百遣(4:4)

無去乙(업거늘):없거늘

[收養父母가 다른 자식이 없거늘 은혜를 배반하고 버리고 간 자는 杖一百하고]

(20)에서 ‘收養父母’는 주어이고 ‘佗子息’은 보어이다. 이와 같이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는 서술어 ‘無-’가 무소유의 의미로 쓰일 때도 찾아진다. (21)의 예문들은 모두 서술어 ‘無-’가 무존재보다는 무소유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문이다.⁴⁸⁾

(21) 가. 僧道亦度牒無亦着簪剃髮爲在乙良杖八十齊(4:3)

[승려와 도사가 도첩 없이 비녀를 지르고, 머리를 깎고 한 경우에는 杖八十(하울 일)이다]

나. 文武百官亦宣喚無亦無緣故儀仗內突入爲在乙良杖一百齊(13:7)

宣喚:왕이 명을 내려 부름

[文武百官이 宣喚 없이 無緣故로 儀仗內에 돌입하거들란 杖一百(하울 일)이다]

다. 凡邊境防禦將帥亦旨是絃無亦私音丁軍人乙用良境外良中(14:6)

旨是絃(맞이시울):上命, 私音丁(아름더):사사로이, 用良(쓰아):써서

[무릇 邊境을 防禦하는 將帥가 上命이 없이 사사로이 군인을 써서 국경 밖에서]]

라. 凡諸君宰樞亦旨是絃無亦各衛軍官軍人等乙呼喚爲(14:11)

[무릇 모든 君主와 宰相과 樞密使가 上命이 없이 各官衙의 軍官 및 軍人 등을 呼喚하며]

여기서 우리는 앞의 ‘有- 構文’이나 ‘在- 構文’과는 다르게 서술어의 앞에 주어가 아닌 보어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간의 결합력은 어떠한가. 이들 구문에서 조사가 없기는 ‘有- 構文’이나 ‘在- 構文’하고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서술어 ‘無-’와 선행 NP간에는 어떠한 부사도 놓이지 않고 있다. 즉, ‘又(또:또)’나 ‘導良’(드디여:드디어) 또는 ‘猶亦(오히려:오히려)’, ‘全亦(전여:도

48) 存在・所有 構文에서 존재와 소유 혹은 무존재와 무소유의 의미는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양분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다. 존재나 무존재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유나 무소유의 경우에는 그 의미 그대로 구문을 볼 수도 있지만 소유할 대상이 소유자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는 존재 혹은 무존재의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소유나 무소유의 의미는 다분히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存在・所有 構文에서 의미에 따른 양분은 기계적이지 않으므로 이 둘의 의미가 중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지)', '眞亦(진여:진실로)' 등과 같은 부사가 의미상 놓일 수 있으나 이러한 부사들이 서술어 '無-'와 선행 NP간에 놓인 예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이처럼 '無- 構文'에서도 서술어 '無-'와 그 앞의 선행어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개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조사 '亦'조차도 개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서술어 '無-'와 그 선행 NP간에는 결속력이 강하여 다른 성분이 이들 사이에 들어설 수 없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처럼 서술어와 선행어간의 결속력이 강하여 어떤 성분도 개재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어 '有-'와 '在-'의 경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有-'와 '在- 構文'에서는 서술어와 주어와의 결합력이 강하였으나 '無- 構文'에서는 서술어와 보어와의 결합이 강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無- 構文'을 비롯한 存在・所有 構文에서는 서술어의 선행 명사구에 조사가 표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격조사의 생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생략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구문 구조에 격조사가 생략됨으로써 생기는 빈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격조사가 놓일 수 없는 이유와 생략된 격조사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구조 내에 비어 있는 격조사의 자리는 있어도 부사나 다른 명사구의 자리는 없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격조사의 생략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격조사 표지의 지체라고 보고자 한다.⁴⁹⁾

이는 격조사의 무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격조사 무표지라고 하였을 경우 서술어와 그 선행 논항간에는 'Ø'라는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서술어와 선행 NP간에 고도로 밀착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격조사 표지의 지연으로 보고자 한다.⁵⁰⁾

49) 이남순(1987a)에서 주격, 대격의 성분들은 문장성분들 사이의 통합관계에 '엮매여 있는' 것들이라서 주격, 대격은 서술어(혹은 서술부), 타동사에 통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부정격을 실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일이다.

50) 명사구와 서술어간의 결합이 풀어졌더라도 격조사의 표지는 의무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격을 받음과 함께 격조사가 놓일 자리가 확보되었을 뿐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임흥빈(1972, p.86)이 문장에 등장하는 체언은 격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격을 갖게 된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명사구와 서술어가 분리됨으로써 얻게 된 격조사의 자리는 'Ø'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격조사 자리 'Ø'에 격조사가 들어서는 것은 수의적인 일이 된다. 그러나 이 자리가 없을 때, 즉 명사구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있을 경우에는 격조사는 놓일 수가 없다.

본 연구는 격조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격조사의 자리 'Ø'가 그 자체로 격조사의 역할을 하는지에

이때 지연은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간에 격조사가 들어갈 간격이 생길 때까지를 말한다. 이 간격의 생성은 수의적이지만 실제의 구문에 있어 이들 사이에 간격을 내어 격조사를 놓은 예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므로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간의 결속력이 강하여 좀처럼 간격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無- 構文’에서는 선행 NP에 주격 조사가 주어진 예문이 없다. 그러나 ‘有- 構文’에서는 주격 조사가 주어진 예가 보이므로, 비록 그 예는 없더라도 ‘無- 構文’이 ‘有- 構文’과 같은 계통의 存在・所有 構文이라는 점에 미루어 ‘無- 構文’에서도 선행 NP에 주격 조사는 표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외의 성분이 개재되는 예는 ‘無- 構文’에서는 물론 ‘有- 構文’이나 ‘在- 構文’에서도 없으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들 서술어와 선행 NP간에는 주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격 조사가 개재될 경우가 이들이 벌릴 수 있는 최대 간격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공간도 벌리기가 이들에게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 사이에 주격 조사가 개재된 구문의 예가 많이 있어야 할 것이나 ‘有- 構文’에 한하여 단 하나의 예가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大明律直解”에서 ‘無- 構文’을 비롯하여 ‘有- 構文’과 ‘在- 構文’에서 서술어와 그 선행 명사구간에 분리된 예가 전혀 없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특별한 구문 구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20)과 (21)에서 서술어 ‘無-’의 앞에 놓인 ‘子息’, ‘黜可絶之事’, ‘度牒’, ‘宣喚’, ‘旨是絃’⁵¹⁾ 등의 명사구는 굳이 격조사를 본다면 공통되게 주격 조사이다. 그리고 이들의 앞에 놓인 명사구 ‘收養父母’, ‘妻’, ‘僧道’, ‘文武百官’, ‘邊境防禦將帥’, ‘君宰樞’는 주어로서 역시 주격 조사가 통합된다. 즉, 이들은 이중주격 구문인 것이다.⁵²⁾

대해서까지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이관규(1999, p.306)에서 주격과 목적격, 즉 구조적 조사가 무표로 실현되었다고 해서 ‘칠수(가) 영희(를)’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무표 조사 즉 영형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51) 박성중(1987, p.257)에서 ‘無亦’의 先行語辭와의 통합조건이 NP와의 통합이라며 ‘旨是絃無亦’에 대해서 ‘旨是絃’은 名詞相當語라고 밝히고 있다.

52) 주어 중출문의 명칭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 주어가 중출되는 구문에 대해 주격을 중시한 이승녕(1969/1999 재록, pp.13-35)과 정인상(1980, pp.42-55)은 각각 주격중출과 이중주

다만 서술어 ‘無-’의 바로 앞에 놓이는 명사구에만 주격 조사 ‘亦’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20)과 (21)의 구문은 주어가 둘인가 주격이 둘인가라는 문제를 보게 된다. 이를 성광수(1974)의 두 번에 걸친 주어화 분석에 맞추어 보면 ‘收養父母’, ‘妻’, ‘僧道’, ‘文武百官’, ‘邊境防禦將帥’, ‘君宰樞’ 모두에 여격 ‘亦中’이 놓여져도 구문은 본래의 의미 그대로 성립되고 있다. (20)과 (21)은 주어가 둘인 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광수(1974)가 제시한 예문 ‘코끼리에게 코 길다’에서 ‘코끼리’에 여격 대신 속격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 보인 (20)과 (21)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구에 여격 대신 속격 ‘矣’를 놓을 수는 없다. 만일 이들을 속격 ‘矣’로 통합하게 되면 전부 비문이 되고 만다. 그리고 성광수(1974)의 예문인 ‘코끼리’와 ‘코’는 一體로서의 소속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收養父母’, ‘妻’, ‘僧道’, ‘文武百官’, ‘邊境防禦將帥’, ‘君宰樞’와 ‘子息’, ‘黜可絕之事’, ‘度牒’, ‘宣喚’, ‘旨是絃’간에는 어떠한 一體적인 소속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있다. 이를 단지 선행 논항을 여격이 통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주어가 중출된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20)과 (21)의 구문에서 서술어 ‘無-’의 서술 대상은 ‘收養父母’, ‘妻’, ‘僧道’, ‘文武百官’, ‘邊境防禦將帥’, ‘君宰樞’이다. 때문에 ‘子息’, ‘黜可絕之事’, ‘度牒’, ‘宣喚’, ‘旨是絃’ 등은 보어가 된다. 위의 구문들은 주어가 중출된 것으로 하기 보다는 주격이 중출된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⁵³⁾

격문으로 명칭하였고, 주어를 중시한 박순함(1970, p.13)은 겹주어로, 서정수(1971, p.278)는 이중주어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無- 構文’이 ‘주어-보어’ 구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어가 중출되었다는 의미인 주어중출로 하지 않고, 주격이 중출되었다는 의미로서 이들 구문에 대해 이중주격 구문이라 부르고 한다.

53) 이와 같은 격의 중출 현상에 대해 ‘주제화’로 분석하는 견해로는 박순함(1970, pp.11-31), 임흥빈(1972, 1974, pp.143-159, 1987), 신창순(1975), 이광호(1988, pp.54-68)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주제화에 대해 비판한 김영희(1978, pp.21-58)는 ‘-이/가’는 순수히 주격표지이고, 주제는 주어와 다른 층위를 갖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주격 중출의 ‘이/가’는 통사 층위의 문법적 주어가 거듭하여 출현한 겹주어라고 보았다. 김귀화(1994)는 격중출 구문에서 ‘주제화’ 또는 ‘성분주제’라고 논의되었던 성분에 실현된 ‘-이/가’, ‘-을/를’도 역시, 주어나 목적어에 실현되는 격조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김귀화(1994)는 ‘주제화’ 혹은 ‘주제성분’이라고 논의되었던 격중출 현상을 ‘초점화’로 보았다. 따라서 ‘-이/가’, ‘-을/를’을 격조사와 주제첨사의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면서, 격중출문을 속격에서의 초점화와 처격에서의 초점화로 나누었다. 즉, 초점을 받은 성분도 도착지에서 격을 부여받아 나머지 문장 성분과 일정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그리고 홍종선(1999, p.99)은 격 중출의 주제화 분석에 대해, 주제화 해석은 다분히 화용론적이며 화맥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도 않은 형태나 통사 구조 정보만으로 ‘주제화’라고 고정하는 것은 무리

이 외에 ‘無- 構文’에서는 ‘NP₁(叱)段 NP₂亦 無-’의 구문 구조⁵⁴⁾를 볼 수 있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NP₁’이 주제어인 경우로서 ‘NP₂’가 주어이다. 이러한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는 단 하나의 예만이 보인다.

- (22) 他道大小軍官員亦文字相通軍馬起送助戰令是乎事叱段王旨行下無亦越境使內乎所不喻齊(14:2)
 叱段(쫌):판은, 인즉,
 [다른 道의 大小 軍官員이 文書로 서로 통하여 軍馬를 일으켜 보내어 싸움에 助力 시키는 일 따위는 王旨(에 의한) 지시 없이 越境을 시키는 바가 아니다]

(22)의 구문에서 ‘(叱)段’과 통합하는 ‘NP₁’은 구문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 대상이 된다. 그리고 ‘NP₂(亦) 無-’는 평언으로서 언급 대상인 주제에 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事’는 언급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王旨行下無亦’는 ‘事’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된다.

이처럼 ‘주제-평언’의 유형을 지닌 ‘無- 構文’이 하나 밖에는 없으므로 현대국어에 서처럼 주어가 주제의 앞에 놓이기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無- 構文’에서는 ‘NP₁良中 NP₂(亦) 無-’와 같이 ‘良中’과 통합된 명사구가 주어의 앞에 놓이는 구조도 찾을 수 있다.

- (23) 가. 犯私鹽罪乙推考次良中樞問無亦在前盜牛事及他人乙欺罔財物奪取事等乙現告爲在乙良(1:27)
 次良中(츠아히):차에, 無亦在(어오이여견):없은
 [소금의 私賣를 범한 죄를 신문하는 차에 推問함이 없이 전에 소를 도둑질한 일 및 타인을 欺罔하여 재물을 奪取한 일 등을 자백하거들란]
 나. 凡文官亦國家良中大功勞無在乙所任官亦朦朧申聞爲(2:2)
 無在乙(업견을):없거늘
 [무릇 文官이 국가에 큰 공로가 없거늘 所任官이 흐릿하게 申聞하여]

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54) ‘叱段’에 대해 (장세경 2001, p.309)은 ‘段’의 소리에 힘을 준 표현으로 처리한다. ‘叱段’의 ‘叱’에 대해서는 박희숙(1984, p.103)과 고정익(1992, p.76)은 속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남풍현(1992, p.95)은 무정물 체언에 쓰이는 ‘叱’에 의존명사 ‘ㄷ’, 주제나 조건을 나타내는 특수조사 ‘-니’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일인즉’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一半乙良本主還給爲旡三十日內良中本主無去等得物人亦中全給齊(9:3)

[절반은 본래의 주인에게 還給하며, 30일 내에 본래의 주인이 없거든 得物人에게 전부를 준다]

(23) 구문에서 ‘推考’, ‘國家’, ‘三十日’은 각각 행위, 처소, 시간으로서 이러한 표현들이 ‘NP₁’에 오고 있다. 그리고 ‘NP₂’의 ‘推問’, ‘大功勞’, ‘本主’의 뒤로 ‘NP₁’는 주어이다. 국어가 주어 선행 언어라는 점에서 보면 (23)은 ‘NP₂亦 NP₁良中 無-’라는 구문 구조가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NP₂亦 NP₁良中 無-’의 구문 구조로 쓰인 예는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無- 構文’에서는 ‘有- 構文’에서와 같이 주어가 서술어와 연이어짐으로써 문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서술어와 그 앞의 명사구인 주어와의 결합력이 강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無- 構文’에서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3. 5 요약

동사어간으로 쓰인 서술어 ‘有-’는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存在・所有 構文을 이룬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서술어 ‘有-’는 밀착성이 강하여 주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성분이 개재된 예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15세기 및 16세기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특이한 예라 할 수 있었다.

‘有- 構文’에서는 ‘NP₁亦 NP₂亦 有-’의 구문 구조를 기본 구문 유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의 구문 구조는 없고 ‘NP亦 有-’의 구문 구조를 볼 수 있었다.

・ 存在・所有 構文에서는 ‘NP₁亦 NP₂良中 有-’의 구문 구조처럼 주어가 위치하는 처격어를 구문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 구조는 보이지 않고 처격어가 주어 앞에 놓이는 ‘NP₂良中 NP₁亦 有-’의 구문 구조가 있었다.

‘有- 構文’에서는 처격어가 주어 뒤에 위치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NP₂良中 NP₁亦 有-’ 구조에 대해 처격어가 초점을 받아 주어 앞에 나섰다가 보다는 주어와 서술어간의 결합이 강하여 주어가 초점의 자리로 이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서술어 ‘在-’는 ‘있다’의 높임말인 ‘거시다’의 어간 ‘겨-’이다. ‘在- 構文’에서 볼 수

있는 기본 구문 구조는 ‘NP亦 在-’과 ‘NP₁亦 NP₂亦 在-’이다. 여기서 ‘NP₁亦 NP₂亦 在-’ 구문 구조는 ‘有- 構文’에서는 쓰이지 않은 구조였으나 ‘在- 構文’에서는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어가 보어 앞에 놓이는 예는 보이지 않았다. ‘在- 構文’에서는 ‘주제-평언’의 구성인 ‘NP₁隱 NP₂亦 在-’ 구문 구조가 찾아졌다. ‘在- 構文’ 역시 주어와 서술어간의 밀착도가 높은 구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떠한 부사도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在- 構文’과 더불어 存在・所有 構文에서는 서술어 앞의 명사구에 주격 조사의 표지가 힘들다는 것과 다른 명사구가 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간의 결합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때문에 주격 조사의 표지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 ‘在- 構文’에서는 주어가 서술어와 연이어 놓임으로써 문미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無-’는 ‘有-’에 반대 의미의 서술어로서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의 구문 역시 存在・所有 構文에 속한다. 용법에 있어서 ‘有- 構文’과 동일성을 보이거나 소유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有- 構文’과는 다르게 ‘無- 構文’은 무존재와 무소유의 의미 모두에 쓰였다.

‘無- 構文’에서는 가장 단순한 기본 구문 구조인 ‘NP亦 無-’를 비롯하여 ‘NP₁亦 NP₂亦 無-’의 기본 구문 구조도 보였다. 그런데 서술어의 선행어가 주어인 ‘有- 構文’이나 ‘在- 構文’과는 다르게 서술어의 선행어로 보어가 놓였다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서술어의 선행어에 격조사가 표지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사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有- 構文’과 ‘在- 構文’하고 같았다. ‘有- 構文’ 역시 서술어의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간의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無- 構文’은 ‘주제-평언’의 유형인 ‘NP₁(叱)段 NP₂亦 無-’의 구문 구조를 가졌다. 그리고 ‘NP₁良中 NP₂(亦) 無-’와 같은 구조도 보였다. 그러나 ‘NP₂亦 NP₁良中 無-’의 구문 구조는 쓰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구문 구조를 정리하면 (24)와 같다.

(24) 1. ‘NP₁亦 NP₂亦 有-’

存在・所有 構文의 기본 구문 구조이다. 이중 주격 구문인 이 구조에서 ‘주어+ 보어+ 서술어’의 유형은 “大明律直解”에 없고 ‘주어+ 서술어’ 유형만 보인다. 여기서 ‘有-’는 존재의 의미이다.

2. ‘NP₁亦 NP₂良中 有-’

주어가 처격어에 앞서는 이 구문 구조는 “大明律直解”에 없다. 주어와 서

술어 상호간의 밀착성이 강하여 다른 성분이 개재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3. ‘NP₂良中 NP₁亦 有-’
치격어가 주어에 앞서는 ‘~에 ~이 있-’의 구성인 이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진다.
4. ‘NP亦 NP良中 有-’
주어가 치격어에 앞서는 이 구문 구조는 存在・所有 構文의 기본 구조이나 이러한 구문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서술어 ‘有-’가 밀착성이 강하여 주어 외의 다른 성분이 개재될 수 없어서인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어와 서술어간의 강력한 밀착성은 15세기와 16세기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특이한 예에 해당된다.
5. ‘NP₁亦 NP₂亦 在-’
‘在- 構文’에서의 기본 구문 구조가 된다.
6. ‘NP亦 在-’
‘NP₁亦 NP₂亦 在-’ 보다 더 단순한 기본 구문 구조이다. ‘話者에 의해 존대받을 대상이 ‘NP’로 온다.
7. ‘NP₁亦 NP₂亦 在-’
여기서 주어는 ‘NP₂’가 된다. 보어는 ‘NP₁’으로서 존대받는 대상이 아니다. 話者에 의해 존대받을 대상이 구문에 있을 경우에 ‘NP₁亦 NP₂亦 VP’의 구조에 서술어 ‘在-’가 쓰인다.
8. ‘NP₁隱 NP₂亦 在-’
주어의 앞에 주제가 오는 경우로서 ‘주제-평언’의 구조를 갖는다.
9. ‘NP亦 無-’
‘無- 構文’에서 가장 단순한 기본 구문 구조이다. 서술어 ‘無-’는 무존재의 의미를 지니나 무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10. ‘NP₁亦 NP₂亦 VP’
서술어 ‘無-’ 무존재 또는 무소유의 의미로 쓰인다. 서술어 앞에는 주어가 오지 않고 보어가 놓인다.
11. ‘NP₁(叱)段 NP₂亦 無-’
‘NP₁’이 주제어이고 ‘NP₂’가 주어로서 이러한 구조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단 하나의 예가 있을 뿐이다.

12. ‘NP₂亦 NP₁良中 無-’

이와 같은 구문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지 않고 대신 ‘NP₁良中 NP₂亦 無-’ 구문 구조는 쓰였다.

3. 4 思惟・經驗 構文

3. 4. 1 도입

思惟 構文은 사고나 생각의 의미를 지니는 서술어에 의해 이끌어지는 구문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思惟 構文을 만드는 서술어로서 ‘望白齊’, ‘向入’, ‘的是-’ 등이 있다.

‘望白齊’는 무엇을 희망하여 바라는 바를 겸양되게 표현한 것이므로 생각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向入’은 ‘하려 하여, 생각하여’ 등의 의미를 지닌 吏讀이므로 역시 구문을 思惟 構文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的是-’는 ‘확실하다, 정확하게, 적실하다, 맞다’의 의미를 지닌 吏讀이므로 일종의 사유동사라고 볼 수 있다.

서술어 ‘듣다’, ‘보다’, ‘먹다’ 등은 경험을 만드는 것들이므로 이들이 쓰인 구문은 經驗 構文을 이룬다(한재영 1996, p.325). 그런데 이와 같이 經驗 構文을 만드는 서술어를 “大明律直解”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듣다’에 해당하는 ‘聞’과 ‘보다’의 의미를 지닌 ‘見’ 그리고 ‘먹다’의 ‘食’이다.⁵⁵⁾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 ‘聞’이 쓰인 經驗 構文은 두 개의 예가 보이고, ‘見’이 쓰인 經驗 構文은 단 하나의 예만이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食’이 쓰인 經驗 構文도 하나만 찾아진다.

3. 4. 2 思惟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구문을 생각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思惟 構文’으로 만드는 서술어로는 ‘望白齊’, ‘向入’, ‘的是-’ 등이 있다. 이중에서 ‘望白齊 構文’은 하나의 예만이 보인다.

55) 이현희(1994, p.485)는 15세기 국어에서 경험동사로 ‘듣-’과 ‘보-’만을 들어보이고 있다.

3. 4. 2. 1 ‘望白齊 構文’

무엇을 희망하는 서술어에는 ‘望白齊’가 있다.⁵⁶⁾ 여기서 ‘望’은 어간이고 ‘白’은 겸양의 선어말어미이다(김두환 1994, p.97). 그리고 ‘齊’는 종결어미가 된다. 따라서 ‘바라다’를 겸양되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라는 것은 행동이 아닌 생각이므로 ‘望白齊’에 의한 구문은 일종의 思惟 構文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라는 것에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望白齊 構文’은 ‘NP乙 望白齊’와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지는 타동사 구문이 된다.

(1) 議定後良中沙申聞爲上決乙望白齊(1:8)

望白齊(바라습제):바라웁니다

[협의하여 결정한 후에야 申聞하고 임금의 결재를 바라온다]

우리는 (1)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서술어 앞의 NP에 목적격 조사 ‘乙’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의 선행 NP에 목적격 조사가 표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서술어의 선행 NP에 목적격 조사가 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望白齊’의 선행 NP는 항상 ‘乙’을 표지하는지는 ‘望白齊 構文’이 “大明律直解”에서 단 하나의 예 밖에는 없어 이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의 표지가 수의적인 현상인지도 말하기가 어렵다. 단지, “大明律直解”에서도 서술어의 선행 NP에 목적격 조사 ‘乙’이 놓이는 수가 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

3. 4. 2. 2 ‘向入-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思惟 構文을 만드는 서술어로는 ‘向入-’이 있다. ‘하려 하여, 생각 하여’ 등으로 풀이(안병희 1983, p.57)되는 ‘向入- 構文’은 생각되는 대상을 선행어로 하여 이를 목적어로서 둔다. 때문에 ‘NP乙 向入-’과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진다.

(2) 가. 罪人乙向入官員處所請贈物傳上爲旆(1:17)

56) ‘望白齊’는 ‘望良白齊’의 준말이다.

向入(앗드리):생각하다

[죄인을 생각하여(대신하여) 관원이 請贈物(뇌물)을 윗전의 처소에 전달하며]

나. 其中自己事乙不便亦向入回避爲在乙良從重論(3:4)

不便亦(불편히):불편히, 부당하게

[그 중 자기의 일을 불편히(부당하게) 생각하여 회피한 경우에는 중한 것을 좇아 논죄]

다. 其中自己事乙不便亦向入回避爲在乙良重罪論爲乎(3:5)

[그 중 자기의 일을 불편히(부당하게) 생각하여 회피한 경우에는 重罪로 論議하올(일이다)]

그런데 (2)에서도 서술어 앞에 목적격 조사가 표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타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한 목적어에 목적격 조사를 표지하는 예가 드문 “大明律直解”에서는 ‘望白齊 구문’의 목적격 조사의 표기는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罪人’과 ‘自己事’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구문에서 목적어가 되고 있다. 그런데 ‘向入- 構文’에서 반드시 선행어로 목적어가 오지는 않는다. ‘向入-’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므로 그 앞에는 ‘~할까’에 의해 이끌어지는 추측의 내용이 올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은 ‘~할까’에 해당되는 ‘-乙去’에 의해 이끌어지는 추측의 내용이 ‘向入-’에 선행하고 있는 구문이다.

(3) 難苦爲去向入回避爲要因而在逃爲在乙良杖一百停職不用爲旆(2:5)

爲去(홀가):~할까

[어려울까 생각하여 회피하려고, 따라서 있는 곳에서 도망한 경우에는 杖一百하고 停職(시키고) (다시) 임용하지 아니 하며]

(3)에서 ‘向入-’에 앞서 추측되는 내용인 ‘難苦’가 의문법 서술어 ‘爲去’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⁵⁷⁾ 따라서 (3)에서는 ‘難苦’가 걱정스러운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3)의 밑줄친 부분은 이러한 예측을 생각한다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문절이 ‘向入-’의 앞에 놓인 구문 구조는 (4)에서도 보인다.

(4) 父果祖果子孫果亦隨去向入在乙良聽許齊(1:16)

57) ‘爲去’는 ‘爲乙去’에서 음절말 자음의 표기에 의한 통용인 ‘乙’이 생략된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안병희 1985, p.17).

隨去(좃거):좃아가다, 向入在乙良(안드러견으란):생각들었거들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손이 좃아갈 생각들었거들란 받아들여 허락한다(하을 일이다)]

하지만 (4)의 의문절은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이행하고 싶은 의지이다. 때문에 (3)에서는 생각되는 내용을 입게 되는 피동적인 상태이지만, (4)는 생각하는 내용을 자진하여 행하자 하는 능동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3)과 (4)는 둘 다 의문절을 ‘向入-’에 선행시키고 있는 구성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구문 구조에 있어서는 (3)과 (4)는 서로 같다. 그렇다면 (3)과 (4)의 구문 구조는 ‘VP爲去 向入-’과 같이 될 것이다. 다만 (4)에서는 (3)과는 다르게 ‘爲去’에서 ‘爲’가 생략되었다. 이 구문 구조에는 ‘向入-’의 선행어로 목적어가 오지 않고 ‘爲去’에 의해 이끌리는 VP가 놓인다는 점이 (2)의 구문 구조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3. 4. 2. 3 ‘的是-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확실하다’는 의미의 서술어로는 ‘的是-’와 ‘的實爲-’가 있다. ‘的是’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吏讀로서(김두황 1994, p.110), ‘확실하다’의 의미(박희숙 1984, p.192. 장세경 2001, p.291) 또는 ‘정확하다, 적실하다, 맞다’의 의미를 지닌 것(고정의 1992, p.104. 김두황 1994, p.111. 박성종 1996, p.222)으로 풀이되는 吏讀이다.⁵⁸⁾ 그리고 ‘的實-’은 “大明律直解”에서 ‘的是-’와 같이 쓰였는데, 그 의미는 ‘的是’와 동일하다(고정의 1992, p.104).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的是-’가 세 차례 구문에서 보이는 것에 비해 ‘的實爲-’는 단 한 차례만 구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중 ‘的是-’를 代表字로 다루기로 한다.

‘的是-’의 ‘확실하다’나 ‘정확하다’ 또는 ‘맞다’란 의미는 사람의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로 思惟 構文을 이루는 서술어라고 볼 수 있다. 판단을 위해서는 사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다, 맞다고 생각하다’처럼 뒤에 ‘생각하다’라는 사유동사가 덧붙는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58) ‘的是’에 대해 이승재(1989, p.130)에서는 ‘是’를 계사로 처리하여 ‘的’을 명사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박성종(1996)에서도 보인다. 박성종(1996, p.222)은 ‘是’를 계사로 보고, ‘的’에 대하여는 동사 ‘막-’의 파생명사인 ‘마기/마기’에 해당하는 字로 추정하고 있다.

(5) 前人是沙爲首是如白侑是臥乎事是良尔推問爲乎矣的是去等前人乙更良爲首以論罪爲(1:36)

[먼저 사람이야말로 正犯이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일이기에 심문하오되 확실하거든 먼저 사람을 고쳐 正犯으로 논죄하며]

‘的是-’는 1항 술어이므로 기본 유형에서 주어 하나만을 요구한다. 그런데 (5)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단문상으로는 ‘的是-’란 서술어만 쓰이고 있다. 이로써는 구문을 알 수 없으므로 (5)와 같은 경우의 구문에 대해서는 그 구조를 ‘VP爲乎矣 的是-’로서 보기로 한다.

(5)에서 ‘的是’의 앞에 ‘爲乎矣’에 의해 서술되는 명사구가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생각하는 내용이 ‘爲乎矣’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的是-’가 생각을 요구하는 사유동사라는 점을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는 ‘爲乎矣’에 의하여 전제 구문이 된다.

다음 (6)의 구문은 ‘的是’가 아닌 ‘的實爲-’가 구문에 쓰인 예문이다. 우리는 이 구문에서 밑줄친 부분은 (5)에 없던 ‘爲’가 표기되었다는 것과 ‘的是’가 아닌 ‘的實’이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구문 구조가 (5)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6) 須只起謀引入人乙推問爲乎矣的實爲去等並只斬齊(15:4)

的實(적실):확실

[모름지기 謀議를 일으킨 자와 접선한 자를 심문하오되 확실하거든 함께 斬한다(하울 일이다)]

이는 ‘的實爲-’가 ‘的是-’와 동일한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에서 보는 ‘的是- 構文’은 ‘的是’의 앞에 ‘VP爲乎矣’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놓이고 있다. 즉, (7)은 ‘NP亦 的是-’의 구문 구조를 보이는 예문들이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주어로 놓인다.

(7) 委官乙差送推問爲乎矣事狀的是去等虛事乙被告之人乙良依律改正遣(28:12)

委官:임시 재판장, 事狀:백성이 관아에 제출한 청원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끝에 쓰는 말

[委官을 보내어 신문하오되 事狀이 확실하거든 거짓된 일을 고소 당한 사람(彼誣告)은 법률에 의하여 바르게 고치고]

(7)을 해석하여 보면 ‘事狀이 확실(정확)하거든’으로 되어, ‘的是’의 앞에 있는 ‘事狀’은 주어가 된다. 따라서 (7)의 구문은 주격 조사 ‘亦’이 생략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에서 주어 ‘NP’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다.

3. 4. 3 經驗 構文

서술어 ‘듣다’, ‘보다’, ‘먹다’ 등은 經驗 構文을 이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술어를 “大明律直解”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듣다’에 해당하는 ‘聞’과 ‘보다’의 의미를 지닌 ‘見’ 그리고 ‘먹다’의 ‘食’이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 ‘聞’이 쓰인 經驗 構文은 두 개의 예가 보이고, ‘見’이 쓰인 經驗 構文은 단 하나의 예만이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食’이 쓰인 經驗 構文도 하나만 찾아진다. 따라서 이들의 구문을 분석하기에는 예문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經驗 構文으로는 이들 예가 유일하므로 이를 분석없이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經驗 構文의 구문과 그 구조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다만, “大明律直解”에서 밝힌 經驗 構文의 구조가 후일의 연구성과에서 “大明律直解”와의 동시대 혹은 그 전후시대의 經驗 構文의 구조에 비교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3. 4. 3. 1 ‘聞 構文’

신라시대 자료인 ‘禪林院鍾’에서도 보이는 吏讀인 ‘聞’은(이승재 1992, p.131) 현대 국어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聞’이 구문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구문에는 들어야 할 대상이 목적어로서 와야 한다. 즉, ‘무엇을 듣다’와 같은 형식이므로 ‘NP乙 聞’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8)의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구문으로서 목적어가 구문

에 놓이고 있다.

(8) 가. 祖父母及父母喪乙聞遣隱匿不發爲齊(1:5)

[祖父母 및 父母의 初喪을 듣고 隱匿하여 發喪 아니 하고]

나. 其矣夫喪乙聞遣隱匿不發爲齊(1:6)

[그의 남편의 初喪을 듣고 은닉하여 發喪 아니 하고]

(8)에서 ‘祖父母及父母喪’과 ‘其矣夫喪’이 각각 ‘聞’의 목적어로 구문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목적격 조사 ‘乙’을 표지하고 있다.

3. 4. 3. 2 ‘見 構文’

‘보-’로 읽히는 ‘見’은 ‘보다’의 의미로서 經驗 構文을 만든다. 하지만 이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는 단 한 번 보이고 있을 뿐이다.

(9) 宮闕乙守衛人果倉庫看直人果囚人主掌人等亦失火爲臥乎所乙見遣守直之處乙不離爲乎矣違者乙良杖一百爲乎事(26:4)

[宮闕을 지키는 사람과 창고지기와 看守人 등이 失火하는 바(불이 난 바)를 보고 지키는 곳을 떠나지 아니 하오되 위반자는 杖一百하올 일]

그런데 (9)의 구문에서도 ‘聞 構文’에서와 마찬가지로 ‘見’의 선행어에는 목적격 조사 ‘乙’이 놓이고 있다. 따라서 ‘NP乙 見’의 구문 구조가 된다.

3. 4. 3. 3 ‘食爲-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먹다’ 해당하는 구문은 ‘食爲-’로 나타난다. 이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만 보인다. (10)의 예문이 그 구문으로서 ‘食’은 동사로서 ‘爲-’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10) 官私牛馬亦官私之物乙毀食爲有去乙(16:5)

爲有去乙(헛잇거늘):하엿거늘

[官司나 개인의 소나 말이 官司나 개인의 물건을 毀食하엿거늘(破損하거나 먹어치웠거늘)]

(10)의 구문에서 ‘食’은 ‘毀’와 같이 쓰이고 있으나 ‘毀’는 부사이다. (10)은 서술어 ‘食’의 앞에 식사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로 놓이는 구문으로서 이의 구조는 ‘NP 乙 食爲-’로 분석된다.

3. 4. 4 요약

思惟 構文은 사고나 생각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에 의해 이끌어지는 구문을 말한다. 이러한 思惟 構文을 만드는 서술어로서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것은 ‘望白齊’, ‘向入’, ‘的是-’ 등 이었다.

먼저 ‘望白齊’를 보면 이는 무엇을 희망하는 서술어이다. 그리고 ‘바라다’를 겸양되게 말한 것이다. ‘望白齊 構文’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므로 목적어가 구문에 왔다.

또 다른 思惟 構文의 서술어에는 ‘向入-’이 있었다. ‘向入- 構文’은 생각되는 대상을 목적어로서 두었다.

한편, ‘向入- 構文’에는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이행하고 싶은 의지로서 의문절을 두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 ‘的是-’와 ‘的實爲-’는 ‘확실하다’는 의미의 서술어이다. “大明律直解”에서 ‘的是’는 세 차례 구문에서 보였고, ‘的實爲-’은 한 차례 보였다.

經驗 構文의 서술어에는 ‘듣다’, ‘보다’, ‘먹다’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經驗 構文은 ‘聞’, ‘見’, ‘食’이 있다.

‘聞’이 구문에 쓰일 때는 들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이 대상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였다.

‘見’ 역시 보아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이의 대상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였다. 다만 이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한 번만 쓰였다.

‘食爲-’는 ‘먹다’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이다. 그런데 이의 용례는 “大明律直解”에서 ‘毀食’의 모습으로 한번만 나타났다.

이상으로 思惟 · 經驗 構文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보이면 (1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11) 1. ‘NP乙 望白齊’

“大明律直解”에서 단 하나의 예 밖에는 없는 구문 구조로서 바라는 내용이 목적어로 오고 있다.

2. ‘NP乙 向入-’

생각되는 대상을 목적어로 한다.

3. ‘VP爲去 向入-’

추측되는 내용을 의문법 서술어 ‘爲去’로 서술하는 보문을 가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추측의 내용은 걱정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된다.

4. ‘VP爲乎矣 的是-’

‘的是-’가 생각을 요구하는 사유동사이므로 생각하는 내용이 ‘爲乎矣’의 앞에 놓인다. 이 구문 구조는 ‘爲乎矣’에 의하여 전제 구문으로 된다.

5. ‘NP亦 的是-’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주어로 놓인다. 따라서 주어인 ‘NP’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다.

6. ‘NP乙 聞’

들어야 할 대상이 목적어로 온다.

7. ‘NP乙 見’

“大明律直解”에서 단 한 번만 보이는 구문 구조로서 목적어로는 보는 대상이 온다.

8. ‘NP乙 食爲-’

식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로 온다.

3. 5 使役・被動 表現 構文

3. 5. 1 도입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구문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입는 의미를 지닌 ‘被動 表現 構文’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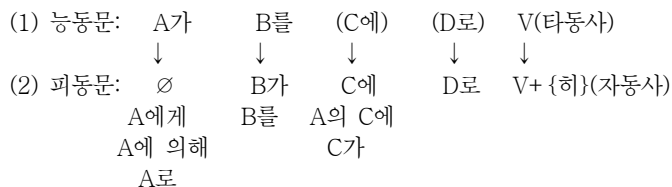
먼저, 사역의 의미가 있는 ‘使役 表現 構文’에 대해서 보면 “大明律直解”에서는 ‘令是- 構文’과 ‘使內- 構文’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구문을 이루는 ‘令是-’와 ‘使內-’는 상대방에게 사역시키는 서술어로서 구문을 사역의 의미로 이끌고 있다.

‘令是-’는 ‘시기(吏文, 語錄, 吏集)’ 또는 ‘히이(吏便)’로 읽히는데, 이에 대해서 안병희(1977, p.19)와 고정익(1992, p.91)는 중세국어 ‘히-’의 사동인 ‘시기-’와 ‘히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令是-’는 구문을 使役의 구문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使內-’ 역시 ‘시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令是-’에서와 같이 구문을 使役의 구문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구문을 使役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서술어가 쓰인 구문을 통칭하여 ‘使役 表現 構文’이라 하기로 한다.

반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입는 의미를 지닌 ‘被動 表現 構文’은 내용상 피동이나 여기서 다루는 ‘被動 表現 構文’의 ‘當爲- 構文’은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놓인 능동 타동사나 자동사에 의한 피동문이 아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능동문에서 자동사의 피동문으로의 변형 과정 같은 것은 “大明律直解”의 구문에서 논의하지 않는다.⁵⁹⁾

‘被動 表現 構文’의 ‘當爲-’는 한자어 ‘當’과 파생접사 ‘爲’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동사로서(김두환 1994, p.122), 유정체언을 목적어로 취하여 ‘-에 대하여, -에게

59) 이남준(1984, p.75)에서는 타동사가 쓰인 능동문에서 자동사의 피동문으로의 변형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서), -로부터'의 의미를 가진다(고정의 1992, p.91. 김두황 1994, p.122). 그러나 한편으로는 '當爲-'는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정의 1992, p.91. 장세경 2001, p.46).⁶⁰⁾

본 연구에서는 '當爲-'가 '당하다'라는 피동의 의미로 쓰인 경우만을 다룬다. 때문에 '當爲- 構文'에서는 주어의 행동이 전혀 없다. 단지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구문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被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當爲-'가 '당하다'라는 의미의 서술어로 사용되는 구문에 대하여 이를 '被動 表現 構文'으로 보기로 한다.

3. 5. 2 使役 表現 構文

여기서 다루는 '使役 表現 構文'은 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서술어에 의한 사동 구문이 아니다. 즉, 형태론적 사동을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술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분석적 사동도 아니다.

여기서의 '使役 表現 構文'은 서술어 자체에 [+사역성]이 있어 사동 구문의 특징이라 할 使動者和 被使動者가 있는 구문이다. 따라서 형태론적 또는 분석적 사동이 아니나 사동 구문의 의미자질을 모두 지닌 사동 구문이 된다.⁶¹⁾ 이처럼 서술어 자체의 의미에 의해 사동 구문이 되는 '使役 表現 構文'에는 '令是- 構文'과 '使內- 構文'이 있다.

60) '當爲'가 '凡軍行征伐乙臨當爲...(14:4)'에서처럼 동사와 통합하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정의 1992, p.91, 김두황 1994, p.122).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 '당하다'라는 '當爲'의 본래 의미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當爲'는 논외로 한다.

61) 使動者和 被使動者の 의미자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석주 · 이주행 1994, p.132).

의미자질 사-피사동자	인 간	유정성	의도성	사역성	수행자
사동자	±	+	±	+	±
피사동자	±	+	-	-	+

3. 5. 2. 1 ‘令是- 構文’

‘令是-’는 使役 構文의 서술어로서 “大明律直解”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가 법의 시행을 지시하는 법률서이므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令是- 構文’사역 구문 중에서 ‘NP亦中 VP令是-’의 구문 구조로서 명령의 이행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명령 하는 바를 사람이 이행토록 하는 것이므로, 명령이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VP令是-’의 선행어인 ‘NP’에는 여격이 주어질 것이다.

(1) 가. 子孫弟姪及家人亦中交嫁令是在乙良置罪同爲乎矣(6:7)

令是在乙良置(시기 견으란두):시킨 경우에는도

[아들, 손자, 아우, 조카 및 집안 사람에게 交嫁시킨 경우에는도 같은 죄로 하오되]

나. 私丁借用人果傳傳他人亦中借與令是在果請借人等乙良各答五十遣(16:6)

傳傳(전전):차례차례, 令是在果(시기견과):시키거니와

[사사로이 借用한 사람과 차례차례 타인에게 借與시키거니와 (이를) 빌리기를 청한 사람 등은 각자 答五十하고]

다. 原告人亦中更良對論令是乎所無去等(28:8)

令是乎所無去等(시기온 바 없거든):시킨 바 없거든

[原告人에게 다시 對論시킨 바 없거든]

(1)에서 ‘子孫弟姪及家人’과 ‘他人’ 그리고 ‘原告人’은 모두 명령을 시행 받을 대상이다. 따라서 ‘交嫁’, ‘借與’, ‘對論’ 등의 행위가 이들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令是- 構文’에서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2) 가. 初亦言約時相見令是在無殘疾姉妹親男等矣當身乙用良成雙令是遣冒弄已成雙者乙良離異令是齊(6:3)

乙用良(을쓰아):으로써

[처음 언약시에 相見시킨 殘疾(不具病身) 없는 자매나 친아들 등의 당사자로서 혼인시키고 冒弄(欺瞞)으로써 이미 혼인을 이룬 자는 이혼시킨다]

나. 飲酒食肉爲在乙良家長乙杖八十遣僧道乙良同罪還俗令是乎事(12:8)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한 경우에는 家長을 杖八十하고, 승려와 도사는 죄가 같으므로 還俗시킬 일]

다. 犯罪良中依准爲臥乎事段徒罪是去等徒令是遣(27:4)

爲臥乎事段(흐누온 일쯤):하는 일딴은

[범죄에 依準하는 일 따위는 徒役罪이거든 徒役시키고]

라. 充軍者是去等充軍令是乎矣所犯人乙推考執捉到付爲去等(27:4)

[(범인이) 充軍(시킬) 者이거든 充軍시키오되 本犯罪人을 訊問(하여) 체포(하였다고) 보고하거든]

(2)에서 ‘已成雙者’와 ‘僧道’ 그리고 ‘徒罪’와 ‘軍者’는 각각 ‘離異’와 ‘還俗’ 그리고 ‘徒’와 ‘充軍’을 명령하는데 있어 조건이 되고 있다. 때문에 (2)에서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已成雙者’와 ‘僧道’ 그리고 ‘徒罪(人)’과 ‘軍者’가 아닐 경우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이처럼 명령에 있어 조건이 되고 있는 (2)에서 (2가, 나)와 (2다, 라)가 그 구문 구조가 서로 다르다. (2가, 나)는 조건에 있어 명령을 받는 사람의 신분을 중시하였고, (2다, 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중시하였다. 때문에 (2가, 나)에서는 ‘已成雙者’와 ‘僧道’를 ‘乙良’으로써 통합하는 ‘NP乙良 VP令是-’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사람의 상태를 중시한 (2다, 라)는 ‘徒罪’와 ‘軍者’를 ‘是去等’으로써 받고 있는데, 이는 ‘乙良’이 신분을, ‘是去等’이 상태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P是去等 VP令是-’의 구문 구조가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형태의 구문 구조는 현대국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가. 이런 천한 사람은 사귀지 말게.

나. 그대가 산 사람이거든 이리 나오시오.

(3가)에서 ‘천한 사람’은 신분이다. 그러나 (3나)에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놓인 상태이지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지시나 명령에 있어 조건으로 사람이 될 경우에는 신분을 중시하여 조건화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놓인 상태를 중시하여 조건화 할 것인가를 구분한다고 할 것이다.

‘令是-’ 앞의 어휘(VP)는 동일한 의미이되 역할만 다른 어휘(NP)로 둘 수 있다. 이것은 동일 한자어가 국내 유입시에 동사로서, 명사로서 각각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남풍현 1972a, p.11). 이 경우 구문은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된다.⁶²⁾ (4)의 예문

62) 목적어가 하나의 구문에 두 개일 수 있는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의 논란을 피하기 위

을 이처럼 보면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된다. 이때 ‘슴是-’의 앞에 있는 어휘는 동사가 아닌 명사로서 목적어이며 목적격 조사가 표지되지 않은 것이 된다.⁶³⁾

(4) 가. 公事乙負定令是去乙拒逆不順爲拏差使乙犯打爲在乙良杖八十爲乎矣(20:7)

슴是去乙(시기거늘):시키거늘,

[公役을 (백성에게) 부담시키거늘 거역하고 불순하며, 差使를 구타하거들란 杖八十 하오되]

나. 凡官司亦差人爲錢糧乙生徵令是弥公事乙負定令是去乙(20:7)

生徵:강제징수, 令是弥(시기며):시키며

[무릇 官司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金錢과 糧穀을 강제징수시키며, 公役을 부담시키거늘]

다. 因犯罪爲人命殺害爲遣自告者乙良所因之罪乙免令是遣(1:28)

令是遣(시기고):시키고

[(다른) 범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人命을 살해하고 자수한 사람은 죄의 원인이 되는 바를 면죄시키고]

라. 虛事乙被告令是在平人乙無緣故延留三日巴只放還不冬爲在乙良(28:9)

令是在(시기건):시킨, 巴只(ㄷ록):까지

[虛事を 被告시킨 平人을 까닭 없이 3일까지 붙잡아 두고 돌려 보내지 아니 하거들란]

따라서 (4)의 구문 구조는 ‘NP₁乙 NP₂(乙) 슴是-’와 같이 분석될 것이다. 이 구조는 이중 목적격 구문 구조이다. 다만 ‘NP₂’에서 목적격 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이중 목적격 구문은 15세기 이후의 국어에서도 나타난다.

(5) 가. 나를 죠고맏 거슬 주어시든(釋譜 6:44)

하여, 하나의 구문에 목적격을 지닌 명사구가 둘이 놓인 구문에 대해 여기서는 ‘이중 목적격 구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는 목적어의 여부에 관계없이 논항에 목적격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63) 한자어와 국어 서술어가 격조사 없이 이어져 놓였을 때 이들간의 관계가 ‘한자어(VP)+ 국어(VP)’인지, ‘한자어(NP)+ 국어(VP)’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후자의 관계를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국어 서술어가 연이어졌을 때는 격조사의 생략현상이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한자어를 VP로 처리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칫 한자어와 국어 서술어의 관계에서 한자어는 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나. 이제 너를 올흔녁 옷니를 주노니(釋譜 23:7)

다. 침기름 흔 되를 아히를 날마다 머기면 영영히 형역 아니흔느니(痘瘡 上 :7)

따라서 목적격 중출은 우리 국어 고유의 현상임을 알 수 있다.⁶⁴⁾ 그런데 (4)에서 보이는 목적격 중출구문은 속격관계도 아니고 여격이나 처격관계도 아니다.⁶⁵⁾ 그렇다고 어떠한 동심적 구성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4)에서 보이는 목적격 중출구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속격관계나 여격관계 혹은 처격관계 등에 의해 생성되는 목적격 중출은 의도된 목적격 중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목적격 명사구가 목적격이 아닌 다른 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목적격 명사구가 의도적으로 목적격을 선택하여 목적격 중출구문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의 경우는 첫 번째 목적격 명사구에 주어질 수 있는 격은 목적격 하나뿐이다. 따라서 다른 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목적격을 갖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4)에서 보이는 두 번째 목적격 명사구는 타동사 ‘슴是-’의 선행 명사구이므로 당연히 목적격을 지닌다. 다만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 ‘슴是-’간의 결합이 강하여 목적격 조사가 ‘슴是-’의 선행 명사구에 표기된 예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4)에서 보이는 구문은 의도되지 않은 이중 목적격 구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의도되지 않은 이중 목적격 구문은 목적격을 어디서 받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목적격 배당의 문제는 Chomsky의 생성문법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서술어(V)가 배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임홍빈(1987, p.32)은 V의 지배를 받는 NP에 목적격 자질 [+Objective]을 배당하고, 김귀화(1994)는 [-상태성] 동사의 지배를 받

64) 이중 목적격 구문에 대하여는 이익섭 · 임홍빈(1983, pp.144-145), 성광수(1997, 1981, pp.115-127), 김영희(1986, pp.47-77), 서정수(1994, p.599), 김귀화(1994), 유동석(1998, pp.307-337)을 참조하기 바란다.

65) 서정수(1971, pp.277-304), 성광수(1974)는 기저구조에 있는 속격이나 여격 또는 처격이 표면구조에서 이중 목적어로 나타난다고 한다.

66) 여기서 ‘의도되지 않은’이란 뜻은 명사구가 목적격 조사 외에 다른 격조사를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의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굳이 목적격 조사를 표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즉, 명사구가 격조사로서는 오직 목적격 조사만을 지닐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화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어질 수 있는 격조사는 목적격 조사뿐이기 때문이다.

으면 목적격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저에는 속격이나 처격이 있는데 이들이 초점 자질을 받아서 목적어로 유도됨에 의하여 목적격이 중출된다고 말한다. 유동석(1995, p.88)도 통제성 동사는 목적격을 자신이 지배하는 명사구에 배당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4)의 경우에도 목적격은 서술어 ‘승是-’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목적격 명사구는 ‘승是-’에게서 받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목적격 명사구이다. 이 목적어는 두 번째 명사구와 속격이나 처격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기저에서 초점을 받아 목적어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첫 번째 명사구는 목적어가 분명하다. 이 명사구가 지닌 목적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성광수(1997)가 관용구처럼 타동사 역할을 수행하는 동사구 ‘귀를 잡다’로부터 ‘토끼’가 목적격과 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술어 ‘승是-’와 선행 명사구간에 어떠한 다른 성분의 개입도 불허할 정도로 결합이 강하다면 이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서술어 ‘승是-’의 명사구 성분은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승’이 이 구조에서는 명사로서 놓였지만 동사와의 강한 결합이라는 환경에 의해 VP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승’이 원래 동사 혹은 명사 양용이었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때의 ‘NP승是-’ 구조는 ‘VP승是-’처럼 쓰여 첫 번째 명사구에 목적격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이들 사이에는 목적격 조사조차도 개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현상에 한한 것이므로 14세기 후반 국어의 이중 목적격 구문 전반에 대한 분석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중 목적어 구문의 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5)에서 보이는 15세기 이후의 이중 목적격 구문도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격이나 수량어 관계에 의한 목적격 중출구문으로 풀이되는데 반해,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승是- 構文’ 중의 이중 목적격 구문은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여러 유형의 이중 목적격 구문 중에 해당하는 구문이 없다는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라 할 것이다.⁶⁷⁾

67)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이중 목적격 구문을 이심적 구성의 목적격 중출문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大明律直解”는 동심적 구성의 목적격 중출문없이 이심적 구성의 목적격 중출문만을 보

다음은 ‘令是- 構文’에 주어가 놓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 (6)의 예문은 ‘所任官’이 ‘令是- 構文’의 주어로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구문상 ‘令’의 선행 한자어는 분명 VP가 아닌 NP이다. VP라면 ‘錢糧催徵及推問公事果’와 서술어 ‘次知造作令是臥乎’간의 서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令’의 선행 한자어는 명사구이며, 이는 한자어가 격조사를 생략한 채 국어 서술어의 서술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6)의 ‘次知造作’은 목적격 조사를 표지하지 않은 것이 되고 주어만 주격 조사를 표지한 상태가 된다. 주격 조사의 생략이 일반적인 “大明律直解”에서 이처럼 주격 조사가 굳이 표지되고 있음은 이남순(1988, pp.11-37. 1998, p.248)에서 격의 표지에 대해 자신의 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현상으로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⁸⁾

(6) 所任官亦錢糧催徵及推問公事果次知造作令是臥乎功課乙(28:15)

令是臥乎(시기누은):시키느

[所任官이 金錢과 糧穀의 催徵(징수의 채촉) 및 공적인 일의 推問(審問)과 책임자로서 造作(製造工作)시키느 功過(일의 과정)를]

(6)의 구문은 ‘令是-’의 앞에 ‘錢糧催徵’, ‘推問’, ‘公事’ ‘次知造作’ 등이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목적어로서 이의 구문 구조는 ‘NP₁亦 NP₂(乙) 令是-’와 같이 분석된다.

인다는 특징을 지닌 것이 된다.

68) 위와 같은 경우를 격표지의 비실현으로 본 이남순(1988, p.22 1998, pp.219-267)은 문장의 통사구조에 의한 것으로 보고, 대격 성분이 비워두기 적용을 받으면 서술 동사와 먼 거리에 있는 주격 성분은 목적어로 오해되지 않기 위하여 정격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격 성분들이 많거나 전형적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격 표지의 비실현이 억제된다고 말하며, 이는 자신의 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홍종선(1999, pp.106-107)에서도 보이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격조사의 무표지 현상을 형상적인 문장의 구조에서 생략된 성분의 회복 가능성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 (1) 영호가 미애 사랑해.
- (2) [?]영호 미애를 사랑해.
- (3) ^{??}영호 미애 사랑해.

홍종선은 (1)에서 ‘미애’는 동사와 구조상 근접하므로 대격 표지가 쉽게 생략되지만 (2)의 ‘영호’는 동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격의 생략이 덜 자연스러우며, (3)의 경우는 매우 어색하여 ‘영호와 미애를 사랑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회복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한편, ‘令是- 構文’ 중에는 ‘NP₁’의 자리에 처격이 오는 구문 구조인 ‘NP₁良中 NP₂ 乙 令是-’가 있다. 이때 ‘NP₁’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令是-’의 선행어는 목적격조사가 생략된 ‘NP₂’이다.⁶⁹⁾

(7) 가. 三流乙并只決杖一百爲遣配所良中當役四年令是齊(1:21)

并只(다무기):모두

[3種類의 流刑을 모두 決行(執行)하여 杖一白하고, 유배지에서 해당 부역인 4년을 시킨다]

나. 其言可用是去等卽時所司良中行下施行令是教矣(12:4)

令是教矣(시키사덕):시키시되

[그 말이 가히 쓸만한 (것)이거든 즉시 所管 官司에 지시하여 시행시키시되]

(7가)에서 죄수가 ‘役四年刑’을 치러야 할 곳은 ‘流配所’이다. 그리고 (7나)에서 ‘施行令’을 내릴 곳은 그 곳의 ‘官司’이다. 따라서 ‘(流)配所’와 ‘(官)司’는 ‘令是- 構文’에서 명령이 이행될 처소이다.

구문의 내용상 피무고인에게 가한 형벌을 그대로 무고인에게도 시키는 것이 있다. 이때는 ‘NP₁乙 NP₂良中 VP令是-’의 구문 구조를 지닌다.

(8) 가. 被誣之人亦至死罪良中已決爲良在等誣告人乙死罪良中反坐令是齊(22:4)

[被誣告人이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이미 決行하였거든(당하였거든) 誣告人을 死罪에 反坐시킨다]

나. 被誣人乙死罪良中已決爲良在等誣告人乙死罪良中反坐令是齊(22:7)

[被誣告人을 死罪에서(死刑으로) 이미 決行(執行)하였거든 誣告人을 死罪(死刑)에 反坐시킨다]

(8)의 구문에서 使動主와 被使動主는 보이지 않는다. 즉, ‘NP₁’은 被動主로서 使動主의 지시를 받는 被使動主가 아니다. 여기서 ‘NP₁’은 被使動主의 행위를 단지 입기만 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8)에서 被使動主는 使動主의 지시를 받아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被使動主에 오지 않고 제3의 인물인 被動主에게 미친다.

69) ‘當役四年’을 ‘4년간을 徒役시키다’와 같이 한자어로서 풀이를 하게 되면 VP가 되어 ‘令’의 앞에 VP가 놓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관용어구로 본다면 ‘4년간의 徒役’이 되어 NP가 된다. 그럼 이는 격조사와 통합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자어구가 국어에서 관습상 하나의 관용어로 다루어지는 것에 따라 (7)과 같은 경우의 한자어구는 NP로 다룬다.

이와 같은 구문에서는 使動主와 被使動主는 알려진 성분으로서⁷⁰⁾ 굳이 구문에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被動主가 놓인다는 특색을 보인다.

(8)의 예문에서 서술어 ‘令是-’는 타동사이므로 ‘令是-’의 선행 한자어를 NP로 하여 목적어인 것으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令是-構文’에서는 동사로서의 한자어 대신 명사로서의 한자어를 놓아 이에 목적격 조사를 표지하는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⁷¹⁾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때때로 ‘시키다’의 선행 한자어를 이처럼 교체하여 목적격을 두기도 한다.

(9) 가. 왕은 패장에게 칼로써 자결시켰다.

나. 왕은 패장에게 칼로써 자결을 시켰다.

이러한 구문 용법상의 차이 또한 “大明律直解”와 현대국어와의 차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8)의 구문은 현대국어로 보아서는 풀이가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8)의 밑줄친 부분은 오히려 (10)과 같이 하는 것이 현대국어에서는 옳게 보인다. 다만, (10)에서의 ‘良中’은 여격이다.

(10) 誣告人良中死罪乙反坐令是齊

그러나 (8)에서는 (10)과 같은 구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한문본에서 ‘反坐以死’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11) 至死罪所誣之人已決者反坐以死

그런데 한문본에서 비록 ‘死’를 목적어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처격이 오는 NP로 쓰지도 않았다. (11)에서 ‘死’는 허사 ‘以’에 의해 방법 또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⁷²⁾ 즉, ‘死’가 ‘反坐’시키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70) “大明律直解”는 律書이므로 당연히 使動主는 법제정자이고, 被使動主는 법집행자가 되므로 이는 알려진 사실이 된다.

71) 신현숙(1982)은 목적격에 있어서 ‘주의 집중’의 필요성에 따라 ‘-를’이 표지되던가 ‘-φ’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8)의 ‘誣告人乙死罪良中反坐令是齊’는 ‘誣告人乙死罪以反坐令是齊’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는 ‘令是-’가 ‘以’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키다’의 앞에는 조격이 올 수가 없다. ‘시키다’의 앞에는 목적어가 아닌 이상 유정물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令是-’의 앞에는 ‘以’가 쓰일 수가 없다. ‘-에서’는 경우에 따라 처격 이외에 비교격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良中’을 처격이 아닌 비교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12)와 같이 풀이된다.

(12) 무고인을 (여러가지 형벌 중) 사형에 反坐시키다.

(12)의 풀이에 따르면 ‘死罪’는 무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형벌 중 하나가 되며, ‘死罪’는 이들 형벌들을 비교한 결과 선택된 형벌이 된다. 그 선택된 형벌로써 反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8)의 풀이는 무리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현대국어에서도 찾아진다.

(13) 영호를 경희에게 한 행위에서 反坐시키다.

(13)에서의 ‘에서’는 영호의 여러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리키는 비교격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8)의 ‘良中’이 처격이 아닌 비교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서술어 ‘使內-’의 선행어로 목적격이 아닌 조격이 오는 ‘NP以 使內-’의 구문 구조를 지닌 예문을 보기로 한다.

(14) 가. 他衙門吏員以使內如可受糧司吏良中(1:13)

使內如可(브리눅가):부리다가

[다른 兵營의 관리로 부리다가 급료를 받는 軍吏에]

나. 枉法以從重論齊伴倘以使內在人等乙良免罪充軍齊(4:6)

使內在(바리눅견):부리는

[법을 굽힌 예로써 중한 것을 좇아 논죄한다. 관청사환으로서 부리는 사람들은 죄를 면해주고 充軍한다]

다. 並只俗人一例以使內乎矣違者乙良杖一百還俗遠處充軍齊(12:6)

使內乎矣(브리오티):시키옵되

72) ‘以’에는 ‘-에서’라는 의미도 있으나 본문 (11)에서는 ‘-로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 俗人의 한 例로써 시키되 위반하는 자는 杖一白하고 환속시켜 먼 곳에 充軍시킨다]

라. 放賣爲去乃任意以使內只爲准受齊(19:3)

爲去乃(헝거나):하거나, 使內只爲(바리느기삼):부리도록

[放賣하거나 임의로 부리도록 승인하여 받아줄 (일이)다]

(14)의 구문은 使役에 있어서 ‘衙門吏員’, ‘伴尙’, ‘一例’, ‘任意’ 등이 수단·방법으로서 오고 있다. 때문에 이들 명사구에는 조격 조사 ‘以’가 뒤에 놓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조격 조사가 서술어 ‘使內-’와 선행어의 사이에 개재되었다는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와 그의 선행어간에는 결합력이 강하여 다른 논항은 놓일 수 없고 심지어 그 선행어의 격조사도 좀체 놓이지 않는다. 그런데 (14)의 예문에서는 조격 조사가 모두 놓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大明律直解”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 하겠다.

‘令是- 構文’은 구문에 ‘乙用良’을 놓아 ‘NP乙用良 VP令是-’와 같은 구문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이의 구문 구조인 (15)에서 ‘乙用良’은 선행 NP를 자격이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15) 가. 嫡長子孫乙用良傳襲令是齊(2:2)

[嫡系 長子孫을 써서 傳襲시킨다]

나. 親人乙入視養令是族徒流罪是去等親人乙用良行次隨去令是齊(28:5)

令是族(시기며):시키며,

[친근한 사람을 들여보내 돌보도록 시키며, 徒役罪나 流配罪이거든 친근한 사람을 써서 行次에 따라 가게 시킨다]

다. 犯死罪爲在乙良守護女人乙用良入獄看審令是如可產後百日是去等(28:18)

看審:자세히 보아 살핌, 令是如可(시기다가):시키다가

[죽을 죄를 범하거들란 守護女人(產婆)을 써서 옥에 들여보내 看審시키다가 解産 후 100日이거든]

라. 強盜執捉定日例乙用良推尋執捉令是齊(24:4)

[강도를 체포하는데 (있어) 限定日(을 주는) 例를 써서 推尋執着(찾아내어 체포토록) 시킨다]

(15가, 나, 다)에서 ‘乙用良’의 선행 NP인 ‘嫡長子孫’과 ‘親人’ 그리고 ‘守護女人’은

使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율서에 의하여 직접 명령을 받지는 않는다. 이들은 律書를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는다. 즉, (15다)를 예를 들면 ‘入獄看審’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守護女人’이다. 따라서 ‘守護女人’은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乙用良’의 선행 NP는 궁극적으로는 ‘入獄看審’할 사람이지만 그렇게 시키도록 명령을 받는 당사자는 아니다. 때문에 명령을 직접 받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명령의 내용을 수행한다. 이처럼 (15가, 나, 다)는 명령이나 지시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 수단이나 방법이 되고 있다. 한편, (15라)의 경우 ‘強盜執捉定日例’는 ‘推尋執捉’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15)와 같은 使役 構文에서 ‘乙用良’의 ‘NP’가 유정물일 경우 능동성은 없고 수동성을 지닌다. 즉, ‘乙用良’의 ‘NP’가 행위자이기는 하나 명령권자가 아니며 수행자일 뿐이다. 이는 현대국어의 ‘시키다’ 구문에서는 ‘~으로서(명령권자) ~을(행위) 시키다’가 일반적인 유형이라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3. 5. 2. 2 ‘使內- 構文’

‘使內-’는 ‘시키-’의 의미로서 사역의 뜻을 지닌 타동사이다.⁷³⁾ 따라서 이의 구문에서도 ‘使內-’의 선행 명사에는 목적어가 놓이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어가 사역에 있어서의 기간이나 사역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使內-’의 선행어가 목적어이지만 이중 목적격 구문은 아닌 구문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6) 가. 各衛軍人是乎樣以妄稱爲彌軍民役乙使內不冬爲在乙良杖一百遠方良中充軍爲乎事(4:3)

是乎樣以(이온 양으로):~인 양으로, 使內不冬爲在乙良(브리 안들 ㅎ견으란):하지 아니 하거들란

[각 衛의 군인인 양으로 거짓으로 칭하며, 軍民役을 하지 아니 하거들란 杖一百하고 먼 지방에 充軍하올 일]

나. 答五十爲乎矣婚書乙使內不冬爲良置聘財乙受爲在乙良罪同齊(6:2)

使內不冬爲良置(브리 안들 ㅎ야두):쓰지 아니 하여도

[答五十하오되, 혼서를 쓰지 아니 하여도 함을 받았거들란 같은 죄로 (하올 일이)]

73) 남풍현(1974a, p.15)은 ‘使內’가 두 개의 형태소가 합하여 화석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

다. 初亦竊盜以同謀爲如可臨時不行爲良在等其中他人亦行去強盜乙使內次同行不冬爲良置(18:18)

使內次(브릴츠):행하려는 차에

[처음에 절도로써 같이 모의하다가 때에 이르러 행하지 아니 하였거든(하였고),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가서 강도를 행하려는 차에 같이 행동 아니 하여도]

라. 積納爲弥官役使內臥乎田地乙無故陳荒令是脉(5:6)

使內臥乎(브리누온):시키는

[세금을 내며, 官役을 시키는 경작지를 연고도 없이 황폐시키며]

마. 過失殺人例以論遣醫業使內不得爲只爲禁止齋(19:8)

使內不得爲只爲(브리 못질헝기삼):하지 못하도록

[過失殺人的 예로써 論罪하고, 의료업을 하지 못하도록 禁止(시킬 일이다)]

이들 구문들은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목적어이지만 또 다른 목적어가 이들의 앞에 오지 않는 구문으로 이중 목적격 구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는 목적어가 하나만이 놓이는 ‘NP_乙 使內-’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16)의 구문에서도 우리는 서술어 바로 앞에 격조사가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16가, 나, 다)에서 목적격 조사가 서술어 ‘使內-’의 선행 명사구에 표지된 것이다.⁷⁴⁾ 하지만 (16라, 마)에서는 여전히 목적격 조사가 놓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使內- 構文’이 이중 목적격 구문으로서 나타나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이 구문은 ‘NP₁乙 NP₂乙 使內-’의 구조를 가진다.

(17) 가. 唯只杖一百徒一年分加罪爲總計徒罪乙四年不過使內齋(1:21)

分(뽀):뽀, 만, 使內齋(브리제):시켜라

74) 본문 (14) 및 (16)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격조사가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 사이에 놓이므로 이중 주격 구문이나 이중 목적격 구문에서도 서술어와 그의 선행어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4)와 (16)과 같은 경우는 “大明律直解” 전체에 비하여 볼 때 극히 미미한 정도의 예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서술어와 그 선행 명사구는 결합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문의 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겨우 격조사만이 놓일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경우는 의도적인 분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의도적인 분리가 아닌 이상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간에는 결합력이 강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취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는 강한 결합력에 의해 하나의 단위처럼 다루어졌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오직 杖一白하고 徒役 1년만 죄를 더하고, 徒役罪의 총계를 4년이 넘지 못하게 시켜라]

나. 三等流罪乙良置并只杖一百四年乙徒役使內齊(1:21)

乙良置(으란두):일지라도

[3等類(種類)의 流配罪일지라도 모두 杖一白하고 4년을 徒役시켜라]

(17가)는 사역시킬 기간이, (17나)는 사역시킬 내용이 목적어로서 ‘使內-’의 앞에 놓이고 있다. 그리고 사역을 받아 이를 시행할 대상은 刑吏로서 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에서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시킬 기간일 경우 그 기간을 갖는 사역의 명목이 목적어로서 이에 선행하여 놓이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시키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역시킬 기간이 목적어로서 사역의 내용에 앞서 위치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이 구문은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된다.

(17가)에서 4년을 넘지 못하도록 시키는 것은 강제노역의 총 연한이다. 따라서 ‘總計徒罪’가 제한되는 대상이 되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이고 있다. 여기서 ‘四年不過’는 강제노역을 시키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을 강제노역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어 이 또한 목적어가 되고 있다. 한편, (17나)에서는 ‘徒役’이 使役의 내용이므로 목적어가 되고, ‘四年’은 부역의 연한으로서 부역使役에 있어 4년간을 강제노역 시킨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목적어가 된다. 이와 같은 이중 목적격 구문은 이 외에도 다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8) 가. 先犯徒罪年限未滿爲在人乙并以四年分徒役使內乎事(1:21)

[먼저 범죄에 의한 徒役罪의 服役年限이 未滿한 사람을 모두 4년만 徒役시키울 일]

나. 喪家亦齋醮修設乙仍干男女混雜使內齊飲酒食肉爲在乙良家長乙杖八十遣

(12:8)

齋醮:중이나 도사가 단을 설치하고 제를 올림, 修設:연회를 베풀, 仍干(즈출우):말미암아, 使內齊(브리제):시키고(라/다)

[喪家が 齋醮修設을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를 混雜시키고,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게 한 경우에는 家長을 杖八十하고]

(18)의 구문들은 모두 (17)과 동일한 구문 구조를 가지는 이중 목적격 구문이다.

(18가)에서 ‘人’은 ‘四年分徒役’을 使役에 있어 대상이 되고, (18나)에서 ‘齋醮修說’은 ‘男女混雜’을 使役에 있어서 핑계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목적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四年分徒役’ 및 ‘男女混雜’은 타동사 ‘使內-’의 목적어이다. 이들 명사구가 이처럼 목적격을 갖게 되는 것은 ‘令是- 構文’에서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3. 5. 3 被動 表現 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쓰인 서술어에 의한 피동 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어에 의한 피동구문은 아니나 서술어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구문은 볼 수가 있다. 이는 바로 ‘被動 表現 構文’에 해당하는 ‘當爲- 構文’이다. 서술어 ‘當爲-’는 ‘-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의미상 피동을 지니게 된다.⁷⁵⁾ 이와 같은 ‘當爲- 構文’을 보기로 한다.

(19) 가. 人吏乙良每季朔乙當爲已前罪狀并以論決爲遣(1:10)

當爲(당하여):대하여

[아전은 매 계절의 끝달을 당하여(맞아) 이전의 죄상을 아울러 論決하고]

나. 日期乙當爲致祭爲乎矣日期良中失誤爲在乙良杖一百齊(11:2)

[祭祀日을 당하여(맞아) 제사하오되, 祭祀日에 실수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울 일이다)]

(19)는 ‘當爲-’의 선행어에 목적어가 오고 있는 구문이다. 그러므로 (19)의 구문 구조는 ‘NP乙 當爲-’로서 목적어가 서술어에 선행한다. (19)에서 ‘NP乙’의 NP는 ‘當爲-’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구문의 주어는 이 ‘NP乙’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는 ‘NP乙’에 해당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當爲-’가 피동성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19)는 모두 ‘어떠한 날을 당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날짜에 대하여 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보이지 않는 표현법으로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음은 구문이 (19)에서와는 다르게 ‘當爲-’의 선행어가 ‘乙’이 아닌 ‘良中’에 이끄

75) 홍재성(1997, p.131)은 ‘당하다’를 전환기능동사로 보고, 이는 전체가 피동구문과 유사한 해석을 갖게 되는 구문에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리고 있다.⁷⁶⁾

(20) 가. 徒流良中當爲在乙良程途遠近乙計爲各防護所良中發送充軍爲遣(1:11)

當爲在乙良(당하견으란):당하거들란

[徒役이나 流配에 당하거들란 거리(여정)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여 각 방호소에 보내어 充軍하고]

나. 罷職不叙良中當爲在乙良降充百戶遣(1:11)

罷職不叙:과면하고 다시 임용하지 않음

[罷職不叙에 당하거들란 강등하여 百戶에 充用하고]

다. 婦人犯罪爲決杖良中當爲在乙良犯奸罪是去等去衣受刑爲脛(1:20)

[婦인이 범죄하여 杖刑의 판결에 당하거들란 姦淫을 범한 죄이거든 옷을 벗겨 杖刑을 받도록 하며]

따라서 (20) 구문의 구조는 ‘NP良中 當爲-’와 같이 분석된다. (20)에서도 (19)와 마찬가지로 ‘NP良中’에는 ‘當爲-’의 내용이 온다. 그리고 주어는 ‘NP良中’의 NP를 겪게 된다. 따라서 주어는 (19)에서와 같이 ‘NP良中’에 해당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다만, (19)의 경우는 ‘當爲-’의 선행어가 날짜이고, (20)은 죄명이 온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19)는 ‘當爲-’의 선행어가 주어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나 (20)은 주어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다르다.⁷⁷⁾

76) 본문 (20)의 ‘當爲在乙良’에 대해 고정익(1992, p.91)는 ‘당하다’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김두황(1994, p.122)은 ‘-에 해당하다’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77) 다음에서 보이는 ‘當爲- 構文’은 ‘當爲-’가 ‘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고 ‘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九十以上七歲以下人乙教誘犯罪令是在乙良教誘之人乙當爲推罪齊(1:22)

[90세 이상 7세 이하의 사람을 꺾어서 범죄시키거들란 사람을 쫓는 것에 대하여 죄를 신문(하올 일)이다]

(2) 傍人亦受用爲良在等用者乙當爲生徵齊(1:22)

[옆 사람이 받아서 사용하였거든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올 일)이다]

(3) 老小亦自用爲去等老小乙當爲生徵爲乎事(1:22)

[노인과 아이가 스스로 사용하거든 노인과 아이(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올 일]

(4) 杖八十爲遣所犯人乙當爲銀二十兩生徵(2:4)

3. 5. 4 요약

“大明律直解”에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동사 어근에 결합된 서술어에 의한 사동구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사역 구문에는 ‘令是- 構文’과 ‘使內- 構文’이 있었다. 이들 구문의 서술어 ‘令是-’와 ‘使內-’는 그 자체에 사역의 의미가 있어 구문을 사역의 의미로 이끌었다.

명령은 사람에게 이행토록 시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VP令是-’의 선행어가 여격인 구문을 볼 수 있었다. ‘令是- 構文’은 ‘令是-’의 선행 한자어로 VP가 아닌 NP를 둔 것으로 하였을 때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令是- 構文’ 중에는 ‘NP’가 목적격 조사 ‘乙’이 아닌 ‘乙用良’과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乙用良’이 선행 NP를 자격이나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令是-’ 선행어의 앞에 처격어가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令是-’의 선행어는 목적어가 놓였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 조건이 오기도 하였다. 이때는 신분을 중시하였을 때와 그 사람의 상태를 중시하였을 경우로서 구문 구조는 서로 달랐다. 신분을 중시하였을 경우에는 ‘NP是去等 VP令是-’ 구문 구조를 보였고, 사람의 상태를 중시하였

[杖八十하고 그 범인을(에) 대하여 銀 20兩을 강제징수]

(5) 更良犯人乙當爲罰錢乙一半乙生徵沒官齊(7:4)

[다시 범인을(에) 대하여 벌금을(으로써) 절반을 강제징수하여 관에서 몰수(하울 일이다)]

(6) 損壞物數乙用良坐贓罪例以論爲於右人乙當爲生徵納官爲齊(7:10)

右(니미):위

[손괴된 물품의 개수로써 坐贓罪의 例로 論罪하며, 위의 사람을(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 관에 납부한다(하울 일이다)]

(7) 毀食物價乙良畜主乙當爲生徵物主還給齊(16:5)

[파손하거나 먹어치운 물품의 가격은 가축의 주인을(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 물품의 주인에게 돌려준다(돌려줄 일이다)]

따라서 위에 있는 구문은 비록 ‘NP乙 當爲-’라는 구문 구조를 보이나 ‘當爲-’의 뜻이 본문의 ‘當爲-’와 다르므로 이는 ‘被動 表現 構文’에 속하지 않는다.

을 때는 ‘NP乙良 VP令是-’의 구문 구조를 지녔다.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시킬 기간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구문은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되었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 ‘使內-’의 선행어가 조격인 경우도 있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결합된 서술어에 의한 피동문은 없었다. 대신 서술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지녀 구문이 피동의 뜻을 가지게 된 경우는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이때 구문을 피동으로 이끄는 서술어는 ‘當爲-’였다. 被動 구문의 서술어인 ‘當爲-’는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當爲-構文’에서는 주어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받기만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當爲-’의 선행어에는 목적어가 놓였다. 한편, 被動 구문에서는 ‘當爲-’의 선행어가 ‘乙’이 아닌 ‘良中’에 이끌리는 경우도 보였다. 이때는 ‘어떠한 것에 당하다’라는 의미로서 ‘當爲-’의 선행어는 처벌의 내용이 되었다. 지금까지 분석된 ‘使役 · 被動 表現 構文’의 구조를 모두 보이면 (21)에서와 같다.

(21) 1. ‘NP亦中 VP令是-’

명령의 이행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2. ‘NP乙良 VP令是-’

명령하는데 있어 조건이 있는 것으로서, 명령을 받는 사람의 신분을 중시하였을 때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3. ‘NP是去等 VP令是-’

‘乙良’은 신분을 통합하고, ‘是去等’은 상태를 서술하므로 이 구문 구조는 명령을 받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중시하였을 때 사용된다.

4. ‘NP₁乙 NP₂(乙) 令是-’

이중 목적격 구문으로서 ‘NP₂’의 목적격 조사는 수의적인 생략을 보인다.

5. ‘NP₁亦 NP₂(乙) 令是-’

이 구문 구조에서는 주격조사가 표지된다는 특색을 보인다.

6. ‘NP₁良中 NP₂乙 令是-’

처격이 ‘NP₁’의 자리에 온다. 이때 ‘NP₁’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7. ‘NP₁乙 NP₂良中 VP令是-’

무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되 피무고인에게 가한 형벌 그대로 하는 경우에 쓰는 구문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NP₁’은 被使動主의 행위를 단지 입기만

한다. 使動主의 지시에 의해 被使動主가 행위를 하지만 행위의 결과는 제3의 인물인 被動主에게 간다. 구문에는 使動主와 被使動主가 나타나지 않고 被動主만 보이는 특색을 가진다.

8. ‘NP以 使內-’

‘使內-’의 선행어로 수단·방법으로서의 조격이 온다. 이 구조에서는 조격 조사가 표지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9. ‘NP乙用良 VP令是-’

선행 NP를 자격이나 방법으로 제한한다. 명령을 받는 자는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으며, 사람은 명령이나 지시를 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 ‘NP’가 유정물이면 능동성이 없고 대신 수동성을 가진다. 때문에 ‘NP’는 행위자이지만 명령권자가 아닌 수행자가 된다.

10. ‘NP乙 使內-’

이중 목적격이 되지 않는 구문 구조이다.

11. ‘NP₁乙 NP₂乙 使內-’

이중 목적격 구문으로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시킬 기간이면 그 기간을 갖는 사역의 명목이 목적어로서 이에 선행한다.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시키는 내용이면 사역시킬 기간이 목적어로서 사역의 내용 앞에 놓인다.

12. ‘NP乙 當爲-’

‘當爲-’가 피동성 서술어이므로 주어는 ‘NP乙’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는 ‘NP乙’에 해당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13. ‘NP良中 當爲-’

주어는 NP의 내용을 겪으며 ‘NP良中’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3. 6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

3. 6. 1 도입

심문 및 체포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가 律書인만큼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구문이 보인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심문에 관한 내용을 서술어 ‘推問爲-’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체포에 대해서는 서술어 ‘捕捉爲-’로써 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각각 ‘推問爲- 構文’과 ‘捕捉爲-構文’으로 부르기로 한다.

“大明律直解”에서 ‘犯罪 構文’과 ‘處罰 構文’을 이루는 서술어는 모두 ‘爲-’와 결합되어 쓰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大明律直解”는 律書이므로 그 내용은 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구문의 내용도 범죄에 대한 것과 그 처벌이다.

범죄에 대한 내용은 ‘살인하다’, ‘강도질하다’, ‘도둑질하다’, ‘강간하다’ 등과 같이 서술어에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처벌에 대한 내용도 ‘목을 베다’, ‘목을 매다’, ‘강제노역을 시키다’, ‘귀양을 보내다’, ‘매로 치다’ 등에서처럼 서술어에 표시된다. 이러한 서술어에 의한 구문은 律書에서만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국어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문들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의 구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大明律直解”가 보이는 큰 특징이자 다른 국어자료와의 차이가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술어의 의미에 의하여 그 구문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와 처벌의 내용이 서술어에 들어 있으므로 범죄를 기술하는 서술어에 의한 구문은 ‘犯罪 表現 構文’으로, 처벌을 기술하고 있는 서술어에 의한 구문은 ‘處罰 表現 構文’으로 하여 이들의 구문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3. 6. 2 ‘推問爲- 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심문의 의미를 갖는 구문을 ‘推問爲-’로써 나타내고 있다. 심문을 한다면 구문에는 심문을 당할 사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문형이다. 즉, ‘~을 심문

하다’라는 ‘NP乙 推問爲-’의 구문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 구조를 가진 구문은 (1)의 예문으로서 여기서 보이는 ‘人’, ‘罪囚’, ‘違法移囚之罪’들은 목적어로서 ‘推問爲-’의 앞에 선행하고 있다.

(1) 가. 須只起謀引入人乙推問爲乎矣的實爲去等(15:4)

[모름지기 謀議를 일으킨 사람과 접선했던 사람을 鞠問하오되 확실하거든]

나. 凡問囚獄官亦罪囚乙推問爲乎矣(28:7)

[무릇 죄수를 鞠問하는 獄官이 죄수를 訊問하오되]

다. 仰屬官亦違法移囚之罪乙推問齊(28:8)

[所管上司가 법을 어기어 죄수를 옮긴 죄를 신문한다(하울 일이다)]

(1)에서 ‘人’, ‘罪囚’, ‘違法移囚之罪’ 등은 推問의 대상이다. 즉, 죄인이나 죄가 된다. 그러므로 ‘NP乙 推問爲-’의 구문 구조에서는 죄인이나 죄가 ‘推問爲-’에 선행한다.

하지만 ‘推問爲- 構文’에서 추문을 당할 죄인이나 죄만이 ‘推問爲-’의 선행어로 오는 않는다. (2)의 구문에서는 ‘推問爲-’의 선행어가 수단·방법으로서 오고 있다.

(2) 依例推問爲如可因傷逢音致死爲在乙良(28:2)

[예에 의거하여 신문하다가 (고문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마침 致死한 경우에는]

(2)에는 ‘推問爲-’의 선행어인 ‘依例’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구문의 해석상 이의 조사는 수단이나 방법의 조사 조격 ‘以’이다. 따라서 (2)의 구문 구조는 ‘NP以 推問爲-’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구문 구조는 ‘NP以 推問爲-’ 대신 추문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중시하고 있다.

3. 6. 3 ‘捕捉爲-構文’

‘捕捉爲-構文’은 죄인을 체포하는 구문이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는 체포당할 죄인이 목적어로 놓인다.

(3) 가. 初亦他人茂火擊鬪爲弥因差使爲罪人執捉爲如可因此他矣財物乙偷取爲在乙良

(18:8)

茂火(더부러):더불어

[처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격투하며, 差使로 인하여 죄인을 체포하다가 이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나. 罪人捕捉爲乎矣緣故推遣(27:1)

推:다른 일로 핑계함

[죄인을 체포하오되 緣故를 핑계하고]

다. 凡全委罪人乙捕捉人亦承差爲罪人捕捉爲乎矣緣故推遣進去不冬爲脉(27:1)

承差:민간에서 선임하는 지방의 네 종류 吏員의 하나(書吏, 承差, 典吏, 攢典). 예문에서는 출장명령을 받은 承差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무릇 죄인을 체포하는데에 전적으로 위임된 사람이 파견되어 죄인을 체포하오되 연고를 핑계하고 나아가지 아니 하며]

(3가, 나)에서 ‘罪人捕捉’은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두 개의 어휘로서 해석에 있어 ‘罪人’은 목적어이다. 따라서 ‘罪人乙捕捉’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捕捉’의 선행어 ‘罪人’이 목적어가 됨은 (3다)에서 목적격 조사 ‘乙’이 ‘罪人’을 통합하고 있음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므로 ‘捕捉爲-構文’의 구조는 ‘NP乙 捕捉爲-’가 된다. 이 구조에서 목적어 ‘NP’는 체포 당할 죄인이 된다.

반면 “大明律直解”에서는 체포하는 사람이 구문이 놓이는 ‘捕捉爲-構文’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는 ‘NP乙 捕捉爲-’ 구문 구조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지닌 구문이 된다.

(4) 가. 又他人亦捕捉爲去乃罪人已死爲脉(27:5)

[또한 다른 사람이 체포하거나 죄인이 이미 사망하며]

나. 能亦捕捉爲脉他人亦捕捉爲去乃囚人亦已死爲脉(27:5)

能亦(능히):능히

[능히 체포하며, 다른 사람이 체포하거나 죄수가 이미 사망하며]

다. 能亦捕捉爲在乙良免罪齊他人亦捕捉爲脉及罪人已死爲脉(27:6)

[능히 체포하거들란 죄를 사면한다(하올 일이다). 다른 사람이 체포하며 및 죄인이 이미 사망하며]

라. 能亦捕捉爲去乃他人捕捉爲去乃囚人亦已死爲去乃(28:4)

[능히 체포하거나 다른 사람이 체포하거나 죄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4)에서는 捕捉하는 사람이 ‘捕捉爲-’의 앞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구문에서

주어가 된다. 그러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NP亦 捕捉爲-’가 된다. ‘NP乙 捕捉爲-’ 구문 구조는 捕捉당하는 사람이 ‘捕捉爲-’ 앞에 오는 구조이고 ‘NP乙 捕捉爲-’ 구문 구조는 捕捉하는 사람이 ‘捕捉爲-’의 앞에 놓이는 구조가 된다.

3. 6. 4 犯罪・處罰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犯罪’ 表現과 ‘處罰’ 表現 構文을 구성하는 서술어는 ‘爲-’와 결합되어 쓰이는 특징을 보인다. ‘犯罪’ 또는 ‘處罰’ 表現의 構文은 律書에서만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 국어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문들이다. 이것은 “大明律直解”만이 가지는 구문상의 큰 특징이 되며 다른 국어자료와의 차이가 된다.

3. 6. 4. 1 犯罪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犯罪 表現 構文’ 종류에는 ‘殺死爲- 構文’, ‘傷爲-構文’, ‘鬪爲-構文’, ‘行姦爲-構文’, ‘謀爲-構文’, ‘逃爲-構文’, ‘隱匿爲-構文’, ‘隱藏爲-構文’, ‘盜爲-構文’, ‘偷取爲-構文’, ‘冒弄爲-構文’ 등이 있다.

3. 6. 4. 1. 1 ‘殺死爲- 構文’

‘殺死爲-’는 한자어 ‘殺死’에 이두어 ‘爲-’가 결합된 용언으로서 의미는 한자어 뜻 그대로 ‘죽이다’이다. 살인은 범죄 중에서 가장 죄과가 큰 범죄이므로 율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범죄이다. 따라서 律書인 “大明律直解”에서도 살인죄에 대한 구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살인죄를 다룬 구문을 보기로 한다. (5)의 구문은 살인죄를 ‘殺死爲-’라는 용언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5) 凡祖父母父母亦子孫等乙故只殺死爲弥家長亦奴婢乙故只殺死爲遣他人乙殺死爲如

冒弄爲在乙良杖七十徒一年半齊(19:7)

故只(집중):고의로

[무릇 祖父母나 父母가 子孫들을 고의로 살해하며, 가장이 노비를 고의로 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冒弄(欺瞞)한 경우에는 杖七十하여 1년 반을 徒役한다(하올 일이다)]

(5)의 구문을 보면 ‘殺死爲-’의 선행어로 목적어가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子孫’, ‘奴婢’, ‘他人’이 (5) 구문에서 목적어가 된다. (5)의 구문이 살인에 대한 내용이므로 ‘殺死爲-’의 선행어 자리에는 살해를 당할 대상이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구문 구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구문의 구조는 ‘NP乙 殺死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乙’의 선행어인 목적어는 피살자이다. 그러므로 ‘子孫’과 ‘奴婢’는 죽임을 당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과 동일하게 ‘殺死爲-’의 선행어로 놓인 ‘他人’만은 살해 당할 대상이 아니다. 그는 피살자가 아닌 살인자이다.

그러나 ‘殺死爲- 構文’에서 목적어는 피살자도 되고 살인자도 되지는 않는다. 해석에 있어 ‘殺死爲- 構文’의 목적어는 피살자이어야만 한다. (5)의 구문에서 의미상 ‘殺死’의 대상은 ‘他人’이 아니다. 그 대상은 ‘자손, 노비’이다. 이것은 (5)의 한문본을 보면 알 수 있다.

(6) 凡祖父母父母故殺子孫及家長故殺奴婢圖賴人者杖七十徒一年半

따라서 (6)에 의해 (5)를 풀이하면, ‘조부모나 부모가 자손을 살해하고, 가장이 노비를 살해하고는 타인이 살해하였다고 거짓을 고하면…’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他人’이 ‘殺死爲如’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강영(1998, p.45)은 해석에서 ‘他人乙’을 ‘타인을(에게)’로 풀이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살해당하였다고 거짓을 고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他人乙’을 ‘타인에게’로 본다면 그 서술어는 능동형인 ‘殺死爲-’가 아닌 피동형인 ‘良中殺死當爲-’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他人乙’을 ‘타인에게’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5)의 구문을 ‘…타인이 자손이나 노비를 살해하였다고 거짓을 고하면…’으로 보아 ‘他人’을 목적어가 아닌 주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他人’의 격조사로 ‘乙’을 쓰고 있지, ‘亦’을 쓰고 있지 않다. 물론 ‘亦’을 써야할 곳에 ‘乙’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원전의 표기를 불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분석이라 할 수는 없다.

“大明律直解”의 표기가 옳은 것으로 보았을 때, (5)는 구문 그대로는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殺死爲如’의 앞 자리에 또 하나의 목적어구가 생략되었다

고 하였을 경우에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구문 그대로 하여도 해석이 된다. 즉, ‘子孫等奴婢’를 ‘殺死爲-’의 목적어구로 보고 이 ‘子孫等奴婢’가 생략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7) …他人乙(子孫等奴婢乙)殺死爲如…

(7)을 현대국어로 다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8) …타인을 손자 등 노비를 살해하였다고…

(8)의 해석에서 보듯이 ‘他人’은 ‘殺死’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문본대로 ‘殺死’를 행한 행위자의 자격을 지닌다. 반면 ‘손자 등 노비’는 한문본에서와 같이 ‘殺死’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5)의 구문에서 ‘子孫等奴婢’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격조사가 잘못 쓰인 것도 아니며, 서술어가 잘못 쓰인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5)는 이중 목적격 구문에서 하나의 목적격 명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殺死爲-’의 앞에 명사구 하나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략된 명사구는 피살자가 된다.

그렇다면 ‘殺死爲- 構文’의 목적어는 피살자이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지켜짐을 볼 수가 있다. ‘NP乙 殺死爲-’ 구문 구조에서와 같이 목적어가 피살자가 되는 구문은 다음의 구문에서도 볼 수 있다.

(9) 가. 初亦謀殺故殺人爲如可傍人乙誤殺爲在乙良故殺以論齊(19:7)

[처음에 모의살해하거나 고의로 살인하다가(하려다가) 옆 사람을 잘못 살해한 것을 랑 고의살해로 논죄한다(하을 일이다)]

나. 凡祖父母父母及期親尊長外祖父母果夫果夫之祖父母父母果乙謀殺爲乎矣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并只斬齊(19:2)

爲行如(행한다):하였다는

[무릇 祖父母, 父母 및 손위 碁服親, 外祖父母와 남편과 남편의 祖父母, 父母를 殺害陰謀하오되 謀議殺害하였다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斬한다(하을 일이다)]

다. 總麻以上尊長乙謀殺爲乎矣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杖一百遠流遣(19:2)

總麻:五服의 한 種類로 3個月 동안 입는 옷으로서 삶아 익힌 약간 고운 베로 지은 喪服이다.

[總麻服親 이상의 손위 朥服親을 殺害陰謀하오되 謀議殺害하였다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멀리 流配하고]

라. 尊長亦族下乙謀殺爲乎矣謀殺爲行如事狀已發爲在乙良各各故殺罪良中依准爲減二等遣(19:2)

[손위 朥服親이 손아래 친족을 殺害陰謀하오되 謀議殺害하였다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故意殺害罪에 의지하여 건주어 2等を 減輕하고]

그런데 (9)의 구문에서 ‘死’ 字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9라)에서 ‘良中’의 선행 NP는 처소가 아닌 비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처격에 는 서술어에 따라 [+ 비교]의 의미자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⁷⁸⁾ (9라)에서 ‘良中’ 다음에 놓인 VP는 ‘依准爲’이다. 따라서 (9라)의 ‘良中’ 선행어 ‘故殺罪’는 장소가 아니라 ‘依准’되는 비교의 내용이 된다. 그럼 현대국어에서 ‘-에서’의 구문이 비교 의미를 지니는 예를 보기로 한다.

(10) 가. 전학 온 아이는 우선 복장에서 달랐다.

나. 어망은 어부와 농부에서 어부가 사용한다.

(10가)는 전학 온 아이의 복장과 전학생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복장 비교이다. (10나)는 어부와 농부와 의 비교이다. 이처럼 처격 ‘-에서’는 서술어에 따라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9라) 구문의 ‘良中’ 경우 (10)의 ‘-에서’와 동일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9나) 구문에서 공동격 조사⁷⁹⁾ ‘果’가 나열되는 각 명사구마다 모두 표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⁸⁰⁾ 이처럼 나열되는 명사구에 모두 ‘-와/과’를 붙이는 것

78) 비교격에 대해서는 최현배(1937, pp.608-609), 이익섭 · 임흥빈(1983, p.152), 홍운표(1990, pp.221-232), 김석득(1992, pp.335-336), 하길중(1999, pp.797-820)을 참조하기 바란다.

79) ‘-와/과’의 쓰임에는 동반, 비교, 접속 등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명사구의 단순 나열이므로 공동격 조사(=접속격 조사)이다. 학자에 따라 ‘-와/과’를 비교격 조사, 접속격 조사, 연결 조사, 여동격 조사 혹은 보조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고는 ‘-와/과’의 성질을 다루는 논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80) 성광수(1998, p.171)는 ‘果’를 격조사로 보지 않고 접속조사로 보고 있다. 이유는 ‘果’가 ‘果亦’, ‘果乙’로도 쓰이고 있으므로 일반 격조사(‘亦’, ‘乙’)와는 통사구조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은 중세국어에서는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⁸¹⁾

- (11) 가. 金四千斤을 내야 王의와 比丘의와 받즈븍니라(月釋 8:95)
나. 곧 殺과 盜와 姪과 等이니(楞嚴 5:54)
다. 오직 陰魔와 天魔와 썩르미라(楞嚴 9:40)
라. 직물과 괴용과 술위와 물과 좃을(呂氏 36)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열되는 명사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명사에는 ‘-와/과’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⁸²⁾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명사에도 여전히 ‘-와/과’를 붙여 쓰기도 한다.

- (12) 가. 타이타닉호는 선원과 승객과 함께 바다로 사라졌다.
나. 이 나무등치는 너와 나와 사랑을 맹세하던 곳이다.
다. 도대체 영이와 바둑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따라서 마지막 명사에도 ‘-와/과’를 붙이는 것은 아직 그 맥이 살아 있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마지막 명사에 오는 공동격 조사 뒤에 다른 격조사가 붙지는 않는다.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마지막 명사 뒤에 오는 공동격 조사 뒤에 곧 바로 처격 조사나 특수조사 ‘-은/는’이 붙을 수 있다.⁸³⁾ 하지만 이 외의 격조사가 오는 일은 없다.

- (13) 가. 너와 나와의 투쟁은 끝났다.

래서 그는 14세기 국어에서의 共格助詞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81) 중세국어에서 ‘-와’를 나타내는 ‘卜, 入’은 ‘ㄹ’과 모음 뒤의 환경에서는 쓰였고, ‘-과’를 나타내는 ‘ㄷ, 果’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쓰였다(이승재 1995). 그러나 “大明律直解”와 같은 류의 자료에서는 모두 ‘果’로만 나타난다.
- 82) ‘-와/과’에 대해서는 김완진(1970, pp.1-10), 김영희(1974), 이익섭 · 임홍빈(1983, pp.159-161), 남기섭(1990, pp.221-239), 이동석(1999, pp.909-939)을 참조할 것.
- 83) ‘은/는’에 대해서 김민수(1970, p.65)는 두루토(보조사)로 보고, 이는 뜻을 더하는 만큼 무표성이 없고 상대성이나 서술성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문상 어느 자리에나 출현하며, 빠진다면 그 대조의 뜻이 없어진다고 한다. 한편, 서정수(1971, p.294)는 ‘-은/는’이 붙는 논항을 주제어(topic, theme)로 볼 것을 주장한다.

- 나. 닭과 오리와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줄리엣과 로미오와가 사랑을 나누었다.
 라. *경호와 영희와에게 선물을 주었다.
 마. *아버지와 어머니와를 효도관광시켜드렸다.

그런데 (9나)에서는 공동격 조사 뒤에 바로 목적격 조사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대국어에서는 비문이 되는 공동격 조사 뒤에 주격이나 처격 또는 목적격 조사가 붙는 예는 15세기 및 16세기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 (14) 가. 브릅과 비왜 셋그니(杜解 22:3)
 나. 하늘히 츠고 서리와 눈과 하거늘(杜解 1:16)
 다. 兎髯와 아습과애 므스미 平等호야(月釋 10:31)
 라. 턴도와 인도과를 니르오딕(六字 11a)

(14가, 나)에서는 공동격 조사 뒤에 주격 조사 ‘|’가 결합되었고, (14다)에서는 공동격 조사 뒤에 곧바로 처격 조사 ‘애’가 따라 붙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자료의 구문인 (14라)는 공동격 조사 뒤에 처격 조사 ‘를’이 이어서 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중세국어에서는 공동격 조사 뒤에 다른 격조사가 오는 것이 자유로웠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격 조사와 다른 격조사가 함께 쓰이는 것은 중세국어의 잘 알려진 특징으로서 14세기 국어인 “大明律直解”에서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처격 조사나 특수조사 ‘-은/는’이 쓰이는 경우 외에는 마지막 명사에서 공동격 조사를 생략 또는 탈락⁸⁴⁾시키고 다른 격조사를 표지하기 때문에 공동격 조사와 다른 격조사가 함께 어울리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국어식 표기가 공동격 조사와 다른 격조사가 같이 표지되던 동시대에서도 보이고 있다.

- (15) 가. 白鶴과 孔雀과 鸚鵡와 舍利와 迦陵頻伽와 共鳴鳥| 이런 여러 새들히(月釋

84) 국어에서 나열되는 모든 명사에는 공동격 조사가 붙는 것이 원칙적인 표기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명사에서 공동격 조사가 없는 것은 생략 현상 또는 탈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공동격 조사가 탈락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무표지로 다루기로 한다.

7:66)

나. 부텃기와 大菩薩와 辟支弗와 阿羅漢을 供養하야도(月釋 18:46)

다. 袈裟와 바리와 錫杖을 도라보시고(釋譜 23:28b)

이는 15세기에 이미 마지막 명사의 뒤에 오는 공동격 조사의 무표지식 표기가 쓰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 명사 뒤의 공동격 조사가 무표지된 (15가, 나)하고, 공동격 조사와 격조사가 같이 표지된 (14다)의 출전이 같은 자료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공동격 조사와 다른 격조사와의 어울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나열되는 명사군에서 마지막 명사에 주격 조사가 올 경우에 공동격 조사를 무표지하거나 반대로 주격 조사를 무표지할 수 있다.

(16) 가. 줄리엣과 로미오가 사랑을 속삭였다.

나. 줄리엣과 로미오와 사랑을 속삭였다.

이러한 것은 주격 조사인 경우에 한한 것인데 (16나)와 같은 형식은 공동격 조사와 주격 조사가 같이 표지되던 “大明律直解”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17) 가. 叔果姪果亦各處生長爲相知不得爲如乎等用良(1:39)

[숙부와 조카가 딴 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서로 알지 못하던 것으로써]

나. 凡同居人果及各居大功以上親果及外祖父母果外孫果妻之父母果女壻果孫子矣妻果夫矣兄弟果兄弟矣妻果有罪爲去等互相容隱齊(1:37)

[무릇 동거인 및 별거하는大功 이상의 친속 및 외조부모와 외손과 처의 부모와 사위와 손자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가 범죄하거든 서로 숨기는 것을 허용한다(하울 일이다)]

(17나)의 예문은 나열되는 마지막 명사에 공동격 조사 ‘果’는 표지되었으나 주격 조사 ‘亦’은 생략된 구문으로, 공동격 조사와 주격 조사가 같이 표지된 예인 (17가)와 함께 “大明律直解”에서 보이고 있다.⁸⁵⁾ 따라서 나열되는 마지막 명사에서 주격 조사

85) 현대국어에서는 ‘아내가 친정집에를 다녀왔다’와 같이 처격 조사 ‘-에’와 목적격 조사 ‘-를’이 연속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良中’과 ‘乙’이 연속되어져 사용된 예는 없다. 다만 아래 (1)에서처럼 ‘良中’과 ‘乙良’이 연속된 예와, (2)의 구문에서와 같이 ‘亦中’과 ‘乙良’이 연속된 예는 찾아

의 수의적 무표지는 이미 14세기 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⁶⁾

그럼 다시 ‘殺死爲-’의 구문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는 ‘殺死爲-’의 선행어가 피살자가 되는 구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선행어가 살인자가 되는 구문도 있다. 이때는 ‘殺死爲-’의 선행어는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된다.

(18) 子孫等亦已死爲在祖父母父母果奴婢傭人等亦家長矣已死屍體乙用良他人亦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9:7)

그렇다면 (18)과 같은 구문에서는 목적어 대신 주어가 오는 것인가. ‘殺死爲-’가 타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殺死爲- 構文’을 자동사 구문으로 볼 수는 없다. ‘殺死爲- 構文’은 ‘殺死爲-’의 선행어로 주어가 오고 있어도 여전히 타동사 구문이어야 한다. 의미해석에 있어 ‘殺死爲-’의 앞에서 ‘祖父母父母果家長’이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18)에서 ‘殺死爲- 構文’이 타동사 구문임을 알 수가 있다.

(18)을 현대국어로 ‘자손 등이 이미 죽은 조부모나 부모를, 노비나 고용인 등이 이미 죽은 가장의 시체를 써서 타인이 죽었다고 거짓을 고하면…」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풀이하면, ‘자손 등이 이미 죽은 조부모나 부모를, 노비나 고용인 등

진다. 전자는 “大明律直解”에서 두 예가 보이며 후자는 하나의 예만이 보인다.

(1) 가. 回避不得處良中乙良俯伏待候爲齊(13:7)

良中乙良(아히으란):~에설랑, 俯伏: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待候:기다림
[회피 못할 곳에서랑 엎드려서 기다린다]

나. 凡有事時良中乙良財物捧上不冬爲遣(23:3)

[무릇 사건이 있을 때에설랑 재물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2) 遠在爲在妻子息亦中乙良不在告說罪名之限爲乎事(28:16)

亦中乙良(여히으란):~에겔랑

[먼 곳에 所在한 처자식에겔랑 죄명에 한해서 알리며 설명하지 않도록 하올 일]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는 처격 조사 ‘良中’과 목적격 조사 ‘乙’의 결합은 보이지 않고 처격 조사 ‘良中’과 보조사 ‘乙良’의 결합과, 여격 조사 ‘亦中’과 보조사 ‘乙良’의 결합만을 보이고 있어 현대국어와의 조사 용법상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현대국어에서의 조사 ‘-에’와 ‘-를’의 연속에 대해서는 김기혁(1989, pp.5-52. 1995, pp.577-583), 김영희(1999, pp.31-58)를 참조하기 바란다)

86) 마지막 명사에서 공동격 조사 혹은 주격 조사의 무표지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는가에 대해 앞으로 많은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병행하여야 할 연구과제이다.

이 이미 죽은 가장의 시체를 써서 타인이 조부모나 부모, 가장을 죽였다고 거짓을 고하면…’이 된다. 그러므로 (18)은 (19)와 같은 구문으로 재구하여 볼 수 있다.

(19) 子孫等亦已死爲在祖父母父母果奴婢傭人等亦家長矣已死屍體乙用良他人亦祖父母父母果家長乙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

이를 통해 우리는 ‘殺死爲-’의 앞에 목적어구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5)의 ‘他人乙殺死爲如’ 구문의 구조는 ‘NP₁乙 (NP₂乙) 殺(死)爲-’인 것으로 다시 수정하고, (18)의 구문 구조에 대해서는 ‘NP₁亦 (NP₂乙) 殺死爲-’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5)의 구문 구조는 이중 목적격 구문의 구조에서 두 번째의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NP₁亦 (NP₂乙) 殺死爲-’의 구문 구조는 목적어가 생략되므로써, 서술어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3. 6. 4. 1. 2 ‘傷爲-構文’

‘傷爲-構文’은 누구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하였음을 나타내는 범죄구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에는 상해를 입는 대상이 ‘傷爲-’의 앞에 목적어로서 놓이게 된다.

(20) 가. 祖父母及父母果夫矣祖父母及父母等乙打傷爲誣謀殺爲誣(1:4)

[조부모 및 부모와 남편의 조부모 및 부모 등을 毆打致傷하며 殺害를 陰謀하며]

나. 其矣夫及大功同姓四寸已上族長及小功同姓五六寸族長等乙打傷爲誣訴告爲行臥乎事(1:5)

爲行臥乎事(흔넌누운 일):하였는 일

[그의 남편 및 같은 姓의 大功服(을 입는) 4촌 이상의 尊長 및 같은 姓의 小功服(을 입는) 5, 6촌 尊長 등을 毆打致傷하며 고소하였는 일]

다. 姪亦叔乙打傷爲良在乙官司亦推問次良中沙叔是乎所(1:39)

爲良在乙(헛얏겨늘):하였거늘

[조카가 숙부를 毆打致傷하였거늘 官司가 申聞하는 차에야 숙부이온 바]

라. 禁夜人乙打傷爲誣奪去爲在人乙良杖一百齊(14:14)

[야경꾼을 毆打致傷하며, (야경꾼의 물품)을 빼앗아서 간 사람은 杖一百하고]

마. 因此駟官乙打傷爲在乙良各加一等齊(17:4)

[이로 인하여 驛館을 毆打致傷한 경우에는 각 1等を 더하고]

바. 他人肢體乙折傷爲^彌一目乙盲閉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20:2)

[남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하며, 한 쪽 눈을 실명케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3년간 徒役시킨다]

사. 五品以上員亦三品以上員乙打傷爲在乙良凡鬪傷例良中加二等(20:7)

[5품 이상 관원이 3품 이상 관원을 毆打致傷한 경우에는 무릇 싸움에 의한 상해 의례에서 2等を 더한다]

아. 族長亦族下矣妻乙打傷爲在乙良凡人例良中減一等齊(20:15)

[손위의 親屬이 손아랫 親屬의 아내를 毆打致傷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에서 1等を 減한다(하올 일이다)]

자. 妾子亦父矣妾乙打傷爲在乙良又加二等齊(20:15)

[妾의 아들이 아버지의 妾을 毆打致傷한 경우에는 또 2等を 더한다(하올 일이다)]

차. 令是臥乎功課乙監督等事以官吏工匠等乙打傷爲^旡(28:15)

[시키는 일의 과정을 감독 등의 일로 관리 및 장인들을 毆打致傷하며]

이 경우는 ‘누구를 다치게 하다’라는 유형의 구문이 된다. 이의 구문 구조를 보면 ‘NP乙 傷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乙’의 선행어인 목적어는 타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된다.⁸⁷⁾

3. 6. 4. 1. 3 ‘鬪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싸움질 범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이를 ‘鬪爲-’로써 나타내고 있다. 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가)는 패싸움을 말하고, (21나)는 동년배끼리의 싸움질을 말한다.

87) 상해를 뜻하는 구문에는 ‘傷爲-’ 외에 ‘致損爲-’에 의해 이끌어지는 구문도 있다.

(1) 時或重物乙同舉爲加可力不能勝爲同舉人乙致損爲齊(19:7)

이 구문도 신체에 상해를 입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傷爲-構文’과 같은 맥락의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1) 구문의 구문 구조도 ‘傷爲-構文’의 구문 구조와 동일하게 목적어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致損爲-’의 앞에 놓인다.

(2) NP乙 致損爲-

(2)에서 ‘致損’은 재물의 손괴가 아닌 신체의 손상이다. 따라서 목적어는 그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된다.

(21) 가. 初亦他人茂火擊鬪爲弥(18:8)

[처음에 다른 사람을 더불어 격투하며]

나. 凡爭鬪爲如可毆擊殺人爲在乙良(19:5)

[무릇 싸움질하다가 傷害致死한 경우에는]

(21)의 예문에서 두 구문은 모두 ‘鬪爲-’의 선행어에 조사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21)의 구문만으로는 ‘鬪爲-’의 선행어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즉, 어떤 조사가 생략되었는지 없다. 그러나 (21)에 대한 한문본을 보면 이들에게 어떠한 조사가 생략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22) 가. 基本與人鬪毆

나. 凡鬪毆殺人者

(22가)는 (21가)의 한문본이고 (22나)는 (21나)의 한문본이다. 이 한문본에서 (22가)는 주어가 생략되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2나)는 ‘殺人者’가 주어로 나서고 있다. 그럼 (22가)의 ‘與人’은 무엇인가. ‘與人’은 ‘누구와 더불어’ 즉, ‘누구와 꽤를 같이 하여’의 의미이다. 따라서 ‘與人’은 공동격이 된다. 그러므로 (21가)의 ‘他人’에는 공동격 조사 ‘果’가 생략되었고, (21나)의 ‘兄’에게는 주격 조사 ‘亦’이 생략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21가)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고, (21나)에서는 공동격 논항이 생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23) 가. 初亦(他人亦)他人(果)茂火擊鬪爲弥

나. 兄(亦)(兄果)爭鬪爲如可毆擊殺人爲在乙良

(21)을 (23)과 같이 하였을 때 (23가)에서는 ‘他人’이, (23나)에서는 ‘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21)의 구문에서는 이들 반복되는 논항을 하나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삭제는 한문본의 의미에 맞춘 것이다. 그러므로 ‘鬪爲-構文’에서 두 가지의 구문 구조를 찾을 수가 있다. 즉, (23가) 구문의 구문 구조는 ‘NP(果)鬪爲-’가 되고 (23나)의 구문 구조는 ‘NP(亦)鬪爲-’가 된다.

3. 6. 4. 1. 4 ‘行姦爲-構文’

범죄 중에서 큰 범죄 중의 하나는 강간인데 “大明律直解”에서도 이에 대한 문구가

두 군데에서 찾아진다. 이는 서술어 ‘行姦爲-’로써 나타나고 있다.

(24) 가. 凡子矣妻亦虛事以夫矣父亦女矣身乙行姦爲行如妄說爲脉(25:3)

[무릇 아들의 처(며느리)가 거짓으로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가 자신(며느리)의 몸(이 년의 몸)을 강간하였다고 망령되이 말하며]

나. 弟矣妻亦夫矣兄乙虛事以女矣身乙行姦爲行臥乎如妄說爲在乙良斬爲乎事
(25:3)

行臥乎如(헛 닌누온다):하였다고

[동생의 처(弟嫂)가 남편의 형(시아주버니)을 거짓으로 자신(弟嫂)의 몸(이 년의 몸)을 강간하였다고 망령되이 말한 경우에는 斬하올 일]

(24가)와 (24나)에서 보이는 목적어 ‘女’는 피해자가 된다. (24가)에서 비록 거짓이지만 범죄자는 ‘夫矣父’ 즉, 시아버지가 되고 (24나)에서는 ‘夫矣兄’ 즉, 시아주버니가 범죄자이다. 따라서 (24가)에서는 ‘子矣妻’ 즉, 며느리가 피해자이고 (24나)에서는 ‘弟矣妻’ 즉, 弟嫂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므로 (24가)는 ‘NP₁亦 NP₂以 NP₃亦 NP₁乙 行姦爲-’의 구문 구조가 되고, (24나)는 ‘NP₁亦 NP₂乙 NP₃以 NP₁乙 行姦爲-’ 구문 구조가 된다.

먼저, (24가)의 경우를 보자. ‘NP₁’과 ‘NP₃’에 주격 조사 ‘亦’이 공동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서로 다르다. ‘NP₁’은 피해자이고 ‘NP₃’는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즉, ‘NP₃’에 주격 조사 ‘亦’이 왔다 하더라도 ‘NP₁’과 같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자격으로 구문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24나)는 ‘NP₂’와 ‘NP₁’이 목적격 명사구가 되어 이들은 둘 다 목적격 조사 ‘乙’을 표지하고 있다. 하지만 ‘NP₂’는 범죄자이고 ‘NP₁’은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NP₂’에 목적격 조사 ‘乙’이 표지되었어도 ‘NP₂’는 ‘NP₁’처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분을 지닌다. (24가, 나)에서 ‘女’ 字가 오고 있는데 이는 ‘여자의 몸을’이 아닌 ‘이 년의 몸을’으로 해석하여야 옳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强姦 외에 和姦도 범죄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의 경우에도 强姦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어 ‘行姦爲-’로써 나타나고 있다.

(25)에서 보이는 구문이 바로 和姦에 해당되는 구문으로서 이때의 서술어 ‘行姦爲-’는 强姦이 아닌 和姦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5) 가. 妻妾亦他人乙行姦爲如可同謀爲親夫乙殺死爲在乙良車裂處死遣姦夫乙良斬齊
(19:3)

[妻나 妾이 다른 사람을(과) 姦通하다가 같이 謀議하여 친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妻나 妾을) 陵遲處斬하고 간통한 남자는 斬한다(하울 일이다)]

나. 年十二歲以下女乙行姦爲在乙良必于兩相和同是良置强姦例以論齊(25:1)

是良置(이라두):이어도

[연령 12세 이하의 계집을 姦淫한 경우에는 비록 서로가 합의한 것이어도 强姦의 예로써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25가)에서 주어진 ‘妻妾’은 ‘行姦’에 있어서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 즉, ‘妻妾’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고 和姦을 한 것이다. 만일 ‘妻妾’이 强姦을 당한 것이라면 자신을 强姦한 자와 모의하여 妻妾이 자신의 남편을 죽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25가)의 한문본의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26) 其妻妾因姦同謀殺死親夫者

(25가)의 한문본인 (26)에서도 妻妾은 和姦으로 인하여 姦通者和 모의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5가)에서 주어진 ‘妻妾’은 목적어인 ‘他人’과 더불어 姦通을 저지른 범죄자이자 살인자가 된다. 그러므로 (25가)의 ‘行姦爲-構文’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구문이 된다. ‘行姦爲-’는 타동사이므로 ‘行姦爲-’에 선행하는 목적어는 피해자가 되고 주어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5가)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자인 ‘親夫’는 후행하는 절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특이한 구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25가)의 ‘行姦爲-構文’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범죄자로 되는 것은 바로 ‘行姦爲-’의 선행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乙’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和姦이라는 의미에 맞춘다면 ‘行姦爲-’의 선행 명사구에는 목적격 조사 ‘乙’이 아니라 공동공동격 조사 ‘果’가 놓여져야 한다. 하지만 ‘果’가 아닌 ‘乙’을 놓음으로써 이 명사구를 목적어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적어로 오는 타동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없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妻妾과 他人이 和姦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현대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他人’에 공동격 조사 ‘-와’가 놓인 구문이 되어야 한다.

(27) 妻妾이 他人과 和姦하다가...

그런데 이에 맞추어 (25가)의 ‘他人’에 공동격 조사 ‘果’를 놓는다해도 문제가 있다. ‘行姦爲-’가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앞의 (24)와 (25) 구문에서 보았듯이 “大明律直解”에서는 ‘行姦爲-’를 ‘强姦하다’와 ‘和姦(姦通)하다’의 두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强姦하다’는 타동사이지만 ‘和姦(姦通)하다’는 자동사이다. (27)의 경우는 ‘姦通하다’의 의미로 자동사 ‘和姦하다’를 쓰고 있다. 따라서 (25가)의 서술어 ‘行姦爲-’를 자동사로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他人’을 ‘果’로 통합하면 본문의 의미 그대로가 된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行姦爲-’를 용도에 따라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자동사인 ‘和姦(姦通)하다’의 의미인 (25가)에서도 여전히 ‘行姦爲-’의 선행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乙’을 표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5가)의 목적격 조사 표기가 誤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和姦’의 의미를 지닌 (25나)에서도 공동격 조사가 아닌 목적격 조사가 놓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적격 조사 표기의 오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타동사인 ‘强姦’의 의미와 자동사인 ‘和姦(姦通)’의 의미를 하나의 타동사로써 모두 나타냈다는 것은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지는 특이한 용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行姦爲-’가 ‘和姦(姦通)하다’의 의미에서도 타동사로써 쓰였으므로 ‘他人’에는 공동격 조사 ‘果’를 놓지 못한다. 만일 공동격 조사를 쓸 경우 타동사의 선행 명사구는 공동격을 갖게 되어 목적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때문에 타동사는 자신이 서술할 다른 명사구를 다시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5가)는 妻妾이 他人과 함께 다른 누구하고 和姦하는 것이 된다. 이는 集團和姦이 아닌 이상 의미상 성립되지 않는 비문이 된다.

그럼 ‘他人’에게는 공동격 조사 ‘果’의 표지가 생략되었는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명사구에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같이 놓이지 않지만,⁸⁸⁾ “大明律直解”에서는

88) 현대국어에서도 하나의 명사구에 두 개의 격조사가 놓이는 경우가 있다.

- (1) 나와 처녀와의 저녁식사.

그러나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같이 어울리지는 못한다.

- (2) *어머니가 음식과 돈과을 부쳤다.

이는 격조사가 겹쳐 쓰이던 중세시대에 공동격 조사와 속격 조사의 결합보다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결합이 세력면에서 약하여 점차 쇠퇴하다가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결합용법이 소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大明律直解”에서는 현대국어에서와는 반대로 공동격 조사와 속속격 조사를 결합

이러한 용례가 頻出되고 있다. 우리는 (28)의 예문에서 타동사로서 쓰이고 있는 ‘X爲-’ 앞의 명사구에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같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28) 가. 祖父母果父母果夫矣祖父母果父母果乙訴告爲旆(1:5)

[조부모와 부모와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를 고소하며]

나. 官果吏果乙差等以遞減科斷爲臥乎等用良(1:35)

爲臥乎等用良(하느님은 들으시어):하는 바로써

[官과 吏를 차등으로써 차례대로 減하여 죄를 부과하는 바로써]

다. 總麻服制爲在親族妻果母矣甥矣妻果妹子矣妻果乙交嫁爲在乙良杖六十徒一年(6:6)

[總麻服制를 하는 친족(初喪時에 總麻服을 입는 친척)의 처와 어머니의 오라버니(외삼촌)의 처와 누이의 아들(甥姪)의 처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에는 杖六十하고 徒一年]

라. 監臨官亦有官事爲在人矣妻妾果女果乙妻妾爲交嫁爲在乙良杖一百遣(6:6)

[監臨官이 官에 사건관계가 있는 사람의 妻나 妾과 딸을 妻나 妾으로 하여 娶한 것을 杖一百하고]

마. 凡族下亦同姓及異姓總麻兄果姊果乙犯打爲在乙良杖一百(20:12)

[무릇 손아랫 親屬이 같은 성 및 다른 성의 總麻服親屬인 형과 누나를 毆打한 것을 杖一百]

따라서 (25가)의 경우에도 공동격 조사 ‘果’가 생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럼 타동사 앞의 공동격 조사 ‘果’도 명사구 앞의 ‘果’에서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28)의 예문에서 찾아보자.

(28)의 예문들에서 두 가지 공동격 조사 ‘果’를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명사구 사이에 놓여 있는 공동격 조사 ‘果’이고, 또 하나는 서술어 앞에 놓여 있는 공동격 조사 ‘果’이다. 따라서 이들의 구문 내 역할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서술어 앞에 놓여 있는

하여 사용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현대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결합은 찾아진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본다면 중세국어에서 공동격 조사와 속격 조사의 결합이 공동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결합보다 세력이 우세하였다는 가설은 세울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주석 예문 (1)은 정문이 되나 (2)의 예문은 비문이 되는 현상에 대하여 다른 해석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공동격 조사와 속격 조사가 함께 쓰인 예가 “大明律直解”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14세기 중엽의 국어와 현대국어와의 차이인지, 아니면 “大明律直解”와 현대국어와의 차이에 그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적격 조사가 과연 ‘果’가 지니는 본래의 역할인 대등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서술어 앞에 있는 공동격 조사 ‘果’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명사구 앞의 공동격 조사 ‘果’와 서술어 앞의 공동격 조사 ‘果’는 기능이 동일한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들의 기능은 동일한 것 같지가 않다. 공동격 조사는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를 대등연결시켜주는 격조사이다. 따라서 공동격 조사 ‘果’의 뒤에는 자신이 통합하고 있는 명사구와 대등하게 연결될 또 다른 명사구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서술어 앞의 공동격 조사일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경우 공동격 조사의 뒤에는 자신이 통합하고 있는 명사구와 대등연결될 명사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명사구를 대등연결시키지 않는 서술어 앞의 공동격 조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28)의 예문에서 보듯이 서술어 앞의 명사구에 공동격 조사가 놓일 경우는 반드시 이 명사구의 앞에 이와 대등연결될 명사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술어 앞의 공동격 조사는 자신이 통합하고 있는 명사구가 이 명사구의 앞에 있는 다른 명사구와 대등연결되는 명사구임을 표시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격 조사 ‘果’에 두 가지의 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하나는 본래의 쓰임 그대로 대등연결로서의 용법과, 다른 하나는 대등연결되는 명사구의 표시라는 용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어조차 공동격 조사가 놓이는 다음의 예에서 더욱 뒷받침된다.

(29) 가. 四品五品官矣父母果妻果子孫果門蔭承襲良中進叱有在子孫果亦犯罪爲去等(1:11)

進叱有在(낫드리잇견):나아간

[4품이나 5품관의 부모와 처와 자손과 門蔭承襲에 나아간 자손이 범죄하거든]

나. 凡流罪良中犯爲在乙良妻妾乙并以發送爲乎矣父果祖果子孫果亦隨去向入在乙良聽許齊(1:16)

[무릇 流配罪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경우에는 처첩을 아울러 보내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손이 좇아갈 생각들었거들란 받아들여 허락한다(하올 일이다)]

다. 犯時良中知不得爲在乙良凡人例乙依准論爲乎矣叔果姪果亦各處生長爲相知不得爲如乎等用良(1:39)

[범행할 때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에 의지하여 건주어 論罪하오되 숙부와 조카가 딴 곳에서 태어나 자라서 서로 알지 못하던 것으로]

라. 嫡母果繼母果養母果親母果亦吾父乙殺害爲弥(22:10)

[嫡母와 繼母와 養母와 親母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며]

현대국어에서는 주어에 주격 조사 외에는 어떠한 다른 격조사도 같이 쓰일 수가 없다. 그러나 (29)에서는 주격 조사가 공동격 조사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는 (29가)의 경우 ‘子孫’이 ‘父母, 妻, 子孫’과 대등연결되어 있어서 ‘門蔭承襲’에 의하여 관직에 나가 있는 ‘子孫’은 그 뒤에 자신과 대등연결될 명사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격 조사 ‘果’를 표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9나)는 공동격 조사 ‘果’의 통합을 받는 ‘子孫’이 ‘父’와 ‘祖’하고 대등연결 관계에 놓여 있고, (29다)는 ‘叔’에 ‘姪’이 대등연결되었다. 그리고 (29라)는 공동격 조사 ‘果’의 통합을 받는 ‘親母’가 ‘嫡母, 繼母, 養母’와 대등연결되었다.

그러므로 명사구 앞의 목적격 조사는 대등연결을 나타내고, 서술어 앞의 목적격 조사는 이의 명사구가 앞의 명사구와 대등연결되지는 명사구임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법은 현대국어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30) 영이와 강아지와 함께 달린다.

(30) 예문에서 ‘강아지’의 뒤에는 대등연결될 명사구가 없다. 하지만 ‘강아지’는 공동격 조사 ‘-와’의 통합을 받고 있다. 반면, ‘강아지’와 동일하게 공동격 조사를 지니고 있는 ‘영이’는 자신과 대등연결될 명사구인 ‘강아지’가 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강아지’의 뒤에 놓인 공동격 조사 ‘-와’는 ‘강아지’가 ‘영이’와 대등연결되는 논항임을 표시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 이러한 대등연결 논항 표지기능의 공동격 조사 ‘果’를 기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31)의 예문에서 ‘國賓’은 의미상 목적격 조사 ‘乙’이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선행 논항들이 공동격 조사 ‘果’에 의해 나열되고 있음에 의해 공동격 조사 ‘果’를 표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1) 議者謂所犯情狀乙議論爲奏本內良中親族果故舊果有果賢良果才能果尊貴果國賓果爲等如八議良中應當爲在人矣所犯之事乙實封申聞爲(1:8)

爲等如(헛트리):통틀어

[議(罪)라고 이르는 것은 犯罪情狀을 논의하여 奏本 안에 親族과 故舊과 有功과 賢良과 才能과 尊貴와 國賓을 통틀어 八議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죄사실을 實封(한 문서로써) 申

聞하며]

(31)에서 공동격 조사 ‘果’의 통합을 받고 있는 ‘國賓’은 비록 목적격 조사 ‘乙’이 없어도 의미상 목적어이다. 이는 ‘國賓’의 뒤에 오는 ‘爲等如’로써 알 수가 있다.

(31)의 구문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번역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본문에 쓰인 격조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의 격조사를 현대국어에 맞게 고쳐서 해석하는 것이다.

(31)에서 ‘爲等如’는 ‘통틀어’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그 앞에는 목적격 조사 또는 공동격 조사 모두 놓일 수가 있다. 따라서 (31)의 구문은 ‘國賓’을 통합하고 있는 공동격 조사 그대로 하여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國賓’을 목적어로 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國賓’을 공동격 조사로써 해석하였을 때와 목적격 조사로써 해석하였을 때하고는 의미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國賓’을 공동격 조사로써 해석하여 보자. ‘國賓’을 구문 그대로 공동격으로 하여 풀이하면 實封文書에 들어갈 내용은 ‘親族, 故舊, 有功, 賢良, 才能, 尊貴, 國賓’과 ‘八議’가 되어 모두 15가지가 된다. 이는 ‘…國賓과 통틀어 八議’라고 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八議’는 ‘親族, 故舊, 有功, 賢良, 才能, 尊貴, 國賓’ 외에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親族, 故舊, 有功, 賢良, 才能, 尊貴, 國賓’ 자체가 이미 ‘八議’의 내용이다.⁸⁹⁾ 따라서 (31)은 ‘國賓’을 통합하는 격조사를 공동격 조사가 아닌 목적격 조사로 하여야 제대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즉, ‘親族, 故舊, 有功, 賢良, 才能, 尊貴, 國賓을 통틀어 八議’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명사구가 대등연결되면 서술어 앞의 명사구에도 기계적으로 공동격 조사가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반면에 명사구가 대등연결되지 않으면 서술어의 바로 앞 명사구에도 공동격 조사가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25가)에서 명사구 ‘妻妾’과 ‘他人’ 사이에 ‘妻妾’을 통합하는 공동격 조사 ‘果’가 놓여 있지 않으므로 자연 ‘他人’에게도 공동격 조사 ‘果’가 놓이지 않는다.

89) ‘八議’는 ‘議親, 議故, 議功, 議賢, 議能, 議勤, 議貴, 議賓’로서 “大明律直解”에서는 ‘議勤’이 빠져 있다. “大明律直解”가 ‘大明律’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용을 가감한 점에 비루어 ‘八議’에서도 그 내용에 손을 봐 ‘議勤’을 뺐다고 볼 수도 있으나, “大明律直解” 吏讀本에서 이들을 나열하면서도 그대로 ‘八議’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議勤’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議勤’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면 ‘八議’가 아닌 ‘七議’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나 ‘八議’라고 한 점으로 보아 ‘議勤’은 번역과정에서 실수로 탈락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것이다. 즉, 이것은 ‘他人’에게는 공동격 조사 ‘果’가 놓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25가)의 구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그래도 ‘他人’에 공동격 조사 ‘果’를 상정한다면 우리는 ‘妻妾’에도 ‘果’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만 ‘他人’이 ‘妻妾’과 대등연결되는 명사구가 되어 ‘他人’이 이를 표지할 ‘果’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妻妾’의 뒤에는 ‘果亦’이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격조사가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중세국어 및 “大明律直解”의 용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앞의 (31)에서와 같이 ‘果亦’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25가)의 구문은 ‘妻妾’과 대등연결될 또 다른 명사구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妻妾’에 공동격 조사 ‘果’ 외에 주격 조사 ‘亦’이 놓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동격 조사 ‘果’만이 놓인 명사구가 최소한 하나 이상이 ‘妻妾’의 앞에 놓일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25가)의 뜻과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他人’은 공동격 조사 ‘果’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25가)를 그대로 놓고 분석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자가 ‘行姦爲-’하였을 경우에는 ‘强姦’이 되고 여자가 ‘行姦爲-’하였을 경우에는 ‘和姦(姦通)’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25가)에서 비록 ‘妻妾’이 ‘他人’에게 ‘行姦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미는 ‘和姦(姦通)’이므로 목적어인 ‘他人’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妻妾’과 공범자가 된다. 이때 ‘妻妾’에 주격이 놓이고 있으므로 해석상 ‘妻妾’이 ‘姦通’에 있어서 능동적 범죄자이고 ‘他人’이 수동적 범죄자가 된다.

따라서 살인에 있어서도 ‘妻妾’은 주범이고 ‘他人’은 종범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남자에게 더 큰 형벌인 陵遲處死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는 남자인 ‘他人’이 주범이라기보다는 남자이기에 내려지는 형벌인 것으로 보인다.

서술어 ‘行姦爲-’가 ‘和姦’으로 쓰인 예는 (25나)에서도 보인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25나)의 구문에서 서술어 ‘行姦爲-’가 ‘和姦’의 의미로써 쓰였음은 ‘必于兩相和同是良置’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女’는 (25가)의 ‘他人’에서와 마찬가지로 ‘和姦’을 저지른 범죄자가 된다. 다만 ‘女’가 12세 이하라는 이유에 의하여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그녀와 ‘和姦’을 한 성인 남성에게만 형벌이 주어지고 있다.

여기서 해석상 주의할 점은 ‘女’가 서술어 ‘行姦爲-’에 있어서 피해자로서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女’는 (25가)의 ‘他人’의 경우처럼 ‘和姦’을 범한 범죄자의 신분

으로서 처벌에 있어 남성에게만 형벌이 주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25나)는 ‘(NP₁亦) NP₂乙 行姦爲-’의 구문 구조로서 (25가)와 동일한 구문 구조라 할 것이다. 이 구문 구조에서 서술어 ‘行姦爲-’가 ‘和姦’ 또는 ‘姦通’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大明律直解”는 强姦이나 和姦 또는 姦通에 있어서 이들을 서술어 ‘行姦爲-’ 하나로써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⁹⁰⁾

3. 6. 4. 1. 5 ‘謀爲-構文’

범죄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모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의도 법률에서는 위법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모의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大明律直解”가 읊서이므로 이러한 범죄모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범죄모의에 대한 구문을 ‘謀爲-’로써 서술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문을 보기로 한다.

(32) 初亦竊盜以同謀爲如可臨時不行爲良在等(18:18)

[처음에 절도로써 같이 모의하다가 때에 이르러 행하지 아니 하였거든]

(32)에서 ‘竊盜以同謀爲如可’를 현대국어로 풀이하면 ‘도둑질을 공모하다가’로 볼 수 있다. 때문에 ‘竊盜’가 목적어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竊盜’가 목적어로 쓰이지 않는다. “大明律直解”에서는 ‘竊盜’에 목적격 조사 ‘乙’이 아닌 향방격

90) “大明律直解”에서도 ‘强姦’이나 ‘和姦’이란 용어가 쓰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姦通’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通姦’이라는 말이 보인다.

(1) 凡和姦乙良杖八十遣(25:1)

[무릇 和姦은 杖八十하고]

(2) 其和姦爲姦(25:1)

[그 和姦하며]

(3) 强姦例以論齊(25:1)

[강간의 예로써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4) 通姦令是果許接主人等(25:1)

令是果(시기과):시킨 이와

[通姦시킨 이와 許接하게 한(간통자들이 붙어 있도록 한) (許接)주인 등]

조사 ‘以’가 조사로 온다. 이는 ‘竊盜’를 목적어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竊盜를 謀議하다가’가 아닌 ‘竊盜로 謀議하다가’로 풀이해야 한다. 즉, ‘도둑질하는 쪽으로 공모하다가’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32)의 구문 구조는 ‘NP以 謀爲-’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謀爲-’의 앞에는 목적어가 놓이지 않았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謀爲-’ 앞에 목적어가 놓이고 있다.

(33) 가. 加二等坐罪移處爲乎矣所犯罪乙回避作謀爲去等(2:4)

[2등을 더하여 坐罪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되 범죄한 바를 회피하려 모의하거든]

나. 凡強盜乙同謀爲行如可臨時不行爲良置(18:17)

爲行如可(흐너다가):하였다가

[무릇 강도를 같이 謀議하였다가 때에 이르러 행하지 아니 하여도]

(33)의 구문에서 모의하는 것은 강도질로서 ‘強盜’가 모의하는 목적이 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모의하다’라는 일반적 문형과 일치하는 구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3)의 구문 구조는 (32)와는 다르게 ‘NP乙 謀爲-’가 된다.

한편, ‘謀爲-構文’에는 ‘謀爲-’의 앞에 조사가 아닌 서술어가 오는 경우도 찾아진다. 즉, 절이 놓이는 것이다.

(34) 妻妾亦他人乙行姦爲如可同謀爲親父乙殺死爲在乙良(19:3)

[妻나 妾이 다른 사람(과) 姦通하다가 같이 謀議하여 친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34)에서 서술어 ‘爲如加’가 절을 이끌며 ‘謀爲-’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爲如加’는 전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34)의 구문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일이 전환되어 예정에 없던 범죄를 ‘謀爲-’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전환되어 다른 일(범죄)을 모의하게 되는 구문의 구조는 ‘NP亦 謀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는 모의하는 일의 내용이 아니다. 이 ‘NP’는 모의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필요에 의해 모의를 유발시키는 전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34)의 구문에서 다른 필요가 되는 것은 ‘보다 은밀한 通姦’이고, 이의 방해요소가 되는 ‘親父의 제거’가 이에 의해 유발되는 또 다른 범죄가 된다.

그런데 ‘謀爲-構文’에 있어서 ‘謀爲-’의 앞에 절이 놓이는 구문은 (34) 외에도 또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문은 ‘NP亦 謀爲-’ 구문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35) 가. 社稷乙危亡爲只爲作謀爲行臥乎事(1:4)

[사직을 危亡하도록 모의하였는 일]

나. 宗廟山陵宮闕等乙毀亡爲只爲作謀爲行臥乎事(1:4)

[宗廟, 山陵, 宮闕 등을 毀亡하도록 모의하였는 일]

(35)의 구문에서 ‘謀爲-’의 앞에 놓인 절은 어떠한 일을 모의함에 있어 그 의도가 되고 있다. 즉, 모의의 목적이 절의 형태로 ‘謀爲-’ 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謀爲-’ 앞의 절이 전환으로 작용하는 ‘NP亦 謀爲-’ 구문 구조와는 다른 구문 구조로서 ‘VP爲只爲 謀爲-’가 된다.

이 구조에서 ‘VP’는 모의하는 목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 ‘爲只爲’에 의해 서술되어 ‘謀爲-’의 앞에 놓이고 있다.

이 외에 ‘~할 듯 모의하다가’라는 의미의 ‘謀爲-構文’도 “大明律直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구문은 ‘謀爲-’의 선행어를 ‘爲乎爲’로 서술한다.

(36) 가. 總麻同姓八寸已上親屬乙殺害爲乎爲作謀爲旡(1:5)

[總麻服親屬의 같은 姓 8촌 이상의 親屬을 살해하려고 모의하며]

나. 婚禮乙已定遣更良佗人乙改嫁爲乎爲生謀爲如可未成婚者杖七十已成婚爲在乙良杖八十濟(6:2)

[혼례를 이미 정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에게) 고쳐서 시집보내려고 모의획책하다가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사람은 杖七十하고, 이미 혼인한 경우에는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爲乎爲’는 ‘하려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문의 내용은 모의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한 두 가지의 경우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36)의 예문에서도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문의 구조는 ‘VP爲乎爲 謀爲-’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모의한 대로 일을 행하던 안하던 간에 범죄가 성립된다. 다만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과가 더 크다.

3. 6. 4. 1. 6 ‘逃爲-構文’

범죄 중에는 도주가 있다. 일반적인 도주라면 죄가 되지 않으나, 죄수가 도주하거나 자리를 지켜야 할 자가 도주를 한다면 도주 자체가 범죄행위가 된다.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구문은 ‘逃爲-’ 서술어로서 이루어진다. 이를 “大明律直解”에서 찾아보면 (37)의 예문과 같다.

(37) 가.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遣現告爲罪人亦逃亡爲詵(1:28)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알아 여기고 (자진) 신고하며, 죄인이 도망하며]

나. 凡二人亦同犯罪爲一人亦在逃爲有去乙(1:36)

[무릇 두 사람이 같이 범죄하여 한 사람이 도망하였거늘]

라. 夫亦逃亡爲去等三年之內良中不告官司(6:9)

[남편이 도망하거든 3년 안에 관사에 신고 아니하고]

마. 京中侍衛軍人在逃爲在乙初犯是去等杖九十遣(14:12)

[서울에 있는 侍衛軍인이 도망하거늘 初犯이거든 杖九十하고]

사. 罪人亦逃走爲去乙差使亦追逐殺之爲詵(27:2)

爲去乙(ㅎ거늘):~하거늘

[죄인이 도주하거늘 差使가 추격하여 살해하며]

아. 囚人亦在逃爲詵自己乙害傷爲詵(28:4)

[죄수가 도망하며, 자기를 상해하며]

(37)의 구문에서 서술어 ‘逃爲-’의 주어가 되는 죄인들은 공통되게 도주의 죄를 범한 자이다. 이는 도주구문 중에서 ‘누가 도망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형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문 구조는 ‘NP亦 逃爲-’가 된다.

이번에는 ‘~에(서) 도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을 보기로 한다. 도주에는 도주하는 장소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구문 구조에서 ‘逃爲-’의 앞에 도주하는 장소나 집단이 처격으로 놓이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38)의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구문이다.⁹¹⁾

91) ‘逃爲-構文’에서는 ‘逃爲-’의 앞에 장소가 오되 처격으로서가 아닌 향격으로서 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1)의 예문에서 장소인 ‘他處’는 처격이 아닌 향격이다. 즉, ‘他處’는 도망하여 간 장소이지 도망을 시도한 장소가 아니다.

(1) 他處逃去爲在乙良初犯是去等杖一百(14:12)

따라서 (1) 구문의 ‘他處’에는 처격 조사 ‘良中’이 아닌 향격 조사 ‘以’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옳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NP-로’가 이동 동사류와 결합하면 [지향점]이나 [방향], [경로] 등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김지은 1998, p.374).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향격 조사 ‘以’가 현대국어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 (2) 가. 各司以定差使人等置廻還事意進告不冬爲遣他事乙干預爲在乙良(3:5)
 나. 官司以支給合當爲在衣糧乙官吏等亦趣便以減給爲在乙良監守自盜以論爲乎事(4:9)
 다. 遲晚搜檢乙仍于錢物偷取倉庫以隱出爲去乙看審不冬爲在乙良減盜罪二等齊(7:8)
 라. 官司印信冊字成給爲良在等他處以來到興利人等矣接處姓名行狀字號及持音物色等乙(10:1)
 마. 官司以定付爲乎牙人及頭目人等亦容私隱置爲在乙良答五十黜去爲乎事(10:1)
 바. 官司以造給斛斗秤尺乙中間良中增減爲在乙良杖六十遣(10:2)
 사. 國家以不得已擢用爲起復爲在隱不拘此律(12:7)
 아. 侍衛人員亦被罪申聞令是在乙良本司以先亦軍器乙收取爲乎矣違者乙良同罪論齊(13:5)
 자. 凡軍人等亦官司以出給爲乎衣甲鎗刀旗幟等叱軍器乙私音丁放賣爲在乙良杖一百遠處充軍齊(14:8)
 차. 凡官司以牧養爲臥乎馬騾驢等畜孳生乙得爲十日內報官司爲乎矣(16:6)
 카. 凡國家以軍馬抄送事果報緊急軍事以鎮邊防禦所了(17:5)
 타. 凡用謀冒弄官司以取財物爲在乙良並只贓數乙計爲(18:12)
 파. 凡京外大小軍官亦私丁諸君宰相各處以許送爲乎金銀衣服錢物等乙捧受不冬爲乎矣(23:6)
 하. 有能補捉現告爲在乙官司以銀五十兩乙給賞齊(24:6)

(2) 구문들에서 향격 조사 ‘以’는 도달점을 가리키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한결같이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以’를 ‘~로’가 아닌 ‘~에서’로 풀이해야 현대국어에 맞는다. 이는 향격 조사 ‘以’가 처격 조사 ‘良中’과 같은 용법을 지녔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상당히 특이한 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 향격 조사 ‘以’가 언제나 출발점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현대국어에서처럼 도달점이 어디인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향격 조사 ‘로’는 그 목표보다는 방향을 표시하는 의미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홍윤표 1991, p.97).

- (3) 가. 佗處以渡越爲在乙良杖九十齊(15:1)
 나. 牛馬乙良他處以過越爲在乙良杖七十齊(15:2)
 다. 駙官亦官司文書乙逢受爲去處乙錯書佗處以錯去所致以限日違錯爲在乙良減二等遣(17:4)

(3)에서 향격 조사 ‘以’는 현대국어에서처럼 도달점이 어디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때문에 ‘~에서 ~로’와 같이 출발점과 도달할 방향을 처격 조사 ‘良中’과 향격 조사 ‘以’로써 하나의 구문에 나타내기도 한다.

- (4) 가. 若防護所良中中門以出去不冬爲旅(15:1)
 나. 津渡良中官渡以出去不冬爲遣(15:1)

(4)의 구문에서 ‘以’는 분명 도달점의 방향을 가리키는 향격 조사이다. 그렇다면 ‘以’가 도달점 방향이 아닌 출발점을 나타낼 때, 본시 출발점을 나타내는 ‘良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대국어에서 주어의 처소는 ‘NP에서’에 의하여 표시된다(이남순 1987b, p.594). 따라서 ‘에서’의 이두어인 ‘良中’은 주어가

(38) 가. 犯罪事發後良中在逃爲在乙良衆證明白爲去等(1:37)

[범죄사건이 발각된 후에 도망한 경우에는 여러 증거가 명백하거든]

나. 隨駕行次良中逃亡爲在乙良杖一百遣(13:3)

[친자의 수레를 수행하는 행차에서 도망하거들란 杖一百하고]

다. 京中侍衛軍人在逃爲在乙初犯是去等杖九十遣(14:12)

[서울에 있는 侍衛軍人이 도망하거늘 初犯이거든 杖九十하고]

라. 中路在逃爲在乙良並只罪同齊(27:3)

[中途中에 도망하거들란 모두 죄가 같다]

(38가, 다, 라)에서는 장소가 처격으로서 ‘逃爲-’의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38나)에서는 ‘隨駕行次’라는 집단이 처격이다. 따라서 처격 조사 ‘良中’이 이들 명사구를 통

있는 곳을 통합하므로 곧 주어가 나서는 출발점을 가리킨다. 그런데 (5)의 예문에서는 ‘以’가 출발점을 가리키고 있다.

(5) 가. 所犯人矣家良中罪條乙書寫排門諭衆爲乎矣三年乙造心不犯爲去沙官司以排門浮取爲齊(2:4)

나. 凡關門外御道及御橋良中侍衛官軍及引從官軍等隱左右兩傍以行走爲遣(13:3)

우리는 (5)의 구문에서 ‘家良中’과 ‘官司以’ 그리고 ‘御橋良中’과 ‘兩傍以’에서 쓰임상 어떠한 차이도 찾을 수가 없다. 즉, ‘家’와 ‘御橋’에는 ‘良中’만이 쓰여야 하는 이유와 ‘官司’와 ‘兩傍’에는 ‘以’만이 놓여야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없다. 이는 ‘以’가 먼저 쓰이고 ‘良中’이 나중에 쓰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凡犯罪人亦事發爲官司以差人執捉令是去乙他人亦家內良中隱藏告捉不冬爲旆(27:6)

(6)에서 ‘以’는 도달 방향이 아닌 출발점을 가리킨다. 그런데 ‘官司’에 ‘以’가 놓이는 이유와 ‘家內’에 ‘良中’이 놓이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곧 적어도 “大明律直解”의 시기에는 처격 조사 ‘良中’과 향격 조사 ‘以’의 의미역할이 분명하게 분업화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NP₁以 NP₂良中’의 구문 구조를 가진 (7)에서조차 그 역할이 서로 뒤바뀌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7) 賊人亦自外以獄中良中直入爲囚人乙劫奪爲去乙對敵不得被奪令是在乙良免罪齊(27:5)

(7)에서 ‘以’는 도달 방향이 아닌 출발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外’는 도착해야 할 곳이 아닌 출발하는 곳이다. 반면 ‘獄中’은 출발점이 되지 않고 도착 방향이 되고 있다. 때문에 ‘獄中’은 ‘賊人’이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

이처럼 “大明律直解”에서는 처격 조사 ‘良中’과 향격 조사 ‘以’의 쓰임이 혼동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처격 조사와 향격 조사의 의미역할이 아직 분명하게 분업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한다. 다만 ‘在’ 다음에는 처격 조사 ‘良中’이 생략되었다. 이를 구문 구조로 보면 ‘NP良中 逃爲-’가 된다. 처격 조사 ‘良中’은 장소 외에 집단하고도 통합하므로 ‘NP良中 逃爲-’ 구문 구조에서 ‘NP’에 장소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놓인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逃爲-’의 앞에 명사논항이 아닌 절이 오는 구문을 찾을 수 있다.

(39) 가. 雜匠人及工樂諸雜人等亦避役逃亡爲在乙良(4:8)

[雜匠人 및 工樂 모든 雜人 등이 賦役을 회피하려 도망하거들란]

나. 妻亦夫乙背叛在逃爲在乙良杖一百遣(6:9)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여 도망하거들란 杖一百하고]

다. 奴婢亦背主逃亡爲在乙良杖八十(6:9)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거들란 杖八十]

라. 城郭乙棄去逃亡爲在乙良斬爲乎事(14:8)

[성곽을 버리고 도망하거들란 斬하을 일]

마. 財物乙棄置逃走爲去乙物主亦追逐次因此拒逆爲在乙良(18:7)

爲去乙(ㅎ거늘):~하거늘

[재물을 버려두고 도주하거늘 물건의 주인이 추격하는 차에 이로 인하여 거역하거들랑]

바. 私音丁囚人乙隱密放出逃亡爲在乙良(18:7)

[사사로이 죄수를 은밀히 내보내어서 도망한 경우에는]

사. 罪囚亦破獄逃走爲在乙良並只斬齊(27:2)

[죄수가 옥을 부수고 도주하거들란 모두 斬한다(하을 일이다)]

아. 着枷着鎖乙趣便以脫去越獄在逃爲在乙良(27:2)

[착용된 형틀과 착용된 쇠사슬을 자의로 벗어버리고 감옥을 뛰어넘어 도망하거들랑]

자. 囚人亦獄內良中自反在逃爲在乙良(27:5)

[죄수가 감옥 안에서 몸소 (옥을) 뒤집고(옥을 파괴하고) 도망하거들란]

(39)에서 ‘逃爲-’의 앞에는 ‘~하고’ 의미의 ‘爲遣’이 생략되었다. (39)는 ‘-爲遣’이 이끄는 내용에 의해 도주라는 범죄를 실행하게 된다. 즉, ‘-爲遣’은 도주를 하기 전에 행한 행위로서 도주하는데 있어 사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39)에서는 ‘-爲遣’이 도주하기 전에 범죄자가 행한 일을 서술하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S(爲遣) 逃爲-’로 분석

할 수 있다. 이 구문 구조에서 ‘S’는 그 자체로서 이미 죄가 성립되고 있다.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도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3. 6. 4. 1. 7 ‘隱匿爲-構文’과 ‘隱藏爲-構文’

무엇을 숨기다라는 서술어에는 ‘隱匿’과 ‘隱藏’이 있다. ‘隱匿’은 숨긴 상태에 중점을 두고, ‘隱藏’은 숨기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미상 차이이다. 그러나 이 둘은 숨기다라는 기본 의미에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숨기는 행위는 자신의 물건이라면 전혀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거나, 남의 물건이라면 이는 범죄가 된다. 여기서 다루는 ‘隱匿’과 ‘隱藏’은 후자에 해당되는 일로서 범죄행위가 된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 나타나는 ‘隱匿爲-構文’과 ‘隱藏爲-構文’은 일종의 범죄구문이 된다. 여기서는 범죄구문이 되는 ‘隱匿爲-構文’과 ‘隱藏爲-構文’의 구문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3. 6. 4. 1. 7. 1 ‘隱匿爲-構文’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숨겨 놓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隱匿爲-’로써 나타나고 있다. 구문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내용이므로 이에 숨기는 장소가 처벌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즉, ‘~에 숨기다’라는 문형을 기본적인 구문 구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0)에서 보는 ‘隱匿爲-構文’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의 구문에는 처벌이 ‘隱匿爲-’의 앞에 놓이고 있다.

(40) 가. 他人乙用良代告令是於法良中互相隱匿爲良音可(1:27)

爲良音可(ㅎ암죽):함직하다

[다른 사람으로써 대신 자수시키며, 법률상에서 서로 隱匿함직한]

나. 凡公貼乙中間隱匿爲於本封乙開破爲在乙良(17:2)

[무릇 公貼(공문)을 중간에서 은닉하며 本封(봉해진 공문원본)을 뜯어서 파손하거들랑]

(40가)의 ‘於法’은 ‘법률상’이라는 의미이므로 무형의 처소가 된다. 따라서 ‘於法良中’은 ‘법률상에서’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40가)의 구문은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법률에 숨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40나)는 어떠한 행위

의 도중에 숨기다라는 의미로서 역시 ‘中間’이 무형의 처소가 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良中’이 생략되었다. 이 구문은 ‘알려지고 싶지 않은 공문을 도중에서 숨기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러한 (40)의 구문들은 숨길 장소가 구문에 오는 것이므로 구문 구조는 ‘NP良中 隱匿爲-’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良中’의 선행 NP는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숨길 장소가 된다. (40)의 예문에서는 NP가 무형의 장소로 오고 있다.

다음은 ‘隱匿爲-’의 앞에 명사구가 아닌 절이 오는 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41)의 예문은 ‘隱匿爲-’ 앞에 절이 놓이고 있다. 이때 이 절은 숨길 장소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내용이 된다.

(41) 가. 祖父母及父母喪乙聞遣隱匿不發爲齊(1:5)

[조부모 및 부모의 초상을 듣고 隱匿하여 發靱을 아니 하며]

나. 其矣夫喪乙聞遣隱匿不發爲齊(1:6)

[그의 남편의 초상을 듣고 隱匿하여 發靱을 아니 하며]

다. 萬一互相知想遣隱匿爲(14:3)

[만일 서로가 알아차리고 隱匿하여]

(41가, 나)에서 숨기는 것은 ‘初喪’이다. 따라서 ‘初喪’이 들어 있는 절은 바로 숨기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41)의 구문에서 ‘隱’의 뒤에 바로 ‘不發爲齊’가 따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의 ‘爲-’는 ‘隱’과 결합하는 ‘爲-’가 아니다. 이 ‘爲-’는 ‘不發’과 결합한다. 따라서 ‘發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隱匿’의 뒤에는 ‘爲-’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1다)에서 ‘隱匿’의 뒤에 ‘爲-’가 표기되었음에서도 드러난다. (41다)는 숨기는 내용은 ‘隱匿’의 선행절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숨긴 행위는 나타나 있다. 이 점이 (41가, 나)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1)의 구문은 ‘隱匿’의 선행절이 ‘隱匿’하는 행위에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것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하겠다. 따라서 ‘隱匿’의 내용이나 행위가 선행절에 들어 있는 (41)의 구문에 대한 구문 구조는 ‘S爲遣 隱匿爲-’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 6. 4. 1. 7. 2 ‘隱藏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숨기는 일로 인한 범죄구문이 ‘隱匿爲-構文’ 외에 ‘隱藏爲-’라는 구문이 있다. 그런데 ‘隱藏爲-構文’은 의미와 구문 구조면에서 ‘隱匿爲-構文’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隱藏爲-構文’의 실례를 보기로 한다.

(42) 가. 罪人乙隱藏爲跡引誘出送爲跡糧米乙供給爲跡(1:31)

[죄인을 은닉하며, 인도하여 탈출케 하며, 음식을 공급하며]

나. 圖像乙隱藏爲跡夜聚曉散佯修善事眩惑人民爲在乙良(11:4)

[畫像을 감춰두며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고 착한 일을 닮는 체 하여 사람을
眩惑하거들란]

다. 私家良中妖書乙隱藏爲納官不冬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爲乎事(18:3)

[개인집에서 妖書를 숨기고 官에 바치지 아니 하거들란 杖一百하여 徒三年하을 일]

라. 其謀反大逆果謀叛果彼國間諜人乙隱藏爲彌(22:10)

[그 謀反 및 大逆과 謀叛과 저쪽 나라의 간첩을 隱匿하며]

(42)의 구문은 ‘隱藏爲-’의 앞에 목적어가 놓이고 있는 구문으로서 이 목적어는 숨기고자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42)의 예문은 목적어인 ‘罪人, 圖像, 妖書, 彼國間諜人’을 숨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구문이다. 그러므로 ‘~을 숨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들 구문의 구조는 ‘NP乙 隱藏爲-’와 같이 된다.

“大明律直解”에서는 ‘隱藏’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만이 오지는 않는다. 다음의 구문에서는 특수조사 ‘-은’의 강조형으로 볼 수 있는 ‘乙良’이 ‘隱藏’의 선행어를 통합하고 있다.

(43) 故只好馬乙良隱藏爲遣(17:4)

[고의로 좋은 말은 숨기고]

하지만 (43)의 구문도 (42)의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숨기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43)은 ‘좋은 말일랑 숨기고’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숨겨 놓은 상태가 아닌 숨긴 행위를 말하고 있다. 때문에 (43)은 ‘좋은 말을 숨긴 행위’가 범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乙良’의 선행어가 숨길 대상이 되는 (43) 구문의 구조는 ‘NP乙良 隱藏爲-’로 된다.

그럼, ‘隱藏爲-’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가 온 ‘NP乙 隱藏爲-’ 구문 구조와 ‘隱藏爲-’의 선행어에 특수조사가 온 ‘NP乙良 隱藏爲-’ 구문 구조와는 의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김용석(1979)은 목적격 조사 ‘-을’은 ‘동작 대상의 명시’를 나타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현숙(1982)은 청자의 영역에 새로 도입하거나 대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화제의 초점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집중이 필요할 때는 ‘-을/를’ 조사가 온

다고 설명한다.⁹²⁾ 반면 특수조사 ‘-은/는’은 ‘한정’이나 ‘전체’의 의미를 가진다.⁹³⁾ 따라서 ‘NP乙 隱藏爲-’ 구문 구조에서는 숨기는 대상을 중시하여 부각시킨 것이고, ‘NP乙良 隱藏爲-’ 구문 구조는 숨기는 대상을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2)의 구문에서는 ‘罪人, 圖像, 妖書, 彼國間諜人’을 숨겼음을 중시하여 서술한 것이 되고, (43)의 구문에서는 여러 말 중에서 ‘好馬’에 한정하여 숨겼음을 서술한 것이 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隱匿爲-構文’은 숨겨 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 ‘隱藏爲-構文’은 숨기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때문에 (42)에서는 ‘罪人, 圖像, 妖書, 彼國間諜人’ 등을 숨겨 놓은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罪人, 圖像, 妖書, 彼國間諜人’ 등을 숨기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43)에서는 ‘好馬’를 숨겨 놓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好馬’를 숨기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42)와 (43)의 ‘隱藏爲-構文’에서는 숨겨 놓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 처소가 오지 않고 있다. 반대로 ‘隱匿爲-構文’인 (40), (41)에서는 숨기는 행위를 직접 받는 대상이 오지 않는다. (40)의 ‘法’은 숨길 장소이고, (41)의 ‘初喪’은 숨긴 상태에서의 숨긴 내용이 된다. 이는 바로 ‘隱匿’과 ‘隱藏’의 의미 차이에 의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隱藏爲-構文’에도 ‘隱匿爲-構文’의 ‘NP良中 隱匿爲-’ 구문 구조와 마찬가지로 ‘隱藏爲-’의 선행어가 처소가 되는 구문도 있다. 비록 (44)의 예문에서 ‘隱藏爲-’의 선행 명사구에 처격 조사가 보이지 않으나 이에겐 처격 조사 ‘良中’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다음 (44)의 구문에서는 ‘隱藏’과 결합되는 ‘爲-’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구문의 의미상 ‘爲遣’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隱藏’ 뒤의 ‘不告爲齊’와 ‘不報爲弥’에서 보이는 ‘爲-’는 ‘不告’나 ‘不報’와 결합된 ‘爲-’이다. 따라서 ‘隱藏’과 결합된 ‘爲-’는 아니다.

(44) 가. 他人乙家內隱藏不告爲齊他戶有賦役爲在乙(4:2)

92) 목적격 조사 ‘-을’에 대하여 신현숙(1982)은 아래에서와 같이 ‘-은’과 ‘-을’에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 (1) ‘Φ’: 화자와 청자의 공통영역속에 있는 정보를 전하므로 주의집중이 필요없음을 뜻한다.
- (2) ‘-을’: 청자의 영역에 새로 도입하거나 대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화제의 초점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집중’이 필요함을 뜻한다.
- (3) ‘-은’: 대조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항목의 대조이므로 /-을/보다는 초점이 흐리다.

93) 특수조사 ‘-은’에 대해서는 박승빈(1937, pp.77-78), 성광수(1977), 홍사만(1976), 채완(1976, pp.93-113), 유구상(1983), 이남순(198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을 집안에 숨기고 신고 아니 하며, 다른 戶口에 賦役 있거늘]

나. 各居爲如親屬乙戶內隱藏不報爲旆(4:2)

[따로 살던 친속을 집안에 숨기고 알리지 아니 하며]

(44)의 구문에 처격을 지닌 명사구가 놓이는 것은 ‘隱藏爲-構文’도 ‘隱匿爲-構文’과 마찬가지로 ‘숨기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이다. 따라서 그 구문 구조는 처격 조사 ‘良中’이 서술어의 선행 명사구를 통합하는 ‘NP良中 隱藏爲-’와 같이 된다.

다만, ‘NP良中 隱匿爲-’ 구문 구조에서 처격인 명사구는 숨겨 놓은 장소를 말함에 비해 ‘NP良中 隱藏爲-’ 구문 구조는 숨기는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말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문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 ‘隱藏爲-’와 ‘隱匿爲-’의 의미차이에 의한 것이다.

‘隱藏爲-構文’에는 숨기는 행위에 있어 이에 앞서는 어떠한 행위가 서술어 ‘隱藏爲-’의 앞에 놓이는 구문 구조도 있다. (45)의 구문이 바로 이러한 구문으로서 숨기는 행위에 앞선 다른 행위가 구문에 놓이고 있다.

(45) 가. 珠玉寶貨等物叱段入手隱藏爲遣持去不冬爲良置(18:18)

[珠玉寶貨 등의 財物은 손에 넣어 감추고 (아직) 가지고 가지 아니 하여도]

나. 又僞鈔乙搜捉爲隱藏爲遣納官不冬爲在乙良杖一百遠流齊(24:3)

[또한 위조 지폐를 搜查索出하여 隱匿着服하고 官에 납입 아니 한 경우에는 杖一百 하여 먼 곳으로 流配한다(하을 일이다)]

(45)의 구문에서 보이는 서술어 ‘隱藏爲-’ 앞의 ‘入手’, ‘搜捉’은 숨기는 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숨기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45) 구문의 의미는 숨기는 행위를 하기 전의 행위와 숨긴 행위가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서 나타난다. 때문에 ‘入手’, ‘搜捉’의 뒤에는 의미상 ‘爲良’ 정도의 서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良) 隱藏爲-’와 같이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를 서술하는 서술어로 ‘爲遣’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미 ‘爲遣’이 ‘隱藏’의 뒤에 쓰이고 있으므로 ‘~하고 ~하고’가 되어 구문의 해석상 ‘爲遣’이 맞지 않는다. (45)의 구문은 연속된 행위이므로 ‘爲遣’이 ‘隱藏爲-’의 선행 명사구를 서술하게 되면 의미에 있어 선행 행위와 숨기는 행위가 서로 끊어져서 별도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처벌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행위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데 ‘入手’, ‘搜捉’은 그 행위 자체로서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숨기는 행위를 해야지만 비

로소 범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爲遣’을 상정하게 되면 구문의 의미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러나 (46)에서 보는 예문은 이와는 반대로 ‘爲良’이 아닌 ‘爲遣’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구문이다.

(46) 知情隱藏爲在乙良罪同杖一百(14:12)

[情況을 알고 隱匿한 경우에는 같은 죄로 杖一百]

(46)에서 ‘知情’은⁹⁴⁾ 숨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숨기는 행위와 연속적이지 않다. ‘知情’과 ‘隱藏’은 의미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숨기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숨기는 것이다. 따라서 (45)에서는 물건의 수취라는 행위가 행해졌으므로 연속적으로 숨기는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46)에서의 ‘知情’에는 어떠한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46)의 구문은 연속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구문이 아니다. 즉, ‘知情’과 ‘隱藏’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것이다. 다만, ‘知情’이 ‘隱藏’에 앞선 행위로서 ‘隱藏’이라는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되고 있다. 그러나 숨기는 행위와 일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知情’은 ‘爲良’이 아닌 ‘爲遣’이 서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知情’은 그 자체로서도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爲遣’이 생략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느 명사구를 ‘爲遣’이 서술할 경우 그 명사구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46)에서 ‘知情’은 ‘隱藏’에 앞서서 처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만일 그 사정을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⁹⁵⁾ 실제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사정을 몰랐을 경우 처벌을 면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7) 가. 不知者不坐罪爲乎事(2:3)

나. 不知者不坐罪爲乎事(2:9)

다. 不知者不坐罪(6:2)

라. 不知者不坐罪齊(6:4)

따라서 (46)의 구문은 ‘爲遣’이 생략된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의

94) ‘知情’은 한문 구성이나 “大明律直解”에서는 한문구성과 우리말 구성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므로, 이두어와 함께 다룬다.

95) 은닉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유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범인을 도와주는 예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구문 구조는 ‘NP(爲遣) 隱藏爲-’가 된다. 이처럼 범죄구문의 하나를 이루는 ‘隱匿爲-構文’과 ‘隱藏爲-構文’은 ‘숨기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구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⁶⁾

3. 6. 4. 1. 8 ‘盜爲-構文’과 ‘偷取爲-構文’

훔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서술어 ‘盜爲-’와 ‘偷取爲-’는 범죄구문을 이룬다.⁹⁷⁾

“大明律直解”에서는 ‘훔치다’라는 서술어로서 ‘盜爲-’와 ‘偷取爲-’ 두 가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훔치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盜爲-構文’은 누가 훔치는 죄를 지었는가를 보이고, ‘偷取爲-構文’은 무엇을 훔쳤는가를 서술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서술형태의 구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구문 구조를 보기로 한다.

3. 6. 4. 1. 8. 1 ‘盜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盜爲-’의 선행어로 훔친 행위를 한 자가 놓이고 있다. 따라서 그 자가 훔치는 죄를 범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해보인다.

96) 숨김으로써 범죄가 되는 구문을 이끄는 서술어로는 위의 ‘隱匿爲-’와 ‘隱藏爲-’ 외에도 “大明律直解”에서는 ‘隱置爲-’가 보이고 있다.

· 雜物色等乙隱置斜用爲跡(7:4)
[잡물건 등을 숨겨두고 (맘대로) 써 버리며]

위의 ‘隱置爲-構文’은 숨기는 대상이 목적어로 놓이고 있어 이의 구문 구조는 ‘隱藏爲-構文’중 ‘NP乙隱藏(爲-)’의 구문 구조와 동일하게 분석된다.

97)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에는 竊盜 외에 強盜가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 ‘強盜爲-’에 의한 구문이 단지 두 예에 불과하다.

(1) 族長亦族下處良中強盜爲良在等(18:11)
[尊長이 손아랫 親屬의 처소에서 강도하였거든]
(2) 族下亦族長處良中強盜爲良在等凡人例以論齊(18:11)
[손아랫 親屬이 尊長의 처소에서 강도하였거든 일반인의 例로써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이들 구문은 ‘NP良中 強盜爲-’라는 구문 구조를 보이는데 두 개의 예문 밖에는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48) 招引爲有如外人乙良凡盜爲從例乙用良杖七十爲乎事(1:33)

[끌어들였다는 외부 사람은 모두 중범되는 도둑의 예로써 杖七十하울 일]

(48)의 구문은 ‘招引된 外人’이 절도의 죄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서술어로서는 훔치다라는 의미인 ‘盜爲-’가 쓰였으나 그 선행어는 훔친 물건이 아닌 훔친 행위를 한 자가 오고 있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乙良 盜爲-’가 된다.

‘NP乙良 盜爲-’ 구문 구조에서 ‘NP’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다. 따라서 ‘NP乙良 盜爲-’ 구문 구조는 ‘NP는 도둑질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구조라 할 수 있다.

한편, ‘盜爲-構文’ 중에서 ‘누구가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신분이 드러나 있는 어떤 자가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49) 軍人亦爲盜爲去等必干刺字乙免爲在乃(18:9-10)

[군인이 도둑질하거든 비록 刺字刑을 면한 것이나]

이처럼 ‘盜爲-’의 선행어를 ‘亦爲’로 통합하고 있는 위 구문의 구문 구조는 ‘NP亦 爲盜爲-’로 할 수 있다. 여기서 ‘NP’는 도둑질을 행한 사람이 된다. (49)에서 ‘盜爲-’의 선행어 ‘軍人’은 (48)의 ‘盜爲-’ 선행어와 마찬가지로 절도의 죄를 지은 자이다. 그렇다면 ‘NP乙良 盜爲-’ 구문 구조와 ‘NP亦 爲盜爲-’ 구문 구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NP乙良 盜爲-’ 구문 구조에서는 도둑질이 이미 행하여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도둑질을 한 ‘NP’를 도둑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NP’를 이제부터 도둑으로 취급토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반면 ‘NP亦 爲盜爲-’ 구문 구조는 ‘아무개가 도둑질을 하였다’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서의 ‘NP’는 도둑질의 이행과 동시에 도둑으로 취급된다.

3. 6. 4. 1. 8. 2 ‘偷取爲-構文’

‘偷取爲-’가 쓰인 구문은 무엇을 훔쳤는가를 서술하므로 당연히 ‘偷取爲-’의 앞에는 목적어가 놓인다. 그럼 (50)에 제시된 예문에서 이를 확인해보자.

(50) 가. 凡十惡殺人果官物乙偷取爲旅(1:17)

[무릇 十惡이나 살해를 한 사람과 官物을 도둑질하여 취득하며]

- 나. 强盜竊盜等亦他矣財物乙偷取爲遣(1:29)
 等亦(이여):-들이
 [강도나 절도범들이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여 취득하고]
- 다. 其餘官物等乙偷取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8:3)
 [그 나머지 官物들을 도둑질하여 취득하거들란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라. 各司文書乙偷取爲在乙良杖一百鉞面齊(18:3)
 [각 관사의 문서를 훔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杖一百하고 鉞面(刺字刑)한다(하올 일이다)]
- 마. 玉帛犧牲饌具等物乙偷取爲在乙良並只斬齊(18:3)
 [폐물로 바치는 옥과 비단, 제물로 쓰는 짐승, 제물을 담는 그릇 등의 物品을 훔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모두 斬한다(하올 일이다)]
- 바. 國禁軍器乙偷取爲在乙良(18:4)
 [나라에서 금하는 군사용 무기를 훔쳐서 취득하거들란]
- 사. 五貫乙偷取爲去等皆杖一百爲乎事(18:5)
 [5貫을 훔쳐서 취득하거든 모두 杖一百하올 일]
- 아. 一十貫乙偷取爲去等並只杖九十爲乎事(18:6)
 [10貫을 훔쳐서 취득하거든 모두 杖九十하올 일]
- 자. 因此他矣財物乙偷取爲在乙良(18:8)
 [이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훔쳐서 취득하거들란]

(50)의 예문들은 모두 한결같이 ‘偷取爲-’의 앞에 목적어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목적어들은 모두가 훔쳐진 것들이다. 따라서 (50)과 같은 구문은 ‘~을 훔치다’라는 구문 구조인 ‘NP乙 偷取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는 훔쳐진 물건이 된다. 따라서 이 구문 구조는 훔치는 행위보다는 훔쳐진 물건에 중심을 두고 서술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⁹⁸⁾

98) “大明律直解”에서는 도둑질 범죄 구문을 생성하는 서술어로 ‘盜爲-’와 ‘偷取爲-’ 외에 ‘潛取爲-’도 사용하고 있다.

· 他矣財物乙潛取爲臥乎所爲竊取皆名爲盜齊(18:18)
 [남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바 竊取가 되므로 모두 도둑이라 이름한다(하올 일이다)]

‘슬쩍 빼돌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潛取爲-’는 도둑질 행위에 대하여 그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도둑질하더라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구문에서 ‘潛取爲-’의

“大明律直解”에서는 ‘偷取爲-構文’이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NP 乙 偷取爲-’ 구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구문 구조에서 예외적인 구문인 (51)는 ‘偷取爲-’의 선행 명사구에 주격이 주어진 경우와, 조격 그리고 처격이 주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의 구문 구조도 각각 ‘NP亦 偷取爲-’, ‘NP(以[?]) 偷取爲-’, ‘NP(良中[?]) 偷取爲-’로 분석된다.

(51) 가. 侍衛軍人等亦互相偷取用使內在乙良(18:4)

用使內在乙良(써 버린 경우)¹ 써 버린 경우에는

[侍衛軍人들이 서로 훔쳐서 취득하여 써 버린 경우에는]

나. 回避爲要偷取爲在乙良從重論齊(18:3)

[회피하려고 훔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重한 것을 좇아 논죄한다(하울 일이다)]

다. 自中互相偷取爲在乙良減凡盜罪一等遣刺字安徐爲乎事(18:11)

[저희들 중에 서로 훔쳐서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 도둑질의 죄에서 1等を 덜고, 刺字刑은 아니 하울 일]

(51)에서 ‘侍衛軍人’은 주어로서, ‘要’는 수단으로서 구문에 놓였고 ‘自中’은 절도가 행해진 곳(집단)이라는 의미로서 구문에 놓였다. (51나, 다)에서는 격조사가 보이지 않으나 이들은 문맥상 ‘以’와 ‘良中’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NP亦 偷取爲-’, ‘NP(以[?]) 偷取爲-’, ‘NP(良中[?]) 偷取爲-’와 같은 구문 구조가 ‘偷取爲-構文’에서 단 한 차례씩만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서 생략된 격조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추정으로 그친다. 다만, ‘偷取爲-構文’은 ‘NP乙 偷取爲-’ 구문 구조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偷取爲-構文’에서는 ‘NP乙 偷取爲-’ 구문 구조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6. 4. 1. 9 ‘冒弄爲-構文’

범죄 중에는 위증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大明律直解”에서는 ‘冒弄爲-’라는 서술어 로써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의 ‘冒弄爲-’는 법률 집행관을 우롱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冒弄爲-構文’은 범죄구문의 한 종류가 된다.

한편, ‘冒弄爲-’는 위증의 의미 외에 거짓된 행위나 속임수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일 때도 역시 범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범죄구문이 된다.

¹ 선행어는 도둑질한 물건이 된다.

그럼 “大明律直解”에서 보이고 있는 ‘冒弄爲-構文’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52)의 예문은 ‘冒弄爲-’가 속임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2) 가. 守掌官吏亦冒弄借貸爲在乙良贓物數乙計爲(7:13)

[守掌官吏(간수하는 관리)가 欺瞞하여 借貸한 경우에는 贓物의 數額을 계산하여]

나. 監臨員亦其矣冒弄借貸彼此用下物色乙(7:11)

用下: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監臨員이 그의 欺瞞으로써 借貸하여 저쪽 이쪽에 비용으로 지출한 물건을]

다. 右人等亦冒弄充立爲在乙良斬齊(13:7)

[위의 사람들이 欺瞞으로 充立한 경우에는(充當되어 세워진 것들랑) 斬한다(하올 일이다)]

(52)의 예문에서 ‘爲-’가 생략된 ‘冒弄爲-構文’은 속임수를 쓰는 행위자가 주어로 나서고 있다. 즉, (52가)에서는 ‘守掌官吏’가 속임수를 쓴 자이고, (52나)에서는 ‘監臨員’이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52다)는 ‘右人等’이 속인 자이다. 이와 같은 구문은 ‘NP亦 冒弄爲-’와 같이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는 속임수나 위증을 한 자가 주어로 올 경우에 보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冒弄爲-’의 선행어로 주어가 아닌 조격어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53)의 예문에서 ‘(冒)弄爲-’는 위증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53) 時或他人矣屍體乙妄作親屬矣屍體是如爲犯人乙誣弄爲在乙良(22:5)

[혹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망령되이 세워 친속의 시체이라고 하여 犯人을 무고로 회롱한 경우에는]

(53)에서 ‘(冒)弄爲-’의 선행어인 ‘誣’는 ‘誣告’로서 조격어가 된다. 그리고 ‘誣(告)’의 선행어인 ‘犯人’은 위증을 당하는 대상이다. 즉, 무고를 받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비록 표현은 ‘犯人’으로 되어 있으나, 이 자는 ‘犯人’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무고를 당하는 사람이 목적어로서 오고, ‘誣(告)’가 조격어로서 ‘(冒)弄爲-’의 앞에 놓이는 구문에 대한 구문 구조는 ‘NP₁乙 NP₂ 冒弄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₁’은 ‘冒弄’의 대상이 되나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다. 따라서 그 일반인은 被誣告人이 된다. 이는 ‘冒弄爲-’의 선행어가 ‘冒弄’을 행하는 사람임에 비하여 반대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冒弄爲-’의 앞에 명사논항이 아닌 절이 오는 ‘冒弄爲-構文’에 대해

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54)의 예문에서 ‘冒弄爲-’는 위증의 의미이다.

(54) 가. (祖父母父母亦…家長亦…)他人乙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七十徒一年半齊(19:7)

[(조부모나 부모가…가장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欺瞞한 경우에는 杖七十하여 1년 반의 徒役에 처한다(하울 일이다)]

나. 他人亦殺死爲如冒弄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9:7)

[다른 사람이 살해하였다고 欺瞞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울 일이다)]

(54)의 두 예문에서 ‘冒弄爲-’의 앞에 놓인 절은 모두 ‘冒弄’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는 ‘冒弄’의 내용을 ‘冒弄爲-’의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52)의 구문과는 다르다. 이의 구문 구조를 보면 ‘S 冒弄爲-’와 같다. 이와 같은 구문 구조에서 ‘S’는 ‘冒弄’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런 구문 구조를 지닌 구문은 ‘冒弄’의 내용을 먼저 자세히 말하고 이 거짓된 것을 진술하는 것이 된다.

한편, 弄辯構文에서는 ‘冒弄爲-’의 선행 명사구를 ‘是乎樣以’로 서술함으로써 마치 ‘冒弄爲-’ 앞에 있는 명사구의 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속인다는 문형이 있다. (55) 구문의 ‘冒弄爲-’는 거짓된 행동 또는 진술의 의미를 가진다.

(55) 各居爲如親屬乙戶內隱藏不報爲弥一戶是乎樣以冒弄合戶付籍爲在乙良各減二等齊(4:2)

是乎樣以(이온 양으로):~인 양으로

[각기 살던 親屬을 집안에 숨겨두고 알리지 아니 하며, 하나의 戶口인 양으로 欺瞞하여 戶口를 합하여 戶籍에 부친 경우에는 각각 (罪) 2等を 減한다(하울 일이다)]

‘爲-’가 생략되어 있는 위의 구문에서 ‘冒弄爲-’의 선행 명사구인 ‘一戶’는 거짓된 내용이다. 때문에 ‘가장하다’라는 의미의 ‘是乎樣以’로써 이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에 대하여 구문 구조를 분석하면 ‘NP是乎樣以 冒弄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는 거짓의 내용이다. 따라서 거짓의 내용을 먼저 밝히는 구문을 이끈다. 다만, 거짓의 내용을 먼저 말하되 ‘冒弄爲-’에 앞서 ‘是乎樣以’로써 이 내용이 거짓임을 미리 밝힌다는 것이 이 구문 구조의 특징이 된다.⁹⁹⁾

99) 변명하는 구문 중에는 우롱적인 위증이 아닌 흐리멍텅한 변명이 있다. 이를 “大明律直解”에서는 ‘朦朧辨明爲-’로써 나타내고 있다.

3. 6. 4. 2 處罰 構文

處罰에 대한 構文은 ‘論爲-構文’, ‘斬爲-構文’, ‘絞死爲-構文’, ‘坐罪爲-構文’, ‘生徵納官爲-構文’, ‘笞(杖)爲-構文’, ‘徒爲-構文’, ‘流爲-構文’ 등이다. 이들은 모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는 구문들이다.

3. 6. 4. 2. 1 ‘論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형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나, 다른 형벌에 의거하여 처벌토록 하기도 한다. 또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는 식의 처벌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형벌 부과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처벌은 “大明律直解”에서는 ‘論爲-’로써 서술하여 그 구문을 처벌구문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처벌구문의 일종인 ‘論爲- 構文’에 대하여 볼 때에 가장 일반적인 문형은 ‘~으로 논하라’라는 구문일 것이다. 이는 ‘論爲- 構文’이 다른 처벌에 비견하거나 처벌의 정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처벌을 선택토록 하여서이다. 격기능에서 분리시킨 ‘-로’에는 [+선택적]이라는 의미특성이 있다(임홍빈 1974, p.158).¹⁰⁰⁾ 이처럼 처벌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되는 대상에는 조격이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조격¹⁰¹⁾이 처벌의 내용을 통합하는 구문이

· 冤枉事無去乙朦朧辯明爲行人乙良杖一百徒三年(28:12)

爲行(행):~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없거늘 흐리멍덩하게 변명하는 사람은 杖一百하여 徒三年]

본래 흐리멍덩한 변명은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 또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는 분명하지 못한 변명으로 인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무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0) 임홍빈(1974, pp.143-159)은 ‘NP+ X+ 로’라는 가설로써 X를 모종의 격조사로, 혹은 후치사와 더불어 쓰이는 격조사로 처리함으로써 ‘-로’를 격기능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101) 유동석(1984, pp.119-144)은 ‘-로’ 명사구를 조격으로 보았다. 그는 ‘-로’ 명사구는 ‘변성’이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이광호(1991, pp.115-145)는 ‘-로’를 격조사로 보고, 이 격조사는 VP와의 연관해석에서 ADVP를 이루고 수단을 나타내는 수단격 조사(manner case maker)의 통사기능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다. 그럼 처벌의 내용에 대해 조격이 쓰인 ‘論爲- 構文’을 보기로 한다.

(56) 가. 招引爲有如他人乙良凡人鬪傷例乙論爲答二十齊(1:33)

[불러들였다는 다른 사람은 일반인이 상해한 예(로써) 論罪하고, 答二十한다(하올 일이다)]

나. 自娶爲妻妾爲在乙良犯奸以論爲乎事(6:8)

[自娶하여(스스로 장가들어) 妻妾(을 取)한 경우에는 犯奸(姦淫의 例로)으로 論罪하올 일]

다. 贓物數乙計爲監臨自盜例以論罪爲乎事(7:13)

[贓物의 數爻를 계산하여 監臨自盜의 例로써 論罪하올 일]

라. 越入爲在乙良重罪以論爲乎事(13:8)

[답을 넘어 들어 온 경우에는 重罪로 論議하올 일]

마. 知情故放爲在乙良犯人以同罪論爲乎事(14:7)

[情況을 알고 고의로 석방한 경우에는 범인과 같은 죄로 논의하올 일]

바. 放送爲在乙良枉法例以從重論罪爲齊(14:11)

[놓아 보낸 경우에는 법을 굽힌 예로써 중한 것을 좇아 논죄한다(하올 일이다)]

사. 因此殺傷人者故殺傷人例以論爲乎事(15:3)

이때 ‘NP’의 어휘의미에 따라 ‘도구, 자료, 자격, 방향, 원인’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광호(1991, p.134)는 이와 같은 관계의미는 단순히 어휘의미에 집착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혀 통사적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이를 수단격 조사(manner case maker)라는 유형을 제시하여 통합한다. 이광호(1991, p.143)에서 제시한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도구격 조사

NP₁+ {로}+NP₂+ {을/를}+VP [자르다, 만들다, 베다—류의 동사]

(2) 자료격 조사

NP₁+ {로}+NP₂+ {을/를}+VP [만들다, 짓다, 제작하다—류의 동사]

(3) 자격격 조사

(NP₂+ {을/를})+NP₁+ {로}+VP [되다, 승진하다 —류의 동사]

(4) 방향격 조사

NP+ {로}+VP [가다, 오다—류의 이동동사]

(5) 원인

NP+ {로}+VP [죽다, 살다, 낫다—류의 결과동사]

이 외에 홍운표(1999, pp.65-103)는 ‘-로’를 격조사로 보고, 이의 가장 핵심적인 격기능으로 도구격을 들었다. 그리고 이 도구격을 다시 기구격, 재료격, 기관격, 여격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예로써 論罪하울 일]

아. 軍是去等逃軍以論遣民乙良私度關津以論爲乎事(15:3)

[군인이거든 도망병으로서 論罪하고, 백성은 私度關津(關所와 渡場을 私渡한 것)으로써 論罪하울 일]

자. 斜用爲在乙良監守自盜例以各從重論爲乎事(16:3)

[斜用한 경우에는 監守自盜의 例로써 각각 重한 것을 좇아 論罪하울 일(이다)]

차. 傍人乙誤殺爲在乙良故殺以論齊(19:7)

[옆 사람을 잘못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살해로 논죄한다(하울 일이다)]

카. 重罪乙輕罪如爲在乙良其矣加減罪以論齊(28:10)

[重罪를 輕罪라 한 경우에는 그의 加減한 (바의) 죄로써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56)의 구문에서 형벌의 내용이 되는 명사구에는 조격에 해당하는 ‘以’가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56) 예문들은 ‘論爲-’의 선행 명사구의 내용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들의 구문 구조는 ‘NP以 論爲-’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論爲- 構文’에서 반드시 ‘論爲-’의 선행어에 ‘以’만이 오지는 않는다. (57)의 예문에서는 ‘論爲-’의 선행어에 ‘良中’이 놓이고 있다.

57) 가. 干連人乙良本犯罪良中減二等論齊(1:31)

[連累人은 본 범죄에서 2等を 덜어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나. 長官乙良之次官良中減一等論齊(1:33)

[長官은 次席官에서 1等を 덜어 論罪한다(하울 일이다)]

다. 同僚官內良中一人亦有私情爲在乙良故出入人罪例良中依准論遣(1:34)

[동료 관원 내에 한 사람이 사적인 정이 있어 한 경우에는 고의로 사람의 (罪科를) 빼고 넣고 한 罪의 例에 依準하여 論罪하고]

라. 枉法及盜罪良中依憑准論爲罪止杖一百流三千里遣鋤面乙良並免爲齊(1:43)

依憑:의지하고 기댐

[枉法 및 竊盜罪에 依憑하여 准論하고, 杖一百하여 三千里 流配(시키는) 罪에 그치고 刺字刑은 모두 免한다(하울 일이다)]

(57) 구문도 역시 처벌에 있어 그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NP以 論爲-’ 구문 구조에서는 제시된 그 형벌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지만 (57)에서는 제

시된 형벌을 참고하여 다르게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때문에 (57)에서 제시되는 형벌은 ‘以’가 아닌 ‘良中’이 통합하고 있다. 즉, 제시된 형벌에서 상황에 맞추라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論爲-’의 선행어에 이처럼 ‘良中’이 놓인 구문의 구조는 ‘NP良中 論爲-’이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良中’은 처격 조사가 아닌 비교격 조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때문에 ‘NP以 論爲-’ 구문 구조일 경우에는 제시된 형벌을 처벌로서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구문 구조에서는 처벌에 있어 비교할 형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처벌에 있어 전제가 오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58)에서 보는 예문들은 모두 처벌함에 있어서 전제가 따르는 구문이다. 전제의 의미는 ‘한 경우에는’의 의미인 ‘爲在乙良’에 의하여 주어진다.

(58) 가. 任用爲在乙良論罪齊(2:2)

[任用하거들란 論罪한다(하을 일이다)]

나. 所避事重爲在乙良各從重論罪齊(2:5)

[회피한 바의 일이 중대한 경우에는 각각 (本罪와 回避한 罪 중에서) 重한 것을 좇아 論罪한다(하을 일이다)]

다. 知不得爲在乙良不論罪(7:7)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

라. 書寫爲在乙良勿論罪(22:12)

[글을 베낀 경우에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

마. 行姦如指說爲在乙良勿論齊(25:1)

[간통을 하였다고 가리켜 말한 경우에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

바. 自殺爲在乙良竝只勿論罪齊(27:2)

[자살하거들란 모두 죄를 논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이 있다 하여 무조건 일관되게 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58)에서 보인 구문들은 사건을 ‘爲在乙良’으로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처벌에 있어 어떠한 전제에 비추어 내릴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문은 ‘VP爲在乙良 論爲-’ 구문 구조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VP’는 처벌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 된다. 따라서 처벌은 ‘VP’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처벌에 있어 전제가 주어지는 구문으로서 ‘VP爲在乙良 論爲-’ 구문 구조와

는 다른 구조의 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전제가 ‘~하거든’의 의미인 ‘爲去等’에 의해 서술됨으로써 행위자체가 전제가 되고 있다.

(59) 가. 官司物色乙喫破爲去等罪分論遣(16:5)

[관사의 물건을 먹어치우고 파손하거든 죄만을 논의하고]

나. 凡二件罪亦一時俱發爲去等從重罪論齊(1:29)

[무릇 2건의 범죄가 일시에 함께 발생하거든重的 죄를 좇아 論議한다(하올 일이다)]

다. 所犯罪乙回避作謀爲去等從重論(2:4)

[범죄한 바를 회피하려 술책을 짓거든 중한 것을 좇아 論罪]

(59)에서 ‘喫破’, ‘俱發’, ‘回避作謀’는 모두 행위에 해당하는 명사구들이다. 그런데 (59)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지적하여 처벌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VP爲在乙良 論爲-’ 구조의 구문이 행위 결과를 전제로 하여 처벌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처럼 행위 그 자체가 처벌에 있어 전제되는 구문 구조는 ‘VP爲去等 論爲-’가 된다.

그런데 처벌을 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처리가 있다. 이 경우는 ‘論爲-’의 선행어를 ‘隱’으로 통합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이때 ‘隱’의 통합을 받는 명사구는 예외적인 처리내용이 되든가 예외적인 처분을 받는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해온 처벌이 아니므로 이 구문은 부정문으로 끝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60)에서 보는 구문이 이와 같은 경우의 구문으로서 이 구문에서는 ‘隱’이 생략되어 있다. 더구나 ‘論爲-’의 선행어가 ‘者’이므로 생략된 특수조사는 ‘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者’는 ‘隱’만이 통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59가)에서는 ‘者’가 생략되었다.

(60) 가. 本條內良中皆字有去等首從勿論爲科罪齊(1:33)

[本條 내에 ‘皆’字가 있거든 주범과 종범을 論議하지 않고 죄를 과한다(하올 일이다)]

나. 不告爲在乙良罪同齊不知者勿論罪(7:9)

[알리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같은 죄이고 알지 못한 자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

(60가)에서 ‘首從’은 예외적인 처리내용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首從’을 가려서 우두머리에게는 더욱 무거운 벌을 내리지만, (60가)에서는 이를 가리지 않고 처벌을 논하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首從’은 처벌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처리내용이 되고 있다. 한편, (60나)에서 ‘不知者’는 예외적인 처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60나)에서는 ‘不知者’에게만은 이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문은 ‘NP 勿論爲-’로 분석된다.

3. 6. 4. 2. 2 ‘斬爲-構文’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한 형벌은 사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중한 것은 ‘斬刑’이 된다. 이는 신체가 분리 당함으로써 훼손된 시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형이 “大明律直解”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斬爲-’로써 이 형벌을 나타내고 있다.¹⁰²⁾

(61) 가. 傷人爲在乙良斬爲乎事(13:6)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斬하울 일]

나. 失誤軍機爲在乙良斬爲乎事(14:4)

[軍事機密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斬하울 일]

다. 逃亡爲在乙良斬爲乎事(14:8)

[도망한 경우에는 斬하울 일]

라. 奴婢及傭人等亦家長矣屍體乙毀棄者乙良斬齊(18:15)

[노비 및 품팔이꾼이 등이 家長의 시체를 훼손하거나 버린 자(인 경우)는 斬한다 (하울 일이다)]

마. 事狀已發爲在乙良并只斬齊(19:2)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斬한다(하울 일이다)]

바. 妄說爲在乙良斬爲乎事(25:3)

[망령되이 말하거들란 斬하울 일]

(61)의 구문에서 ‘斬刑’이 주어지는 조건이 ‘斬爲-’의 앞에 놓이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爲-’의 서술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VP爲在乙良 斬爲-’와 같이 된다. 이 구문 구조의 경우는 ‘斬刑’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 조건을 보일 때이다. 여기서 ‘VP’는 ‘斬刑’에 있어서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단 여기서 ‘VP’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이다. 이는 ‘VP’를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적의 의미

102) 사형 중에서 가장 극한 형벌은 ‘陵遲處死’이다. 이는 말을 끝음에 의해 신체를 분리시켜 죄수를 죽이는 형벌이다.

가 있는 ‘爲在乙良’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斬刑’을 선고함에 있어 전제가 있는 구문의 구문 구조는 이 외에도 ‘爲去等’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문이 있다. ‘~하거든’의 의미를 지닌 ‘爲去等’은 ‘斬刑’을 내리기에 앞서 는 전제조건을 내세운다. 따라서 ‘VP爲在乙良 斬爲-’ 구문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爲去等’이 서술하는 내용은 ‘斬刑’을 결정지음에 있어 조건이 되며 이의 조건에 부합 되어야만 ‘斬刑’이 내려질 수가 있다. 다만 ‘VP爲在乙良 斬爲-’ 구문 구조와 다른 것 은 ‘爲在乙良’이 행위의 결과를 서술하지만 ‘爲去等’은 상태를 서술한다는 것이다.

(62) 가. 推問爲乎矣的是爲去等並只斬齊(15:4)

[심문하오되 확실하거든 모두 斬한다(하올 일이다)]

나. 追問明白爲去等斬齊(3:5)

[문초하여 명백하거든 斬한다(하올 일이다)]

다. 究問爲乎矣明白爲去等斬(12:4)

[심문하오되 명백하거든 斬(하올 일이다)]

라. 加三等爲乎矣加等罪亦入於死爲去等並只斬(20:10)

[3等を 더하오되 加等된 죄가 사형에 들거든 모두 斬(하올 일이다)]

마. 從來乙窮問明白爲去等處斬遣(2:9)

[유래를 窮問하여 명백하거든 斬刑에 처하고]

바. 須只起謀引入人乙推問爲乎矣的實爲去等並只斬齊(15:4)

[모름지기 謀議를 일으킨 사람과 접전한 사람을 鞫問하오되 확실하거든 모두 斬한 다(하올 일이다)]

(62)에서 ‘爲去等’의 서술을 받는 ‘的是(的實)’, ‘明白’, ‘入於死’ 등은 모두 상태로서 ‘斬刑’을 내리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VP爲 去等 斬爲-’와 같이 된다. 다만 의미상 ‘爲去等’은 상태 외에 행위의 의미를 지닌 동 사구 하고도 결합을 하지만 ‘斬爲-構文’에서는 ‘爲去等’이 행위를 서술하는 구문은 없 다.

‘斬爲-構文’에서 전제가 있는 구문은 이 밖에도 전제조건이 ‘是去等’으로 서술되는 구문이 있다. ‘是去等’은 ‘~이거든’의 뜻이므로 전제조건을 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예만이 보인다.

(63) 一日是去等杖一百三日是去等斬齊(14:5)

[1일이거든 杖一百하고, 3일이거든 斬한다(하울 일이다)]

(63)의 구문에서 ‘三日’은 ‘斬刑’을 선고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是去等’이 이를 서술함으로써 ‘三日’은 지정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의 구문 구조는 ‘NP是去等 斬爲-’와 같다.

한편, 범죄 중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시키거나 상태에 놓이도록 시킴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있다. 이때 그 죄과가 ‘斬刑’에 해당할 경우에는 (64)과 같은 구문을 보인다.

(64) 가. 逃亡令是在乙良斬爲乎事(14:3)

[도망시킨 경우에는 斬하울 일]

나. 因此軍事差錯令是在乙良並只斬爲乎事(14:4)

[이로 인하여 軍事差錯(軍機를 그르치게)시킨 경우에는 함께 斬하울 일]

다. 致死令是在乙良斬爲乎事(14:14)

[致死시킨 경우에는 斬하울 일]

(64)의 예문에서 (64가)는 상대방에게 도주하도록 시킨 것이고, (64나)는 ‘군사’처리를 잘못시켰다. 그리고 (64다)는 상대방을 치사시켰다. 이처럼 ‘斬刑’에 있어서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상태에 놓이게끔 한 구문의 경우는 ‘VP令是在乙良 斬爲-’ 구문 구조를 가진다. 이 구문 구조는 ‘NP’에 ‘斬刑’을 받을 죄과를 놓는다. 다만 ‘VP令是在乙良 斬爲-’ 구문 구조에는 ‘VP爲在乙良 斬爲-’ 구문 구조에 없는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3. 6. 4. 2. 3 ‘絞死爲-構文’

“大明律直解”에 들어 있는 사형 중에서 ‘斬刑’ 외로 ‘絞死’가 있다. ‘絞死’는 ‘斬刑’ 아래 단계의 형벌로서 사형에서는 가장 輕한 형벌이 된다.

‘絞死爲-構文’은 범죄자를 ‘絞死’시키는 것이므로, 먼저 이의 구문에 ‘絞死’시킬 대상이 오는 구문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다. (65)의 예문이 바로 그러한 구문으로서 ‘絞死爲-’의 앞에는 ‘絞死’시킬 대상자가 놓이고 있다.

(65) 가. 申聞不冬爲在乙良次知官吏等乙絞齊(3:4)

[申聞 아니 한 경우에는 책임관리 등을 絞刑에 처한다(하울 일이다)]

- 나. 謀而未行爲在乙良爲首者乙絞死遣爲從者乙並只杖一百流三千里齊(18:2)
[謀議(한 바)를 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主犯인 자를 絞死하고, (그를) 따른 사람을 모두 杖一百하여 三千里 流配한다(하울 일이다)]
- 다. 打傷致死爲重爲下手人乙絞死齊始謀爲在乙良杖一百遠流遣(19:5)
[傷害致死토록 한 重한 하수인을 絞死하고, 처음에 謀議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멀리 流配하고]
- 라. 致死爲在乙良誣告人乙絞死遣其矣財産內一半乙被誣之人亦中給爲齊(22:4)
[죽게 한 경우에는 誣告人을 絞死하고, 그의 재산내 절반을 誣告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한다(하울 일이다)]

‘絞死’ 당할 대상이 ‘絞死爲-’의 앞에 놓이는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乙 絞死爲-’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絞死爲-構文’에서는 ‘絞死爲-’의 앞에 ‘絞死’ 당할 범죄자만이 놓이지는 않는다. (66)의 예문에서는 ‘絞死爲-’의 앞에 ‘絞死’시킬 이유가 ‘爲在乙良’의 서술을 받으며 놓이고 있다.

- (66) 가. 凡豪勢之人等亦良家妻及女乙強奪妻妾爲奸占爲在乙良絞死遣(6:7)
[무릇 세력 있는 사람 등이 良家の 아내 및 딸을 強奪하여 처나 첩으로 하여 奸占한 경우에는 絞死하고]
- 나. 因此爲他矣婦女乙通奸爲在乙良絞死爲旡(9:2)
[이로 인하여 남의 婦女를 通奸한 경우에는 絞死하며]
- 다. 點檢出送爲乎矣不出爲在乙良絞死齊(13:4)
[점검하여 내 보내되 나가지 아니 한 경우에는 絞死한다(하울 일이다)]
- 라. 兵仗持是弥入殿門爲在乙良絞死爲乎事(13:5)
[병기를 지니며, 궁전의 문에 들어오거들란 絞死하울 일]
- 마. 宮殿門內直入爲在乙良絞死(13:6)
[궁전의 문 안으로 곧장 들어오거들란 絞死(하울 일이다)]
- 바. 瓦礫石等物以投擲爲在乙良絞死齊(13:6)
[기와나 조약돌 등의 물체로써 투척한 경우에는 絞死한다(하울 일이다)]
- 사. 儀仗內良中突入爲在乙良絞死遣(13:7)
[儀仗 내에 갑자기 뛰어들 경우에는 絞死하고]
- 아. 凡闕內城良中越入爲在乙良絞死齊(13:8)
[무릇 대궐 내의 城에 (담을) 넘어 들어온 경우에는 絞死한다]
- 자. 因此禁止人乙毆打折傷爲在乙良絞死遣(14:14)

[이로 인하여 야경꾼을 구타하여 부러지게 한 경우에는 絞死하고]
 4. 因此彼境出去爲在乙良絞死齊(15:1)
 [이로 인하여 저쪽 국경으로 나가거들란 絞死한다(하울 일이다)]

(66)에서 ‘絞死’를 당할 범죄의 내용이 ‘絞死爲-’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絞死’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VP爲在乙良絞死爲-’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VP’는 ‘絞死刑’을 당할 죄수가 행한 범죄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VP’가 ‘絞死刑’의 전제가 된다.

이 외로 ‘絞死刑’에 있어서 전제가 있는 구문으로는 전제되는 내용을 ‘爲去等’으로 서술하는 구문이 있다.

(67) 가. 因在逃他人乙改嫁爲去等絞死齊(6:9)
 [도망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에게) 改嫁하거든 絞死한다(하울 일이다)]
 나. 事干軍精錢糧等事爲去等並只絞爲乎事(18:3)
 [사건이 군사상 기밀이나 錢糧 등의 일을 하거든 모두 絞死하울 일(이다)]
 다. 折傷以上乙良凡鬪傷例良中各遞加一等齊篤疾成病爲去等絞死齊(20:12)
 [折傷 이상은 무릇 상해의 例에서 각각 1等씩 번갈아 더하고, 중병을 이루는 병이 되거든 絞死한다(하울 일이다)]

(67)의 구문에서 ‘改嫁’, ‘事’, ‘篤疾成病’ 등은 ‘~하거든’의 의미를 지닌 ‘爲去等’의 서술에 의하여 행위를 이룬다. 따라서 (67) 구문은 이러한 행위가 전제되어 ‘絞死刑’이 내려지는 구문이라 할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없으면 ‘絞死刑’은 면제된다. 이의 구문 구조를 보면 ‘VP爲去等 絞死爲-’이 된다. 이러한 구문 구조를 가진 구문은 행위가 전제되는 구문이다. 그런데 (67다)의 경우 밑줄친 부분만을 보았을 때 ‘篤疾成病’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가 된다. 그래서 ‘VP爲去等 絞死爲-’ 구문 구조가 행위를 전제하는 구문의 구조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篤疾成病’을 상태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병이 위중하게 된 것이 범죄가 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병이 위중한 상태가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병이 위중하게끔 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67다)는 여전히 행위가 전제되는 구문이다.

한편, 행위를 전제로 하는 ‘VP爲去等 絞死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게 어떠한 전제를 지정하는 ‘絞死爲-構文’도 “大明律直解”에서는 찾아 볼 수 있다.

(68) 가. 遠處充軍爲乎矣三名是去等絞死齊(14:10)

[먼 곳으로 充軍하오되 3명이거든 絞死한다(하올 일이다)]

나. 必干刺字乙免爲在乃三犯是去等一体絞死爲乎事(18:9-10)

[비록 刺字刑을 免할 것이나 3犯이거든 모두 絞死하올 일]

다. 杖一百依例出征令是齊再犯是去等絞死齊(14:12)

[杖一百하고 例에 의하여 출정시키고 再犯이거든 絞死한다(하올 일이다)]

라. 皇后懿旨皇太子令旨是去等絞死齊(24:2)

[皇后의 懿旨나 皇太子의 令旨이거든 絞死한다(하올 일이다)]

(68)의 경우에는 ‘絞死爲-’의 앞에 놓인 명사구는 행위가 아닌 상태나 물건이다. 그러므로 (68)의 예문들은 이러한 것이 지정되어 전제되는 구문인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조건은 ‘是去等’에 의하여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지정에 맞지 않으면 絞死刑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문의 구조는 ‘NP是去等 絞死爲-’가 된다. 위의 ‘VP爲在乙良 絞死爲-’와 같은 구문 구조 경우에는 ‘NP’가 범죄자의 행위가 되지만, ‘NP是去等 絞死爲-’ 구문 구조에서는 범죄자가 처해 있는 상태가 된다. 즉, (68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 명인 상태이고, (68나)는 전과가 三犯인 상태이다. (68다)는 再犯한 상태이며 (68라)는 皇后나 皇太子의 令旨가 내려진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된 상태에 해당되면 범죄자는 絞死된다.

3. 6. 4. 2. 4 ‘坐罪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처벌 중에는 ‘反坐罪’와 ‘緣坐罪’가 있다. ‘反坐罪’는 誣告한 자에게 被誣告人이 받은 처벌만큼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緣坐罪’는 죄인의 죄과를 식구 및 친척들에게까지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反坐罪’의 의미와 ‘緣坐罪’의 의미를 떠나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坐罪’의 의미를 지닌데다가 둘 다 ‘爲-’와 결합되어 서술어로서 쓰이므로 이에 대해 ‘坐罪爲-構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坐罪爲-構文’은 처벌구문에 속하므로 이의 구문에는 일반적으로 ‘坐罪’를 받을 대상이 구문에 놓인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69)이다.

(69) 가. 犯罪爲良在等唯只家長乙坐罪爲乎矣(1:32)

[죄를 범하였거든 오직 家長을 처벌하오되]

- 나. 同犯罪人內良中犯行家長乙坐罪齊(1:32)
 [共同 犯罪人 내에서 범행한 가장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 다. 必于爲首爲良置同犯男人乙坐罪爲乎事(1:32)
 [비록 主犯이라 하여도 共同으로 범죄한 남자를 처벌하울 일]
- 라. 上前良中執法陳訴爲在乙良姦臣乙坐罪爲遣(2:8)
 [임금 앞에 법을 지켜 상소하거들란 姦臣을 처벌하고]
- 마. 在室未嫁女等乙良唯只主婚人乙坐罪遣(6:10)
 [閨中處女 등은 오직 혼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 바. 失誤爲在乙良失誤爲在人乙坐罪齊(11:1)
 [실수하여 착오한 경우에는 실수하여 착오한 사람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 사. 無夫無子爲在乙良本婦乙坐罪齊(11:3)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거들란 부인 본인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 아. 論罪爲乎矣同日日守軍人乙坐罪齊(15:1)
 [論罪하오되 같은 날에 일직(을 한) 군인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 자. 剩餘罪乙全亦反坐爲齊(22:6)
 全亦(전여):오로지
 [나머지 죄를 오로지 반대로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69)은 ‘反坐罪’인 (69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緣坐罪’인 ‘坐罪爲-構文’이다. 이들 구문은 공통적으로 ‘坐罪’를 받을 대상이 목적어로서 ‘坐罪爲-’에 선행하고 있다. 이처럼 목적어가 ‘坐罪爲-’에 선행하는 구문의 구조는 ‘NP乙 坐罪爲-’와 같이 분석한다.

그런데 ‘坐罪爲-’에 선행하는 명사구로서 목적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70)에서 보는 예문에는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乙’이 놓이지 않고 특수조사 ‘隱’의 강조형으로 볼 수 있는 ‘乙良’이 놓이고 있다.¹⁰³⁾ 여기서 ‘坐罪’는 모두 ‘緣坐罪’이다.

- (70) 가. 強娶者是去等加二等遣女家乙良不坐罪爲齊(6:6)
 [강제로 장가든 사람이거든 2等を 더하고 여자측 집안은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 나. 罪同爲乎矣男女乙良不坐罪爲乎事(6:6)
 [죄가 같으되 남녀는 처벌 아니 하울 일]

103) ‘乙良’에 대해서는 대격 조사와 주제표시의 ‘은’의 결합형으로 분석하든가(안병희 1983, p.62. 정연찬 1984, pp.1-31), ‘良’을 ‘隱’에 비교하기 보다는 ‘段’에 비교하여 이의 변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김태균 1975, pp.119-120).

- 다. 男女乙良不坐罪齊未成婚爲在乙良已成罪良中各減五等齊(6:10)
 [남녀는 처벌 아니 하고 혼인을 이루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미 (혼인을) 이룬 죄에
 서 각각 5等を 減한다(하울 일이다)]
- 라. 駙官乙良不坐罪爲乎事(17:4)
 [역관은 처벌 아니 하울 일]
- 마. 枉法以論遣官吏乙良不坐罪爲乎事(17:5)
 [枉法으로써 論罪하고 관리는 처벌 아니 하울 일]
- 바. 奉使人乙良不坐罪爲乎事(17:6)
 [奉使人은 처벌 아니 하울 일]
- 사. 同家人亦隨從者乙良並只不坐罪齊(17:8)
 亦(여):~라고
 [동반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隨從者는 함께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 아. 廢疾人等乙良並免緣坐之罪爲齊(18:1)
 [廢疾(不具病身)인 사람들은 모두 緣坐罪에서 면죄한다(하울 일이다)]
- 자. 放賣令是在卑幼乙良不坐罪遣(18:13)
 [放賣시킨 손아랫 사람은 처벌 아니 하고]
- 차. 有緣故爲依例改葬者乙良不坐罪齊(18:15)
 [까닭이 있어 법식에 의하여 改葬한 자는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 카. 杖一百爲乎矣同謀者乙良並只坐罪齊(19:1)
 [杖一百하오되 共謀者는 모두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70)의 구문은 ‘坐罪’를 처벌함에 있어 단서를 달고 있다. (70)에서 ‘乙良’이 통합하고 있는 명사구가 바로 그 단서이다. 그래서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다루게 된다. 때문에 ‘坐罪’에 해당할 경우 ‘乙良’에 의해 통합되고 있는 단서에 해당되면 ‘坐罪’에서 제외된다.

반면 단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坐罪’의 대상이 아니지만 단서에 부합되면 ‘坐罪’되기도 한다. 이는 ‘乙良’이 ‘隱’에 비하여 더 강조되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박희숙 1984, p.119). 전자의 경우가 (70가~차)에서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가 (70카)에 해당된다.

따라서 (70)의 예문들은 사건의 連累者를 단서에 의해 ‘坐罪’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하는 구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乙良’의 통합을 받는 명사구가 단서이자 바로 ‘坐罪’를 면제 받거나 적용받게 되는 자가 된다.¹⁰⁴⁾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71)에서와 같이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에 ‘乙良’이나 ‘隱’ 또는 ‘段’을 상정할 수 있는 조사 무표지 구문을 볼 수 있다.

(71) 가. 執政大臣亦知情爲在隱同罪不知者不坐罪爲乎事(2:9)

[執政大臣이 정황을 안 것은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하올 일]

나. 知而不告者罪同不知情者不坐爲乎事(5:3)

[알고도 알리지 않은 자는 죄가 같고 정황을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하올 일]

다. 聘財乙良沒官不知者不坐罪(6:2)

[예물은 관에서 몰수하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한다]

라. 互相婚姻爲在乙良各減五等不知者不坐罪齊(6:4)

[서로 혼인한 경우에는 각각 5等を 덜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마. 祖父母果伯叔父母果夫矣姊妹果兄果長妹果等矣服制內嫁娶爲在乙良杖八十妾不坐齊(6:4)

[조부모와 백숙부모와 남편의 자매와 형과 만누이 등의 喪中에서 혼인한 경우에는杖八十하고, 첩은 처벌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바. 女家不知者不坐罪齊其奴自娶者罪同爲彌(6:8)

[여자의 집에서 알지 못한 것은 처벌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그 노비가 스스로 장가든 자이면 죄를 같게 하며]

사. 夫妻不和合兩相願離者不坐罪齊(6:9)

[부부가 화합되지 않아 서로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자는 처벌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아. 至死罪人是去等減一等爲乎矣不知者並只不坐罪(6:9)

[사형에 이른 죄인이거든 1等を 감하오되 알지 못한 자는 모두 처벌 않는다]

자. 犯人罪良中減一等遣不知者不坐罪齊(6:10)

[범인의 죄에서 1等を 덜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104) 본문 (71)의 구문 구조에서와 같이 사건 連累者를 ‘坐罪’에서 면죄시켜주는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구문을 ‘不坐罪爲-’가 아닌 ‘免坐罪爲-’로써 서술하고 있다.

· 婦人年六十及廢疾人等乙良並免緣坐之罪爲齊(18:2)

[부인의 연령이 60세 및 廢疾(不具病身)인 사람 등은 모두 緣坐罪를 免한다(하올 일이다)]

여기서 ‘免坐罪爲-’는 ‘不坐罪爲-’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차. 不告爲在乙良罪同齊不知者不坐罪(7:3)

[알리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같은 죄이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않는다]

카. 贈與財物乙良生徵納官齊不知者不坐遣(7:5)

[증여한 재물은 강제징수하여 관에서 거두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아니 하고]

타. 同僚亦知而不告者罪同齊不知者不坐罪(7:11)

[동료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자는 같은 죄이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않는다]

파. 大臣知而不問爲在乙良罪同遣不知者不坐罪(12:3)

[大臣이 알고도 묻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같은 죄이고 알지 못한 자는 처벌 않는다]

하. 駝騾驢是去等杖八十齊誤殺者不坐齊(16:3)

[낙타나 노새나 나귀이거든 杖八十한다(하울 일이다). 실수로 죽인 자는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71)의 구문에 대하여 구문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에서 생략된 조사가 ‘乙良’인지 ‘隱’인지 또는 ‘段’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는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가 한결같이 ‘者’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段’은 아닐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 ‘段’이 ‘者’를 통합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乙良’이나 ‘隱’의 경우는 ‘者’를 통합하는가? ‘乙良’의 경우는 (70사, 차, 카)의 예문에서 보듯이 ‘者’를 ‘乙良’이 통합하고 있다. 이 외에도 ‘乙良’이 ‘者’를 통합하는 경우는 자주 나타난다.

(72) 가. 脫漏者乙良答三十(4:2)

[脫漏者는 答三十]

나. 欲還者乙良聽許(4:4)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는 받아들여 허락한다]

다. 罪重者乙良重罪以論遣(4:5)

[죄가 무거운 자는 重罪로써 論意하고]

라. 富者乙良免放遣(4:6)

[富者는 放免하고]

마. 受財物者乙良贓物數爻乙用良(4:6)

[재물을 받은 자는 贓物의 수효로써]

하지만 ‘隱’의 경우에도 ‘者’를 통합한다. 다만, 그 구문이 “大明律直解”에서는 다섯

에만 찾아진다.

(73) 가. 徒役三年之類加者隱原數良中(1:41)

[徒役 3년의 類型이 더해진 자는 원래의 徒役 年數에서]

나. 凡監臨亦稱者隱內外官司亦(1:43)

[무릇 監臨이라고 칭하는 것은 內外官司가]

다. 主守亦稱者隱大抵文券乙(1:43)

[主守라고 일컫는 것은 무릇 文券(文書)을]

라. 離異改正者隱必于(6:10)

[離異改正이란 것은 비록]

마. 病亡殘疾有事故者隱不在此限(14:13)

[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쇠잔하거나 사고가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있지 않다]

따라서 통사론적인 분석만으로서 (71) 구문의 ‘坐罪爲-’ 선행 명사구에서 생략된 조사가 ‘乙良’인지 ‘隱’인지 가려내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의미론적인 면에서 찾아내야 한다.

‘乙良’은 ‘~의 경우에는’으로 해석되나(고정의 1992, p.81), ‘隱’은 단지 ‘~은/는’ 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다. 그런데 (71)의 구문들은 한결같이 ‘坐罪’와 ‘不坐罪’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의 구문에 대해서는 ‘~의 경우에는’으로 해석을 해야 옳을 것이다. ‘~의 경우에는’는 비교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71)의 구문에서 ‘坐罪爲-’ 선행 명사구를 통합하는 조사는 ‘乙良’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71)은 ‘乙良’이 생략된 구문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70)과 (71)의 구문에 대하여 구문 구조를 ‘NP乙良 坐罪爲-’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坐罪’의 여부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짓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 경우에는’의 의미인 ‘爲在乙良’에 의하여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가 서술된다.

(74) 가. 離異遣不知情爲在乙良不坐罪爲齊(6:7)

[이혼시키고,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나. 許文同着署不冬爲在乙良不坐(7:5)

105) 본문 (71)의 경우 ‘坐罪爲-’의 선행 ‘NP’를 주제어로 보았을 경우에는 ‘隱’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71)의 경우에는 ‘NP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가 잠정적이다.

[문서에 같이 서명하기를 허락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처벌 않는다]

다. 婦女亦犯此爲在乙良罪坐家長齊(11:3)

[부녀가 이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라. 曾只戰場良中損失爲在乙良不坐罪爲彌不追徵爲乎事(14:9)

[일찍이 전장에서 손실한 경우에는 처벌 아니 하며, 추징 아니 하울 일]

마. 同數良中不及爲在乙良不坐罪齊(14:10)

[동일한 수에 미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바. 故只虛稱犯夜拘留執捉爲在乙良反坐齊(14:14)

[짐짓 허위로 이르러 야간통행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체포하여 구류한 것을란 반대로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사. 同居家內人亦互相冒名爲在乙良罪坐家長齊(15:1)

[동거하는 가족 내의 사람이 서로 이름을 속인 경우에는 가장을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74)의 구문은 ‘爲在乙良’이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在乙良 坐罪爲-’와 같이 된다. 이러한 구문 구조에서 ‘VP’는 행위의 결과이므로 행위를 행한 사람이 ‘NP’로 놓이는 위의 ‘NP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다. 즉, ‘VP爲在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는 사람이 ‘NP’로 오지 않는다.

한편, ‘坐罪’의 부과에 있어서 특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구문도 “大明律直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은 ‘~하여야만’의 의미로 해석되는 ‘爲良沙’에 의해 나타난다.

(75) 가. 須只本夫亦自告爲良沙坐罪(20:10)

[모름지기 본 남편이 스스로 고소(親告)하여야만 처벌(한다)]

나. 須只妻亦自告爲良沙坐罪(20:11)

[모름지기 아내가 스스로 고소(親告)하여야만 처벌(한다)]

다. 減一等爲乎矣並只親聞爲良沙坐罪(21:1)

[1등을 減하오되 모두 (왕에게) 상소하여야만 처벌(한다)]

라. 又減二等爲乎矣並只親聞爲良沙坐罪(21:1)

[또한 2등을 減하오되 모두 (왕에게) 상소하여야만 처벌(한다)]

마. 加一等爲乎矣並只親告爲良沙坐罪(21:2)

[1등을 더하되 모두 (왕에게) 상소하여야만 처벌(한다)]

(75)의 구문은 특정의 행위가 있어야만 ‘坐罪’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는 ‘坐罪’되지 않는다.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良沙 坐罪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VP’는 ‘坐罪刑’의 부과에 있어서 단지 전제되는 행위이므로, 실제에 있어서 이의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구문 구조에서는 ‘不坐罪’의 내용이 되는 구문이 없다는 특징도 보인다. 대체적으로 ‘坐罪’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다른 ‘坐罪’ 구문과는 다르게 ‘不坐罪’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구문 구조는 특이하게도 ‘不坐罪’가 예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坐罪’가 예외적으로 주어지고 있다.¹⁰⁶⁾

그런데 ‘VP爲良沙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처럼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坐罪’되는 구문으로서 ‘VP爲良沙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게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루는 것이 있다. 다만 이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따져 ‘坐罪’의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때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따지는 의미는 ‘~하거늘’의 뜻을 지닌 ‘爲在乙’에 의하여 나타난다.

(76) 가. 初亦數爻落報爲在乙坐罪爲乎矣(7:13)

[처음에 갇수를 떨어뜨려 알린 것을 처벌하오되]

나. 交嫁令是在乙良主婚爲在乙坐罪爲乎矣(6:9)

爲在乙(乙 건을):한 것을

[改嫁시킨 경우에는 혼사를 주관한 것을 처벌하오되]

(76)의 ‘數爻落報’, ‘主婚’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있어서 그 사정에 해당되는 것들

106) “大明律直解”에서는 본문의 ‘VP爲良沙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와 동일하게 ‘不坐罪’를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坐罪’할 것을 말하는 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VP爲良沙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를 ‘爲良沙’가 서술하는 것과는 다르게 ‘爲去沙’가 서술한다.

(1) 須只期年喪以上族長亦親告爲去沙坐罪爲乎事(4:9)

[모름지기 基年喪服 親屬(조부모, 숙부, 형제 등) 이상의 尊長이 親告하여야만 처벌하을 일]

(2) 被害人亦致死爲去沙坐罪爲齊(19:1)

[피해인이 사망하여야만 처벌한다(하을 일)]

(3) 笞四十爲乎矣並只親告爲去沙坐罪(21:2)

[笞四十하오되 모두 親告하여야만 처벌(한다)]

그런데 ‘爲去沙’는 ‘爲良沙’와 동일한 의미이고 그 구문 구조 또한 ‘爲良沙’가 놓인 구문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로 다루지 않겠다.

이다. 따라서 (76)의 구문에서는 행해진 행위가 ‘數爻落報’, ‘主婚’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坐罪’가 주어진다.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在乙 坐罪爲-’와 같다. 이 구문 구조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 중에서 ‘坐罪’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坐罪刑’을 내리는 것이므로 ‘不坐罪刑’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 ‘NP’는 이미 행해진 행위에 있어서 ‘坐罪’를 하게 되는 어떠한 특정의 사정이 된다. 그리고 ‘VP爲良沙 坐罪爲-’ 구문 구조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나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의미상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반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事件 連累者를 ‘坐罪’에서 제외시키는 구문도 있다. 이는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구문을 보이면 (77)과 같다.

(77) 理馬人亦工錢捧上理馬爲如可殺傷令是旣無緣故自觸被殺傷爲良在等不坐罪齊

(16:6)

[수의사가 치료비를 받고 치료하다가 殺傷시키며, 까닭 없이 스스로 떠받혀 被殺傷하였거든 처벌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77)의 구문에서 ‘不坐罪’의 조건으로 명사구가 아닌 절이 오고 있다. 즉, ‘無緣故自觸被殺傷爲-’ 전체가 ‘不坐罪’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無緣故’의 앞에는 ‘理馬人’이 주어로서 생략되었다. 그리고 이 절의 서술어는 과거완료 의미의 ‘~하였거든’이라는 뜻을 지닌 ‘爲良在等’이므로 (77)의 구문은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구문은 비록 事件 連累者를 ‘坐罪’에서 면죄시켜준다는 의미에서는 (71)과 같으나 (71)에서는 면제되는 자가 명사구로서 ‘不坐罪爲-’의 바로 앞에 선행되고 (77)의 구문에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의 형태로 선행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77)의 구문에 대하여 구문 구조를 보면 ‘S 不坐罪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S’는 사건 연루자를 ‘坐罪’에서 면제시켜주는 사건 내용으로서 ‘不坐罪’에 대한 조건이 되고 있다. 때문에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는 ‘坐罪’의 조건이 되지 않고 ‘不坐罪’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만 ‘S 不坐罪爲-’ 구문 구조와 같은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만 보인다.

‘坐罪刑’의 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수단이나 방법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78)에서 보는 예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坐罪爲-’의 앞에 있는 명사구는 ‘坐罪’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이 되고 있다.

(78) 가. 唯只不盡告之人矣罪以坐罪齊(27:1)

[오직 남김 없이 알리지 않은 사람의 죄로써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나. 依例捕限乙不論遣罪囚以同坐罪爲乎矣(27:1)

[체포기한의 예에 의거하는 것을 논의 아니 하고 죄수로서 동일하게 처벌하오되]

다. 本來有罪人乙故只免脫令是在乙良並只全罪以坐罪齊(28:10)

[본래 죄가 있는 사람을 짐짓 免脫시킨 경우에는 함께 완전한 죄로써 처벌한다(하울 일이다)]

이처럼 수단이나 방법의 조격 ‘以’가 놓인 ‘坐罪爲-構文’의 구조를 보면 ‘NP以 坐罪爲-’가 된다. 이러한 구문 구조에서 ‘NP’는 ‘坐罪刑’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므로, 이의 구문 구조에는 의미상 ‘不坐罪’가 올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坐罪’만이 놓인다.

이 외로 ‘누가 坐罪刑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구문도 “大明律直解”에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구문에서는 ‘坐罪刑’을 받을 자가 주어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예만이 보인다.

(79) 同僚官亦並只坐罪爲乎罪犯乙(1:35)

[동료관원이 함께 처벌하울(될) 범죄를]

(79)의 예문에서 주어인 ‘同僚官’은 ‘坐罪刑’을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坐罪’의 대상자가 주어로 놓인 구문의 구조는 ‘NP亦 坐罪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는 ‘NP’가 ‘坐罪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NP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와 동일하지만, ‘NP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에서의 ‘NP’는 전제조건으로서 구문에 놓였고, ‘NP亦 坐罪爲-’ 구문 구조의 ‘NP’는 전제성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坐罪刑’을 받는 사람으로서 놓였다는 차이가 있다.

3. 6. 4. 2. 5 ‘生徵納官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身體刑 외에도 財産刑이 있는데 이는 ‘生徵納官爲-’로써 구문

을 서술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生徵納官爲-構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처벌구문의 일종이 되는 ‘生徵納官爲-構文’은 벌금을 강제징수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구문에는 벌금을 강제징수 당할 대상자가 오기 마련이다. (80)의 예문에서는 벌금을 강제징수 당할 사람이 목적어로서 ‘生徵納官爲-’의 앞에 놓이고 있다.

(80) 가. 同人等當爲別乎生徵納官(7:9)

別乎(별오):분담

[동일한 사람 등에 대하여 분담시켜 강제징수하여 官에 납부(한다)]

나. 坐贓罪例以論爲旡右人乙當爲生徵納官爲齊(7:10)

[坐贓罪의 예로써 논죄하며, 위 사람을(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 官에 납부한다(하올 일이다)]

다. 坐贓罪以論遣右人等乙當爲生徵入官爲乎矣(7:11)

[坐贓罪로써 論罪하고 위 사람들을 대하여 강제징수하여 入官하오되]

(80)의 구문에서 ‘~대하여’란 의미의 ‘當爲’가 놓이는데 이를 보아 ‘生徵納官爲-’의 선행어에는 ‘乙’이 아닌 ‘良中’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生徵納官爲-’의 선행어에 어떤 격표지도 없는 (80가)에서 ‘生徵納官爲-’의 선행어를 ‘良中’이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이처럼 ‘良中’이 생략된 것이라면 ‘生徵納官爲-’의 선행어는 목적어가 아니다. 그러나 (80나, 다)의 구문을 통해 ‘生徵納官爲-’의 선행어가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當爲’를 생략하고 ‘生徵納官爲-’의 선행어를 목적어로 하여 풀이하였을 때도 구문이 성립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는 ‘~을’과 ‘~대하여’가 서로 어울리지 못함에 반하여 14세기 중엽의 국어에서는 ‘~을’과 ‘~대하여’가 서로 어울려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문법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벌금을 강제징수 당하는 자가 ‘生徵納官爲-’의 앞에서 목적어로 놓이는 구문에 대한 구문 구조는 ‘NP乙 當爲 生徵納官爲-’와 같이 된다.

이번에는 벌금을 강제징수 당하는 자가 ‘生徵納官爲-’의 앞에서 목적어로 놓이되 ‘當爲’가 없이 쓰이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81) 가. 同田宅價本一半生徵沒官齊(5:5)

[동일한 田宅의 값 중 절반을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올 일이다)]

나. 犯人乙當爲罰錢乙一半乙生徵沒官齊(7:4)

[범인을(에) 대하여 罰錢(贖錢)을(으로) 절반을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올 일이다)]

다. 借日乙計爲役錢乙生徵沒官齊(16:6)

[借用日을 계산하여 雇賃錢을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올 일이다)]

라. 闕失爲在乙良本乙生徵齊(16:1)

[분실한 경우에는 값을 강제징수한다(하올 일이다)]

마. 初犯是去等一朔祿俸乙還生徵爲遣(3:1)

[초범이거든 한달치 급료를 강제징수로 환수하고]

바. 未役七朔贖錢乙良四貫九百文乙生徵爲乎矣(1:24)

[服役하지 않은 7개월간의 贖錢은 4貫9백文을 강제징수하오되]

(81)의 구문에서 ‘乙’이 통합하는 명사구는 벌금을 강제로 물어야만 하는 자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벌금형 범죄자가 목적어로 오는 구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에서와 동일하다. 다만 ‘當爲’가 구문에 놓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81)의 구문을 ‘當爲’가 생략된 구문으로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當爲’가 없는 구문 구조 그 자체를 하나의 구문 구조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는 구문의 의미가 다르면 구문 구조도 다르다고 본다. 그러면 먼저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의 의미를 보자. 이 구문 구조에서는 ‘當爲’에 의하여 강제징수될 대상이 지적된다. 즉,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강제징수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목적어를 서술하는 것은 ‘生徵納官爲-’가 아니라 ‘當爲’이다. 그러므로 이 구문 구조는 ‘當爲’의 선행 목적어와 동일한 목적어가 ‘當爲’의 뒤에서 그리고 ‘生徵納官爲-’의 앞에서 생략된 ‘NP₁乙 當爲 (NP₂乙) 生徵納官爲-’ 구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₁=NP₂]이므로 ‘NP₂’는 생략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이때 생략된 ‘NP₂’가 ‘生徵納官爲-’의 서술을 받는 목적어가 된다.

대상을 지적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이므로 이런 의미를 지닌 ‘當爲’는 필수적으로 구문에 표지하여야 할 성분이다. 따라서 이는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81)은 ‘當爲’가 생략된 구문이 아니라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게 강제징수할 대상을 지적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을 들어 보였을 뿐인 구문인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81)의 경우에는 구문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징수할 대상을 단지 말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81)에 대하여 ‘NP₁乙 當爲 (NP₂乙)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와 같은 분석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굳이 (81)의 구문에 대해 강제징수할 대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81)의 구문 구조는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게 ‘NP乙 生徵納官爲-’ 구문 구조로 된다.

한편, ‘生徵納官爲-構文’에는 강제징수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을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구문은 누구를 강제징수하느냐가 중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제징수하느냐가 중시된 경우라 하겠다.

(82) 가. 徵銅以生徵爲臥乎金銀乙良(1:26)

爲臥乎(호누온):하는

[徵銅으로서 강제징수하는 金銀은]

나. 一日銅錢六十文式以生徵齊(1:26)

式以(식으로):씩으로

[하루에 동전 60文씩으로 강제징수한다(하올 일이다)]

다. 官物壞失例以與罪生徵納官(7:6)

[官物の 괴실 예로써 죄를 부여하고 강제징수하여 관에서 거둔다]

라. 每名工錢乙一日六十文式以生徵納官爲乎事(17:3)

[각 사람의 품삯을 하루 60文씩으로 강제징수하여 官에 납입하올 일]

(82)의 구문에서 ‘徵銅’, ‘銅錢六十文式’, ‘官物壞失’, ‘六十文式’ 등은 ‘生徵納官’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以 生徵納官爲-’와 같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는 강제징수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에서 보이는 ‘NP’는 강제징수 당하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강제징수에 있어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강제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生徵納官爲-構文’은 ‘乙良’이 ‘生徵納官爲-’의 선행 명사구를 통합한다.¹⁰⁷⁾

107)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生徵納官爲-構文’ 중에는 (1)에서 보는 것처럼 ‘生徵納官爲-’의 선행 명사구에 조사가 보이지 않는 구문이 보인다.

(1) 가. 犯人罪同價本生徵沒官爲乎矣(5:5)

[범인의 죄와 동일하며 값은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하오되]

나. 墳地交易人及證保人亦知情爲在乙良各杖八十遣價本生徵沒官齊(18:15)

(83) 가. 科式出食乙良生徵納官爲乎事(5:6)

科式:일정의 前例, 出食:착복한 국유곡물

[前例에 의하여 착복한 國有穀物은 강제징수하여 官에 납입하을 일]

나. 初亦贈與財物乙良生徵納官齊(7:5)

[처음에 증여한 재물은 강제징수하여 官에 납입한다(하을 일이다)]

다. 放賣爲乎人矣價本乙良生徵沒官齊(18:13)

爲乎(호온):~한

[방매한 사람의 값은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을 일이다)]

라. 減一等遣費用工錢乙良並只生徵還官爲乎事(29:2)

工錢:물건을 만든 것에 대한 품삯

[1等を 덜고 費用과 工錢은 모두 강제징수하여 官으로 환수하을 일]

이와 같이 강제징수할 것을 ‘乙良’으로써 통합함으로써 제시하는 구문의 구조는 ‘NP乙良 生徵納官-’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乙良’의 통합을 받는 ‘NP’는 강제징수 하여야 할 내용이 된다.¹⁰⁸⁾

[모지를 산 사람 및 중개인이 정황을 안 경우에는 각각 杖八十하고 값은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을 일이다)]

이 경우 우리가 문맥상 상정해 볼 수 있는 조사로는 ‘乙良’과 ‘乙’이 있다. 구문의 의미상 이 두 개의 조사는 어느 것이든 쓰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어느 조사가 생략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동일 구문 구조에서 조사가 표지된 다른 구문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구문에서는 ‘乙良’이 쓰인 예와 ‘乙’이 쓰인 예가 모두 나타난다.

(2) 가. 放賣爲乎人矣價本乙良生徵沒官齊(18:13)

[방매하은 사람의 값을 강제징수하여 官에서 몰수한다(하을 일이다)]

나. 放賣爲乎價本乙生徵不得爲乎喻去等(22:4)

[방매하은 값을 강제징수 못하은 것이거든]

따라서 이처럼 어느 조사가 생략되었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구문들은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제외하였다.

108) “大明律直解”에서는 처벌에 의한 것은 아니나 관에 물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즉, 貢納에 관한 구문인데, 貢納은 관에 소속된 匠人 등이 일정량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바치는 일이다. 이를 “大明律直解”에서는 ‘納上爲-’라는 서술어으로써 보이고 있다.

‘納上爲- 構文’은 관에 물품이나 금전을 납부하는 내용을 가지는 구문이다. 다만, 이의 성질이 범죄에 따른 처벌로서의 납부가 아닌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의한 납부이므로 ‘生徵納官爲-構文’과는 엄격히 구

3. 6. 4. 2. 6 ‘笞(杖)爲-構文’

“大明律直解”에는 現代刑律에서와는 다르게 體刑으로서 荊杖刑을 두고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荊杖刑에는 ‘笞刑’과 ‘杖刑’ 두 유형이 있다. 여기서 ‘笞刑’이 ‘杖刑’보다 약한 荊杖刑이다.

그런데 이들 ‘笞刑’과 ‘杖刑’이 구문에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數詞가 ‘笞’ 또는 ‘杖’의 뒤에 놓인다. 이는 이들이 荊杖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爲-’가 數詞의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다.¹⁰⁹⁾ 이제까지 ‘爲-’와 결합된 서술어의 예로 본다면 ‘Num 笞爲-’ 혹은 ‘Num 杖爲-’ 아니면 ‘笞爲 Num’이나 ‘杖爲 Num’으로 쓰일 법하나 “大明律直解”에서는 그렇게 쓰인 예가 없다.

따라서 ‘笞刑’ 또는 ‘杖刑’을 이르는 구문은 반드시 ‘笞(杖) Num 爲-’라는 고정된 구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문 구조는 ‘笞刑’이나 ‘杖刑’에서 공통되게 보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구문의 내용이 ‘笞刑’이나 ‘杖刑’이며 ‘笞(杖) Num 爲-’ 구문 구조를 가진 이들 구문에 대하여 ‘笞(杖)爲-構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笞(杖)爲-’라고 쓰인 예는 없으나 ‘笞(杖) Num 爲-’에서 구문의 서술어는

분되어야 할 것이다.

‘生徵納官爲-構文’도 물품이나 금전의 관납이 내용이 되나 구문에서의 능동적인 주체는 관이 되고 납부자는 단지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生徵納官爲-構文’은 관에 의한 일정량의 몰수구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納上爲-構文’은 납부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자가 납부자이며 관은 수동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納上爲-構文’은 ‘生徵納官爲-構文’과는 다른 구문이라 할 것이다.

(1) 凡各納者亦依例納官貢物及官司良中納上爲音可雜物色(7:4)

위의 ‘納上爲-構文’에서 ‘納上爲-’에 선행하는 ‘官司’는 바로 공물을 바쳐야 할 장소이다. 이는 ‘納上爲-構文’에서 처소가 서술어에 선행됨을 보이는 것으로 그 구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2) NP良中 納上爲-

(2)의 구문 구조에서 처격 조사 ‘良中’의 통합을 받는 ‘NP’는 공납자가 공납해야 할 장소이다. 따라서 처소가 서술어의 앞에 놓인다.

이러한 구문 구조는 서술어의 선행어를 ‘(乙)當爲’ 서술하거나 ‘例以’로써 통합하는 ‘生徵納官爲-構文’이나, 서술어의 선행어를 ‘乙’로써 통합하는 ‘捧上爲-構文’의 구문 구조하고도 다르다 할 것이다.

109) 徒流刑일 경우에도 數詞가 구문에 놓이나, 이때는 ‘爲-’의 바로 앞에 놓이지 않고 ‘爲-’의 선행 NP인 ‘里’나 ‘年’의 앞에 위치한다.

‘笞(杖)爲-’이지 ‘笞(杖) Num 爲-’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의 순서에 있어서도 구문에서 보이는 ‘笞(杖) Num 爲-’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Num 笞(杖)爲-’의 순으로 해석을 한다. 이유는 ‘笞(杖) Num’이 한문어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荊杖刑에 대한 구문은 ‘笞(杖)爲-構文’으로 한다.

여기서는 ‘笞(杖)爲-構文’의 구조 분류에 있어서 ‘笞刑’ 또는 ‘杖刑’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술부가 ‘笞(杖) Num 爲-’로 공통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笞(杖)爲-構文’을 살펴보기로 한다. ‘笞(杖)爲-構文’이 荊杖刑을 다루는 구문이므로 우리는 우선 荊杖刑을 당할 자가 구문에 놓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荊杖刑을 받는 자는 구문에서 목적으로 놓일 것이다. 따라서 그 구문 구조는 ‘NP乙 笞(杖) Num 爲-’가 될 것이다. 이때 ‘NP’는 荊杖刑을 받을 자가 된다.

실제로 우리는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를 지닌 구문을 “大明律直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내용이 ‘笞刑’인 구문부터 보기로 한다.

(84) 가. 借用爲在人等乙笞五十爲乎矣(7:6)

[차용한 사람들을 笞五十하오되]

나. 所任官員匠人等乙各笞四十爲乎矣(7:10)

[所任官員 및 匠人 등을 각각 笞四十하오되]

다. 犯禁行人乙笞三十齊二更三更四更良中犯禁爲在乙良笞五十齊(14:14)

[야간통행 금지를 어긴 사람을 笞三十하고 2更, 3更, 4更에 야간통행 금지를 어긴 경우에는 笞五十한다(하울 일이다)]

라. 其餘不行人等乙並只笞五十爲乎矣(18:18)

[그 나머지의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笞五十하오되]

마. 其中自占挾持起送不冬爲在乙良郎廳官吏乙各笞五十齊(22:8)

起送:사람을 내세워 보냄

[그 중 (서로) 자신이 차지하여 끼어 가지고는 사람을 내세워 보내지 아니 하거들랑 郎廳官吏를 각각 笞五十한다(하울 일이다)]

바. 典獄官員令史獄卒等乙笞五十齊(28:5)

[감옥을 감시하는 官員, 令史, 獄卒 등을 笞五十한다(하울 일이다)]

사. 一分乙遲慢爲去等匠人乙笞二十齊(29:3)

[1분을 지연하거든 匠人을 笞二十하고]

아. 失時爲在乙良次知官吏乙各笞五十齊(30:1)

[때를 놓치거들란 책임관리를 각각 笞五十하고]

자. 破毀修理不冬行路乙塡塞爲在乙良次知官吏乙笞三十齊(30:2)

[깨지고 헐은 (것을) 수리 아니 하여 길을 메이고 막히게 하거들란 책임 관리를 笞三十한다(하올 일이다)]

(84)의 구문에서 ‘笞刑’을 받을 사람이 목적어로서 ‘笞’의 앞에 놓이고 있다. 그리고 ‘笞刑’의 형량인 數詞는 모두 ‘笞’의 뒤에 놓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문의 서술어인 ‘爲-’가 數詞의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 (84)의 구문은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에 해당하는 구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번에는 형벌의 내용이 ‘杖刑’인 구문에서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를 찾아보기로 한다. 내용이 ‘杖刑’인 구문도 ‘笞(杖)爲-構文’이므로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를 가진 구문이 있을 것이다. (85)에서 보이는 예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구문들이다.

(85) 가. 次知員吏等乙各杖一百遣停職役充軍爲齊(2:1)

[책임관리 등을 각각 杖一百하고 정직시켜 충군한다(하올 일이다)]

나. 凡有賦役一戶乙戶籍全不付爲在乙良家長乙杖一百遣(4:2)

[무릇 부역이 있는 1戶를 戶籍 全部에 부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家長을 杖一百하고]

다. 虛稱老弱疾病爲賦役回避令是在乙良一口以至三口是去等家長乙杖六十(4:2)

口:賤人의 수를 세는 단위

[거짓으로 老弱疾病하다 칭하여 부역을 회피시킨 경우에는 1口에서 3口에 이르기든 家長을 杖六十(한다)]

라. 差役乙隱避爲使內不冬爲在乙良家長乙杖一百齊(4:6)

使內不冬爲在乙良(바리 안들 흥건으란):시키지 아니 한 경우에는

[差役(부역)을 隱避하여 (差役을) 시키지 아니 한 경우에는 家長을 杖一百한다(하올 일이다)]

마. 次知熟飧各色掌等乙杖一百齊(12:1)

[次知熟飧과 각 色掌 등을 杖一百하고]

바. 親幸船楫乙誤不堅固爲在乙良工匠人乙杖一百爲旰(12:2)

[왕이 사용하는 배와 노를 잘못하여 견고하게 아니 한 경우에는 工匠人을 杖一百하며]

사. 飲酒食肉爲在乙良家長乙杖八十遣(12:8)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거들란 家長을 杖八十하고]

(85)에서 보듯이 내용이 ‘杖刑’인 구문에서도 (84)에서와 동일하게 ‘笞(杖) Num 爲-’의 구조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의 구문에서도 ‘杖刑’을 받을 사람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는 荆杖刑을 받을 사람이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에서처럼 ‘笞(杖) Num 爲-’의 앞에 위치하되 목적어가 아닌 구문이 있다. 이 구문에서는 荆杖刑을 받을 사람이 단순히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서 놓이고 있다. 이 구문에서 荆杖刑을 받을 사람을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乙良’이다. 이러한 구문에 대하여 내용이 ‘笞刑’인 경우를 보자.

(86) 가. 家長乙與罪爲跡各次知匠人乙良笞五十齊(12:6)

[家長을 처벌하며 각 책임 장인은 笞五十한다(하울 일이다)]

나. 鄉飲酒禮亦已有恒式爲去乙違者乙良笞五十爲乎事(12:8)

[鄉飲酒禮가 이미 있어 일정 불변의 격식으로 하거늘 위반하는 자는 笞五十하울 일]

다. 交易人乙良笞四十爲遣馬匹價本乙良沒官爲乎矣(14:8)

[매입자는 笞四十하고 馬匹 값은 관에서 몰수하오되]

라. 請借人等乙良各笞五十遣(16:6)

[請借人 등은 각각 笞五十하고]

마. 騾驢乙良笞五十遣許給爲在官吏乙良各減一等爲乎事(16:7)

[(빌린 것이) 노새나 나귀는(인 경우는) 笞五十하고 공급을 허락한 관리는 각각 1等を 減하울 일]

바. 駙丞及書者乙良笞四十爲乎事(17:3)

[駙丞 및 書者는 笞四十하울 일]

사. 並只不許爲證爲乎矣違者乙良笞五十爲乎事(28:6)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을 不許하오되 위반하는 자는 笞五十하울 일]

아. 初亦事發處良中起送決斷爲乎矣違者乙良笞五十齊(28:7)

起送:죄수호송

[처음에 사건이 발각된 곳에(으로) 죄수를 호송하여 판결하오되 위반하는 자는 笞五十한다(하울 일이다)]

자. 行移修理爲乎矣違者乙良笞四十齊(29:4)

[통첩하여 수리하오되 위반하는 자는 笞四十한다(하울 일이다)]

(86)에서 ‘乙良’의 선행어는 모두 ‘笞刑’을 당할 자들이 된다. 그런데 ‘~의 경우에는’이라는 의미의 ‘乙良’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笞刑’에 있어서 조건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문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면 ‘笞刑’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NP乙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와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86)의 구문 구조는 ‘NP乙良 笞(杖) Num 爲-’로 분석한다.

이번에는 구문의 내용이 ‘杖刑’인 구문에서 ‘NP乙良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인 것을 찾도록 한다.

(87) 가. 冒弄免役爲要避重役就輕役者乙良杖八十齊(4:3)

[欺瞞(으로서) 역무를 면하려 (하고) 重役을 피하고 輕役을 따른 자는 杖八十한다(하울 일이다)]

나. 佗子息無去乙背恩捨去者乙良杖一百遣(4:4)

[다른 자식이 없거늘 背恩하고 버리고 간 자는 杖一百하고]

다. 他異姓人子乙收養作子爲敗亂宗族者乙良杖六十齊(4:4)

[성이 틀린 다른 사람의 아들을 아들로 삼아 수양하여 종족을 문란하게 한 자는 杖六十한다(하울 일이다)]

라. 妻妾乙良杖八十齊知情交嫁人亦同罪並只離異爲乎矣(6:3)

[妻妾은 杖八十한다(하울 일이다). 情況을 알고 交嫁한 사람 역시 죄가 같고 모두 이혼하오되]

마. 監守自盜例以論齊造作匠人乙良杖八十齊(10:3)

[監守自盜의 例로써 論罪하고, (이를) 제작한 장인은 杖八十한다(하울 일이다)]

바. 藥封名乙錯書爲在醫員乙良杖一百齊(12:1)

[약봉지의 명칭을 잘못 쓴 의원은 杖一百한다(하울 일이다)]

사. 徒三年齊造成工匠乙良杖一百遣(12:6)

[徒三年하며, (이를) 만든 匠人은 杖一百하고]

아. 非時趣便以開閉者乙良杖一百齊(13:8)

趣便以(취편으로):제 마음대로

[아닌 때에 제 마음대로 열고 닫은 자는 杖一百한다(하울 일이다)]

자. 傷人爲良在等爲首乙良斬爲從乙良杖一百遣(14:6)

[사람을 다치게 하였거든 正犯은 斬하며 從犯은 杖一百하고]

구문의 내용이 ‘杖刑’인 (87)의 경우에도 ‘杖刑’을 받을 사람이 ‘乙良’의 통합에 의하여 조건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문은 ‘杖 Num 爲-’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므로 (87)의 경우에도 ‘NP乙良 答(杖) Num 爲-’ 구문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荊杖刑의 부과에 있어서 조건이 오되 ‘NP乙良 答(杖) Num 爲-’ 구문 구조 150에서처럼 사람이 아닌 행위가 오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88)의 구문은 내용이 ‘答刑’인 구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의 의미를 지닌 ‘爲在乙良’이 서술함으로써 조건화하고 있다.

(88) 가. 凡官吏亦擅自離職役爲在乙良答四十爲乎矣(2:5)

[무릇 관리가 자기 멋대로 직무에서 떠난 경우에는 答四十하오되]

나. 闕爲在乙良各答四十爲乎事(2:5)

[(당직을) 빼거들란 각 答四十하오되]

다. 他餘各司良中出納文字錯誤爲在乙良答二十齊(3:4)

[다른 나머지 각 관사에 출납하는 문서를 착오한 경우에는 答二十한다(하올 일이다)]

라. 他人矣所掌事乙侵犯作弊爲在乙良答五十齊(3:5)

[다른 사람의 소관 일을 侵犯作弊한 경우에는 答五十한다(하올 일이다)]

마. 回避爲要加減爲在乙良答四十齊(3:9)

[회피하려 加減한 경우에는 答四十한다(하올 일이다)]

바. 借用爲在人乙良各答五十爲乎矣(5:7)

[차용한 사람은 각각 答五十하오되]

사. 女家亦他緣故推稱違期爲在乙良並只答五十爲齊(6:2)

[여자의 집안이 다른 이유를 칭하여 기한을 어기거들란 모두 答五十한다(하올 일이다)]

(88)에서 ‘爲在乙良’의 서술을 받는 명사구는 모두 행위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答刑’을 받을 조건이 된다. 여기서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위의 구문은 과거의 행위를 살펴보건대 그 행위가 제시된 행위에 해당하면 ‘答刑’을 내리라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杖刑’을 내리는 구문에서도 이처럼 행위가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다.

(89) 가. 凡奏命出使員亦廻還復命不冬他事良中干預爲在乙良杖一百齊(3:5)

[무릇 奏命出使員이 돌아와서 보고 아니 하고 다른 일에 관여하거들란 杖一百한다(하올 일이다)]

나. 子孫等亦別立家戶財產分執爲在乙良杖一百爲乎矣(4:9)

[자손 등이 호적을 별도로 세워 재산을 나누어 가지거들란 杖一百하오되]

다. 凡嫡妻乙爲妾爲在乙良杖一百齊(6:3)

[무릇 본 부인을 첩으로 하거들란 杖一百한다(하올일 이다)]

라. 正妻現在爲去乙他妻更娶爲在乙良杖九十遣(6:3)

[본 부인이 현재하거늘 다른 부인에게 다시 장가들거들란 杖九十하고]

마. 凡父母喪及夫喪等乙蒙白爲嫁娶爲在乙良杖一百爲弥(6:4)

[무릇 부모의 초상 및 남편의 초상 등을 입고도 시집장가들거들란 杖一百하며]

바. 私處良中打傷推問囚禁爲在乙良並只杖八十爲齊(20:8)

[개인집에서 상해, 심문, 감금하거들란 모두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89)의 구문에서도 행위는 ‘爲在乙良’의 서술에 의하여 조건으로 놓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杖 Num 爲-’에 의하여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VP爲在乙良 笞(杖) Num 爲-’ 구문 구조로 분석된다.

그런데 ‘笞(杖)爲-構文’에서 數詞를 ‘爲-’가 바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爲-’가 직접 서술하는 것은 數詞가 아닌 數詞의 선행 NP이다. 이는 ‘笞(杖) Num’가 한자어 구성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한문구문에서는 서술어가 서술되는 명사에 선행한다. 따라서 우리 말로 해독을 할 경우에는 한문구문의 어순과는 반대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문구문 ‘笞五十’의 경우 이의 독해에서는 ‘불기치기 50(대)하라’가 아니라 ‘50(대) 불기치기 하라’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른 ‘笞(杖)爲-構文’의 ‘笞(杖) Num’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독해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구문에서 ‘爲-’는 數詞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笞’나 ‘杖’을 서술하는 것으로 분석하여야 옳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수사 뒤에 붙는 단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笞(杖)爲-構文’의 경우에는 매를 치는 행위의 횟수를 세는 단위인 ‘回’나 매의 개수를 세는 단위인 ‘臺’가 붙어야 하나 이러한 단위가 붙는 예는 “大明律直解”에서는 전혀 없다. 이는 數單位가 붙지 않은 漢文本을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우리 말로 풀어쓰는 吏讀本에서조차도 數單位를 쓰지 않음으로써 數單位가 數詞에 붙지 않는다

는 특이점을 “大明律直解”가 보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數詞가 ‘하-’ 앞에 올 수도 있고, ‘하-’의 선행 NP 앞에 놓일 수도 있다. 즉, ‘NP Num하-’가 되든가 ‘Num NP하-’가 될 수 있다.

- (90) 가. 줄넘기 50번 하기
가'. 50번 줄넘기 하기
나. 발차기 100회 하기
나'. 100회 발차기 하기

따라서 ‘答(杖)爲-構文’에서도 ‘答(杖) Num爲-’ 외에 ‘Num 答(杖)爲-’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Num 答(杖)爲-’로 쓰인 예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大明律直解”의 ‘答(杖)爲-構文’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荊杖刑에 있어서 ‘答刑’이나 ‘杖刑’을 선고하기에 앞서 어떠한 다른 선고를 먼저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구문을 “大明律直解”에서 찾을 수 있다. (91)에서 보듯이 ‘爲乎矣’가 荊杖刑의 선고에 앞선 선고를 서술하고 있다.

- (91) 가. 每三人加一等爲乎矣答四十爲限齊(2:7)
[每 3인에 1等を 더하오되 答四十에 限한다(하올 일이다)]
나. 每一日加一等爲乎矣答四十爲限遣(2:7)
[每 1일에 1等を 더하오되 答四十에 限하고]
다. 每一月加一等爲乎矣答五十爲限齊(9:2)
[每 1월에 1等を 더하오되 答五十에 限한다(하올 일이다)]

荊杖刑의 내용이 ‘答刑’인 (91)의 구문은 ‘答刑’에 앞서 다른 형벌을 선고하고 있다. 이 형벌은 ‘~하오되’란 의미의 ‘爲乎矣’가 서술함으로써 이 구문은 ‘答刑’이 ‘答刑’에 앞선 선고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문은 荊杖刑으로서 ‘杖刑’이 주어진 구문에서도 보인다. (92)의 구문이 바로 그 예문으로서 ‘杖刑’에 앞선 형벌은 실제로 주어지는 ‘杖刑’과는 무관하다.

- (92) 가. 每三日爲加一等決罪爲乎矣杖八十爲限遣(2:6)

[每 3일에 1等씩 더하여 決罪하오되 杖八十에 限하고]

나. 各加本罪二等爲乎矣杖一百爲(3:9)

[각각 본죄에 2等を 더하오되 杖一百하여]

다. 私有罪例良中加一等爲乎矣杖一百爲限齊(14:9)

[私有罪의 例에서 1等を 더하오되 杖一百에 限한다(하울 일이다)]

라. 所犯人矣罪良中減二等爲乎矣杖八十爲限齊(22:2)

[그 범인의 죄에서 2等を 덜되 杖八十에 限한다(하울 일이다)]

마. 誣告爲在乙良加三等爲乎矣杖一百爲限遣(22:4)

[誣告한 경우에는 3等を 더하오되 杖一百에 限한다(하울 일이다)]

이와 같이 ‘爲乎矣’가 선행 선고를 서술함으로써 후행 선고가 선행 선고에 구속되지 않음을 보이는 구문의 구조는 ‘VP爲乎矣 答(杖) Num 爲-’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문 구조의 경우 선행 선고와 후행 선고가 각각 별개로 진행되므로 구문에서 선행 선고와 후행 선고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答(杖) Num爲乎矣 VP爲-’라고 쓰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大明律直解”에서는 數詞가 오는 ‘答刑’이나 ‘杖刑’이 반드시 후행 선고로 위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大明律直解”의 ‘答(杖)爲-構文’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구문 구조에는 荆杖刑의 선고에 있어서 신분이나 어떠한 상태가 전제되는 것이 있다. 이때 이 전제는 ‘~이 거든’의 의미를 지닌 ‘是去等’에 의해 이루어진다. (93)에서 보는 구문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용은 ‘答刑’의 선고이다.

(93) 가. 萬戶名下一百是去等各答五十遣(14:10)

[萬戶名 아래에 一百이거든 각각 答五十하고]

나. 小功是去等答五十齊(21:2)

[小功親屬이거든 答五十한다(하울 일이다)]

다. 總麻是去等答四十爲乎矣(21:2)

[總麻親屬이거든 答四十하오되]

라. 兩朔是去等答三十齊(27:6)

[兩朔이거든 答三十한다(하울 일이다)]

마. 三朔是去等答四十齊(27:6)

[3朔이거든 答四十한다]

(93나, 다)의 ‘小功’, ‘總麻’는 신분이고 (93가, 라, 마)의 ‘萬戶名下一百’, ‘兩朔’, ‘三朔’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是去等’에 의해 서술됨으로써 ‘笞刑’의 선고에 있어 전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의 전제에 맞지 않으면 위의 ‘笞刑’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문의 구조는 ‘NP是去等 笞(杖) Num 爲-’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 구조는 荊杖刑의 내용이 ‘杖刑’인 경우에도 보이는데 (94)의 예문이 그 경우이다.

(94) 가. 螺匠是去等杖八十爲乎事(12:5)

[자개장이거든 杖八十하올 일]

나. 再犯是去等杖一百爲乎矣(14:7)

[再犯이거든 杖一百하오되]

다. 初犯是去等杖九十遣(14:12)

[초범이거든 杖九十하고]

라. 駝騾驢是去等杖八十齊(16:3)

[낙타, 노새, 나귀이거든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마. 大功親是去等杖一百齊(20:10)

[大功親屬이거든 杖一百한다(하올 일이다)]

바. 大功是去等杖八十齊(21:2)

[大功親屬이거든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94)에서 ‘螺匠’, ‘大功親’, ‘大功’은 신분이고 ‘再犯’, ‘初犯’, ‘駝騾驢’는 상태이다. 이들은 위의 (93)에서와 동일하게 ‘是去等’의 서술을 받아 ‘杖刑’의 선고에 있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선고가 ‘杖刑’인 (94)의 경우에도 ‘NP是去等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분이나 상태를 전제로 하는 ‘NP是去等 笞(杖) Num 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게 행위를 전제로 하는 ‘笞(杖)爲-構文’도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진다. 이때 전제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荊杖刑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고가 ‘笞刑’인 구문에서 이를 보기로 한다. 다만 (95가, 나, 다)에서는 ‘爲遣’이 생략되었다.

(95) 가. 一日遲晚爲去等笞二十每三日加一等笞五十爲限爲乎事(14:13)

[1일이 늦거든 笞二十하고 매 3일에 1等を 더하여 笞五十에 限하올 일]

나. 一分陳荒爲去等答二十每 一分加一等杖八十爲限遣(5:6)

[1분이 황폐하거든 答二十하고 매 1분에 1등을 더하여 杖八十에 限하고]

다. 一日遲晚爲去等答二十每三日加一等答五十爲限爲乎事(14:13)

[1일이 늦거든 答二十하여 매 3일에 1등을 더하여 答五十에 限하올 일]

라. 本價良中不減爲去等唯只答三十遣生徵不冬齊(16:4)

[값에서 덜지 못하거든 오직 答三十하고 강제징수는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95) 구문에서 행위가 전제로 되는 것은 ‘~하거든’의 의미를 지닌 ‘爲去等’이 행위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遲晚’, ‘陳荒’, ‘不減’ 등이 상태가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도 이들을 ‘爲去等’이 서술함에 의해서이다.

이처럼 ‘爲去等’의 명사구 서술에 의해 荊杖刑의 선고에 있어 전제가 주어지는 경우는 선고의 내용이 ‘杖刑’인 구문에서도 보인다.

(96) 가. 子孫矣屍體乙毀棄爲去等杖八十齊(18:15)

[자손의 시체를 훼손하여 버리거든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나. 惡人乙趣便以殺害爲去等杖六十遣(20:17)

[악한을 자의로 살해하거든 杖八十하고]

다. 登聞鼓乙擊打申訴爲乎矣所告不實爲去等杖一百爲彌(22:1)

[登聞鼓를 쳐서 하소연하되 알리는 바가 부실하거든 杖一百하며]

라. 街市民家良中居住爲去等杖八十齊(29:4)

[거리의 민가에 거주하거든 杖八十한다(하올 일이다)]

(96)에서도 ‘爲去等’의 선행 명사구는 행위로서 ‘杖刑’의 선고에서 있어서 전제되는 조건이 되었다. 때문에 전제되는 행위가 없으면 ‘杖刑’ 또한 없다. 다만 (96다, 라)는 경우에 따라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위의 경우는 ‘爲去等’의 서술에 의하여 행위가 된다. 즉, (96다)는 ‘고하는 바를 부실하게 하거든’으로, (96라)는 ‘거주하는 행위를 하거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위가 전제되는 ‘答(杖)爲-構文’의 구조는 ‘VP爲去等 答(杖) Num 爲-’와 같이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행위가 되는 ‘NP’는 이미 발생된 사건이 아닌 미발생 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 구조는 예측 사건에 대한 荊杖刑 선고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3. 6. 4. 2. 7 ‘徒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 年限이 주어지는 처벌에는 강제노역이 있다. 이 경우는 ‘徒爲-’로 써 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구문의 내용이 ‘徒刑’일 경우 이를 ‘徒爲-構文’이라 하기로 한다. 다만, 실제의 구문에 있어서는 서술부가 ‘徒爲-’로서 나타나지 않고 ‘徒 Num年 爲-’의 구문 구조로서 쓰이고 있다. 이는 年限이 ‘徒刑’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술부에서 보이는 것이다.

‘徒刑’은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므로 부역의 年限이 반드시 구문에 와야 하므로 年限이 구문에 놓여야 한다. 그래서 ‘徒爲-構文’은 ‘徒 Num年 爲-’와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제약은 다른 처벌구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徒爲-構文’만의 특징이 된다.

‘徒爲-構文’에서 年限은 서술어의 내부, 즉 ‘徒’와 ‘爲-’의 사이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徒 Num年’이라는 한문구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죄인은 3년간을 함경도에 유배한다”와 같이 ‘年限’이 서술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는 구문 구조는 쓰지 않고 있다. 때문에 ‘Num年 徒爲-’라는 구문 구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徒爲-構文’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 “大明律直解”에서 볼 수 있는 ‘徒爲-構文’을 보기로 한다.

(97) 가. 加一等爲乎第亦中卽杖七十爲遣徒一年半爲齊(1:40)

爲乎第亦中(흐온데여히):하온 경우에

[1等を 더한 경우에 즉시 杖七十하고 一年半의 徒役에 처한다(하올 일이다)]

나. 每三人加一等罪止杖一百徒三年爲乎事(2:3)

[每 3인에 1等を 더하여 杖一百에 그치고 徒三年에 처하올 일]

다. 漏通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爲乎矣(3:6)

[누설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하오되]

라. 妻妾子孫者乙良杖八十徒二年齊(4:5)

[妻妾子孫은 杖八十하여 徒二年한다(하올 일이다)]

마. 妄稱奴婢是如使用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4:5)

[망령되이 稱하여 노비이다 (하고) 사용한 것은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바. 大祀入神御之物乙棄毀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1:2)

[大祀入神御의 물품들을 버리고 훼손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사. 借用爲在人等乙良各杖一百徒三年齊(12:2)
 [차용한 사람등은 각각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아. 凡父母喪及夫喪乙聞知爲遣隱匿哀痛行喪不冬爲在乙良杖六十徒役一年齊(12:7)
 [무릇 부모상 및 남편의 상을 들어 알고 숨기고 애통(해 하며) 초상을 치루지 않거 들랑 杖六十하여 1년간 徒役을 시킨다]
- 자. 其餘官物等乙偷取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8:3)
 [그 남은 관물 등을 훔치거들란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차. 門鑰乙偷取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8:4)
 [문의 자물쇠를 훔치거들란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카. 他矣財物乙奪取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8:8)
 [남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타. 牛馬乙偷取持去宰殺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18:10)
 [소나 말을 훔쳐 가지고 가서 도살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파. 放賣爲奴婢者乙良杖一百徒三年齊(18:13)
 [방매한 노비는 杖一百하여 徒三年한다(하올 일이다)]
- 하. 謀略以放賣爲在乙良杖八十徒二年齊(18:13)
 [모략으로써 放賣한 경우에는 杖八十하여 徒二年한다(하올 일이다)]

(97)의 구문에서 우리는 ‘徒’의 앞에 修史가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數詞는 杖刑에 관계된 數詞이므로 數詞의 뒤에는 ‘爲遣’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答(杖)爲-構文’의 서술부가 ‘答(杖) Num 爲-’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7)의 예문은 ‘答(杖)爲-構文’과 ‘徒爲-構文’이 대등연결되는 구문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문 구조는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로 분석된다.

‘徒爲-構文’에서는 ‘答(杖)爲-構文’이 선행하고 있다. 이는 ‘徒刑’을 선고함에 있어 ‘杖刑’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徒爲-構文’은 ‘答(杖)爲-構文’과 대등 연결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6. 4. 2. 8 ‘流爲-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杖刑’과 더불어 다른 곳으로 강제추방시키는 처벌이 있다. 즉, 이 처벌은 ‘流刑’으로서 죄수를 타 지역으로 유배보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구문은 ‘流

爲-’로써 이의 처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처벌의 내용이 ‘流刑’일 경우 이를 ‘流爲-構文’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流爲-構文’에서 거리로서 ‘遠’이 쓰이지 않는 이상 서술어가 ‘流爲-’의 모습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遠’이 쓰이지 않은 ‘流爲-構文’에서는 ‘流’와 ‘爲-’의 사이에 數詞 및 거리의 단위가 놓인다. 때문에 구문에서 서술부는 ‘流 Num里 爲-’의 구조로 쓰이고 있다.

‘遠’이 쓰이지 않은 ‘流爲-構文’에서 서술부가 ‘流 Num里 爲-’의 구조로 되는 것은 거리가 ‘流刑’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流刑’은 他地로의 강제추방이므로 어느 정도로 멀리 보내느냐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문에서는 이에 대한 거리를 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거리는 필수적으로 구문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遠’이 쓰이지 않은 ‘流爲-構文’에서는 ‘流 Num里 爲-’와 같은 구조의 서술부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서술부는 ‘遠’이 쓰이지 않은 ‘流爲-構文’에서만 보인다.

거리는 ‘流爲-構文’에서 ‘流’와 ‘爲-’의 사이에 놓이고 있다. 이는 한문본이 ‘流 Num里’로 되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술부가 ‘流 Num里 爲-’와 같은 구조로 된 것이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는 ‘Num里 流爲-’로 하여야 한다. 이는 한문구문인 ‘流 Num里’의 해석이 ‘Num里 流’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流 Num里 爲-’를 우리 말 어순으로 ‘Num里 流爲-’로 쓴 예는 “大明律直解”에서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문어순의 ‘流 Num里’에 우리 말의 서술어 ‘爲-’를 결합시킨 구문 구조가 ‘流爲-構文’에서 보인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流爲-構文’을 보기로 한다. (98)의 예문은 ‘流刑’에 관한 구문으로서 ‘笞(杖)爲-構文’이 流爲-構文’에 선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8) 가. 杖一百爲遣流二千里爲齊(1:40)

[杖一百하고 二千里에 유배한다(하울 일이다)]

나. 干連人乙減一等杖一百爲限流三千里遣(1:42)

[관련인을 1等を 덜어 杖一百에 限하고 三千里에 유배하고]

다. 枉法及盜罪良中依憑依憑准論爲罪止杖一百流三千里遣(1:43)

[枉法 및 절도죄에 의거하여 准論하며 杖一百에 그치고 三千里에 유배하고]

라. 奪占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齊(5:4)

[빼앗아서 차지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울 일이다)]

마. 向大社射放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齊(13:6)

- [大社를 향하여 활을 쏘거들란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을 일이다)]
- 바. 不告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爲乎事(18:2)
[아니 고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하을 일]
- 사. 知而不告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齊(18:2)
[알면서도 아니 고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을 일이다)]
- 아. 首者乙絞死遣爲從者乙並只杖一百流三千里齊(18:2)
[正犯을絞死하고 從犯을 함께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을 일이다)]
- 자. 凡京城門良中鑰金乙偷取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齊(18:4)
[무릇 京城門에서 자물쇠를 훔치거들란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을 일이다)]
- 차. 凡強盜已行而不得財物者並只杖一百流三千里遣(18:7)
[무릇 이미 강도질을 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함께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하고]
- 카. 成黨爲脅打奪取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齊(18:7)
[집단을 이루어 협박하고 탈취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三千里에 유배한다(하을 일이다)]

따라서 (98)의 구문들은 ‘笞(杖)爲-構文’의 뒤에 ‘爲遣’이 생략되었고 이 구문은 연결어미 ‘-遣’에 의해 뒤의 ‘流爲-構文’과 대등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笞(杖)爲-構文’이 ‘笞(杖) Num 爲-’ 구조의 서술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러한 상정은 (98)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98가)에서는 ‘杖刑’과 ‘流刑’을 ‘爲遣’으로써 대등연결 시키고 있다.

그런데 (98)의 구문에서는 ‘徒爲-構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杖刑’을 ‘流刑’에 선행 시키고 있다. 이는 ‘流刑’ 역시 ‘徒刑’에서와 같이 ‘杖刑’의 집행 후에 받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流爲-構文’에서는 ‘笞(杖)爲-構文’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98) 구문의 구조는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로 분석한다.¹¹⁰⁾

하지만 ‘流爲-構文’에서는 반드시 數詞가 오지는 않는다. (99)의 예문에서 보듯이 數詞의 자리에 어림짐작 거리의 개념인 ‘遠’이 놓이고 있다.

110) 우리는 ‘流爲-構文’의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구문 구조가 ‘徒爲-構文’의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 구문 구조와 그 구조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문구문에 ‘爲-’만을 덧붙인테서 기인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99) 가. 凡大廟圓丘等叱大祀壇場乙毀損爲在乙良杖一百遠流齊(11:2)

等叱(들잇):들잇

[무릇 大廟圓丘들의 大祀壇場을 헐고 파손한 것을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나. 首者絞死爲遣隨者乙各杖一百遠流齊(11:4)

[正犯은 絞死하고 從犯을 각각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다. 凡佗矣墳墓乙掘取棺槨乙出見者乙良杖一百遠流齊(18:15)

[무릇 남의 무덤을 파서 관을 드러낸 자는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라. 水中良中棄置者乙良各杖一百遠流齊(18:15)

[물 속에 버려 둔 자는 각각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마. 贓物分用不冬爲在乙良杖一百遠流齊(18:17)

[장물을 나누어 쓰지 아니 한 것을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바. 不下手爲在乙良杖一百遠流爲乎矣(19:1)

[하수인 짓을 아니 한 것을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하오되]

사. 助力下手爲在乙良杖一百遠流遣(19:1)

[하수에 조력한 것을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하고]

아. 事狀乙已發爲在乙良杖一百遠流遣(19:2)

[상황을(이) 이미 발생한 것을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하고]

자. 被誣之人乙未決爲有去等誣告人乙杖一百遠流爲弥(22:4)

[被誣告인을 처벌 안 하였거든 誣告人을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하며]

차. 出入爲在罪以論爲杖一百遠流齊(22:12)

[출입한 죄로 논의하고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카. 凡僞造王旨爲在乙良斬齊爲從者杖一百遠流遣(24:1)

[무릇 王旨를 위조한 경우에는 斬하고 從犯은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하고]

타. 親王令旨是去等杖一百遠流齊(24:2)

[親王의 令旨이거든 杖一百하여 멀리 유배한다(하올 일이다)]

그런데 ‘遠’은 한문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99) 구문의 한문본은 ‘流二千里’ 혹은 ‘流三千里’이다. 한문본대로 한다면 (99)의 구문도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구문 구조를 지닌 구문과 같은 형의 구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99)에서는 한문본의 ‘流 Num里’ 구조를 따르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거리에 대한 것을 ‘遠’으로써 나타냄으로서, 결과적으로는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구문 구조와는 다른 구문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즉, ‘流’와 ‘爲-’가 서로 붙어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때문에 (99)의 구문 구조는 ‘杖 Num 爲遣 遠流爲-’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문 구조에서도 ‘杖刑’과 ‘流刑’은 ‘爲遣’으로써 대등연결되고 있다. 다만 이 구조가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구문 구조와 다른 점은 유배거리에 대하여 정확한 거리 개념을 나타내는 ‘流 Num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대략적 거리개념이 되는 ‘遠’을 쓰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처벌에 있어서 정확한 헛수가 요구되는 ‘徒爲-構文’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구문 구조라 할 것이다.

3. 6. 5 요약

‘審問・逮捕 表現 構文’을 보면 이 구문에는 ‘推問爲- 構文’과 ‘捕捉爲- 構文’이 있다. 구문의 내용이 심문일 경우는 ‘推問爲-’로써 이를 나타내고, 체포가 내용일 경우는 ‘捕捉爲-’로써 이 내용을 나타내었다.

‘推問爲- 構文’은 ‘~을 심문하다’라는 형식의 구문으로 쓰였다. 그런데 ‘推問爲-’의 선행어가 수단・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심문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이 언급될 때였다. ‘推問爲- 構文’에서는 절이 ‘推問爲-’의 앞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서술어는 ‘爲-’가 되나 주의적으로 생략되었다.

‘捕捉爲- 構文’ 구문은 죄인을 체포하는 구문이므로 체포당할 범인이 목적어로 온다. 따라서 ‘~을 체포하다’와 같은 문형이 되었다. 이때 목적어는 체포 당할 범인이다. 그런데 ‘NP亦 捕捉爲-’ 구문 구조에서와 같이 반대로 체포하는 사람이 구문이 놓이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의 ‘犯罪 表現 構文’은 ‘殺死爲- 構文’, ‘傷爲-構文’, ‘鬪爲-構文’, ‘行姦爲-構文’, ‘謀爲-構文’, ‘逃爲-構文’, ‘隱匿爲-構文’, ‘隱藏爲-構文’, ‘盜爲-構文’, ‘偷取爲-構文’, ‘冒弄爲-構文’ 등이었다.

여기서 ‘殺死爲- 構文’은 ‘죽이다’라는 의미의 구문이므로 ‘殺死爲-’의 선행어 자리에 살해를 당할 대상이 놓이는 구문 형태를 가졌다. 그런데 이 선행어에 살인자가 놓이기도 하였다. 이때는 ‘殺死爲-’의 선행어는 주어가 되었다.

‘犯罪- 構文’은 누구의 신체에 손상을 가함을 나타내는 범죄구문이다. 때문에 상해를 입는 대상이 ‘傷爲-’의 앞에 목적어로 놓여 ‘누구를 다치게 하다’라는 유형의 구문이 되었다.

싸움질 범죄는 ‘鬪爲-’로써 나타내는데 패싸움의 경우에는 ‘NP果 鬪爲-’의 구문 구조를 보였고, 동년배끼리의 싸움질일 경우에는 ‘NP亦 鬪爲-’의 구문 구조를 보였다.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서술어 ‘行姦爲-’로써 나타냈는데 이에선 두 가지의 유형이 쓰였다. 하나는 이중 주격 구문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이중 목적격 구문을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和姦도 범죄인데 이 경우에도 서술어 ‘行姦爲-’로써 나타내었다. 이때 서술어 ‘行姦爲-’는 和姦의 의미로 쓰였다. 서술어 ‘行姦爲-’가 ‘和姦’이나 ‘姦通’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가 범죄자였다.

범죄에서는 모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범죄모의는 ‘謀爲-’로써 서술하였다. 모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행하기를 결의하는 것이므로 구문은 조격이 놓이는 구문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謀爲- 構文’에는 ‘謀爲-’ 앞에 목적어가 놓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謀爲-’의 앞에 절이 오기도 한다. 이때는 어떤 일을 하다가 전환되어 다른 범죄를 모의하는 경우에 보였다. 이 외에 ‘~할 듯 모의하다가’라는 의미의 ‘謀爲- 構文’도 있었다. 이런 구문은 ‘謀爲-’의 선행어를 ‘爲乎爲’가 서술하였다.

범죄 중에는 도주가 있다. 죄수가 도주하거나 자리를 지켜야 할 자가 도주를 함으로서 범죄가 되는 이러한 도주구문은 ‘逃爲-’ 서술어로서 나타내었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누가 도망하다’라는 것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서) 도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구문이 되기도 하였다.

숨김으로써 범죄가 되는 것에는 ‘隱匿’과 ‘隱藏’이 있다. ‘隱匿’은 숨긴 상태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이고, ‘隱藏’은 숨기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을 때였다. ‘隱匿’은 무엇인가를 숨기는 내용이므로 ‘~에 숨기다’와 같이 숨기는 장소가 처격으로 나왔다.

한편,‘隱匿爲-’의 앞에 절이 오는 구문도 있는데 이 경우는 ‘隱匿’의 내용이나 행위가 선행절에 들어가 있었다.

‘隱藏爲- 構文’에서는 ‘~을 숨기다’라는 유형이 찾아졌다. 그런데 ‘隱藏爲- 構文’에서는 ‘隱藏’의 선행어를 ‘乙良’이 통합하기도 하였다. 이때 ‘乙良’의 선행어는 숨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隱藏爲-’의 선행어가 처소가 되는 구문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격 조사 ‘良中’이 서술어의 선행 명사구를 통합하였다.

‘隱藏爲- 構文’에서는 숨기는 행위에 앞서는 어떤 행위가 ‘隱藏爲-’의 앞에 위치하는 구문 구조도 보였다. ‘隱藏爲-’는 선행절과 ‘爲遣’로 대등연결되기도 하였다.

절도를 나타내는 서술어에는 ‘盜爲-’와 ‘偷取爲-’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盜爲- 構文’에서는 선행어로 훔친 행위를 한 자가 놓였다. ‘盜爲- 構文’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

였다'라는 구문도 볼 수 있었다. 이때는 도둑질한 자의 신분은 드러나 있다. 이런 구문의 구조에서 'NP'는 도둑이 된다.

'偷取爲-'는 무엇을 훔쳤는가를 서술하였다. 따라서 '偷取爲-'의 앞에 목적어가 놓여 '~을 훔치다'라는 유형을 보였다. '偷取爲- 構文'에는 도둑이 주어로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偷取爲- 構文'에서는 수단이 놓이기도 한다. 이때 수단은 도둑질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偷取爲- 構文'은 절도가 행해진 곳이라는 의미의 처소가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위증의 범죄를 다룬 '冒弄爲- 構文'에서는 법률 집행관을 우롱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문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자가 주어가 되었다. '冒弄爲- 構文'은 무고의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處罰 表現 構文'에는 '論爲-構文', '斬爲-構文', '絞死爲-構文', '坐罪爲-構文', '生徵納官爲-構文', '笞(杖)爲-構文', '徒爲-構文', '流爲-構文' 등이 있었다.

먼저 '論爲- 構文'을 보면 명사구에 '乙以'가 통합되어 있는 구문 구조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구조 구문은 '乙以'가 통합된 명사구에 의거해 처벌토록 하라는 내용을 가졌다. '論爲-'의 선행어에 '良中'이 놓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제시된 형벌에서 상황에 맞추라는 의미를 지녔다.

처벌에 있어서는 전제가 오기도 하였다. 전제는 '한 경우에는'의 의미인 '爲在乙良'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처벌에 있어 전제가 주어지되 '~하거든'의 의미인 '爲去等'에 의해 전제가 서술되는 구문 구조도 있었다. 이때는 행위자체가 전제가 되었다.

처벌에 있어서 예외적인 처리를 볼 수 있었다. 이때는 '論爲-'의 선행어를 '隱'이 통합하였다. '隱'의 통합을 받는 명사구는 예외적인 처리내용이 되든가 예외적인 처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이 구문은 부정문으로 끝이 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형벌에서 가장 중한 벌은 사형으로서 그 중에서도 더 중한 것은 '斬刑'이다. 이러한 처벌구문에서 '斬刑'이 주어지는 조건은 '斬爲-'의 앞에 놓였다.

'斬刑'의 선고에 있어서 전제가 있는 구문에는 이 외에도 '爲去等'이 오는 것이 있었다. '~하거든'의 의미를 지닌 '爲去等'은 '斬刑'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한편으로는 전제조건이 '是去等'에 의해 서술되는 구문도 보였다. '~이거든'의 뜻인 '是去等'은 전제조건을 지정한다. 다만 이러한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예만이 나타났다.

“大明律直解”에는 사형으로서 ‘絞死’도 있다. 이를 나타내는 ‘絞死爲- 構文’은 ‘絞死’ 시킬 대상이 목적어로 오는 구문 구조를 보였다. 그런데 ‘絞死爲- 構文’에서는 ‘絞死’ 시킬 이유가 ‘爲在乙良’의 서술을 받으며 ‘絞死爲-’의 앞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 외로 ‘絞死爲- 構文’에서는 ‘絞死刑’에서 전제되는 내용을 ‘爲去等’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어떠한 전제를 지정하는 ‘絞死爲- 構文’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하나인 ‘反坐罪’는 誣告한 자에게 被誣告人이 받은 처벌만큼 처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緣坐罪’는 죄인의 벌을 식구 및 친척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坐罪爲- 構文’은 일반적으로 ‘坐罪’를 받을 대상이 구문에 온다. 그러므로 “大明律直解”에서도 이에 대한 구문에서 목적어가 ‘坐罪爲-’에 선행하였다.

‘坐罪’에서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 형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한 경우에는’의 의미인 ‘爲在乙良’이 ‘坐罪爲-’의 선행 명사구를 서술하였다. ‘坐罪’의 부과에 관해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구문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하여야만’의 ‘爲良沙’에 의해 나타났다. 한편, ‘不坐罪’의 조건으로서 절이 오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때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전제로 하여 ‘坐罪’에서 사건 연루자를 제외시켰다. ‘坐罪-構文’에서는 수단이나 방법의 조격 ‘以’가 놓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누가 坐罪刑을 받는다’라는 뜻의 구문도 보였다. 이의 경우는 ‘坐罪刑’을 받을 자가 주어였다. 단, 이와 같은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만 찾아졌다.

財産刑을 보면 ‘生徵納官爲- 構文’이 있다. 때문에 이 구문에는 벌금을 강제징수 당할 대상자가 ‘生徵納官爲-’의 앞에서 목적어로 놓였다. 한편, 강제징수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을 드는 구문도 보였다. 이런 경우의 구문 구조는 어떻게 강제징수하느냐를 중시하였을 때였다. 강제징수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乙良’이 ‘生徵納官爲-’의 선행 명사구를 통합하였다.

體刑에는 荊杖刑이 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荊杖刑으로 ‘笞刑’과 ‘杖刑’ 두 유형을 보였다. ‘笞(杖)爲- 構文’에서는 荊杖刑을 당할 자가 구문에 놓였다. 이때 荊杖刑을 받는 자는 목적어로서 구문에 왔다.

荊杖刑이 ‘杖刑’인 경우에는 ‘~의 경우에는’이라는 의미의 ‘乙良’이 구문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乙良’의 선행어는 ‘笞刑’을 당할 자였다. 이런 경우 ‘笞刑’에 있어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되었다.

한편, ‘爲乎矣’가 선행 선고를 서술하게 되어 후행 선고가 선행 선고에 구속되지 않는 구문이 있었다. 이 외에 荊杖刑의 선고에서 신분이나 상태가 전제되는 경우가 있

었다. 이때 전제는 ‘~이거든’의 의미인 ‘是去等’에 의해 나타났다.

“大明律直解”에서는 강제노역도 보였다. 이때는 ‘徒爲-’로써 이 구문을 나타냈다. 이런 구문은 ‘徒 Num年 爲-’의 구조로 나타났다. 이것은 年限이 ‘徒刑’에 있어서 필수적이어서였다. 이러한 구문에서 ‘笞(杖)爲- 構文’과 ‘徒爲- 構文’이 대등연결되는 구문도 있었다. 이런 때는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와 같은 구문 구조를 지녔다.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형벌 중에는 ‘杖刑’의 처벌을 내림과 함께 他地로 유배시키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경우의 구문은 서술어 ‘流爲-’로써 나타내었다. ‘流爲- 構文’은 내용상 他地로의 강제추방이므로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어야 하므로 이 구문에서는 ‘流’와 ‘爲-’의 사이에 數詞와 거리의 단위인 ‘里’를 사용하였다.

‘流爲- 構文’의 구문 구조가 이처럼 되는 것은 “大明律直解”에서 한문본의 ‘流 Num里’를 그대로 따라서였다. 하지만 해석의 순서에 있어서는 ‘Num里 流爲-’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말 어순으로서 ‘Num里 流爲-’로 쓰인 예는 찾아지지 않았다. ‘流爲- 構文’에서는 ‘杖刑’을 집행하고 이어서 다른 곳으로 강제추방시키되 그 거리를 어렵짐작 거리의 개념인 ‘遠’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의 구문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이면 (100)과 같다.

(100) 1. ‘NP乙 推問爲-’

죄인이나 죄가 ‘推問’의 대상이 되어 ‘推問爲-’에 선행한다.

2. ‘NP以 推問爲-’

‘推問’의 수단이나 방법이 ‘推問爲-’에 선행한다.

3. ‘NP乙 捕捉爲-’

목적어 ‘NP’는 체포 당할 죄인이다.

4. ‘NP亦 捕捉爲-’

체포하는 사람이 구문이 온 것으로서 체포 당할 죄수가 구문에 온 ‘NP乙 捕捉爲-’ 구문 구조와는 정 반대의 구조이다.

5. ‘NP乙 殺死爲-’

선행어 자리에는 살해를 당할 대상이 온다.

6. ‘NP₁乙 (NP₂乙) 殺(死)爲-’

이중 목적격 구문의 구조로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의 목적어가 생략된 채 쓰였다.

7. ‘NP₁亦 (NP₂乙) 殺死爲-’
목적어가 생략되어 쓰인 까닭으로 타동사의 바로 앞에 주어가 놓이는 모습을 보인다.
8. ‘NP₂ 傷爲-’
‘누구를 다치게 하다’라는 유형의 구문 구조로서 목적어는 피해자로서 타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된다.
9. ‘NP(果) 鬪爲-’
같은 모습의 명사구가 주어로 왔을 때 그것을 삭제한 경우이다.
10. ‘NP(亦) 鬪爲-’
같은 모습의 명사구가 공동격으로 왔을 때 그것을 삭제한 경우이다.
11. ‘NP₁亦 NP₂以 NP₃亦 NP₁乙 行姦爲-’
‘NP₁’과 ‘NP₃’에 주격 조사 ‘亦’이 공동으로 주어져 있으나 이들의 신분은 다르다. ‘NP₁’은 피해자이지만 ‘NP₃’는 범죄자이다.
12. ‘NP₁亦 NP₂乙 NP₃以 NP₁乙 行姦爲-’
‘NP₂’와 ‘NP₁’ 둘다 목적격 명사구이지만 ‘NP₂’는 범죄자이고 ‘NP₁’은 피해자이다.
13. ‘(NP₁亦) NP₂乙 行姦爲-’
‘和姦’을 한 남성에게만 형벌이 주어지며 ‘女’는 피해자가 된다. 본래 ‘女’도 범죄자이나 처벌이 남성에게만 주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구문 구조이다.
14. ‘NP以 謀爲-’
‘도둑질하는 쪽으로 공모하다’로 이해되는 구문 구조이다.
15. ‘NP₂ 謀爲-’
‘무엇을 모의하다’라는 일반적 문형과 일치되는 구문이다.
16. ‘NP亦 謀爲-’
어떤 일을 하다가 예정에 없이 일이 전환되어 범죄를 ‘謀爲-’하게 되었음을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17. ‘VP爲只爲 謀爲-’
어떠한 일을 모의함에 있어 ‘謀爲-’의 앞에 놓인 절이 그 의도가 된다.
18. ‘VP爲乎爲 謀爲-’
모의한 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한 두 가지의 경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9. ‘NP亦 逃爲-’

‘누가 도망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형의 구조이다.

20. ‘NP良中 逃爲-’

‘NP’에는 장소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온다

21. ‘S(爲遣) 逃爲-’

‘-爲遣’이 도주하기 전에 범죄자가 행한 일을 서술한다. ‘S’는 그 자체로서 이미 죄가 성립되므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도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22. ‘NP良中 隱匿爲-’

숨길 장소가 구문에 온다. ‘良中’의 선행 NP는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을 숨기는 장소이다

23. ‘S爲遣 隱匿爲-’

절은 숨길 장소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내용이다.

24. ‘NP乙 隱藏爲-’

목적어는 숨기고자 하는 대상이다. 때문에 이를 숨김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25. ‘NP乙良 隱藏爲-’

숨겨 놓은 상태가 아닌 숨긴 행위를 말한다는 특징이 있다.

26. ‘NP良中 隱藏爲-’

숨기는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말한다는.

27. ‘VP爲(良) 隱藏爲-’

숨기는 행위를 하기 전의 행위와 숨긴 행위가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가 될 때 쓰이는 구문 구조이다.

28. ‘NP(爲遣) 隱藏爲-’

연속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 쓰는 구문 구조이다.

29. ‘NP乙良 盜爲-’

‘NP’는 훔친 물건이 아닌 훔친 행위를 한 자이다.

30. ‘NP亦 爲盜爲-’

이 구조는 ‘누가 도둑질을 하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신분이 드러나 있는 어떤 자가 도둑질을 하였다고 해석된다.

31. ‘NP_乙 偷取爲-’
‘NP’는 훔쳐진 물건으로서 훔치는 행위보다는 훔쳐진 물건에 중심을 두고 서술한다.
32. ‘NP_亦 偷取爲-’
누가 훔쳤다는 보이는 것으로서 “大明律直解”에서 한 차례 보인다.
33. ‘NP(以[?]) 偷取爲-’
어떤 수단으로서 삼기 위해 훔친 경우로서 “大明律直解”에서는 한 번의 용례만 있다.
34. ‘NP(良中[?]) 偷取爲-’
어디에서 훔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구조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한 번만 쓰이고 있다.
35. ‘NP_亦 冒弄爲-’
‘NP’에는 속임수나 위증을 한 자가 온다.
36. ‘NP₁_乙 NP₂ 冒弄爲-’
‘NP₁’은 ‘冒弄’의 대상이지만 법관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므로 그 일반인은 被誣告人의 지위를 가진다. 이 구문 구조는 ‘冒弄爲-’의 선행어가 ‘冒弄’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비하여 반대 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37. ‘S 冒弄爲-’
‘S’는 ‘冒弄’의 내용이다. 따라서 ‘冒弄’의 내용을 먼저 상세히 말하고 이 거짓된 것을 진술한다.
38. ‘NP是乎樣以 冒弄爲-’
거짓의 내용이 ‘NP’로 된다. 거짓의 내용을 밝히되 ‘是乎樣以’로써 이 내용이 거짓임을 미리 말한다는 것이 이 구문 구조의 특징이다.
39. ‘NP以 論爲-’
선행 명사구의 내용에 의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구문 구조이다
40. ‘NP良中 論爲-’
제시된 형벌에서 상황을 맞출 경우에 보인다.
41. ‘VP爲在乙良 論爲-’
‘爲在乙良’이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처벌에 있어서 어떤 전제에 비추어 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VP’는 처벌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

으로서 처벌은 이 ‘VP’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42. ‘VP爲去等 論爲-’

행위 자체가 처벌에 있어 전제될 때 쓰인다.

43. ‘NP 勿論爲-’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처벌을 면해줄 때 쓰인다.

44. ‘VP爲在乙良 斬爲-’

‘斬刑’을 내리는데 있어 조건을 보이는데, ‘VP’가 바로 그 조건이 된다. 여기서 ‘VP’는 행위의 결과이다.

45. ‘VP爲去等 斬爲-’

‘斬刑’을 내리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爲去等’의 의미상 상태 외에 행위의 의미를 지닌 동사구와도 결합을 할 수 있지만 ‘斬爲-構文’에는 ‘爲去等’이 행위를 서술하는 예가 없다.

46. ‘NP是去等 斬爲-’

‘斬刑’을 선고하는데 있어 지정되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보인다.

47. ‘VP令是在乙良 斬爲-’

‘斬刑’을 내리는데 있어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상태에 놓이게끔 하였을 때에 쓰인다.

48. ‘VP爲在乙良 斬爲-’

‘斬刑’을 선고하는데 있어 조건을 보인다. 여기서 ‘VP’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적의 의미가 있는 ‘爲在乙良’과 결합하므로 ‘斬刑’에 있어서의 조건이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된다.

49. ‘VP爲在乙良 絞死爲-’

‘VP’는 ‘絞死刑’을 당하는 죄수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다. 때문에 ‘VP’는 ‘絞死刑’의 전제이다.

50. ‘VP爲去等 絞死爲-’

‘絞死’ 시킴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전제된다.

51. ‘NP是去等 絞死爲-’

‘絞死’ 시킴에 있어 행위가 아닌 상태나 물건이 전제된다.

52. ‘NP乙 坐罪爲-’

‘坐罪’를 받을 대상이 목적어로 온다.

53. ‘NP乙良 坐罪爲-’

행위를 행한 사람이 ‘NP’로 놓이며 비교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 쓰인다.

54. ‘VP爲在乙良 坐罪爲-’

이 구조에서 ‘VP’는 행위의 결과이므로 행위를 행한 사람이 ‘NP’로 오는 ‘NP乙良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다르다.

55. ‘VP爲良沙 坐罪爲-’

‘VP’는 ‘坐罪刑’의 부과에 있어서 단지 전제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不坐罪’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不坐罪’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不坐罪’가 예외로 주어지지 않고 ‘坐罪’가 예외적으로 주어진다

56. ‘VP爲在乙 坐罪爲-’

이미 이루어진 행위 중에서 ‘坐罪’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坐罪刑’을 내린다. 따라서 이 구문 구조에서는 ‘不坐罪刑’은 주어지지 않는다.

57. ‘S 不坐罪爲-’

사건 연루자를 ‘坐罪’에서 면제시켜주는 사건 내용이 ‘S’가 된다. ‘S’는 ‘不坐罪’에 대한 조건이 되므로 ‘VP爲在乙 坐罪爲-’ 구문 구조와는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는 ‘坐罪’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대신 ‘不坐罪’의 조건이 된다. ‘S 不坐罪爲-’ 구조의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한 번 나타난다.

58. ‘NP亦 坐罪爲-’

‘坐罪’의 대상자가 주어로 놓이며 전제성이 없이 무조건 ‘坐罪刑’을 받는다.

59. ‘NP乙良 坐罪爲-’

행위를 행한 사람이 ‘NP’로 놓인다.

60.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벌금을 강제징수 당하는 자가 목적어로 온다.

61. ‘NP₁乙 當爲 (NP₂乙) 生徵納官爲-’

이 구조에서 [NP₁=NP₂]이므로 ‘NP₂’는 생략된다. 이때 생략된 ‘NP₂’가 ‘生徵納官爲-’의 서술을 받는 목적어이다.

62. ‘NP以 生徵納官爲-’

강제징수함에 있어서 수단이나 방법은 ‘NP’가 된다. 때문에 ‘NP’는 강제

징수 당하는 자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63. ‘NP乙良 生徵納官-’

이 구문 구조에서 ‘乙良’의 통합을 받는 ‘NP’는 강제징수 할 내용이다.

64. ‘Num 答爲-’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65. ‘Num 杖爲-’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66. ‘答爲 Num’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67. ‘杖爲 Num’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68. ‘答(杖) Num 爲-’

‘答刑’ 또는 ‘杖刑’을 이르는 구문의 고정된 구문 구조이다.

69. ‘答(杖)爲-’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70. ‘答(杖) Num’

한문 어순이다.

71. ‘NP乙 答(杖) Num 爲-’

荊杖刑을 받는 자가 목적어로 놓이므로 ‘NP’는 荊杖刑을 받을 자이다.

72. ‘NP乙良 答(杖) Num 爲-’

‘杖刑’을 받을 사람이 조건으로서 ‘NP’의 자리 온다.

73. ‘VP爲在乙良 答(杖) Num 爲-’

‘爲在乙良’의 서술에 의해 행위가 조건으로 놓인다. 그리고 이는 ‘杖 Num 爲-’에 의하여 서술된다.

74. ‘Num 答(杖)爲-’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75. ‘VP爲乎矣 答(杖) Num 爲-’

선행 선고를 ‘爲乎矣’가 서술함으로써 후행 선고가 선행 선고에 구속되지 않는다.

76. ‘答(杖) Num爲乎矣 VP爲-’

“大明律直解”에서 쓰인 예가 없다.

77. ‘NP是去等 笞(杖) Num 爲-’
 ‘笞刑’의 선고가 ‘是去等’에 의해 전제된다. 따라서 전제에 맞지 않으면 ‘笞(杖)刑’이 내려지지 않는다.
78. ‘VP爲去等 笞(杖) Num 爲-’
 행위가 전제되는 것으로서 행위는 ‘NP’가 된다. 이 구문 구조는 미발생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서 예측되는 사건에 대한 荆杖刑을 선고한다.
79. ‘徒 Num年 爲-’
 年限이 ‘徒刑’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서술부에 年限이 들어가는 구문 구조를 보인다.
80. ‘徒 Num年’
 한문 어순이다.
81. ‘Num年 徒爲-’
 “大明律直解”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82.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
 ‘笞(杖)爲-構文’과 ‘徒爲-構文’이 대등연결되는 구조이다.
83. ‘流 Num里 爲-’
 ‘流爲-構文’에서는 ‘流’와 ‘爲-’의 사이에 數詞 및 거리의 단위를 놓는다.
84. ‘流 Num里’
 한문 어순이다.
85.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杖刑’을 ‘流刑’에 선행시키는 구조이다.
86. ‘杖 Num 爲遣 遠流爲-’
 거리에 대하여 어림짐작으로써 流刑을 내린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3. 7 受與 構文

3. 7. 1 도입

‘受與 構文’은 무엇을 주거나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문으로서 이를 이루는 서술어는 의미가 ‘주다’이거나 ‘받다’가 된다.¹¹¹⁾

구성상 ‘受與 構文’은 ‘收入 構文’과 ‘給與 構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收入 構文’을 만드는 ‘받다’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를 “大明律直解”에서 찾아보면 ‘捧上’이 있다. 이 서술어는 ‘授受, 受領’의 의미로(안병희:1983), 또는 ‘받아들이다’, ‘수입하다’의 뜻을 지닌 것으로(장세경:2001) 풀이되는 서술어이다. ‘捧上’이 ‘爲-’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구문은 내용이 수입에 관한 것이 되므로 ‘收入 構文’으로 한다.

반면, 수입과는 다르게 급여하는 구문도 보이고 있다. 이 구문은 서술어 ‘給爲-’에 의한 구문으로서 물품이나 금전을 포상 또는 배상으로써 어느 대상에게 급여를 하므로 ‘給爲- 構文’은 ‘給與 構文’이 된다.

3. 7. 2 收入 構文

본래 ‘捧上’은 ‘收入’이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爲-’와 어울려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¹¹²⁾ 따라서 ‘捧上(爲-)’은 명사에서의 의미 그대로 서술어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때의 ‘捧上’은 ‘授受, 受領’의 의미로서 관청에서 물품을 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서술어가 된다(안병희:1983).

한편, ‘捧上爲-’는 ‘거두어 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111) 한재영(1996)은 16세기 국어에서 ‘주다, 받다, 베프다, 사다, 풀다, 불모드리다, 얻다, 맞찌다, ㄱㄹ치다’ 등을 수여동사 구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또는 받다’를 그 구성 내용으로 하는 구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12) ‘捧上’이 ‘爲-’와 같이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명사로 사용된다. 아래의 구문은 ‘捧上’이 동사가 아닌 명사로서 쓰이고 있다.

· 凡各司捧上上下下錢糧等物亦重記施行爲有去乙(7:7)

이 서술어를 개인의 수입에 있어서도 사용하였다.

‘捧上爲- 構文’은 무엇을 거둬들인다는 의미를 지닌 구문이므로¹¹³⁾ 이의 구문에는 거두어질 대상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구문은 ‘~을 거두어 들이다’와 같은 유형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1)의 구문에서는 ‘捧上爲-’의 앞에는 모두 목적어가 놓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가. 凡妻妾乙財物捧上遣他人乙許給作妻妾爲在乙良(6:3)

[무릇 (자신의) 처나 첩을 재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여 처나 첩으로 만들게 한 것을란]

나. 財物捧上遣縱放爲在人亦(1:42)

[재물을 받고 석방한 사람이]

다. 上物乙捧上合當爲去乙(7:10)

[좋은 물건을 받아야 합당하거늘]

라. 下品物乙捧上爲齊(7:10)

[나쁜 물품을 받는다]

마. 所在官司捧上爲在隱不在此律爲乎事(1:19)

[소재지 관사에 바친 것은 이 법율에 있지 아니 하울 일]

바. 鈔乙捧上入庫爲在乙良(7:1)

[紙錢을 받아 입고한 것을란]

사. 凡貢稅等乙捧上爲乎第亦中(7:2)

[무릇 貢稅 등을 받는 경우에]

아. 凡各倉庫亦貢稅乙捧上爲乎第亦中(7:3)

[무릇 각 창고가 공세를 받는 경우에]

(1가, 나)의 ‘財物’은 일반적인 금품으로서 이 구문은 개인적인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다, 라)의 ‘上物’과 ‘下品物’은 관납물품으로서 이 구문은 관청에서 물품

113) ‘捧上’이 서술어로 기능을 할 때는 항상 ‘爲-’와 어울린다.

(1) 推尋捧上爲可未前如祝安樂從仕只此(金宗直母簡札, 1-07-08)

(2) 折五升木綿參拾伍同捧上爲遣永永放賣爲去乎(權柱家舍賣買明文 3)

(3) 子孫良中至亦生徵捧上爲臥乎等用良(柳璥功臣錄券 89)

(4) 本項耳亦捧上爲旆(柳璥功臣錄券 92)

따라서 ‘爲-’없이 서술어로 기능을 할 때는 그 뒤에 ‘爲-’가 생략된 것이다.

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¹¹⁴⁾ (1바, 사, 아)의 ‘鈔’, ‘貢稅’ 등은 세금의 유형이므로 세금징수에 관한 구문이 된다.

그런데 이들 구문에서 보이는 금품들은 모두 목적어로서 구문에 위치하고 있다.¹¹⁵⁾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는 ‘NP乙 捧上爲-’가 된다. 금품의 개인적인 수입 또는 관사의 수입을 나타내는 이 구문 구조에서 목적어는 수입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나 물품이 된다.

3. 7. 3 給與 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收入 構文’과는 반대로 급여하는 구문도 찾아진다. 즉, 금전이나 물품이 포상 또는 배상 등 여러 이유에 의하여 급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문은 ‘給爲-’에 의하여 서술되고 있다.

‘給與 構文’이 되는 ‘給爲- 構文’은 금전이나 물품을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이의 구문에는 그것을 받을 대상자가 여격어로서 놓인다. 그러므로 ‘~에게 ~주다’와 같은 유형이 되어 ‘NP亦中 給爲-’와 같은 구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문 구조를 지닌 ‘給爲- 構文’을 찾으면 (2)와 같다.

114) 본문 (1마)의 경우도 관납에 대한 구문이다. 비록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관납물품이 구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所在官司’라는 어구가 있으므로 이 구문에서 다루는 물품은 관납물품이 된다. 따라서 (1마)도 (1다, 라)와 같이 관납 내용의 구문이 된다.

115) 본문 (1마)의 경우는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구문이다. 박성중(1996)에서 제기한 문제를 보면, 그는 (1마)의 구문에서 ‘所在官司’는 여격으로 혹은 주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여격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捧上한’은 ‘바친’이 되어 한자어 ‘捧上’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所在官司’를 주격으로 하여 한문원문을 보면 해석은 그 반대로 ‘받는’이 된다고 말한다.

· 有所在官司保勘文憑者

‘所在官司’가 주격인 경우 그 해석은 ‘所在官司가 明文을 捧上한 이는’으로 된다. 이때 ‘捧上한’은 ‘받은’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捧上’은 ‘바치는 일’과 ‘받는 일’의 그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처럼 박성중(1996)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선초기의 吏讀文에서는 ‘捧上’은 한결같이 ‘받는 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구문에서 ‘所在官司’는 여격이 아닌 주격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2) 가. 贓物等乙受贈爲有如可悔過爲本主亦中還給爲在乙良(1:29)
 [장물 등을 受贈하였다가 반성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거들란]
- 나. 價本生徵買主亦中還給齊(4:5)
 [값을 강제징수하여 판매인에게 돌려준다]
- 다. 每年滋長利分等乙良納官爲本主還給齊(5:4)
 [매년 불어난 이익 등은 (官有이면) 관에 납부하며 (私有이면) 본 주인에게 돌려준다]
- 라. 田宅乙良初亦交易人亦中還給齊(5:5)
 [田宅은 처음의 매입자에게 돌려준다]
- 마. 婦女乙通奸爲在乙良絞死爲本主還給齊(9:2)
 [부녀를 간통한 것을란 絞死하며, 부녀는 남편에게 보내고 빌린 물건은 징수를 면하올 일]
- 바. 剩利乙良並只還生徵爲本主還給齊(9:2)
 [남은 이익은 모두 강제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 준다]
- 사. 杖六十爲限爲乎矣並只本利生徵給主齊(9:2)
 [杖六十에 한하여 하오되 모든 본래의 이익은 강제징수하여 주인에게 준다]
- 아. 一半乙良本主還給爲本主還給齊(9:3)
 [절반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며 30일내에 본 주인이 없거든]
- 자. 減少爲在價本乙生徵爲本主還給齊(16:4)
 [감소한 값을 강제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준다]
- 차. 知不得爲在乙良不坐罪遣價本生徵給主爲乎事(18:13)
 [알지 못한 것을란 坐罪 아니 하고, 값은 강제징수하여 주인에게 환급하올 일]
- 카. 誣告人乙絞死遣其矣財產內一半乙被誣之人亦中給爲齊(22:4)
 [무고인을 絞死하고 그의 재산 내 절반을 피무고인에게 준다]

(2)의 예문을 보면 ‘給爲-’의 앞에 위치하는 자들은 (2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상을 받을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배상이 주어질 대상이므로 모두 여격어가 된다.

다만, (2다, 마, 바, 사, 아, 자, 차)에서는 여격 조사 ‘亦中’이 보이지 않으나 (2가, 나, 라, 카)에서는 여격 조사 ‘亦中’이 통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다, 마, 바, 사, 아, 자, 차)에는 여격 조사 ‘亦中’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마, 사, 차)에서는 여격어와 서술어가 ‘NP亦中 給爲-’와는 다른 구조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給 NP亦中 爲-’와 같은 구문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문어순을 따라 표기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 것이고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NP亦中 給爲-’와 동일하다. ‘NP亦中 給爲-’ 구조가 우리말 어순의 구조이므로 (2마, 사, 차)도 결국 ‘NP亦中 給爲-’ 구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給與 構文’에서 ‘~에게 ~준다’ 외에 ‘무엇을 주다’라는 ‘NP乙 給爲-’ 구문 구조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구문 구조의 구문을 볼 수 있다. (3)의 예문에서 ‘全給齊’와 ‘賞給爲-’는 우리말 어순이고 ‘給賞’은 한문어순이다. 여기서는 한문어순도 해석에서는 우리말 어순이 되므로 ‘NP乙 給爲-’ 구문 구조에 넣는다.

(3) 가. 他人矣執提例以給賞爲乎事(1:29)

[다른 사람의 체포 예로써 상을 수여하올 일]

나. 三十日內良中本主無去等得物人亦中全給齊(9:3)

[30일 내에 본 주인이 없거든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전부를 준다]

다. 告人亦中賞給爲乎事(12:2)

[알린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올 일]

라. 工匠人亦先告爲在乙良免罪爲一体以賞給爲乎事(12:6)

[공장인이 먼저 고백하거들랑 免罪하고 일반인으로서 상을 수여하올 일]

(3)에서는 ‘全’과 ‘賞’에 격조사가 표지되어 있지 않으나 구문의 내용상 ‘全’과 ‘賞’은 급여에 있어서 급여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3)의 구문은 ‘全’과 ‘賞’이 목적어로 놓이는 구문이라 하겠다.

국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므로 구문에서 여격어와 목적어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4) 가. 나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다.

나. 나는 밥을 강아지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大明律直解”에서도 찾아진다. (2카)는 목적어가 앞에 놓이고 여격어가 뒤에 놓이는 어순이다. 하지만 (3나, 다)는 여격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이고 있다. 이들만 다시 가져 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가. 誣告人乙絞死遣其矣財産內一半乙被誣之人亦中給爲齊(22:4)

- [무고인을 絞死하고 그의 재산 내 절반을 피무고인에게 준다]
- 나. 三十日內良中本主無去等得物人亦中全給齊(9:3)
 [30일 내에 본 주인이 없거든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전부를 준다]
- 다. 告人亦中賞給爲乎事(12:2)
 [알린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을 일]

이는 14세기 중반 이후의 국어에서도 목적어와 여격어가 서로 위치바꿈이 자유로웠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 조격어와 목적어가 상호간에 위치를 바꾸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3라)는 조격어가 앞에 위치하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 구문이다. 이를 다시 가져오면 (6가)와 같다. 그런데 (6나)는 이와는 반대로 목적어가 앞에 있고 조격어가 뒤에 놓여 있다. 다만 (6나)의 ‘給賞’이 한문어순이므로 ‘賞’이 ‘給’의 뒤에 있지만 ‘賞’은 조격어이다.

- (6) 가. 工匠人亦先告爲在乙良免罪爲一体以賞給爲乎事(12:6)
 [공장인이 먼저 고백하거들랑 免罪하고 일반인으로서 상을 수여 하을 일]
- 나. 犯人家產乙並只給賞爲齊(18:2)
 [범인의 家產을 모두 상으로 준다]

이처럼 조격어와 목적어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7) 가. 영화가 포크로 통닭을 찢었다.
 나. 영화가 통닭을 포크로 찢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 여격어와 목적어의 자리이동이 자유로웠듯이 조격어와 목적어간의 자리이동도 “大明律直解”에서는 자유로웠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이러한 문법현상이 이미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조격어가 ‘給爲-’의 앞에 놓이는 구문을 보기로 하자. (8)의 구문에서 조격 조사 ‘以’가 놓이지 않았으나 구문의 해석에 있어서 ‘賞’은 모두 조격어이다.

(8) 가. 本主乙呼喚看審令是良其內良中一半乙良得物人亦中給賞爲遣(9:3)

令是良(시키어):시키어서

[본 주인을 불러 자세히 살피도록 시키어서 그 안에서 절반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상으로 주고]

나. 知情現告捕捉爲在乙良家產叱分賞給遣不告爲在乙良(18:2)

叱分(췌):-췌, -만

[정황을 알고 신고하여 체포한 것을란 家產만 상으로 주고, 알리니 않은 것을란]

(8)은 ‘賞’이 급여의 수단으로 구문에 오고 있다. 여기서 수단이 된 ‘賞’의 내용은 (8가)의 경우는 ‘一半’이고 (8나)는 ‘家產’이 된다. 이를 구문 구조로 보면 ‘NP以 給爲-’가 된다. (8가)는 한문어순이어서 구문 구조가 ‘給 NP以 爲-’가 되나 (8나)의 우리 말 어순에 맞추어 ‘NP以 給爲-’로 넣는다.

이번에는 ‘NP乙 給爲-’ 구조에서와 같이 ‘給爲-’의 선행어 자리에 포상이나 보상을 받을 대상자가 아닌 급여물품이 놓이되 이를 ‘乙’이 아닌 ‘乙良’이 통합하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9) 田宅放賣爲乎價本乙良生徵還給安徐爲乎事(22:5)

[전택을 판매하온 가격은 강제징수하여 돌려주지 아니 하올 일]

(9)의 구문에서 ‘田宅放賣爲乎價本’은 급여행위에 있어서 그 대상물이 되지만, 이를 ‘乙良’으로써 통합함으로써 예외적 단서화가 되어 급여행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9) 구문의 구조는 ‘NP乙良 給安徐爲-’와 같이 부정형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급여행위의 대상물이 있지만 다른 ‘給爲- 構文’과는 다르게 급여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給爲- 構文’에서 ‘給爲-’의 선행어를 ‘良中’이 통합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10나)에서는 비록 ‘良中’ 보이지 않으나 ‘給爲-’의 선행어가 장소인 ‘物主處’이므로 생략된 조사는 처격 조사 ‘良中’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給爲-’의 선행어는 대상자나 급여물이 아니라 시간이나 장소가 된다.

(10) 가. 常事良中不當給爲在駟馬乙(17:6)

[일반적인 일에 부당하게 내어준 역관의 말을]

나. 他人亦現告爲乙去知想只遺物主處還給爲在乙良減罪二等齊(1:29)

[다른 사람이 고발할까 알아차리고 물건의 주인 집에 돌려주었거든란 죄 2等を 감한다]

(10가)에서는 ‘給爲-’의 선행어가 시간이고, (10나)에서는 장소가 된다. 즉, (10)과 같은 구문에서 ‘給爲-’의 선행어는 급여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나 급여행위가 이루어질 장소가 된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良中 給爲-’가 된다. 이 구조에서 ‘給爲-’의 선행어를 통합하는 조사는 ‘良中’으로서 현대국어에서는 ‘-에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에서’에서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간 또는 장소를 통합하는 용법을 볼 수 있다.

(11) 가. 그는 두 시에서 세 시 사이에 온다.

나. 영호는 도서관에서 늦게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용법이 14세기 중엽의 국어에서도 있었음을 “大明律直解”의 구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3. 7. 4 요약

‘授受, 受領’ 혹은 ‘받아들이다’, ‘수입하다’의 의미를 지닌 ‘捧上爲- 構文’은 그 의미에 맞추어 ‘收入 構文’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급여의 의미를 지닌 ‘給爲- 構文’은 ‘給與 構文’으로 하였다.

개인적인 수입 또는 관사의 수입을 나타내는 ‘捧上爲- 構文’은 ‘~을 거두어 들이다’와 같은 유형을 지니므로 거두어질 대상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여 ‘NP乙 捧上爲-’ 구문 구조를 이루었다. 이 구조에서 목적어로는 수입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나 물품이 되었다.

‘收入 構文’하고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給與 構文’은 給爲-’에 의하여 서술되었다. ‘給與 構文’에서는 금전이나 물품이 포상이나 배상 등의 이유로서 급여되었다. 이 구문에서는 급여물을 받을 자가 여격어로 왔다. 따라서 ‘~에게 ~주다’의 의 유형으로서 ‘NP亦中 給爲-’와 같은 구문 구조를 가졌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 외에도

‘무엇을 주다’라는 ‘NP乙 給爲-’ 구문 구조와 ‘어떻게 주다’라는 ‘NP以 給爲-’ 구문 구조도 사용되었다. ‘給與 構文’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여격어와 목적어, 조격어와 목적어간의 자리바꿈이 자유로웠다. 따라서 논항간의 상호 자리이동은 이미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로 ‘給爲-’의 선행어로 급여물품이 오고 이를 ‘乙良’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乙良’이 예외적 단서로서 작용하여 구문 구조가 ‘NP乙良 給安徐爲-’와 같이 부정형이 되어 물품의 급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給爲- 構文’은 ‘給爲-’의 선행어를 ‘良中’으로써 통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給爲-’의 선행어가 시간이나 장소가 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12)와 같다.

(12) 1. ‘NP乙 捧上爲-’

수입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나 물품이 목적어로 놓인다.

2. ‘NP亦中 給爲-’

‘~에게 ~주다’와 같은 유형의 구문 구조로서 금전이나 물품을 받을 대상자가 여격어로서 온다

3. ‘給 NP亦中 爲-’

한문 어순이다.

4. ‘NP乙 給爲-’

‘무엇을 주다’라는 문형을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5. ‘NP以 給爲-’

급여에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오는 구문이다.

6. ‘給 NP以 爲-’

한문 어순이다.

7. ‘NP乙良 給安徐爲-’

급여행위에 있어서의 대상물은 ‘乙良’이 통합함으로써 예외적 단서화가 되어 급여행위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부정형이 된다. 이 구문 구조는 급여행위의 대상물은 존재하나 급여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8. ‘NP良中 給爲-’

‘給爲-’의 선행어로 급여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급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온다.

3. 8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

3. 8. 1 도입

‘移動 構文’은 장소의 이동성을 나타내므로 이의 구문에는 서술어로 ‘가다’나 ‘오다’가 쓰인다. ‘가다’와 ‘오다’에 해당하는 이동동사¹¹⁶⁾는 “大明律直解”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進-’과 ‘來爲-’이다. 다만 ‘來’는 ‘進-’과는 다르게 ‘爲-’와 결합된 채로 쓰이고 있다.¹¹⁷⁾

“大明律直解”에서는 내용이 방향성을 지닌 구문도 볼 수 있다. 이때 이 구문의 서술어는 ‘向爲-’이므로 서술어 ‘向爲-’가 쓰인 구문을 ‘方位 構文’으로 하여 구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3. 8. 2 移動 構文

서술어 ‘가다’, ‘오다’ 등은 이동성을 나타내므로 구문을 ‘移動 構文’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서술어는 “大明律直解”에서도 볼 수 있다.

‘가다’에 해당하는 이두어는 ‘進’으로서 따로 만들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進-’의 뜻은 한자어 의미 그대로 ‘나아가다’이다. 따라서 ‘進-’이 쓰인 구문은 ‘移動 構文’이 된다.

그리고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來’는 ‘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역시 ‘進-’과 마찬가지로 구문을 ‘移動 構文’으로 만든다. 다만 ‘進-’은 ‘爲-’와 결합되어 쓰이지 않음에 비하여 ‘來’는 반드시 ‘爲-’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116) 이동동사는 넓은 의미로 의미적 특성에 입각한 동사부류로 행위자(agent)나 또는 대상(object)의 물리적 공간상 위치의 변화로서의 이동을 뜻하는 ‘가다’, ‘오다’나 ‘빠지다’ 또는 ‘옴기다’ 등의 동사를 모두 지칭한다(홍재성 1997).

117) 한재영(1996)은 16세기 국어에서 이동구문을 이루는 이동동사로서 ‘가다, 녀다, 니다, 오다’ 등을 들고 있다.

3. 8. 2. 1 ‘進- 構文’

‘進- 構文’은 이동구문이므로 이에선 나아갈 장소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1)의 구문에서는 나아갈 장소와 처격 조사 ‘良中’이 ‘進-’의 앞에 나타나고 있다. 단, 장소는 실재적 장소 외에 추상적 장소도 포함한다. (1나, 라, 마, 바)는 실재적 장소이고 (1가, 다)는 추상적 장소라 할 수 있다.

- (1) 가. 四品五品官矣父母果妻果子孫果門蔭承襲良中進叱有在子孫果亦犯罪爲去等 (1:11)

[4품 및 5품 관리의 부모와 처와 자손과 門蔭承襲에 나아간 자손이 범죄하거든]

- 나. 他餘破壞銅器等乙良官司良中進告放賣爲乎矣(7:2)

[다른 나머지 부서진 銅器 등은 관에 나아가 알리고 판매하오되]

- 다. 大醫亦官藥乙逢受軍士良中進使內如可親進不冬(14:5)

進使內如可(나사브리다가):나서다가

[大醫員이 관의 약품을 받고 軍士에 나서다가 친히 아니 나아가고]

- 라. 駙丞及駙吏等亦所在官司良中進告爲良在等(17:3)

[역관 및 역리 등이 소재지 관사에 나아가 곱하였거든]

- 마. 原告人亦被告人矣所在官司進告對決爲乎矣(22:2)

[원고인이 피고인의 소재지 관사에 나아가 고소한 것에 대하여 처결하오되]

- 바. 親人乙率良旆大內良中進叱面啓爲白遣放送爲乎矣(28:6)

進叱(낫드러):나아가

[친근인을 이끌며 임금의 거처에 나아가 대면하여 상소하고 돌려 보내되]

유형의 처소인 ‘官司’, ‘大內’ 또는 무형의 처소인 ‘門蔭承襲’, ‘軍士’에 처격 조사 ‘良中’이 통합되는 (1)의 구문은 ‘NP良中 進-’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2)에서는 ‘進-’이 처격 다음에 쓰이고 있으나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없다.

- (2) 官吏等亦死罪良中進去等減一等遣(28:2)

[관리 등이 (저지른 죄과가) 사형에 나아가거든(가깝거든) 1等を 덜고]

동사 ‘進’에 어미 ‘去等’이 통합된 (2)의 ‘進去等’은 ‘해당하다’라는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박성중 1996). 하지만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進去等’을 ‘나아가다’로 하여 (2)의

구문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死罪’를 무형의 장소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현대국어에서도 볼 수 있다.

(3) 가. 그는 계속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형벌은 단기 징역형에서 점차 사형에 나아갔다.

나. 그는 계속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형벌은 단기 징역형에서 점차 사형에 해당되어 갔다.

우리는 (3)에서 ‘가’와 ‘나’가 의미의 음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은 같은 내용을 지녔음을 볼 수 있다. 그럼 (2)도 ‘進去等’을 그대로 ‘나아가다’란 의미로 하여 해석해본다.¹¹⁸⁾

(4) 관리등이 (지은 죄가) 사형에 나아가거든 1等を 덜고

따라서 ‘進’을 ‘나아가다’란 의미로 해석하는 ‘NP良中 進-’의 형식에도 (2)의 구문이 해당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느 장소로 나아가는 내용의 ‘進- 構文’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나아가는 곳이 장소가 아닌 사람인 구문을 보기로 하자.

(5) 頭目亦中進告爲在乙良不論罪爲乎事(13:2)

[책임자에게 나아가 고한 것을란 論罪 아니 하올 일]

(5)의 구문은 나아가되 어느 장소가 아닌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구문이다. 때문에 ‘進-’의 선행 명사구에는 처격 조사가 아닌 여격 조사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는 ‘NP亦中 進-’가 된다.

그런데 ‘進-’이 쓰인 구문에는 선행어로 처소나 사람만이 오지는 않는다. (6) 구문에서의 ‘職次’는 처소가 아닌 방법이다. 따라서 수단·방법의 조격 ‘以’와 함께 구문에 나타나고 있다.

(6) 凡侍朝及侍衛官員亦顧問教是去等各職次以進叱回合爲白乎矣(12:3)¹¹⁹⁾

118) ‘進去’는 “大明律直解”에서 처음 보이는 吏讀로서 합성동사이다(김두황:1994).

敎是去等(이시거든):이시거든, 하옵시거든

[무릇 侍朝 및 侍衛官員이(에게) 자문을 하옵시거든 각각의 직위 순서에 따라 나아가 돌아가며 대답하되]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구문 구조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의 구문 구조는 ‘NP以 進-’으로 분석한다.

‘進-’의 구문 중에는 ‘進-’ 앞에 선행위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상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따른다. 선행위가 현재에도 이어져서 다른 행위와 겹쳐지거나, 선행위는 끝나고 그로 인한 새로운 행위가 시작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동시 진행상이나 과거 완료상이냐의 문제인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른바 ‘는/ㄴ’과 같은 相標示形態素란 것이 없고, 동작상을 나타내는 어미도 ‘-고’, ‘-아/어’, ‘-려고’ 만 있고 ‘-게, -면서, -고서’ 등과 같은 어미가 없고, ‘-고’, ‘-아/어’, ‘-려고’의 이두어인 ‘遣’, ‘良’, ‘要’조차도 생략이 잦아 상적인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문맥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명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의 예문이 바로 그러한 예로서 모두 ‘進-’의 앞에 선행위가 오고 있다. (7)에서 ‘生徵’, ‘延留’, ‘現捉’, ‘緣故推’ 등이 선행위이다. 그런데 이들의 선행위가 동시 진행상인가 과거 완료상인가는 문맥에 의존하여야 한다.

(7) 가. 所犯人乙當爲銀二十兩生徵進告人乙充賞爲齊(2:4)

[그 범인을(에) 대하여 은 20냥을 강제징수하여(하고), 고발인을(에게) 상을 준다]

나. 凡軍官軍人等亦赴征時良中發行日期已定爲有去乙延留進使內不冬爲在乙良一

日是去等杖七十每三日加一等齊(14:4)

進使內(나사브리):나서다

[무릇 군관과 군인 등이 출정시에 출발 기일을 이미 정하였거늘 지체하여 나가지 아니 하거들란 1일이거든 杖七十하고 매 3일마다 1等を 더한다]

다. 現捉進告爲在乙良銀二十兩乙給賞爲乎事(19:4)

[현장에서 체포하여(하고) 나아가 고향을 알린 은 20냥을 상으로 수여하올 일]

라. 罪人捕捉爲乎矣緣故推遣進去不冬爲於罪人矣在處乙知遣(27:1)

[죄인을 체포하오되 핑계를 대고 나아가지 아니 하며, 죄인의 있는 곳을 알고]

(7가)의 경우는 강제징수하면서 곧이어 지체없이 고발인에게 상을 준다고 해석하여

119) ‘侍朝及侍衛官員亦’에서 ‘亦’은 ‘亦中’의 誤字로 ‘中’字가 빠진 것이다.

동시 진행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징수와 상을 주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서 강제 징수가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하여 이를 과거 완료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행위인 ‘生徵’은 ‘爲良’ 또는 ‘爲遣’의 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동시 진행상과 과거 완료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7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다)에서도 체포하는 일과 고평하는 일이 동시적일 수 있다. 물론 시간 차는 있지만 고평하는 와중에도 체포라는 행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동시 진행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체포한 행위와 고평하는 행위를 별도로 볼 수도 있다. 이때는 체포 행위가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 완료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7다)도 ‘爲良’ 또는 ‘爲遣’의 서술을 받는 것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7나)의 경우는 지체하는 일과 출정하지 않는 일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없는 일이므로 지체하는 일을 과거 완료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延留’는 ‘爲良’의 서술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7라)는 연결어미 ‘遣’이 표지되었으므로 ‘爲遣’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大明律直解”에서는 핑계를 대는 일을 과거의 행위로 본 것이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 본 ‘進- 構文’의 구조와는 또 다른 것으로 ‘VP爲良/爲遣 進-’의 구조로 분석된다.

한편, ‘進- 構文’ 중에는 어떠한 행위가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구문이 (8)에서 보는 예문으로서 ‘上前朝見’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이유가 된다.

(8) 凡近侍官員亦上前朝見進叱有臥乎官員人等乙雜頗下乙用良(12:3)

進叱有臥乎(낫드러이시누온):나아간

[무릇 近侍官員이 임금 앞에 조례 차(하러고) 나아간 관원 등을 잡다한 이유로써]

(8)은 ‘가까이 모시는 관원이 임금을 일찌기 뵈고자 나아가려는 관원 등을 難題를 써서’로 풀이되므로 ‘上前朝見’은 나아가려는 행위의 이유가 된다. 이것의 뒤에는 ‘爲良結’ 정도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그러므로 (8)의 구문 구조는 ‘VP爲良結 進-’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爲良結’이 사용된 예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문 구조는 ‘進- 構文’에 대하여 잠정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8)의 구문은 ‘爲

120) ‘-하고자’로 풀이되는 ‘爲良結’은 ‘壬狀’과 ‘推案’, ‘藩啓辛巳八月’ 등에서는 보이거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쓰이지 않은 吏讀이다.

遣-’이 생략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3. 8. 2. 2 ‘來爲- 構文’

‘오다’란 의미의 이두어는 “大明律直解”에는 없다. 다만 이런 의미의 한자어 ‘來’는 보이므로 “大明律直解”에서는 한자어 ‘來’로써 ‘오다’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來’의 쓰임에 있어서 이의 반대어인 ‘進’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進’은 앞에 명사구를 두지만 ‘來’에서는 그러한 표기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大明律直解”에서 ‘來’는 언제나 ‘爲’와 결합되어 쓰이며 홀로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持來’, ‘捉來’, ‘入來’, ‘還來’ 등과 같이 항상 다른 동사하고 같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다’라는 서술어는 마치 “大明律直解”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다’란 의미가 없는 ‘進來’와는 다르게¹²¹⁾ ‘持來’, ‘捉來’, ‘入來’, ‘還來’ 등에서는 ‘오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추출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들에서 ‘오다’라는 의미만을 따로 분리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다’라는 의미의 서술어가 필요한 구문이 있다면 이에 반드시 ‘오다’라는 서술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持來’, ‘捉來’, ‘入來’, ‘還來’ 등이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면 이는 곧 이들이 놓인 구문이 ‘오다’라는 의미의 서술어가 필요한 구문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쓰인 구문에는 ‘오다’라는 서술어가 쓰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 그 ‘오다’라는 서술어는 바로 ‘持來’, ‘捉來’, ‘入來’, ‘還來’에 들어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곧 이들을 분리하여 ‘오다’라는 서술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에서는 두 개의 한자어 동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동명사로 쓰인다. 이들 한자어는 두 어휘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각각 따로였을 때의 의미와 결합하였을 때의 의미에 차이가 없으면 국어에서는 이들을 각자 분리하여 따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進來’와 같은 경우는 각각 떨어진 상태에서의 ‘進’과 ‘來’의 의미가 ‘進來’로 결합되었을 때는 없어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들을 분리하여 뜻을 새길 수가 없다. ‘敎授’도 마찬가지이다. ‘敎’는 ‘가르치다’의 뜻이고 ‘授’는 ‘주다’라는

121) ‘進來’는 어느 관아에 딸리 隸屬(예속)을 철폐할 때 미리 그 까닭을 그 관아에 통지하는 일을 뜻한다. 또는 출두시킴, 잡아 옴의 의미를 갖는다(장세경 2001).

뜻인데 ‘大學校 教授’에서의 ‘教授’에는 이러한 의미 대신 ‘높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따라서 ‘教授’를 ‘敎’와 ‘授’로 분리해서는 ‘大學校 教授’란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還來’와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도 각각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경우는 이들을 각자 분리하여 뜻을 새길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분리하여 보기로 하자. ‘送達’, ‘迎接’, ‘添附’, ‘戰鬪’, ‘死傷’, ‘思慕’ 등은 각각의 의미와 이들의 결합된 의미에 차이가 없는 한자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분리하여 뜻을 새길 수가 있다.

(9) 가. 送達:보내여 다다르다

나. 迎接:맞이하여 가까이하다

다. 添附:더하여 붙이다

라. 戰鬪:싸우고 다투다

마. 死傷:죽고 다치다

바. 思慕: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이처럼 한자어는 분리하여 뜻을 풀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풀이에 있어 두 가지의 양상을 보게 된다. 하나는 ‘~하여 ~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하고 ~하다’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9가, 나, 다)는 앞의 어휘가 지닌 행위가 뒤의 어휘가 지닌 행위에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하여’로 연결된다. 그러나 (9라, 마, 바)는 앞의 어휘의 행위와 뒤의 어휘의 행위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어휘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연결어미는 ‘~고’가 되므로 (9라, 마, 바)는 ‘~하고’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어의 분리 풀이에 있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9)의 한자어를 그대로 두고 한글로 토를 달면 (10)에서와 같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어를 意訓借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10) 가. 送達:送하여 達하다

나. 迎接:迎하여 接하다

다. 添附:添하여 附하다

라. 戰鬪:戰하고 鬪하다

마. 死傷:死하고 傷하다

바. 思慕:思하고 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來’와 결합된 어휘가 각각의 의미와 결합된 의미가 서로 같다면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11)에서 보이는 구문은 ‘來’에 ‘오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來’와 결합한 다른 한자어도 자신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來’와 결합된 어휘는 분리할 수가 있다.

(11) 가. 中路良中邀奪取來爲去等(17:3)

[중간에서 기다려 빼앗아 오거든]

나. 凡夜間良中無緣故亦他人家內入來爲在乙良(18:16)

[무릇 야간에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집 안에 들어왔거든]

다. 必于滿役改正還來爲(22:4)

[비록 부역 기한이 차거나 시정되어 귀환하여 오더라도]

라. 必于所掌外管屬不得爲在官司是良置直亦出差使捉來爲去等(28:7)

不得爲在(못질 ㅎ건):못 한, 直亦(긔):곧

[비록 소관 밖이어서 管屬 못 한 관사이어도 곧 관리를 보내 체포하여 오거든]

우리는 (11) 구문의 ‘奪取來’, ‘入來’, ‘還來’, ‘捉來’가 각각 다음과 같이 분리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2) 가. 奪取來:奪取하여 來하다

나. 入來:入하여 來하다

다. 還來:還하여 來하다

라. 捉來:捉하여 來하다

이들이 ‘~하고’가 아닌 ‘~하여’로 연결되는 이유는 앞의 어휘와 뒤의 어휘의 의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고’로 연결된다면 앞의 어휘의 의미와 뒤의 어휘의 의미는 서로 별개의 의미로서 단지 대등연결될 뿐이다. 그러나 (12)의 한자어는 앞의 어휘와 뒤의 어휘가 결합됨으로써 연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나열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12)는 ‘~하여’로 연결되

어야 한다.

그런데 (11)에서 ‘來’는 모두 ‘爲-’와 결합되었다. 이는 ‘來’가 “大明律直解”에서는 ‘音訓借’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訓借’되었다면 ‘來’는 ‘爲-’와 결합될 수 없다. ‘오다’와 ‘하다’가 국어에서는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과訓을 모두 빌어 이를 동명사화한다면 ‘하-’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12)의 ‘來’는 동명사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을 ‘來爲- 構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來’와 반대의 의미를 지닌 ‘進’은 訓借만 되었으므로 ‘爲-’와 결합되지 못한다. 국어에서는 ‘나아가다’와 ‘하다’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大明律直解”에서도 ‘進爲-’라는 표기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來爲- 構文’인 (11) 구문에 대하여 구문 구조를 ‘VP爲良 來爲-’로 분석할 수 있다. ‘爲良’은 ‘來爲- 構文’에서 표기된 예는 없으나 서술어에서 ‘來爲-’를 추출하게 되면 의미상 이의 선행 성분에는 ‘爲良’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를 나타내기로 한다.

한편, “大明律直解”의 ‘來爲- 構文’에서는 ‘VP爲良’ 외에 ‘VP爲遣’으로 분석되는 구문도 볼 수가 있다.

(13) 司饗人等亦御膳所良中誤錯亦持來爲在乙良(12:1)

[요리인 등이 御膳所에 착오로 가지고 온 것을량]

(13)의 ‘持來’는 ‘가지고 오다’로 풀이되지만¹²²⁾ ‘持(가지다)’와 ‘來(오다)’는 별개의 행동으로서 서로 대등연결되어 있다. 대등연결의 어미는 ‘遣’이므로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遣 來爲-’가 된다.

3. 8. 3 方位 構文

‘向爲-’는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서술어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向爲-’가 서술어로 쓰인 구문을 ‘方位 構文’으로 보기로 한다.

‘向爲- 構文’이 ‘方位 構文’이므로 이 구문에는 향할 목적지가 있다. 따라서 구문 구

122) ‘持來’를 ‘가져오다’로 풀이할 수도 있으나 “大明律直解”에서는 ‘持良’으로 쓰인 예가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조는 ‘NP乙 向爲-’가 된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 ‘向爲-’가 쓰인 예는 (14)에서 보는 세 가지의 구문이 전부이다.

(14) 가. 焚燒香火燃點天燈神明乙向爲親押煩雜亦使內在乙良杖八十(11:3)

使內在乙良(브리견으란):한 것을란

[북두칠성을 (배례하여) 향을 사르며 천등에 불을 켜고 신명을 향하여 친히 주관하여 번잡히 한 것을란 杖八十]

나. 凡大廟及宮殿乙向爲箭及彈子乙射放爲弥(13:6)

[무릇 大廟 및 宮殿을 향하여 화살이나 탄알을 쏘며]

다. 凡故只城內及人居宅舍乙向爲放彈射箭投擲磚石爲在乙良答四十齊(19:8)

[무릇 고의로 성 안 및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향하여 탄알을 내치거나 화살을 쏘거나 벽돌을 던지거들랑 答四十을 한다]

(14)의 구문들은 모두 목적어가 ‘向爲-’의 선행어로 오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가 표시되고 있다. 다만, (14나, 다)에는 실질적인 장소가 목적어로 왔으나 (14가)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이 목적어로 왔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서술어의 앞에서 목적격 조사가 표시되는 일이 드물므로 ‘NP乙 向爲-’와 같은 구문 구조는 예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8. 4 요약

‘移動 構文’을 이루는 구문에는 ‘進- 構文’과 ‘來爲- 構文’이 있었고, ‘方向構文’에는 ‘向爲- 構文’이 해당되었다.

‘進- 構文’은 나아가갈 장소가 치격 조사 ‘良中’과 통합하여 구문에 놓임으로써 ‘NP良中 進-’의 구조를 이루었다. 이때 장소는 실제적 장소 또는 추상적 장소가 되었다.

‘進- 構文’에는 나아가는 곳이 장소가 아닌 사람인 경우도 있어 ‘NP亦中 進-’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는 방법이 조격으로서 ‘進- 構文’에 오기도 하여 ‘NP以 進-’ 구문 구조를 보였다.

서술어 ‘進-’ 앞에는 어떠한 선행위가 놓이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선행위와 후행위가 동시 진행상 혹은 과거 완료상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는/ㄴ’과 같은 소위 相標示 形態素가 없으며, ‘-고’, ‘-아/어’, ‘-려고’를 제외하고는 ‘-게,

-면서, -고서' 등과 같은 동작상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없고, 그나마 '-고', '-아/어', '-려고'의 이두표시인 '遣', '良', '要'도 생략되는 때가 많아 상적인 분석을 문맥에만 의존하여야 하므로 그 구분이 명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VP爲良/爲遣 進-'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로 나아가는 이유로서 행위가 구문에 놓여 'VP爲良結 進-' 구조로 분석되는 것도 있으나 "大明律直解"에서는 '爲良結'이 쓰인 예가 없어 '進- 構文'에 있어서의 잠정적인 구문 구조로 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오다'란 의미의 이두어로 '來'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앞에 명사구를 두는 '進'과는 다르게 '來'는 명사구를 전혀 두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며 '爲'와도 결합된 채로 쓰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來爲- 構文'은 'VP爲良 來爲-'와 'VP爲遣 來爲-' 구문 구조를 가졌다.

'方位 構文'에는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서술어 '向爲-'가 이끄는 구문이 속하였다. '向爲- 構文'에는 향하여 갈 곳이 목적어로서 놓임으로 'NP乙 向爲-' 구문 구조가 되었다. 다만 "大明律直解"에서는 세 개의 '向爲- 構文'만 찾아졌다. 지금까지 분석한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의 구문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면 (15)와 같다.

(15) 1. 'NP良中 給爲-'

'給爲-'의 선행어로 급여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이나 급여행위가 성사될 장소가 온다.

2. 'NP良中 進-'

나아가갈 장소는 실재적 장소나 추상적 장소가 된다.

3. 'NP亦中 進-'

나아가는 곳이 장소가 아닌 사람인 경우이다.

4. 'NP以 進-'

나아가는데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 경우이다.

5. 'NP爲良/爲遣 進-'

동시 진행상 또는 과거 완료상으로 해석되는 구문 구조로서 '爲良'이 통합될 때는 동시 진행상으로, '爲遣'이 통합될 때는 과거 완료상으로 풀이한다.

6. 'NP爲良結 進-'

'進- 構文'에 있어서 잠정적인 구문 구조로서 "大明律直解"에서는 쓰인 예가 없다.

7. 'NP爲良 來爲-'

‘~하여’로 풀이되는‘來爲-’ 구문이다.

8. ‘NP乙 向爲-’

어디로인가 향할 목적지가 구문에 오는 구조로서 “大明律直解”에서는 세 개의 구문만 보이는 매우 드문 구조이다.

4. 통사적 구조 중심 구문 분석

4. 1 否定 構文

4. 1. 1 도입

우리는 앞에서 指定 構文의 긍정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指定 構文에서의 부정문은 어떠한가를 보기로 한다.¹²³⁾

“大明律直解”에서는 계사가 표기된 상태의 구문으로는 어떤 부정소로도 부정형을 보이지 않는다. 단, 계사가 생략된 구문에서는 부정소 ‘不’과 ‘不喻’에 의한 부정형이 나타날 뿐이다.¹²⁴⁾ 따라서 指定 構文에서의 부정을 ‘是齊’에서 ‘是’가 생략된 상태의 구문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앞에서 ‘爲乎事 構文’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부정의 역할도 아울러 담당한다. 다만, ‘爲乎事 構文’ 중 ‘爲行臥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에서는 부정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是乎事 構文’과 ‘爲乎事 構文’에 한하여 부정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大明律直解”에서는 ‘爲- 構文’의 부정문도 나타나는데 이때 이 구문을 부정하는 부정소로는 이두어 ‘不冬’, ‘安徐’, ‘不得’과 한자어 ‘免’이다. ‘免’은 부정소는 아니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부정소처럼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는 ‘免’도 부정소로서 다룬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이중 부정 구문도 보이는데 이 구문은 ‘令是- 構文’에서 나타난다.

123)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계사 구문 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호(1989, pp.114-120), 시정곤(1993, p.145), 서정목(1993, 1998)은 ‘아니다’를 ‘아니’와 ‘이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안명철(1995, pp.45-47)은 ‘아니’는 ‘이다’의 통사적 부정형이 아니라 별개의 어휘 항목에 존재하는 용언으로서 형용사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니다’ 구문은 ‘이’ 구문의 어휘적 부정표현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 외로 ‘아니다’를 역사적으로 ‘이다’의 문법적 부정형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양정석 1986, p.18).

124) 부정법의 발달에 대해서는 남풍현(1976, pp.55-81)을 참조하기 바란다.

4. 1. 2 指定 構文의 否定

제사 ‘是’가 생략된 채 ‘齊’만 쓰인 指定 構文에서 부정소 ‘不’과 ‘不喻’는 ‘齊’의 바로 앞에 놓여 指定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든다.¹²⁵⁾

먼저 부정소 ‘不’이 쓰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문으로는 두 개의 구문만이 보인다.

(1) 예문에서 ‘齊’만이 보이고 있으나, (1가)에서 ‘齊’가 서술하고 있는 ‘員數’는 신분이고, (1나)에서는 상태인 ‘欠闕’을 ‘齊’가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爲’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是’가 생략된 것이다. 이유는 ‘是齊’가 어떠한 신분이나 상태를 지정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1) 가. 四等官內良中員數亦不齊爲良置四等官數乙依良傳傳減數齊(1:34)

爲良置(히야두):하여도, 依良(차라):따라, 傳傳(전전):차차

[4等官 내에 인원 수가 부족하여도 4等官 수를 따라 차차 減數(하을 일)이다]

나. 又船上諸緣等乙欠闕不齊爲在乙良杖六十爲旆(12:2)

[또한 船上의 모든 가장자리(상앗대, 노) 등을 모자르게 하거나 없게 한 경우에는 杖六十하며]

(1)에서 ‘員數’와 ‘欠闕’은 주어로서 부정되는 대상이 된다. 다만 ‘欠闕’은 격조사가 생략되었지만 해석상 주어이다. 따라서 이는 ‘~가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NP亦 不 齊’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부정소 ‘不’은 ‘Ø齊’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부정하는 대상을 자신의 앞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부정소 ‘不喻’가 쓰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 부정소 ‘不喻’는 항상 체언만을 부정한다(남풍현 1976, p.68).

(2) 가. 公事乙因干犯罪爲乎矣私情不喻齊(1:35)

因干(지즈로):말미암아, 不喻齊(아닌디제):아니다

[公事を 말미암아 범죄하오되 私情이 아니다]

나. 王旨行下無亦越境使內乎所不喻齊(14:2)

行下(형차):명령, 無亦(업스론견이여):없이, 使內乎所(브리온 바):시키온 바

[王旨(에 따른) 명령이 없이 越境시키온 바 아니다]

125) 우순조(1997, pp.247-250)는 중세국어에서의 부정부사 ‘아니’는 ‘히-’가 탈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NP亦 不喻 Ø齊’의 구문 구조를 지닌 (2)에서 보인 구문들은 모두 의미상 계사 ‘是’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가)는 ‘私情(이) 아니(이)다’로, (2나)는 ‘~바(가) 아니(이)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2)의 부정문은 모두 指定 構文의 부정문이 된다.

(2가)는 ‘爲乎矣’로써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不喻’로써 실제 내용은 그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私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구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은 따로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私情’은 주어가 되며 부정되는 대상이 된다.

(2나)에서는 ‘不喻’로써 ‘越境’이라는 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때문에 ‘越境’은 허락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 여기서 ‘越境’ 시킨 것을 뜻하는 ‘所’가 주어가 된다. 그리고 이 ‘所’는 부정되는 대상이 된다.

‘不喻’에 대한 한문본에서의 한자는 (2가)와 (2나)가 서로 다르다. (2가)는 ‘無’로 표기하였고, (2나)는 ‘不’로 적혀 있다.¹²⁶⁾ 이는 ‘不喻’가 한자어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어감에 따라 선택된 부정소임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4. 1. 3 ‘爲乎事 構文’의 否定

앞에서 ‘爲乎事 構文’의 ‘是乎事’나 ‘爲乎事’는 서술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서술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부정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들이 부정 구문도 이끌고 있음을 보인다.

‘爲乎事 構文’에는 ‘是乎事’나 ‘爲乎事’ 외에도 ‘爲行臥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이 있으나 이들이 부정 구문을 이끄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爲乎事 構文’의 부정문은 ‘是乎事 構文’과 ‘爲乎事 構文’에 한정된다.

4. 1. 3. 1 是乎事 否定 構文

‘是乎事 構文’이 부정문으로 쓰인 예는 “大明律直解”에서 한 차례 나타난다. 그 구

126) ‘不冬’이 ‘不’에 대한 이두로 쓰이고 있음에 비해, ‘不喻’는 ‘無’와 ‘不’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은 ‘NP亦 不喻 是乎事’의 구조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문 유형의 부정문을 보인다. ‘是乎事 構文’의 부정은 ‘是乎事’의 앞에 부정소 ‘不喻’를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3) 一十文亦不足爲良在等四十貫加罪良中同論決斷爲乎所不喻是乎事(1:41)

爲良在等(ㅎ얏겨든]:하엿거든, 爲乎所(ㅎ온 바):하온 바, 하올 바, 不喻(아닌디):아니, 是乎事(이온 일]:이온 일

[10文이 부족하엿거든 40貫 加罪에서 同論決斷하올 바 아니 이온 일]

(3)에서 ‘不喻是乎事’는 ‘不喻是乎事是齊’에서 ‘是齊’가 생략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不喻’는 생략된 ‘是齊’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是乎事’를 부정한다. (3)에서 ‘所’는 주어가 되므로 ‘所’의 뒤에는 주격 조사 ‘亦’이 생략되었다.

4. 1. 3. 2 爲乎事 否定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是乎事 否定 構文’이 하나뿐임에 비해 ‘爲乎事 否定 構文’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때문에 ‘爲乎事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부정소 역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爲乎事 構文’을 부정형으로 만드는 부정소에는 ‘不, 不冬, 勿, 安徐’ 등이 있다.¹²⁷⁾

4. 1. 3. 2. 1 부정소 ‘不’

부정소 ‘不’은 이두어가 아닌 한자어이다. 이는 이두어로 된 부정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부정소도 같이 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부정소를 이두어나 한자어로 국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大明律直解”의 부정 구문에서 보이는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爲乎事 構文’에서 한자어 부정소 ‘不’이 쓰인 구문을 보면 (4)와 같다.¹²⁸⁾

127) 부정소에는 ‘不得’도 있으나, ‘不得’이 ‘爲乎事’를 부정하거나, ‘爲乎事’의 선행 NP를 부정하는 예는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不得’을 논외로 하였다.

128) ‘不知’에서 ‘不’은 ‘知’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우리 말로 옮긴다면 ‘못 안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안다’는 국어에서 비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알지 못하다’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不’은 ‘知’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不知’에서 ‘不’은 ‘知’를 부정하지 ‘하다’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우리는 14세기 중반의 국어에서는 ‘못 안다’가 통용되었다고 보든가, 한문식 문장과 국어식 문

(4) 가. 知情交嫁人亦同罪並只離異爲乎矣財物沒官遣不知者不論罪爲乎事(6:3)

並只(다무기):함께, 爲乎事(혹은 일):하은 일, 할 일

[그 사정을 알고 交嫁한 사람은 죄가 같고, 함께 이혼하되 재물은 관에서 몰수하고,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죄를 논하지 않을 일]

나. 次知官司亦知而聽行爲在乙良同罪遣不知者不坐爲乎事(24:6)

次知(츠지):책임자, 而(마른):~지만

[책임 官司가 알지만 받아들여 시행한 경우에는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不坐하을 일]

‘NP隱 不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4)에서 ‘不’은 ‘VP爲乎事’와 그 선행 NP의 사이에 위치하여 ‘VP爲乎事’를 부정형이 되게끔 하고 있다. 여기서 ‘不’이 직접 부정하는 것은 ‘爲乎事’에 선행하는 NP이다. 그런데 (4)에서 ‘不’의 앞에 있는 NP에는 어떤 조사도 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문 해독상 굳이 조사를 넣는다면 이 NP에는 ‘隱’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 ‘~은/는’의 의미를 지닌 특수조사로는 ‘隱’과¹²⁹⁾ ‘段’이 있다. 여

장을 구분하여 ‘不知’를 ‘알지 못하다’로 수의적인 풀이를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못 안다’가 비문인 관계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大明律直解”는 구문의 분석에 있어서 구결문이나 한글본과는 다르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9) ‘隱’은 향가에서는 쓰였으나 특이하게도 고려의 자료에서는 그 용례가 찾아지지 않는 借字로서, 이를 남풍현(1974b)은 주제화의 기능을 갖는 중세국어 ‘은/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박희숙(1984, p.118)은 ‘隱’을 주격의 표기로 보았고, 고정익(1992, pp.74-75)는 15세기의 보조조사 ‘ㄴ(은/은, 는/는)’에 대응되는 音假字로서 주격이나 대격의 기능을 보이며 ‘비교, 대조’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 외로 박성중(1996, p.194)은 주제화 첨사로, 장세경(2001, p.269)은 보조조사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隱’이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느 한 가지 격만을 담당하지 않으며 문법적 기능보다는 의미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익섭·임홍빈(1983, pp.165-169)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은/는’을 특수조사로 분류한 견해에 비추어 이를 ‘특수조사’로 처리한다.

(1) 殺一家三人爲在人等隱必于有旨在白教是良置流配合當爲在乙並只不赦爲乎事(1:19)

爲在(혹견):한, 等(들):들, 隱(은):은, 必于(비록):비록, 在白教是良置(견습이시라두):겨웁 실지라도, 爲在乙(혹견을):한 것을, 並只(다무기):모두

[一家(內)의 세 사람을 殺害한 사람들은 비록 사면령이 겨웁실지라도 流配가 합당하거늘 모두 사면 아니 하을 일]

(2) 徒役三年之類加者隱原數良中已滿爲去沙(1:41)

기서 ‘隱’은 15세기에서 ‘비교’ 혹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ㄴ(은/은, 는/는)’에 대응되는 音假字로 선행어는 ‘者’, ‘等’과 같은 형식명사와 ‘服’, ‘人’과 같은 일반명사 등이다(고정의 1992, pp.74-75). ‘판, 썸, 단’ 등으로 읽히는 音假字인 ‘段’은 주체의 표시에 사용되었으며¹³⁰⁾ 유정명사나 부정명사에 두루 통합되었다(고정의 1992, pp.75-76). 그런데 “大明律直解”에서 ‘段’은 ‘者’와 통합된 예가 없으므로¹³¹⁾ (4)에서 생략된 특수조사는 ‘段’이 아닌 ‘隱’이 된다.

다음은 부정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를 ‘乙良’이 통합하고 있는 ‘爲乎事’ 부정 구문을 보기로 한다.

(5) 가. 男女乙良不坐罪爲乎事(6:7)

[남녀는 不坐罪하올 일]

나. 書人乙坐罪遣驛官乙良不坐罪爲乎事(17:4)

[書人을 坐罪하고 驛官은 不坐罪하올 일]

다. 官吏乙良不坐罪爲乎事(17:5)

[관리는 不坐罪하올 일]

라. 奉使人乙良不坐罪爲乎事(17:6)

[奉使人은 不坐罪하올 일]

(5)는 부정소로 ‘不’이 온 구문으로서 ‘NP乙良 不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졌다. 여기서 ‘不’은 ‘爲乎事’의 선행 NP를 부정한다. ‘乙良’의 선행어로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가)의 한문본 구문은 ‘男女不坐’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한문표기가 같은 장에

爲去沙(헝거사):하여야만

[徒役 3년에 비견하고, 더해진 자는 原數에서 이미 滿期하야야만]

(3) 凡監臨亦稱者隱內外官司亦文字行移爲臥乎所(1:43)

亦(여):라고, 爲臥乎所(헝누온 바):하는 바

[무릇 監臨이라고 칭하는 것은 內外官司가 공문조회하는 바]

위의 예문에서 (1)의 ‘隱’은 여격 조사 ‘에게’의 의미로 쓰였고, (2)에서는 주격 조사 ‘가’로, (3)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30) ‘段’에 대하여 남풍현(1981, p.62)은 借字의 ‘아/어’音が 15세기의 ‘으/으’音에 대응하는 예로 보았다.

131) 저자가 “大明律直解”에서 확인한 결과 ‘者段’으로 쓰인 예가 전혀 없었다.

또 하나 있다. 그런데 이의 이두 풀이문은 다소 다르다.

(6) 男女各不坐罪爲乎事(6:7)

[남녀 각각은 不坐罪하울 일]

(6)에서는 (5가)에서와는 다르게 ‘乙良’이 쓰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세시대의 한문 본에서 동일 글자라도 다르게 모양을 하여 쓸 정도로 동일성을 피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도적인 ‘乙良’의 탈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한문구문에 대하여 그 풀이를 다소 다르게 하고 있음에서도 ‘乙良’은 동일성을 피하기 위하여 탈락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으로 ‘乙良’을 탈락시킬 수 있다면 (5)에서도 ‘乙良’의 표기는 수의적임을 뜻한다.

‘爲乎事 構文’에서 이중 부정은 아니나 두 개의 부정되는 사실을 연이어 나열하는 구문 구조도 보인다.

(7) 不坐罪爲於不追徵爲乎事(14:9)

[不坐罪하며 不追徵하울 일]

(7)은 중문으로서 ‘VP爲於 不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지닌다. 이 구문에는 ‘不坐罪’와 ‘不追徵’이라는 두 개의 법처분이 있는데, 이를 ‘爲於’로써 앞의 법처분과 뒤의 법처분을 이어주고 있다.

이 외에 ‘爲乎事 構文’의 부정문 중에는 부정소 앞의 NP를 ‘爲在乙良’으로써 서술하여 ‘VP爲在乙良 不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8) 가. 頭目亦中進告爲在乙良不論罪爲乎事(13:3)

[所管指揮者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論罪하지 아니 하울 일]

나. 妻妾亦因此爲自手以盡命死亡爲在乙良不論罪爲乎事(19:7)

[妻妾이 이로 인하여 자신의 손으로써 盡命死亡(자살)한 경우에는 論罪하지 아니 하울 일]

(8)에서 ‘爲在乙良’은 선행 NP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취해질 법적조치의 단서가 되고 있다.

4. 1. 3. 2. 2 부정소 ‘不冬’

‘不冬’은 ‘不’의 이두표기로서 ‘不’을 단지 ‘不冬’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한문본을 우리 말로 다시 풀이하였을 경우에만 ‘不冬’을 쓰고 있다. 따라서 한문본을 우리 말로 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문본 그대로 ‘不’로 쓰고 있다.¹³²⁾

‘爲乎事 構文’은 부정소 ‘不冬’으로써도 부정문을 이룬다. (9)가 그 예로서 이들 구문은 ‘NP₁乙良 NP₂乙 不冬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다만 목적격 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되었다. ‘准除’는 풀이에 있어서는 두 어휘가 되지만 구조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쓰이고 있다.

(9) 其中故失數爻乙良并以准除不冬爲乎事(16:1)

并以:모두

[그 중 고의로 잃은 수효는 모두 제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아니 하올 일]

(9)는 궁극적으로 부정되는 행위의 대상이 ‘乙良’으로써 한정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부정문이다.

이 외에 ‘VP爲在乙良 NP乙 不冬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爲乎事 否定 構文’도 찾을 수 있다.¹³³⁾

(10) 가. 免罪爲在乙良離異不冬爲乎事(6:7)

132) ‘不冬’이 부정소가 아닌 서술어로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不冬’의 뒤에 ‘爲-’가 놓이지 않는다.

(1) 凡諸物乙買賣爲乎矣買者賣者和同不冬市裡凡事乙擅權爲專取其利爲旅(10:2)

[무릇 모든 물건을 매매하오되 사는 자와 파는 자가 和同 아니 하고 市裡凡事를 擅權하여 그 이익을 專取하며]

(2) 他人乙侵害爲乎等用良全免不冬贖罪令是臥乎事(1:22)

[남을 침해한 바로써 전부 사면은 아니 되고, 贖罪 시킬 일]

위의 경우 ‘不冬’은 자신의 선행 NP를 직접 부정하고 있다.

133) ‘不冬’이나 ‘安徐’ 모두 ‘아니’라는 의미의 부정소이다. 그런데 이 표기의 한문본은 서로 다르다. ‘不冬’은 ‘不’의 이두표기에서, ‘安徐’는 ‘免’의 이두표기에서 보이고 있다. 한문의 ‘不’과 이두의 ‘不冬’은 의미가 상통하고 있다. 그런데 ‘安徐’에 ‘면하다’라는 의미도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免罪한 경우에는 이혼 아니 하올 일]

(10)은 어떠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부정한다. 부정소 ‘不冬’의 앞에 있는 ‘NP’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다.

4. 1. 3. 2. 3 부정소 ‘勿’

‘爲乎事 否定 構文’에서는 금지사 ‘勿’도 사용되는데 ‘勿’은 ‘爲乎事’의 선행 VP를 부정한다. 때문에 ‘乙良’이 오는 ‘爲乎事 否定 構文’에 부정소 ‘不’이 아닌 금지사 ‘勿’이 오기도 한다.

(11) 가. 請來書寫人乙良勿論罪爲乎事(2:4)

[불러서 온 書寫人은 勿論罪하올 일]

나. 旨是絃以開閉者乙良勿論罪爲乎事(13:8)

旨是絃以(맞이시울로):상명에 따라

[上命에 따라 開閉한 자는 勿論罪하올 일]

따라서 (11)은 ‘NP乙良 勿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11)에서의 부정소는 한문본의 부정소 ‘勿’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乙良’의 선행어로는 모두 사람이 오고 있다.

다음은 부정소 ‘勿’의 앞에 ‘VP爲在乙良’이 쓰여 ‘VP爲在乙良 勿 VP爲乎事’ 구문 구조를 이루는 ‘爲乎事 否定 構文’을 보기로 한다. (12)는 선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정소 ‘勿’로써 부정문을 만든 경우이다.

(12) 가. 洪武元年已前嫁娶爲在乙良勿論爲乎事(6 :8)

[洪武元年 이전에 嫁娶한 경우에는 論罪 아니 하올 일]

나. 牛馬等亦病死顯跡明白爲在乙良勿論罪爲乎事(9:3)

[소나 말 등이 病死한 자취가 명백하거들란 論罪 아니 하올 일]

다. 此亦中吉禮凶事良中請借使用爲在乙良勿論罪爲乎事(14:11)

亦中(여히):~에, 良中(아히):~에

[이에 吉禮凶事に 請借使用한 경우에는 論罪 아니 하올 일]

[軍官의 집에 吉事나 凶事가 있어 軍人을 빌려다 使役을 시킨 것은 論罪하지 않을 일이다]

라. 因傷逢音致死爲在乙良勿論爲乎事(28:2)

逢音(맞춤):마침

[상처로 인하여 마침 사망한 경우에는 論罪 아니 하올 일]

‘勿’은 한자어로서 ‘爲乎事’의 선행 VP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12)에서 보이는 ‘勿論罪’는 ‘不論罪’로서도 쓰이고 있다. 의미해석상의 차이를 보면 ‘不論罪’의 경우는 ‘~논하지 못하다’이고, ‘勿論罪’는 ‘~논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구문을 부정형으로 이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의미해석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표기는 한문본에서 ‘不’과 ‘勿’로써 부정한 것에 의한 것으로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大明律直解”에서 이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不論罪’와 ‘勿論罪’를 별개의 구문 구조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 대해 공통으로 쓰는 어떠한 이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不’과 ‘勿’에 아울러 쓰는 특정의 이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의 의미상 차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³⁴⁾ 그러므로 이러한 구문은 어떠한 다른 부정소로서 서술함을 시도하지 않고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동일한 한문 구문에 대해서는 그 번역문도 서로 동일하다.

(13) 가. 軍官果軍人果交易爲良在等勿論罪爲乎事(14:8)

爲良在等(헛얏겨든):하엿겨든

[軍官과 軍人이 교역하엿겨든 勿論罪하올 일]

나. 軍官軍人亦交易爲良在等勿論罪爲乎事(14:9)

[軍官과 軍人이 교역하엿겨든 勿論罪하올 일]

‘VP爲良在等 勿 VP爲乎事’은 과거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정소 ‘勿’로써 부정한 구문의 구조로서, ‘勿’은 한문본을 그대로 따라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13가, 나)의 한문본 구문은 모두 동일하게 ‘軍官軍人買者勿論’이다. 따라서 그 번역문인 (13가, 나)도 역시 동일한 구문 구조를 보인다.

4. 1. 3. 2. 4 부정소 ‘安徐’

134) 경우에 따라 ‘安徐’를 한문의 ‘不’과 ‘勿’에 대한 이두로 사용한 예는 있다. 그러나 이를 ‘不’과 ‘勿’만을 전담하는 이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安徐’가 이들 외에 ‘免’에 대해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不’과 ‘勿’에 한해서만 쓰이는 이두는 없다고 보인다.

부정소 ‘安徐’는 ‘免’의 이두표현으로서 ‘爲乎事’를 직접 부정하고 있다. 이는 한자어 ‘不’이 ‘爲乎事’의 VP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14)는 ‘NP乙 安徐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예문들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처벌행위로서 ‘生徵’과 ‘刺字刑’이 오고 있다.

(14) 가. 不得已爲即時殺傷爲在乙良與罪不冬爲~~於價本生徵安徐爲乎事~~(16:5)

不得已(부득이):부득이, 安徐(안서):아니

[부득이하여 즉시 살상한 경우에는 죄를 주지 아니 하며, 값을 강제징수 아니 하올 일]

나. 減凡盜罪一等遣刺字安徐爲乎事(18:11)

[무릇 盜罪에서 一等을 減輕하고 刺字刑을 아니 하올 일]

다. 竊盜例以准論遣刺字安徐爲乎事(18:12)

[절도의 예로써(예) 준하여 論罪하고 刺字刑을 아니 하올 일]

라. 贓物乙計爲竊盜例以論遣刺字安徐爲乎事(18:16)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의 예로써 論罪하고 刺字刑은 아니 하올 일]

마. 路次費用物色及田宅放賣爲乎價本乙良~~生徵還給安徐爲乎事~~(22:5)

及(및처):및

[여행금품 및 田宅을 放賣하온 값은 강제징수하여 돌려주지 아니 하올 일]

(14)에서 부정소 ‘安徐’는 ‘爲乎事’의 선행 VP 앞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보이고 있다.

4. 1. 4 ‘爲- 構文’의 否定

“大明律直解”에서 평가·판정 구문의 ‘爲- 構文’을 부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부정소로는 이두어로서의 ‘不冬’ 및 ‘安徐’ 그리고 ‘不得’이 있다. 이 외로는 한자어 ‘免’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³⁵⁾ ‘免’은 부정소는 아니나 “大明律直解”에서는 형의 집행이나 적용 혹은 선고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의 역할은 부정소가 “大明律直解”의 구문에서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자어 ‘免’이 ‘爲

135) 부정법에 대하여 “大明律直解”에서는 ‘Neg VP’ 형만 나타날 뿐 ‘-지 Neg+ending’ 형은 보이지 않는다.

- 構文'에 놓이는 경우도 아울러 다루기로 한다.¹³⁶⁾

4. 1. 4. 1 '不冬 爲- 構文'

'不冬'은 용언문의 부정에 쓰이는 부정소(남풍현 1976, p.68)이다. 그런데 고정의 (1992, pp.134-135)에서는 '不冬'의 선행어를 동사의 어근으로 처리하여, '不冬'이 동사 어근과 '爲-'의 사이에 위치하여 선행하는 어근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VP 爲-'와 'NP乙 爲-'는 서로 다른 유형이다. 'VP 爲-'는 'VP'와 '爲-'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로서 역할을 하지만 'NP乙 爲-'에서는 '爲-'만이 서술어이다. 즉, 'VP 爲-'는 '爲- 構文'이 아니나, 'NP乙 爲-'는 '爲- 構文'인 것이다. 따라서 'NP Neg 爲-'의 경우 'NP'는 부정소로 인해 '爲-'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이는 '爲- 構文'인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VP 爲-'에서 이들 사이로 부정소를 삽입하여 'VP Neg 爲-'인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국어에는 서술어 내부에 파고드는 부정소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부정소 '아니'는 '먹지 아니 한다, 자지 아니 한다, 울지 아니 한다...'에서처럼 동사 어근을 '아니'의 선행어로 두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不冬'의 선행어는 NP가 아닌 동사 어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어미의 생략이 잦으니까 (15)의 구문에서도 '不冬'의 선행어에는 어미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가. 各司亦進來推問次良中隱藏發送不冬爲在乙良(1:12)

[각 관사가 잡아들여 訊問次에 隱藏하고 發送을 아니 한 경우에는]

나. 犯人乙容隱爲官司良中發送不冬爲在乙良(1:12)

[범인을 容隱하고(숨겨두고) 관사에 發送하지(보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 財産必于沒官爲在乃犯罪人亦配流不冬爲在乙良(1:25)

[재산을 비록 관에서 몰수한 것이나 범죄인이 遠處流配 아니한 경우에는]

136) 15세기 국어의 부정법에 대해서는 박진호(1997, p.133)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짧은 부정문은 '아니'나 '못'과 같은 부정 부사를 용언의 앞에 결합시키고, 긴 부정문은 부정의 대상이 되는 용언에 연결어미 '-디'를 결합시켜 부정 보조용언 '아니ㅎ-', '못ㅎ-', '말-'과 연결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NP₁-이 NP₂-이-' 형식의 계사문의 경우에는 'NP₁-이 NP₂-이 아니-'와 같은 형식으로 부정문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凡京中大小官員亦無緣故出官不冬齊(2:6)

[무릇 京官職에 있는 大小官員이 까닭 없이 관사에 나오지 아니하고]

마. 凡軍官員亦犯罪爲去等申聞合當爲在乙良申聞不冬爲旡(3:4)

[무릇 軍官員이 범죄하거든 申聞合當한 경우에는 申聞을 아니 하며]

바. 廻還三日後良中王旨乙還納不冬爲在乙良(3:5)

[돌아온지 3일 후에도 王旨를 還納 아니 한 경우에는]

사. 鋪馬符驗等乙還納不冬爲在乙良(3:5)

[鋪馬符驗 등을 還納 아니 한 경우에는]

아. 所任負亦傭人乙和雇爲旡物色乙和買爲乎矣卽時價本許給不冬爲齊(7:10)

[그곳 관리가 품팔이꾼을 合議雇傭하며, 물건을 合議買入하오되 즉시 값을 내어주지 아니 하고]

자. 緣坐人亦同居不喻去等財産乙沒官不冬爲齊(18:2)

不喻(아닌디):아니다, 不喻去等(아닌디거든):아니거든

[緣坐人이 동거 아니거든 재산을 관에서 몰수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不冬’의 선행어가 한결같이 한자어라는 것이다. 즉, 순수 우리 말이 아닌 것이다. 국어에서 한자어 단어에는 동사 어근에 붙는 어미 ‘-지’가 올 수가 없다. 한편, ‘-지’가 붙을 수 있는 우리말 동사 어근은 홀로 독립하여 조사를 가질 수가 없다. 반면 한자어는 조사를 가질 수가 있다. 국어에서 한자어는 경우에 따라 동명사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15) 예문에서 ‘不冬’의 선행어는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이다. 따라서 선행어에 어미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어미가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는 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자어인 ‘不冬’의 선행어도 역시 격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不冬 爲- 構文’에서 ‘不冬’의 선행어에 어미 ‘-지’가 생략되었다고 분석할 수 없고 대신 격조사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爲-’는 목적격을 지배하므로 생략된 것은 목적격 조사가 된다.

따라서 (15)의 예문은 ‘~지 아니 하다’가 아닌 ‘~을 아니 하다’로 해석해야 옳다.¹³⁷⁾ 그렇다면 ‘爲-’의 선행어는 VP가 아닌 NP가 된다.

137)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X’와 ‘하-’하고의 결합범위를 확인시켜 준다. ‘X’와 ‘하-’와의 결합범위가 이들 사이에 어떠한 성분도 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부정소가 놓인 본문 (9)의 경우 ‘~지 아니 하다’로 풀이하여야 한다. 즉, ‘X’는 여전히 용언이어야 한다. 그러나 ‘~를 아니 하다’로 분석되므로 ‘X’는 용언이 아닌 명사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X’와 ‘하-’와의 결합범위는 어떤 성

(15)의 구문들은 ‘免 爲- 構文’에서와는 다르게 부정소 앞에 ‘乙良’이나 ‘乙’이 전혀 표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를 ‘不冬 爲- 構文’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5)의 구문들에 대하여 현대국어의 입장에서 보면 ‘不冬’의 선행 명사구 뒤에 목적격 조사 ‘乙’을 표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不冬’의 선행어를 명사구인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최소한 한 번쯤이라도 ‘不冬’의 선행어에 ‘乙’이 놓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爲-’의 선행어를 명사구로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不冬 構文’의 형식이 15세기 국어의 ‘명사구+ 아니 ㅎ-’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爲-’의 선행어는 VP가 아닌 NP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⁸⁾ 따라서 ‘不冬’의 선행어에 ‘乙’이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의 관습화된 용법이지 선행어가 NP가 아니고 VP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不冬’의 선행어가 NP라는 것은 ‘免 爲- 構文’에서 ‘免’의 선행어에 ‘乙良’이나 ‘乙’의 조사를 표지시키고 있음에서도 드러난다. ‘免 爲- 構文’이나 ‘不冬 爲- 構文’은 둘 다 ‘爲- 構文’이므로 이들의 분석에 있어서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免 爲- 構文’에서 부정소의 선행어가 조사 ‘乙良’이나 ‘乙’을 표지한 명사구라면, ‘不冬 爲- 構文’에서도 비록 조사는 표지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소 앞의 선행어를 명사구로 분석하여야 옳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不冬 爲- 構文’에서의 부정소 선행 성분을 VP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爲-’ 부정 구문에 대하여, ‘爲-’의 선행어가 어떻게 명사구도 되고 동사구도 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免’이 ‘爲-’를 부정할 때는 선행어가 명사구가 되지만 ‘不冬’이 ‘爲-’를 부정할 때는 동사구가 된다고 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정소가 ‘爲-’의 선행어 품사를 바꿀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현희(1994, p.88)도 중세국어의 부정표현에서 ‘아니 ㅎ-’, ‘몬 ㅎ-’, ‘말-’을 본동사로 사용하여 {NP를, 호물} {아니 ㅎ-, 몬 ㅎ-, 말-}의 구성을 이룬다고 말한다. 여기에

분도 이들 사이에 개재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38) 고정익(1992, p.135)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명사(구)+ 아니 ㅎ-’의 부정형식이 ‘不冬’ 부정문과 일치하는 현상을 ‘不冬’이 선행 동사 어근을 부정하는 용언문 부정형식의 증거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아니 ㅎ-’ 형식은 그 앞에 동사(구)가 아닌 명사(구)가 놓이고 있으므로, 오히려 ‘不冬’이 선행 동사 어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부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 말아 되려 반증 예가 되고 있다.

서도 부정소의 선행어를 ‘NP를’로 처리하여 명사구로서 분석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5)의 예문에서 ‘不冬’의 선행 성분에 격조사가 없다 하여 이를 목적어가 아닌 어근으로 볼 수는 없다. 격표지가 격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한편으로 격이 표지되지 않은 논항에는 격이 없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무표지의 경우에도 분명 격은 드러나므로 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16) 가. 영호가 아파트 마련했다.

나. 그 많던 참새들 어디로 날아갔지?

우리는 비록 격조사가 없더라도 (16가)의 ‘아파트’는 목적어이고, (16나)의 ‘참새들’은 주어임을 안다. 따라서 격조사는 격실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¹³⁹⁾ 따라서 (15)에서도 부정소 앞의 성분에 격조사가 없음을 들어 이를 어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不冬 爲- 構文’에서 비록 부정소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가 표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목적어인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15)의 구문 구조는 ‘NP乙 不冬 爲-’로 분석된다. 이 구조에서 ‘不冬’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소로 쓰이고 있다.¹⁴⁰⁾

그런데 이 구문 구조에 비추어 보면 (15바, 사)는 ‘NP₁乙 NP₂乙 不冬 爲-’이므로 이중 목적격 구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여기서 ‘NP₁’은 목적격 조사 대신 속격 조사 ‘矣’와 통합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은 동심적 구성의 목적격 중출 구문이 된다.

4. 1. 4. 2 ‘安徐 爲- 構文’

‘爲-’를 직접 부정하는 부정소에는 ‘不冬’ 외에 ‘安徐’가 있다. 부정소 ‘不冬’이 궁극

139) 배희임(1999, p.612)은 지배결속이론에서는 격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격이 반드시 격표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40) 이 때의 목적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정물로서 행위가 발생하는 명사라는 의미론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도끼’, ‘태양’, ‘시체’, ‘흰수염 고래’ 등과 같이 무정물이거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유정물 또는 단순한 명칭 등의 명사는 여기의 구문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으로는 행위를 부정하는데 반해, 부정소 ‘安徐’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고정익(1992, pp.99-100)에서는 ‘安徐’를 동사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爲’를 어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安徐’는 ‘爲-’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安徐’가 ‘爲-’를 부정하는 부정소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安徐’는 부정소인가 동사인가. 먼저 한문본에서 ‘安徐’에 해당하는 한문의 부정소를 보면 ‘不’ 아니면 ‘勿’이다. 그런데 ‘不’은 물론 ‘勿’도 한문에서는 동사가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가진 허사로 쓰이고 있다.¹⁴¹⁾

(17) 가. 不登高山不知千之高也(荀子·勸學)

(높은산에 오르지 아니하고는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 學而時習之不亦說乎(論語·學而)

(배우고 그것을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다. 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論語·學而)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아니할까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 주지 못할까 염려하라)

라. 己所不欲勿施於人(論語·衛靈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마. 戰方急慎勿言我死(懲毖錄)

(싸움이 바야흐로 위급하니 아무쪼록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바. 弗問弗仕勿罔君子(詩經·小雅 節彼南山)

(살피지도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않고서 도리어 군자를 기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를 번역하였을 때도 부정소로서 번역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安徐’의 뒤에는 ‘爲-’가 놓이고 있으므로 ‘安徐’를 동사로 볼 수가 없다. ‘爲-’는 서술어이므로 ‘安徐’를 동사로 볼 경우 ‘安徐爲-’는 복합 서술어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가 의문이다. 그래서

141) 한문에서 ‘不’이 부정소가 아닌 동사로 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不’의 다음에 오는 어휘는 동사가 아닌 명사가 된다.

· 君子不器(論語·爲政)

그런데 본문 (14)의 예문에서는 ‘安徐’ 부분에 해당하는 한문본이 각각 ‘不許’, ‘不陪’, ‘不在賠償’으로서, ‘不’이 동사가 아닌 부정소로서 쓰이고 있다.

고정의(1992, p.100)는 ‘安徐’를 동사 어근으로 ‘爲-’를 어미로 분석하였는데, 다음에서 보듯이 ‘爲-’의 선행어가 동사 어근으로 ‘爲-’가 어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8) 가. …犯罪爲…(1:16)
- 나. …合當爲…(7:10)
- 다. …明白爲…(7:10)
- 라. …推考爲…(22:3)
- 마. …自殺爲…(27:2)

어근이라면 자립성이 없는데 위의 ‘犯罪, 合當, 明白, 推考, 自殺’ 등은 자립성을 가진다. 때문에 이들은 어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유독 ‘安徐’에 한해서 ‘爲-’가 어미라고 하기에는 ‘爲-’와 그 선행어의 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다.

한편, 고정의(1992, p.100)는 ‘安徐’를 ‘말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아서라’의 화석형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현대국어에서 ‘아서하-’와 같은 구성을 가진 서술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不冬’, ‘不得’, ‘不喻’에서와 같이 ‘安徐’도 부정소인 것으로 처리하고자 한다.¹⁴²⁾ 그럼 “大明律直解”에서 ‘安徐’가 사용된 실제의 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19) 가. 五品以上官亦犯罪爲去等申聞爲伏候王旨爲白遣趣便以推問安徐齊(1:9)
爲白遣(ᄃᆞᆫ ᄇᆞᆯᄃᆞᆫ):하시옵고
[5품 이상 관원이 범죄하거든 신문하되, 앞드려서 왕지를 奏請하시옵고 自意로 申聞 아니 한다(하을 일이다)]
- 나. 趣便以執捉進來推問安徐齊(1:11)
[自意로 逮捕, 召還, 審問 못한다]
- 다. 已費用爲在乙良所犯人亦身故爲去等生徵安徐齊(1:25)
[이미 使用消費한 경우에는 범인이 사망하거든 강제징수 아니 한다(하을 일이다)]
- 라. 委差官員弋只驗實顯跡明白爲去等免罪遣生徵安徐爲齊(7:10)
驗實:사실을 따지며 조사함, 顯跡:나타난 자취

142) 박성중(1996, pp.322-325)은 ‘不冬, 不得, 不喻, 安徐’를 모두 부정소로 처리하고 있다. 그는 ‘不喻’를 계사부정소로, ‘不冬, 不得, 安徐’ 등은 동사 부정소로 말한다.

[派遣官이 驗實하되 顯跡이 明白하거든 면죄하고 강제징수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마. 官司馬牛亦官司物色乙喫破爲去等罪分論遺物色生徵安徐爲齊(16:5)

[관사의 말이나 소가 관사의 물건을 먹거나 파괴하거든 (그) 죄만을 논의하고 (손실) 물건에 대한 강제징수는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바. 並只贓數計爲竊盜例以准論刺字安徐齊(18:10)

[모든 장물의 수효를 계산하여 절도의 예로 비준하여 논죄하고 刺字刑은 아니 한다(하올 일이다)]

(19)에서 부정소인 ‘安徐’는 일관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금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금지의 대상으로는 ‘推問’, ‘生徵’, ‘刺字刑’ 등이 왔다. 그런데 ‘安徐’에 해당하는 한문본의 부정소는 (19가, 나, 라, 마)에서는 ‘不’로, (19다)는 ‘勿’이다. 그리고 (19바)는 한문본에서는 ‘免’이다. 하지만 ‘免’은 부정소가 아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免’이 행위를 입는데서 벗어나게 하였다하여 이를 행위에 대한 부정소처럼 취급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19)는 번역자가 자신의 해석의 지에 따라 이두 부정소 중에서 임의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 구문은 부정소 ‘安徐’에 의해 처벌이 행해지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安徐’의 앞에는 금지되는 형벌이 놓이고 있다. 서술어 ‘爲-’는 선행 명사구에 목적격을 부여하므로 ‘安徐’의 선행 명사구는 서술어 ‘爲-’에 의해 목적어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不冬 爲- 構文’에서와 같이 ‘安徐’의 선행 명사구는 목적격 조사를 일관되게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不冬 爲- 構文’과 마찬가지로 부정소 ‘安徐’의 선행 성분은 여전히 목적어이며 목적격 조사는 하나의 관행처럼 생략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安徐’로써 ‘爲- 構文’ 부정한 (19)의 구문 구조는 ‘NP乙 安徐 爲-’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가, 나, 라, 마)에서 ‘安徐’의 한문본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없는 부정소 ‘不’이다. 그러나 (19가, 나, 라, 마)에서는 구문의 의미가 모두 ‘하지 말라’로 새겨진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는 한문본의 부정소와는 관계없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安徐’로써 한문본을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9다)에서는 ‘安徐’에 대한 한문본이 ‘勿’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가 한문본이나 이두문이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바)의 ‘安徐’는 한문으로 ‘免’이다.¹⁴³⁾ 때문에 (19바)는 한문본대로라면 ‘刺

143) ‘安徐’가 한문의 ‘不’, ‘勿’, ‘免’에 걸쳐 두루 쓰이고 있음을 보아, 어느 하나의 한문만을 상대하여 쓰

字刑을 免除한다'라고 풀이되나 이두본에서는 '刺字刑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한문본과는 무관하게 부정소 ‘安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1. 4. 3 ‘不得 爲- 構文’

‘爲-’에 대한 부정은 이 외에 ‘不得’이라는 부정소로써도 이루어진다. ‘不得’은 ‘爲-’를 직접 부정함으로써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不得’에 대해서도 고정익(1992, p.137)은 ‘不得’의 선행어를 동사 어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현희(1994, pp.84-85)는 중세국어에서 ‘부사어 # ㅎ-’의 구조는 그 앞에 동명사 구성의 목적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어 # 부사어 # ㅎ-’의 구조를 기본으로 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하-’의 선행어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놓일 수가 있다.¹⁴⁴⁾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목적격 조사가 선행사에 놓인 ‘하-’ 구성과 놓이지 않은 ‘하-’ 구성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임홍빈 1979, pp.55-76)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는 ‘하-’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실제로 현대국어에서는 ‘X하-’에서 선행어 ‘X’를 분리하여 이의 뒤에 ‘-을/를’을 놓는 것은 정문이며 자연스럽다.¹⁴⁵⁾

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安徐’가 한문본과는 무관하게 글 자체의 의미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144) ‘하-’에 대하여 성광수(1974, 1977), 김영희(1986, pp.47-77)는 ‘하-’를 경동사로 보고, ‘하-’ 구문을 복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김의수(1999, p.1001)는 ‘하-’가 경동사이므로 배당할 의미역이 없으며 모문의 동사로 취급할 근거도 없다면서 ‘하-’ 구문을 단문으로 보고 있다. ‘하-’에 대해서 중동사로 본 논의로는 고재철(1988), 시정곤(1994, pp.231-258)이 있고, ‘하-’를 경동사로 보는 논의로는 박승빈(1935, pp.100-102), 서정수(1975, pp.57-94), 김의수(1999)가 있다. 시정곤(1994, pp.231-258)도 ‘하-’를 경동사로 보고 있으나 상태 동사와 비상태 동사로 이분하였다. 한편, ‘하-’와 격의 관계에 대해서, 서정수(1975, pp.57-94), 성광수(1974, 1977), 김영희(1986, pp.47-77), 시정곤(1994, pp.231-258), 한정환(1994, pp.445-480) 등은 ‘하-’가 목적격을 할당한다고 본다.

145) 현대국어에서 ‘-하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다’ 연구에서 주된 논점은 ‘하-’의 기능과 실현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하-’의 기능에 대해서, 허형태성으로 또는 본동사로 보거나 허형태성 및 본동사성 점유로 보고 있다. 또는 대동사나 동사화소 혹은 복합어 형성요소로 분석한다. 이 외에 포괄동사 또는 다기능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 (20) 가. 오늘 아침은 영희가 밥한다.
 가'. 오늘 아침은 영희가 밥을 한다.
 나. 경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나'. 경호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20)에서처럼 ‘X하-’에서 ‘하-’의 선행어 ‘X’를 분리하여 목적격 조사를 놓거나 목적격 조사없이 결합하여 사용하는 예는 15세기 국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21) 가. 道理 스랑하더니(釋譜 6:12)
 나. 精한 스랑을 놀카이 하야(楞嚴 9:86)

이처럼 ‘하-’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놓는 것은 15세기는 물론 16세기 중세국어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다음 예문의 ‘가’와 ‘나’는 15세기 문헌의 구문이고, ‘다’와 ‘라’는 16세기 문헌의 구문이다.

- (23) 가. 엇데 뼈 곶 窮荒을 하리오(杜詩 22:29)
 나. 菩薩을 하야 頓法 니르라 하샤물(月釋 13:16)
 다. 子는 엇디 政을 하디 아니하시느닝잇고(論語 1:17)
 라. 王의 都를 하는 자(孟子 4:14)

그러나 ‘하-’의 선행어에 목적격 조사가 놓이는 예는, 목적격 조사가 놓이지 않는 예에 비해 그 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도 보이는 것으로서 선행어에 목적어가 놓이는 것은 국어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不得 爲- 構文’에서 부정소 앞의 성분은 ‘不冬 爲- 構文’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동명사인 NP로 다룬다. 이는 ‘不得’의 선행어가 자립성을 가지며, ‘不得’

‘-하다’의 실현환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선행어가 ‘공부’와 같은 동작성 명사인 경우와 ‘포근’과 같은 상태성 명사일 경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선행어를 ‘술’과 같은 실체성 명사와 ‘독서’와 같은 비실체성 명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외로 선행어로서 ‘잘’과 같은 부사어를 들기도 한다.

이러한 ‘-하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박승빈(1935, pp.100-102), 최현배(1937, pp.381-657), 남기십(1973, pp.75-89), 서정수(1975 1992), 이상복(1975, pp.131-141), 임홍빈(1979, pp.55-76), 김영희(1981, pp.153-191), 심재기(1982), 이창덕(1984), 정원수(1989, pp.285-319), 하치근(1988, pp.27-45), 김제열(199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爲-’에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爲-’에 해당하는 현대국어의 ‘하-’에서 부정소가 ‘하-’의 앞에 놓이게 되면 부정소의 앞에 있는 성분은 명사가 된다는 점을 미루어 ‘不得爲-’의 경우에도 ‘不得’의 선행어는 동사가 아닌 명사나 동명사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4) 예문에서 ‘不得’의 선행어를 목적격 조사 ‘乙’이 표지되지 않은 NP인 것으로 다룬다. 이는 이 구문의 서술어가 목적격을 지배하는 ‘爲-’이기 때문이다.

(24) 가. 軍官子孫亦年少傳襲不得爲在乙良(2:3)

[軍官員의 자손이 年少하여 傳襲을 못하거들란]

나. 疾病喪事乙仍于速行不得爲去等(2:5)

仍于(즈출우):말미암아

[질병 및 초상을 말미암아 速行을 못하거든]

다. 本主亦價本全無還退不得爲在乙良(5:5)

還退:저당물 찾기

[本主가 돈이 전혀 없어서 還退를 못하거들란]

라. 一年己只畢納不得爲在乙良(7:3)

[1년까지 畢納 못하거들란]

마. 門直官吏等亦搜探現捉不得爲在乙良杖一百(7:5)

門直(문지기):문지기

[문지기 관리들이 수색 및 현장포착을 못하거들란 杖一百]

바. 妻子息亦無力爲還鄉不得爲去等(17:7)

[처자식이 무력하여 귀향을 못하거든]

사. 凡常人亦倉庫錢糧乙偷取爲乎矣財物不得爲在乙良杖六十刺字安徐齊(18:5)

[무릇 일반인이 창고의 돈과 곡식을 도둑질하오되 財物獲得을 못한 경우에는 杖六十하고 刺字刑은 아니 한다(하울 일이다)]

우리는 (24)의 구문에 대하여 부정소 ‘不得’의 앞에 있는 성분을 NP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NP는 명사 혹은 동명사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어근인 것으로 이해된다.

(25) 犯時良中知不得爲在乙良(1:39)

[犯行時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25)의 밑줄친 부분은 ‘알지 못 하거들란’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知’는 동사어간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24)에서도 ‘不得’의 선행어들은 모두 동사어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두에는 ‘~지’에 해당하는 이두 글자가 없으며 ‘傳襲’, ‘速行’, ‘還退’, ‘畢納’, ‘搜探現捉’, ‘還鄉’, ‘財物’에 ‘~지’를 어떻게 결합시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 한자어를 어근으로 하고 ‘爲-’를 어미로 보았을 때, ‘爲-’는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인데 과연 한자어와 우리말의 결합을 어근과 어미의 관계로 분석할 수 있느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자어와 ‘爲-’를 분리하여 한자어에 조사를 놓았을 때 한자어의 품사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 외에 (24마)의 경우에 ‘搜探現捉’을 굳이 ‘搜探爲良 現捉’이라고 풀어 해석할 수도 있으나 ‘搜探現捉’은 한문구문이므로 하나의 관용어처럼 하여 이를 통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어디까지를 어근으로 해야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 어근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소의 선행성분을 어근이 아닌 명사 또는 동명사인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大明律直解”에서도 ‘爲-’의 선행성분을 명사나 동명사로서 인식을 하였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爲-’의 선행성분 자리를 명사나 동명사 자리가 아닌 동사어근의 자리로 보았다면 부정소의 선행성분 자리에 순수한 명사는 놓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순수한 명사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명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24사)에서 부정소의 선행성분인 ‘財物’이 동사도 아니며 동명사도 아닌 순수한 명사임을 보게 된다.¹⁴⁶⁾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爲-’의 선행자리를 동사어근의 자리로 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25)의 경우는 어떠한가? ‘知’는 ‘알다’라는 동사 외에 ‘깨달음’ 또는 ‘앎’이라는 명사로도 쓰인다. 따라서 부정소의 앞에 명사자격으로서의 ‘知’로 놓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25)에서 ‘知’는 단지 ‘알다’라는 의미로보다는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知’를 ‘認知’의 대응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認知’는 동명사로

146) ‘財物’의 경우 이 뒤에 ‘偷取’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은 다 잘 하는데 재물을 못 해서 거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財物不得爲-’를 그 자체로 하나의 구문인 것으로 다룰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문의 (24사)에 ‘偷取’가 생략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한다.

쓰이는 한자어이므로 ‘知’를 ‘認知’의 대용으로 썼다면 ‘知’는 충분히 동명사의 자리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소 ‘不得’이 놓인 ‘爲- 構文’의 구조는 부정소의 앞에 목적어가 놓이는 ‘NP乙 不得 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목적격 조사는 경우에 따라 표지되는데 이는 ‘不冬 爲- 構文’과 ‘安徐 爲- 構文’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표지된 적이 없다는 것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구문 구조에서의 ‘不得’은 ‘不得’의 선행 NP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부정이나 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부정소 ‘不冬’과 ‘安徐’에서 차이를 가진다.

“大明律直解”에서는 평가·판정구문의 ‘Neg 爲- 構文’에 있어서 부정소의 선행 NP에 대한 부정이나 금지나 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부정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하겠다.

4. 1. 4. 4 ‘免 爲- 構文’

한자어 ‘免’은 ‘爲-’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爲- 構文’을 부정문으로 이끈다. 따라서 ‘免’은 ‘NP’를 부정하지 않고 ‘爲-’를 부정한다. (27)은 ‘乙良’이 ‘免爲-’의 선행어를 통합함으로써 선행어는 처벌이 면해지는 형벌로서 지정되고 있다.

(27) 가. 杖一百流三千里遣鋁面乙良並免爲齊(1:43)

[杖一百하여 三千里 流配하고, 刺字刑은 모두 면제한다(하울 일이다)]

나. 自告爲良在等私鑄罪乙良免爲遣(1:26)

[자수하였거든 私鑄罪(銅錢鑄造罪)는 면죄하고]

(27)에서 ‘鋁面’, ‘私鑄罪’는 처벌을 면해주도록 지정되는 형벌이다. 이러한 의미는 형벌을 ‘乙良’이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¹⁴⁷⁾ 따라서 이의 구문 구조는 ‘NP乙良 免爲-’가 된다. 그런데 ‘免’이 ‘爲- 構文’을 부정할 때에 ‘爲-’의 선행 NP를 ‘乙良’만이 통합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예문에서는 ‘乙良’이 아닌 ‘乙’이 ‘爲-’의 선행 NP를 통합하고 있다.

147) ‘乙良’에 대하여 장세경(2001, p.271)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건 중에서 이것 하나만은 다르게 처리한다는 뜻의 토’라고 설명하고 있다.

(28) 가. 更良進來充數決斷爲在乙良並只失錯之罪乙免爲乎事(1:35)

進來:잡아 옴(召還)

[다시 잡아들여 (刑期日)數를 보충하여 決斷한 경우에는 모두 失錯한 罪를 면하올 일]

나. 軍人亦爲盜爲去等必于刺字乙免爲在乃(18:9)

亦爲(어허야):이라 하여

[군인이라 하여 도둑질하거든 비록 刺字刑을 면할 것이나]

(28)에서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지정되는 형벌은 없다. 다만 어떤 형벌이 면제되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단순히 서술의 대상을 드러내는 역할만하는 ‘乙’이 이들 형벌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8)의 구문 구조는 ‘NP乙 免爲-’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NP’는 면제되는 형벌의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NP乙良 免爲-’에서의 ‘NP’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지정된 형벌이다. 이러한 점이 ‘NP乙 免爲-’ 구문 구조와 ‘NP乙良 免爲-’ 구문 구조의 차이로 하겠다. 그리고 ‘免 爲- 構文’에서는 ‘免爲-’의 선행어에 조사가 한 번도 생략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의 생략이 일반적인 “大明律直解”에서는 ‘免 爲- 構文’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1. 5 二重 否定 構文

“大明律直解”에서는 ‘令是- 構文’ 중에 이중 부정되는 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한 차례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9) 官民之家亦故只禁止不冬粧飾令是在隱罪同齊(26:5)

令是在隱(시기 견은):시킨 것은

[官員이나 民間의 집이(에서) 짐짓 粧飾(扮裝演出)을 금지 아니 시킨 것은 죄가 같다]

(29)에서 보듯이 ‘禁止不冬’은 부정이 연속적으로 두 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부정은 ‘粧飾’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粧飾’은 목적어이다. 그럼 (29)의 구문 구조는 ‘NP₁亦 禁止 不冬 NP₂乙 令是-’로 분석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 ‘禁止’는 ‘NP₂’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不冬’은 ‘禁止’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이는 부정된

‘NP₂’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서 이중 부정이 된다.

그러므로 (29)에서 ‘粧飾’은 ‘禁止’됨으로써 할 수 없었으나 이것이 다시 ‘不冬’에 의해 부정됨으로써 중국에는 ‘粧飾’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粧飾’을 하도록 시킨 것이다.

이 외에 이중 부정 구문은 ‘NP乙良 禁止 不冬 爲乎事’의 구문 구조로 분석되는 ‘爲乎事 否定 構文’에서도 찾아진다.

(30) 春秋社會乙良禁止不冬爲乎事(11:4)

[春秋社會는 禁止 아니 할 일]

(30)은 “春秋로 모여 제사하는 행위는 금지 아니 할 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春秋社會’가 두 번 부정을 받고 있다. ‘春秋社會’는 부정소 ‘禁止’에 의한 첫 번째 부정에 의하여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부정소 ‘不冬’에 의해 두 번째 부정됨으로써 금지하는 행위가 부정받는다. 결국 금지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 ‘春秋社會’는 부정되는 행위가 아닌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29)와 (30)을 통해 이중 부정은 부정소 ‘禁止’와 ‘不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不冬 禁止’로 하여도 구문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중 부정에서는 ‘禁止 不冬’이라는 고정된 나열 순서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정문 분석을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大明律直解”에서는 ‘~지 않다’와 같은 장형 부정문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문말어미 ‘-지’에 해당하는 이두어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겠지만, 반면 그 시대에는 문말어미 ‘-지’를 사용하는 용법이 없었기에 문말어미 ‘-지’에 해당하는 이두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大明律直解”만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부정소가 ‘아니’와 ‘못’ 두 개로 한정되는데 반해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두어 ‘不冬, 不喻, 安徐’와 더불어 한자어 ‘不, 勿’로써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 국어는 보조동사 ‘말-’로써 장형 부정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이 역시 보조동사 ‘말-’에 대한 이두어가 없는 탓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용법이 없어서 보조동사 ‘말-’에 대한 이두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 의미의 어휘로는 ‘모르다’, ‘없다’, ‘아니다’ 등이 있어 이들로써 부정의미의 구

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러한 어휘로써 이루어진 부정의 미의 구문이 없다.

4. 1. 6 요약

“大明律直解”에서는 계사가 표기된 상태의 지정구문 부정형은 없었다. 대신 계사가 생략된 지정구문의 부정형은 쓰였다. 이때 사용된 부정소는 ‘不’과 ‘不喻’였다. 이들은 ‘齊’의 바로 앞에 위치함으로써 지정구문을 부정문으로 만들었다. 다만, 부정소 ‘不’이 부정문을 만든 이러한 경우는 “大明律直解”에서 두 개의 예만이 찾아졌다. 이때 이 구문은 ‘~가 아니다’라는 문형을 보였다.

한편, ‘Ø齊 構文’에서 부정소 ‘不喻’가 쓰였을 경우에는 부정소 ‘不喻’는 항상 체언만을 부정하였다.

‘不喻’에 대한 한문본에서의 한자는 구문에 따라 달랐다. 이는 한자어에 의해 ‘不喻’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 우리 말의 감각에 의하여 ‘不喻’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是乎事’는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구문을 부정문으로도 이끌었다. 다만 이 예가 하나만 있었다. ‘是乎事 構文’에서의 부정형은 부정소 ‘不喻’가 ‘是乎事’의 앞에 놓음으로써 나타났다.

‘爲乎事’ 역시 구문을 부정문으로 이끌었는데 ‘爲乎事 構文’의 부정문은 ‘是乎事 構文’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부정소도 다양하였는데 ‘爲乎事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부정소로는 ‘不, 不冬, 勿, 安徐’ 등이 쓰였다. 그런데 ‘安徐’가 부정소로 사용되었을 때는 부정소 앞의 NP에 어떠한 조사도 오지 않았다.

이 외로 ‘爲乎事’의 부정형 구문에는 ‘VP爲良在等’에 의해 어떠한 행위가 전제되고 금지사 ‘勿’이 이의 구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경우의 구문 구조는 ‘VP爲良在等 勿 VP爲乎事’이 되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부정문으로 쓰인 ‘爲- 構文’도 있었다. 이때 ‘爲-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부정소는 이두어 ‘不冬’ 및 ‘安徐’ 그리고 ‘不得’과 한자어 ‘免’이었다. ‘免’은 부정소가 아니나 “大明律直解”에서는 형의 집행이나 적용 또는 선고를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소가 하는 역할과 같았다.

‘爲-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이두어 부정소에는 ‘安徐’가 있는데, ‘安徐’가 쓰

인 구문의 한문본에서는 부정소로 ‘不’, ‘勿’, ‘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소 ‘安徐’는 구문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에 맞추어 선택된 부정소임을 알 수가 있었다. 때문에 한문본의 부정소와는 관계없이 해석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로 풀이되면 ‘安徐’를 부정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安徐 爲- 構文’은 처벌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때문에 ‘安徐’의 앞에는 금지되는 형벌이 놓였다.

‘爲- 構文’은 부정소 ‘不得’에 의해서도 부정이 되었는데, 이때 ‘不得’은 서술어 ‘爲-’를 직접 부정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나타냈다. ‘不得’은 ‘不得’의 선행 NP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부정이나 금지가 아니다. 때문에 부정소 ‘不得’은 다른 부정소 ‘不冬’과 ‘安徐’와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 의해 우리는 “大明律直解”에서 부정소의 선행 NP에 대한 부정 또는 금지 혹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 따라 부정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令是- 構文’ 중에서 ‘NP₁亦 禁止 不冬 NP₂乙 令是-’ 구문 구조로서 이중 부정되는 구문이 있었다. 이 구문은 “大明律直解”에 오직 한 차례 보였다. 지금까지 부정 구문을 분석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보이면 (31)과 같다.

(31) 1. ‘NP亦 不 Ø齊’

‘~가 아니다’라는 문형의 구문 구조로서 부정소 ‘不’은 부정하는 대상의 뒤에 위치한다.

2. ‘NP亦 不喻 Ø齊’

지정 구문의 부정문으로서 ‘不喻’는 체언을 부정한다.

3. ‘NP亦 不喻 是乎事’

“大明律直解”에서 한 차례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구문 유형의 부정문 구조가 된다.

4. ‘NP隱 不 VP爲乎事’

한자어 부정소가 쓰인 구문 구조이다.

5. ‘NP乙良 不 VP爲乎事’

사람이 공통적으로 ‘乙良’의 선행어로 오는 특징을 보인다.

6. ‘VP爲於 不 VP爲乎事’

두 개의 부정되는 사실을 연이어 나열하는 것으로서 이중 부정은 아닌 경

우의 구조이다.

7. ‘VP爲在乙良 不 VP爲乎事’

나중에 취해질 법적조치의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에 쓰인다.

8. ‘NP₁乙良 NP₂乙 不冬 爲乎事’

궁극적으로 부정되는 행위의 대상인 ‘NP₁’이 ‘乙良’으로써 한정되는 구문의 부정이다.

9. ‘VP爲在乙良 NP乙 不冬 爲乎事’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하여 부정하는 경우에 보인다.

10. ‘NP乙良 勿 VP爲乎事’

‘乙良’의 선행어에는 사람이 온다.

11. ‘VP爲在乙良 勿 VP爲乎事’

선행위가 전제되었을 때 부정소 ‘勿’로써 부정문을 만든 경우의 구조이다.

12. ‘VP爲良在等 勿 VP爲乎事’

과거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정소 ‘勿’로써 부정문을 만든 경우이다.

13. ‘NP乙 安徐 爲乎事’

처벌행위가 금지되는 구문 구조로서 ‘生徵’과 ‘刺字刑’이 그 대상으로 오고 있다.

14. ‘NP乙 不冬 爲-’

‘不冬’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소로 쓰였다.

15. ‘NP₁乙 NP₂乙 不冬 爲-’

이중 목적격 구문으로서 ‘NP₁’은 목적격 조사 대신 속격 조사와도 통합될 수 있으므로 동심적 구성의 목적격 중출 구문이 된다.

16. ‘NP乙 安徐 爲-’

‘하지 말라’로 부정되는 경우에 쓰인다. 부정되는 대상은 ‘推問’, ‘生徵’, ‘刺字刑’ 등이 된다.

17. ‘NP乙 不得 爲-’

다른 부정문과는 다르게 부정소 ‘不得’은 선행 NP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18. ‘NP乙良 免爲-’

형벌을 ‘乙良’이 통합함으로써 처벌을 면해 줄 형벌이 지정되는 경우로서 면죄되는 처벌은 ‘鍛面’이나 ‘私鑄罪’가 된다.

19. ‘NP_乙 免爲-’

단순히 어떤 형벌이 면제되는가를 보여주는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20. ‘NP₁亦 禁止 不冬 NP₂乙 습是-’

이중 부정문 구조로서 ‘禁止’는 ‘NP₂’에 대하여 부정하고 ‘不冬’은 ‘禁止’에 대하여 부정한다. 따라서 부정된 ‘NP₂’에 대한 부정이 된다.

21. ‘NP_乙良 禁止 不冬 爲乎事’

이중 부정문 구조로서 부정소 ‘禁止’에 의하여 첫 번째 부정이 이루어지고, 부정된 행위는 다시 부정소 ‘不冬’에 의해 두 번째로 부정됨으로써 결국 금지하면 안 되는 것이 된다.

4. 2 引用 構文

4. 2. 1 도입

인용 구문은 일종의 화법 구문이다. 그런데 화법 구문에 대해서는 이미 3. 2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용 구문이되 모문의 서술어가 화법 동사가 아닌 구문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인용 구문에는 모문의 동사가 화법 동사인 경우와 ‘하다’인 경우가 있다. ‘하다’인 경우에는 화법 동사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화법 구문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하다’ 구문이 인용 보문을 가졌을 경우에는 화법 구문과 마찬가지로 인용 구문이 된다.

여기서 다루는 인용 구문은 모문의 동사가 ‘하다’인 경우에 한하므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구문은 화법 구문에서의 인용 구문을 제외 한 인용 구문이다.

현대 국어에서의 ‘하다’는 “大明律直解”에서는 ‘爲-’에 해당된다. 따라서 ‘爲- 構文’이 인용 보문을 가진 경우의 구문에 대해서 분석한다. 인용 보문은 서술어가 ‘是如’인 경우와 ‘亦’인 경우를 다루므로 분석 되는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과 간접 인용 구문이 된다.

4. 2. 2 ‘是如 構文’

‘是如’는 이두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용구문만을 형성한다(박성종 1996, p.212). 따라서 내포문에서만 쓰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是如’는 3. 2 ‘話法 構文’에서 살펴 보았듯이 직접 인용 구문의 보문 서술어이므로 여기 4. 2. 2에서 다루는 구문 역시 직접 인용 구문이다.

‘是如’는 모문의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 이는 ‘-이다’가 모문의 서술어로도 쓰이는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 된다. 이것은 서술어라면 어느 것이든 모문의 서술어로 쓰여, 문장 전체를 끝맺을 수 있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적어도 14세기 국어에서는 문장 전체를 끝맺는 서술어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 구문인 ‘是如 構文’은 한 자리 서술어 구문으로서 기본 구문 유형이 ‘NP亦 NP是如爲-’인 구문 구조를 가진다. (1)의 예문이 바로 이 구문 구조이다. 다만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1) 가. 里長色掌等矣朦朧報狀捧上爲實庫乙陳損是如爲旆(5:2)

色掌(=色員):담당 직원, 報狀:보고공문, 捧上(맞자):받아들이다, 實庫:熟作, 陳損:荒作, 乙(을):~을/를, 是如:이다(이라고), 爲旆:하며

[里長 및 色掌 등의朦朧한 報狀을 捧上하여(받아들여) 實庫를 “陳損이다”라고 하며]

나. 其人亦答決五十是去乙減作三十是如爲在乙良(28:11)

亦(이여/여):이/가, 是去乙(이거늘):이거늘, 爲在乙良(헛견으란):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答決 50이거늘 減作 “30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계사 ‘是’의 의미기능은 ‘指定’이므로(박성중 1996, p.212), (1가)에서 ‘陳損’은 인용에 있어서 지정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1가) 구문의 핵심 내용이 된다. ‘是如’는 인용보문을 ‘-이다’로 끝내는 서술어이어서 구문을 직접 인용으로 이끈다는 것을 3. 2. 2에서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1가)는 직접 인용으로서 ‘ “陳損이다”라고...’로 풀어야 한다.

(1나)에서 ‘答決五十’은 인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인용되는 것은 ‘(答)三十’이다. (1나)는 刑吏가 태형을 고의로 경감시킨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三十’은 刑吏가 한 말로서 ‘是如’가 서술하고 있으므로 직접 인용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1나)는 ‘刑吏가 판결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은) 答 三十이다”라고 하거들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은 ‘NP是如’의 선행어가 주어가 아닌 소유격 명사구인 경우를 보기로 한다. 주어가 생략된 (2)는 ‘NP₁矣 NP₂是如爲-’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2) 時或他人矣屍體乙妄作親屬矣屍體是如爲犯人乙誣弄爲在乙良(22:5)

妄作:주책없는 행동

[혹시 다른 사람의 시체를 주책없이 행동하여 “친속의 시체이다”라고 하여 범인을 誣弄한 경우에는]

(2)에서 ‘親屬’이 소유격 명사구로 구문에 오고 있다. (2)의 소유주는 화자가 아닌

친속(시신)이므로 소유자는 곧 사망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NP是如’의 선행어로 소유격 명사구만 오지는 않는다. 어떠한 수단으로서 조격이 오는 경우도 있다.

(3) 가. 鍛面乙良並免爲齊枉法例以論是如爲跡(1:43)

並(聃):아울러, 爲齊(訶저):한다, 할 일, 하라, 是如爲跡(이다訶며):이라고 하며
[刺字刑을란 아울러 면할 일이다. “枉法(의) 예로 논함이다”라고 하며]

나. 盜例以論是如爲臥乎事段(1:43)

爲臥乎事(訶누온일):하는 일, 段(뎡):~은/는
[“도둑의 예로써 논함이다”라고 하는 일은]

‘NP₁以 NP₂是如爲-’의 구문 구조를 지닌 (3)에서 ‘論’은 VP가 아닌 NP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論’을 ‘논함’으로 풀어야 한다. 여기서 ‘枉法例’와 ‘盜例’는 논함에 있어서 수단이 되고 있다. ‘論’을 명사로서 ‘是如’가 서술하고 있는 이러한 구문은 (3)에서 보는 두 가지의 구문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大明律直解”의 구문에서 보이는 ‘如’는 인용문의 종결어미로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와는 다르게 ‘如’의 뒤에는 보문소가 쓰이지 않고 있다. 현대국어라면 이들 인용 보문에는 보문소가 쓰여야 하지만 그러한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보문소의 생략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표현에서 보문소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14세기 국어에서는 이미 이두가 충분히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두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보문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4. 2. 3 ‘亦 構文’

‘爲- 構文’에서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로 ‘是如’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라고’로 풀이되는 ‘亦’도 ‘爲- 構文’에서 인용 보문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3. 2. 3 ‘云- 構文’에서 인용 보문에 서술어로 ‘亦’이 왔을 경우에는 그 인용은 간접 인용 구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 4. 2. 2에서도 인용 보문의 서술

어가 ‘亦’이므로 간접 인용 구문이 된다.

‘爲- 構文’에서 간접 인용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네 개의 예만이 찾아진다. (4)는 인용 구문에 주어가 오지 않은 ‘NP亦爲’ 구문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가. 千石是如當言爲乎庫良中言十石亦爲有害於事爲在乙良杖六十(3:3)

[1000石이다 말해야 합당하운 곳에 말하기를 10石이라고 하여 일에 有害한 것을란杖六十]

나. 軍人亦爲盜爲去等必于刺字乙免爲在乃(18:9)

[군인이라 하여 도둑질하거든 비록 刺字刑을 면할 것이나]

다. 凡常醫亦爲人爲用藥針灸爲乎矣(19:8)

[범상한 의사라 하는 사람이 약이나 침, 뜸을 사용하오되]

그러나 (5)에서는 주어가 인용 구문에 오는 ‘NP亦 NP亦爲’ 구문 구조를 보인다.

(5) 彼國人亦已招服杖六十罪乙通事亦翻亦爲杖一百罪良中加作爲在乙良(28:10)

[외국인이 이미 자백한 杖六十의 죄를 통역자가 번역이라 하여 杖一百의 죄로 보태어 만들거들란]

하지만 앞에서의 ‘是如 構文’처럼 소유격이나 조격이 놓인 예는 없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는 ‘爲- 構文’의 간접 인용 구문에 있어서 ‘NP亦爲’ 구문 구조와 ‘NP亦 NP亦爲’ 구문 구조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문 구조 ‘NP亦爲’와 ‘NP亦 NP亦爲’의 차이는 이해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통사적 이유는 없다.

4. 2. 4 요약

‘爲- 構文’에서 직접 인용 구문은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인 경우로서 이때의 구문 구조는 ‘NP亦 NP是如爲-’, ‘NP₁矣 NP₂是如爲-’, ‘NP₁以 NP₂是如爲-’ 세 가지를 보였다.

한편 ‘爲- 構文’에서는 간접 인용 구문도 있었는데 이때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亦’이 온 경우로서 구문 구조는 ‘NP亦爲’와 ‘NP亦 NP亦爲’ 밖에는 없었다.

인용 보문인 ‘是如 構文’은 의미상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NP是如’의 선행어가 결론을 위한 선행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결론을 위한 조건은 ‘是去乙’의 서술에 의해 나타내었다.

‘亦’이 인용 보문의 서술어로 왔을 경우에는 (4나, 다)에서처럼 인용 보문이 문두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인 경우에는 그러한 용례가 없었다.

인용 구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를 다시 정리하면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6) 1. ‘NP亦 NP是如爲-’

직접 인용 구문의 기본 유형 구조이다.

2. ‘NP₁矣 NP₂是如爲-’

‘NP是如’의 선행어가 소유격 명사구인 경우이다. 여기서 話者와 所有主는 별개의 인물이다.

3. ‘NP₁以 NP₂是如爲-’

조격이 ‘NP是如’의 선행어로 오는 경우로서 두 개의 예문만이 보이는 대단히 드문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조격어로는 법률이 오고 있다.

4. ‘NP亦爲’

간접 인용 구문 구조로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 구문 구조는 세 개의 구문만 보이는 것으로 매우 드문 표현이다. 인용 되는 내용은 신분이나 상황이 오고 있다.

5. ‘NP亦 NP亦爲’

간접 인용 구문에 주어가 표지된 것으로서 단 하나의 구문만 보인다. 주어의 행위가 인용되고 있다.

4. 3 爲乎事 構文

4. 3. 1 도입

“大明律直解”에서는 문장의 끝에 ‘是齊’가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문장이 ‘爲乎事’, ‘爲行臥乎事’, ‘是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때 ‘是齊’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들을 ‘爲乎事 구문’으로 한다.

‘爲乎事 構文’은 문장을 서술어 없이 ‘-事’로써 그대로 종결할 때의 구문을 말한다. 이들은 그 자체로서는 서술어의 기능이 전혀 없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문장의 종결에 언제나 서술어 없이 쓰임으로써 마치 서술어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爲乎事’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爲乎事 構文’으로 한다. ‘爲乎事 構文’의 ‘爲乎事’, ‘爲行臥乎事’, ‘是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이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세 이후의 국어는 물론 현대 국어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특이한 용법의 ‘爲乎事 構文’에 대하여 그 구문의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문장의 끝에 ‘爲乎事’, ‘爲行臥乎事’, ‘是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이 놓일 경우에 이들의 구문에서는 서술어 없이 구문이 종결된다. 이들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는 ‘爲乎事’가 가장 빈도가 높다. 반면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是乎事’가 쓰인 구문으로서 이는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예만 보이고 있다. ‘是乎事’가 한 번만 보일 뿐이어서 ‘是乎事’도 문장을 종결짓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是乎事’의 부정형인 ‘不喻是乎事’도 문장의 최종에서 서술어 없이 문장을 종결시키고 있어 ‘是乎事’도 ‘爲乎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종결하는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爲行臥乎事’도 전체 문장의 종결에서 서술어 없이 문장을 종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爲乎事’의 경우와는 다르게 문장에서 사용된 예도 없다.

‘令是乎事’의 경우도 ‘令是乎事是齊’로 쓰인 예가 없이 문장의 최종 말미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서술어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無乎事’는 ‘是乎事’와 마찬가지로 단 한 차례 보인다. 그런데 ‘無乎事’ 역시 문장의 말미에서 서술어 없이 쓰이고 있으므로 ‘無乎事’가 쓰인 구문도 ‘爲乎事 構文’의 하나

로 취급한다.

‘使內乎事’ 또한 문장의 끝에 나타나며 서술어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使內乎事’ 역시 ‘爲乎事 構文’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용법이므로 그 구조 또한 현대국어에서 찾을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3장은 “大明律直解” 고유의 구문 구조를 밝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4. 3. 2 ‘爲乎事 構文’

‘爲乎事’는 뒤에 ‘是齊’가 표지되면 문중에 쓰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문의 최종 종결에서만 보이고 있다¹⁴⁸⁾.

- (1) 差等以遞減科斷爲臥乎等用良此律乙不用爲乎事是齊犯罪人乙差錯亦輕論爲(1:35)

爲臥乎等用良(흐누온 들쓰아):하는 바로써, 爲乎事是齊(흐온 일이제):하온 일이다

[差等으로써 차례로 덜어 科罪하는 바로써 이 律(公事失錯을 自覺申告한 者는 免罪한다는 規定)은 쓰지 아니 하온 일이다. 범죄인을 錯誤로 減輕하여 論罪한다]

‘爲乎事’가 문장의 최종 종결에 쓰일 경우에는 ‘是齊’가 쓰이지 않고 생략된다.¹⁴⁹⁾ 이러한 것은 15세기 이후의 국어는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볼 수 없는 용법이다. ‘爲乎事’는 많은 구문의 종결에서 쓰인 만큼 구문의 구조 또한 많다. 먼저 ‘爲乎事 구문’ 중에서 ‘A는 B하다’와 같이 단문처럼 분석되는 ‘NP乙良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구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가. 婦女乙良給主遣貸借物色乙良免徵爲乎事(9:2)

[婦女는 주인에게 주고, 빌린 물건은 징수를 면하게 하올 일]

148) ‘爲乎事’가 문중에 쓰였을 때는 그 뒤에 서술어 ‘是齊’가 오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爲乎事’가 문장의 끝에 놓이며 ‘是齊’가 생략된 경우를 다루므로 문중에 오는 ‘爲乎事’는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49) 안병희(1992, p.339)에서는 ‘爲乎事’를 국어에 보다 접근된 의역으로 본다. 이것은 ‘爲乎事’의 서술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견해는 강영(1998, p.62)에서도 찾아진다. 그는 ‘爲乎事’를 ‘爲齊’, ‘是齊’와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강영(1998, p.62)은 ‘爲乎事’에 대하여 “관형구로서 종결사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가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爲乎事’는 ‘爲齊’, ‘是齊’보다는 보다 큰 단위의 종결사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 其物乙良入官爲乎事(10:3)

[그 물건은 入官하올 일]

다. 各杖一百遣代役錢乙良沒官爲乎事(13:4)

[각각 杖一百하고, 代役錢은 官에서 몰수하올 일]

라. 財物乙良沒官爲乎事(14:6)

[재산은 官에서 몰수하올 일]

마. 私物乙良沒官爲乎事(17:7)

[개인 물건은 官에서 몰수하올 일]

(2)는 조건을 전제하는 구문으로서 ‘貸借物色, 其物, 代役錢, 財物, 私物’ 등은 ‘免徵, 入官, 沒官’ 등의 법률을 적용받는 조건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예문도 단문으로서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예를 드는 경우의 구문이다. 이 구문은 ‘NP₁隱 NP₂以 VP爲乎事’의 구조를 보인다.

(3) 沙工亦不顧風浪爲遣故只行船中流留滯爲船錢乙侵勞捧上爲在乙良杖八十齊因此殺傷人者故殺傷人例以論爲乎事(15:3)

故只(짐짓):짐짓, 捧上(맞자):수입, 齊(제):하라

[沙工이 풍랑을 돌아보지 아니 하고, 짐짓 行船하여 中流에 留滯하고 배삯을 侵勞捧上한 경우에는 杖 八十하라. 이로 인하여 殺傷人者는 故殺傷人의 例로 論하올 일]

다음 구문은 처벌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NP乙 VP爲乎事’의 구조를 가진 구문들이다.

(4) 가. 主婚人等乙並只減一等爲乎事(6:10)

[혼사 주관인들을 모두 1等を 減하올 일]

나. 並只直日乙論罪爲乎事(13:2)

[모두 直日(當直者)을 논죄하올 일]

다. 囚禁婦女乙犯奸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遣囚婦乙良本罪分乙論爲乎事(25:4)

乙良(으란):을랑, 은

[囚禁婦女를 犯奸한 경우에는 杖一百하여 3년간 徒役하고, 囚婦는 本罪만을 論罪하올 일]

그런데 처벌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예에 의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는 ‘NP₁乙良 NP₂以 VP爲乎事’의 구조가 쓰인다.

(5) 軍是去等逃軍以論遣民乙良私度關津以論爲乎事(15:3)

[군인이거든 도망병으로서 論罪하고, 백성은 私度關津(關所와 渡場을 私渡한 것)으로써 論罪하올 일]

(5)는 곧바로 형벌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법률인 ‘私度關津’에 쫓아 논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大明律直解”에서는 처벌에 있어 해당 형벌이나 유사 형벌에서 가감하여 판결하는 구문도 보인다.

(6) 가. 盜賊罪良中加一等爲乎事(18:5)

[도적죄에서 1等を 더하올 일]

나. 常員吏罪良中加二等爲乎事(23:5)

[常員吏의 죄에서 2等を 더하올 일]

다. 折半科罪爲遣與者乙良受者罪良中減五等爲乎事(23:3)

[절반을 科罪하고 贈與者는 受者罪에서 5等を 減하올 일]

라. 中人乙良犯人罪良中減一等爲乎事(25:3)

[中人是 범인의 죄에서 1等を 減하올 일]

‘NP良中 NP乙 VP爲乎事’의 구조를 보이는 (6)의 구문들은 한결같이 부과할 형벌을 해당 형벌이나 유사 형벌에서 가감시키고 있다. (6가, 나)에서는 형벌을 가중시키고, (6다, 라)에서는 경감하고 있다.

처벌하기 전에 선결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VP爲遣 NP以 VP爲乎事’의 구조가 쓰인다. (7)의 예문이 그 구문들로서 선행절은 서술어 ‘爲-’가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연결어미 ‘遣’은 생략되었다.

(7) 가. 守掌官吏亦冒弄借貸爲在乙良贓物數乙計爲監臨自盜例以論罪爲乎事(7:13)

冒弄: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농간을 부림, 爲在乙良(호견으란):하거들랑

[守掌官吏가 冒弄(欺瞞)으로써 借貸하거들랑 장물의 수를 계산하여 監臨自盜의 例로

써 論罪하올 일]

나. 受財爲在乙良贓物數乙計爲枉法以論爲乎事(10:2)

[재물을 받거들란 贓物의 수를 계산하여 枉法으로써 論罪하올 일]

다. 許相告訴爲各依常人例以論罪爲乎事(22:10)

[서로 告訴하는 것을 허락하고 각자 일반인의 例에 依하는 것으로써 論罪하올 일]

라. 通計作一處爲全科以論罪爲乎事(23:1)

[한 군데로 하여 통계하여 全量으로써 論罪하올 일]

마. 贓數乙計爲枉法例以從重論爲乎事(27:2)

[장물 수를 계산하여 枉法의 例로써 중한 것에 좇아 論罪하올 일]

(7)에서 ‘計, 許相告訴, 通計作一處’ 등은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監臨自盜例, 枉法, 各依常人例, 全科’ 등은 법률집행을 하기 위한 예이다. 이에 따른 후속행위는 ‘(重)論罪, 賞給’이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유형에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도 남에게 위법을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어떠한 좋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는 범죄도 있다.

(8) 가. 路間良中侵逼逃亡令是在乙良斬爲乎事(14:3)

令是在乙良(시기견으란):시킨 경우에는

[길 중간에서 強迫하여 도망시킨 경우에는 斬하올 일]

나. 因此軍事差錯令是在乙良並只斬爲乎事(14:4)

[이로 인하여 軍事差錯(軍機를 그르치게)시킨 경우에는 함께 斬하올 일]

다. 致死令是在乙良斬爲乎事(14:14)

[致死시킨 경우에는 斬하올 일]

라. 限滿徒囚乙仍執赴役令是在乙良依律論罪貼役爲乎事(28:17)

[代替(服役시키는) 徒役 罪囚를 거둬 잡아 赴役시킨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論罪하고 (本 罪囚에게) 貼役하올 일]

‘VP令是在乙良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8가)는 남에게 위법하도록 종용한 것이고, (8나, 다)는 행위의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게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문에서는 ‘令是在乙良’이 사건의 내용을 받고 있다. (8)에서는 사건의 행위자와 형벌의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 도망한 자, 군사에 착오를 일으킨 자, 죽은 자는 斬刑을 당할 범죄자가 아니다.

법률서 문체의 또 하나 특성이라면 조건형 문체일 것이다. 다음의 예문은 조건을 제시한 구문으로서 ‘VP爲去等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9) 事干軍精錢糧等事爲去等並只絞爲乎事(18:4)

[사건이 군사상 기밀이나 錢糧 등의 일을 하거든 모두 絞死하울 일]

(9)의 구문을 풀어 보면 (9)는 ‘사건이 군사 기밀이나 錢糧 등의 일에 (관계)하거든 모두 목을 벨 일이다’로 여기서 ‘事(軍精錢糧)’가 형벌의 조건이 된다.

다음은 사건에 대하여 시행할 형을 말하는 구문을 보자. 이 구문은 ‘VP爲在乙良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지닌다.

(10) 가. 兵仗持是弥入殿門爲在乙良絞死爲乎事(13:5)

持是(디니):지니-, 가지-, 爲乎事(흐온일):하온 일, 하울 일

[兵仗을 지니며 宮殿의 門에 入場한 경우에는 絞死하울 일]

나. 傷人爲在乙良斬爲乎事(13:6)

[傷人(사람에게 傷害)한 경우에는 斬首하울 일]

다. 失誤軍機爲在乙良斬爲乎事(14:4)

[軍事機密을 失手한 경우에는 斬首하울 일]

라. 逃亡爲在乙良斬爲乎事(14:8)

[도망한 경우에는 斬首하울 일]

(10)의 예문에서 범죄 행위는 ‘爲在乙良’이 서술하고 있는 ‘兵仗持是弥入殿門, 傷人, 失誤軍機, 逃亡’ 등이고 이에 대하여 시행할 형벌은 ‘絞死, 斬’ 등이다.

범죄에 대하여 처벌함에 있어서 신문한 결과 범죄의 정도가 해당 법률을 벗어나 다른 법률(坐贓罪)로써 처리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구문은 ‘VP爲去等 NP以 VP爲乎事’ 구조로서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11)에서 ‘價本多重’이 처벌 법규가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1) 借用日數歧等如價本多重爲去等坐贓罪以從重論爲乎事(17:8)

歧等如(가르트리):나누는대로

[借用日數를 나누어 값이 과다하거든 坐贓罪로써 重한 것에 좇아 論罪하울 일]

한편 시행할 형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예에 비추거나 형벌의 정도 또는 죄질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12)의 구문이 바로 그러한 구문으로서 ‘VP爲在乙良 NP以 VP爲乎事’의 구문 구조가 쓰이고 있다.

(12) 가. 求婚爲如可自娶爲妻妾爲在乙良犯奸以論爲乎事(6:8)

爲如可(헝다가):하다가

[求婚하다가 自娶하여(스스로 장가들어) 妻妾(을 取)한 경우에는 犯奸(姦淫의 例로)으로 論하을 일]

나. 知情故放爲在乙良犯人以同罪論爲乎事(14:7)

[情(事情)을 알고(도) 故意로 放出(놓아 보낸) 경우에는 범인(의 例)으로 죄를 동일하게(범인과 같은 죄로) 論하을 일]

다. 回避爲要越入爲在乙良重罪以論爲乎事(13:8)

爲要(헝라고):하려고,

[回避하려고 越入한 경우에는(담을 넘어 들어 온 경우에는) 重罪(무거운 죄)로써 論議하을 일]

라. 斜用爲在乙良監守自盜例以各從重論爲乎事(16:3)

斜用:마음대로 자기 용도로 충당하는 것

[斜用한 경우에는 監守自盜의 例로써 各各 重한 것을 좇아 論罪하을 일]

마. 本罪良中重爲在乙良盜賊例以准論爲乎事(16:4)

[本罪에서 重한 경우에는 盜賊의 例로써 견주어 論罪하을 일]

바. 主掌負吏亦私丁持去爲在乙良監守自盜例以論罪爲乎事(5:7)

主掌負吏:맡아지키는자, 私丁(아름더):사사로이

[主掌負吏가 사사로이 持去한 경우에는(지니고 간 경우에는) 監守自盜의 例로써 論罪하을 일]

사. 本國兵乙拒逆爲在乙良謀叛已行例以論爲乎事(18:3)

[本國兵을 拒逆한 경우에는 謀叛을 이미 행한 例로써 論罪하을 일]

(12가, 나)는 죄질의 정도를, (12다)는 형벌의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12라, 마, 바, 사)는 다른 법률의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爲乎事’의 구문에는 ‘NP是去等 VP爲乎事’과 같이 조건형 구문 구조도 보인다. 이때는 처벌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전제된다.

(13) 가. 軍人亦爲盜爲去等必干刺字乙免爲在乃三犯是去等一体絞死爲乎事(18:

9-10)

必干(비록):비록, 爲在乃(ㅎ건나):한 것이나

[군인이 도둑질하거든 비록 刺字刑을 면한 것이나 3범이거든 모두 絞死하울 일]

나. 計數爲重是去等坐贓論爲乎事(29:2)

是去等(이거든):이거든

[數를 계산하여 重이거든 坐贓罪로 論罪하울 일]

지금까지는 ‘爲乎事’ 앞에 NP가 오는 것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爲乎事’의 선행어로 반드시 NP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數詞가 놓이기도 한다. 먼저, ‘爲乎事’의 선행어로 數詞가 놓인 구문에서 ‘~隱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지닌 단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 成婚爲乎矣違者杖八十爲乎事(6:3)

[成婚하오되 어긴 자는 杖八十하울 일]

‘NP₁隱 NP₂ Num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14)의 구문에서 ‘爲乎矣’가 서술하고 있는 ‘成婚’은 법률집행에 있어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어길 시에는 형벌이 집행된다. 그런데 조건을 서술하는 ‘爲乎矣’ 뒤에 놓인 ‘違者杖’은 하나의 논항이 되지 않는다. ‘違者杖’이 그 자체로 형벌을 뜻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문의 내용이 조건을 어긴 자에게 ‘杖’이라는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이므로 ‘違者’와 ‘杖’ 두 개의 논항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구성은 ‘NP₁ NP₂’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NP₁’에는 ‘隱’이라는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문의 ‘爲乎事’ 數詞 구문은 ‘~乙良 ~爲乎事’로서도 나타난다.

(15) 가. 違者乙良答五十爲乎事(12:9)

[어긴 자는 答五十하울 일]

나. 駙丞及書者乙良答四十爲乎事(17:3)

[駙丞 및 書者는 答四十하울 일]

다. 餘人乙良各杖一百爲乎事(19:5)

[나머지 사람은 각각 杖一百하울 일]

라. 違者乙良杖一百爲乎事(26:4)

[어긴 자는 杖一百하울 일]

‘NP₁乙良 NP₂ Num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15)에서의 ‘乙良’은 ‘隱’과 마찬가지로 ‘-은’으로도 해석되므로 (15)는 ‘乙良’과 통합된 인물로 한정하여 杖이나 笞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처벌에 있어서 杖이나 笞 외의 형벌이 또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杖이나 笞의 형벌이 가해진 후에 다시 다른 형벌(杖이나 笞가 아닌 형벌)을 추가할 때이다. 여기서 數詞는 곧 杖이나 笞의 형벌이 되므로 추가되는 형벌은 數詞 뒤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VP爲在乙良 NP Num 爲遣 VP爲乎事’가 된다.

(16) 가. 凡同姓爲在人等亦互相嫁娶爲在乙良杖六十離異爲乎事(6:5)

[무릇 同姓인 사람 등이 서로 嫁娶한 경우에는 杖六十하고 이혼하을 일]

나. 不告爲在乙良杖一百流三千里爲乎事(18:2)

爲在乙良(ᄃᆞᆫ 견으란):하거들란

[不告하거들란 杖一百하고 流三千里하을 일]

다. 納官不冬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爲乎事(18:3)

[納官 아니 하거들란 杖一百하고 3년간 徒役하을 일]

(16)에서 數詞 뒤의 ‘VP爲乎事’는 추가되는 형벌이다. (16)에서 ‘NP Num’과 ‘VP爲乎事’는 각기 다른 형벌로서 두 개의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

‘爲乎事 構文’에서 어떠한 행위를 전제로 할 때에 ‘爲去等’이 그 행위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17)에서 보는 예문은 그러한 구문에 수사가 놓인 구문이다.

(17) 가. 十人亦同意爲五貫乙偷取爲去等皆杖一百爲乎事(18:5)

[10명이 同意하여 五貫을 竊盜하거든 모두 杖一百하을 일]

나. 十人亦同意爲一十貫乙偷取爲去等並只杖九十爲乎事(18:6)

[10명이 同意하여 一十貫을 竊盜하거든 모두 杖九十하을 일]

(17)에서 보듯이 ‘VP爲去等 NP Num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일정한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 범죄행위 역시 특정된다.

다음의 구문은 ‘~爲在乙良 ~爲乎事’ 구조의 구문에 數詞가 놓인 것으로서 ‘VP爲在乙良 NP Num 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의 구문에서는 처벌에 있어 범죄행위가 단서로 놓인다.

(18) 가. 常事良中不當給爲在駟馬乙故只許給爲在乙良答四十爲乎事(17:5)

[일상사에서 당연히 내어 주지 말아야 할 역말을 짐짓 내어 주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答四十하올 일]

나. 神祇乙致祭爲在乙良杖八十爲乎事(11:3)

[神祇를 致祭한 경우에는 杖八十하올 일]

다. 常人亦人命事乙私丁和論爲在乙良杖六十爲乎事(19:10)

[일반인이 人命事を 사사로이 和論한 경우에는 杖六十하올 일]

라. 有傷爲在乙良答四十爲乎事(20:1)

[상처를 있게 한 경우에는 答四十하올 일]

처벌에 있어 행위가 아니라 대상인 경우도 찾아진다. 이 경우의 구문은 ‘NP₁是去等 NP₂ Num 爲乎事’ 구조를 가진다.

(19) 螺匠是去等杖八十爲乎事(12:6)

[자개공이거든 杖八十하올 일]

(19)는 처벌의 근거가 행위가 아닌 사람이므로 ‘爲去等’이 아닌 ‘是去等’이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螺匠’이란 신분은 ‘杖八十’의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 근거가 된다.

4. 3. 3 ‘爲行臥乎事 構文’

‘爲行-’ 계열의 吏讀에는 ‘爲行臥乎事’가 있다. ‘爲行臥乎事’는 문중에서 사용되는 예가 찾아지지 않고 한결같이 전체 문장의 종결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爲行臥乎事是齊’로 쓰이지는 않는다. ‘爲行臥乎事’가 서술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爲行臥乎事’의 구문에서 목적어가 놓인 구문으로서 단문처럼 분석될 수 있는 ‘NP乙 VP爲行臥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 예문을 보면 (20)과 같다.

(20) 가. 本國乙背叛爲遣彼國乙潛通謀叛爲行臥乎事(1:4)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내통하여 謀叛하였는 일]

나. 父矣兄弟在伯叔父果伯叔妻在母果父矣同生妹在姑果吾矣兄果長妹果母矣父母

果夫果等乙謀殺爲行臥乎事(1:4)

[아버지의 형제인 백숙부와 백숙부의 처인 숙모와 아버지의 자매인 고모와 자기의 형과 만 누이와 어머니의 부모와 자기 남편 등을 謀殺하였는 일]

다. 脫喪服爲遣着吉服爲齊他夫乙改嫁爲行臥乎事(1:5)

[상복을 벗고 좋은 옷을 입거나 다른 남편에게 개가하였는 일]

(20)의 예문에서 (20가)의 ‘彼國’은 ‘潛通’ 행위를 받고, (20나)의 친속들은 ‘謀殺’을 받는 대상이다. (20가, 나)에서 범죄행위는 ‘潛通謀叛謀叛’과 ‘謀殺’이다. 그리고 (20다)에서는 ‘他夫’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대상이 되고 범죄행위는 ‘改嫁’이다.

그런데 ‘NP乙’의 NP가 지니는 격을 목적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도 할 수가 있다. 즉, (20가)의 경우는 처격으로 (20다)는 여격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처럼 목적격 조사 ‘乙’을 처격 또는 여격의 격조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음이 특기할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도 찾아진다.

(21) 가. 영호가 런던을 갔다.

가'. 영호가 런던에 갔다.

나. 민수가 순이를 꽃을 주었다.

나'. 민수가 순이에게 꽃을 주었다.

물론 (21가)와 (21가') 그리고 (21나)와 (21나')간에는 의미론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목적격을 처격이나 여격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역으로 처격이나 여격을 써야 할 곳에 목적격을 썼다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20)의 경우도 (21)과 같은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21)과 같이 처격이나 여격이 올 자리에 목적격을 두는 용법이 14세기 중엽의 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VP爲行臥乎事’의 선행절이 어떠한 의도나 실제행위가 아닌 거짓된 행위인 경우도 있다. 이때는 ‘VP爲乎養以 VP爲行臥乎事’의 구문 구조가 쓰이고 있다.

(22) 生存爲在祖父母及父母乙身故爲乎樣以妄稱爲行臥乎事(1:5)

爲乎樣以(헉온양으로):하온 양으로

[생존하여 있는 조부모 및 부모를 돌아가신 양으로 망령되이 말하였는 일]

(22)에서 ‘身故(初喪)’한 일은 발생되지 않은 거짓된 일로서 ‘身故’의 당사자는 ‘妄稱’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身故’한 것처럼 행한 사람은 ‘妄稱’한 사람이다.

‘爲行臥乎事’의 구문에는 ‘~하도록 ~하였던 일이다’로 풀이되는 구문이 있다. 이런 경우의 구문은 ‘VP爲只爲 VP爲行臥乎事’ 구조를 가진다.

(23) 가. 謀反社稷乙危亡爲只爲作謀爲行臥乎事(1:4)

爲只爲(헉기암):하도록, 爲行臥乎(헉닐누온):하였는

[謀反은 社稷을 危亡하도록 謀議하였는 일]

나. 謀大逆宗廟山陵宮闕等乙毀亡爲只爲作謀爲行臥乎事(1:4)

[謀叛大役은 宗廟, 山陵, 宮闕 등을 毀亡하도록 謀議하였는 일]

(23)에서 ‘VP爲行臥乎事’의 선행 NP인 ‘危亡’과 ‘毀亡’은 행위자의 의도이다. 그리고 이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행위는 ‘作謀’이다. (23) 구문의 경우는 행위자 중심의 서술이므로 의도자와 행위자는 반드시 동일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행위 중심의 서술로서 선행위와 후행위의 행위자는 동일인이 된다.

(24) 가. 害人毒蟲等物乙畜養爲旡魘魅咀呪爲行臥乎事(1:4)

魘魅:사람을 죽거나 疾苦에 걸리라고 방자하는 일

[사람을 해치는 독충 등 동물을 畜養하며 魘魅咀呪하였는 일]

나. 小功已上親果父祖妾等乙犯奸爲旡和奸爲行臥乎事(1:5)

小功:五服의 한 種類로 5個月 동안 입는 옷으로서 살아 익힌 약간 거칠은 베로 지은 喪服이다.

[小功 이상의 친속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妾 등을 犯奸하며 和奸하였는 일]

다. 其父及大功同姓四寸已上族長及小功同姓五六寸族長等乙行傷爲旡訴告爲行臥乎事(1:5)

大功:五服의 한 種類로 9個月 동안 입는 옷으로서 살아 익힌 거칠은 베로 지은 喪服이다.

[그의 아버지 및 大功(친속의) 同姓인 四寸 이상 族長 및 小功(친속의) 同姓인 五寸이나 六寸 族長 등을 다치게 하며 고소하였는 일]

(24)는 일련된 행위의 나열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대상은 동일인이 된

다. 이때 행위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행위를 모두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둘 중 하나의 행위만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구문 구조는 ‘VP爲跡 VP爲行臥乎事’가 된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반드시 동시적인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4가)의 경우 독충을 기르면서 동시에 저주의 주문도 외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나)의 경우는 强姦하면서 한편으로는 和姦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동시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24가)를 독충을 기르거나 저주의 주문을 외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의 의미를 지닌 ‘爲跡’가 쓰였지만 행위가 반드시 동시적이 되지는 않는다.

4. 3. 4 ‘是乎事 構文’

“大明律直解”에서 ‘是乎事’가 문장의 말미에 쓰인 예는 한 번 나온다. 그러나 다른 ‘爲乎事 構文’과 마찬가지로 서술어 없이 문장의 끝에 놓이며 ‘是乎事’ 자체가 서술어처럼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爲乎事 構文’으로 볼 수 있다. ‘是乎事’가 쓰인 구문은 ‘NP段 NP是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25) 去任段政滿遞還是去乃在喪是去乃致仕等類是乎事(1:16)

[去任이란 임기만료로 교대하는 것이거나 在喪이거나 致仕 등인 일]

(25)에서는 ‘去任’에 대하여 ‘是去乃’로써 그 내용을 나열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문 형식이 ‘是乎事 構文’의 특징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是乎事 構文’도 ‘爲乎事 構文’의 하나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4. 3. 5 ‘令是乎事 構文’

우리는 앞에서 ‘是乎事’가 ‘是齊’를 생략한 채 문장의 말미에 사용된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令是乎事’도 문장의 말미에서 ‘是齊’를 생략한 채 홀로 놓이고 있다. 그리고 ‘令是乎事’ 역시 ‘令是乎事是齊’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令是乎事’도 서술어처럼 기능한 것으로 분석한다.¹⁵⁰⁾

‘令是乎事 構文’에서 단문으로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26)의 예문은 중문처럼 쓰인 ‘令是乎事 構文’으로서 ‘NP₁乙良 VP爲遣 NP₂令是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26) 僧道乙良同罪還俗令是乎事(12:8)

[승려와 도사는 죄가 같고 환속시킬 일]

‘同罪’ 다음에 ‘爲遣’이 생략된 (26)의 구문에서 ‘승려와 도사’는 ‘환속’을 명령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令是乎事 構文’에는 두 가지의 판결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VP爲遣 NP₁亦中 NP₂良中 NP₃令是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인다.

(27) 其女乙還付前夫各家居住令是乎事(6:4)

[그 여인을 전 남편에게 돌려 보내고 각자 (하나의) 가정에 거주시킬 일]

(27)에서 ‘乙’의 선행어 ‘其女’는 두 가지의 판결을 따르는 대상이 된다. ‘VP爲遣’은 ‘NP₃令是乎事’에 앞서서 선결하여야 할 일이며, 이들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연관을 가진다. (27)에서는 ‘여인을 전 남편에게 돌려 보낼 것’과 ‘그 부부가 한 집에서 살 것’을 명령함으로써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시킨다.

‘令是乎事’는 ‘爲在乙用良’과도 어울려 구문을 이룬다. 이때의 구문 구조는 ‘VP爲在乙用良 VP令是乎事’가 된다. (28)에서 ‘次序適當’은 ‘改立’에 있어서 방법이 되고 있다.

(28) 次序適當爲在乙用良改立令是乎事(4:4)

爲在乙用良(흔 견을 쓰아):한 것으로써, 令是乎事(시기온 일):시킬 일

[적당한 次序로써 改立시킬 일]

150) 이와 같은 용법으로 ‘令是臥乎事’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他人乙侵害爲乎等用良全免不冬贖罪令是臥乎事(1:22)

爲乎等用良(흔 온들쓰아):한 바로써, 不冬(안더, 안들):아니, 令是臥乎事(시기누온 일):시킬 일

[남을 침해한 바로써 전부 사면은 아니 되고, 贖罪 시킬 일]

위에서 보듯이 ‘시키는 일’ 또는 ‘시킬 일’로 풀이되는 ‘令是臥乎事’는 ‘令是乎事’처럼 문말에서 ‘是齊’를 생략한 채 홀로 구문에 놓이고 있다.

이와 같이 ‘是乎事’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술어로서의 ‘是乎事’가 앞의 ‘爲乎事’나 ‘爲行臥乎事’ 또는 ‘是乎事’와는 다른 점은 사역의 의미가 있는 ‘是-’에 의해 사역의 뜻을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3. 6 ‘無乎事 構文’

‘無乎事’는 ‘없는 일’ 또는 ‘없을 일’의 의미를 지닌 이두이다. 이 ‘無乎事’는 “大明律直解”에서 단 한 차례 나타나 보이고 있다. 그런데 ‘無乎事’에서 ‘無乎’는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이승재 1989, p.117). ‘無乎事’의 계통을 밝히는데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無乎事’는 다른 ‘-乎事’형 吏讀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최중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술어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無乎事’도 ‘爲乎事 구문’의 하나로 다룬다.

‘無乎事’가 서술어처럼 쓰인 구문의 구조는 ‘NP₁亦 NP₂無乎事’로서 단문의 형태이다.

(29) 母子亦相絶爲乎道理無乎事(1:15)

爲乎(호은):하올, 無乎事(어오른 일):없는 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絶緣하올 도리는 없는 일]

‘無乎事’는 ‘이 세상에 없는 일’ 또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확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無乎事’가 서술하는 내용도 극단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母子相絶’이다. 여기서 ‘無乎事’의 의미상 ‘無乎事’가 쓰인 구문의 구조는 어떠한 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평가되는 일이 바로 ‘母子相絶’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평가가 ‘道理가 없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이 구문은 ‘無乎事’의 선행 명사구에 격조사를 표시시키면 이중 주격 구문이 된다.¹⁵¹⁾ 여기서 주어는 ‘母子’이고 ‘道理’는 보어

151) 이중 주어는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라는 뜻이나, 이중 주격은 주격이 두 개라는 뜻으로 주어가 두 개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중 주격 구문이라 하였을 경우 주어가 둘이라는 의미를 뜻하지는 않는다. 유형선(1999, p.718)은 이처럼 주격이 중출되는 구문에 대한 명칭을, 자연언어에는 주어가 두 개인 언어는 없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하며 이중 주격으로 하였다. 그는 서술어가 한 개이면

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구문이 (29)의 예문 단 하나만 보이므로 이로써 이중 주격 구문의 기저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9)와 같은 이중 주격 구문의 분석은 차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29)와 같은 이중 주격 구문의 구조를 보이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4. 3. 7 ‘使內乎事 構文’

‘使內-’ 계열에는 ‘使內乎事’라는 명사구가 있다. 그런데 이 명사구는 ‘-乎事’ 계열의 ‘爲乎事’나 ‘是乎事’, ‘令是乎事’에서처럼 문장의 끝에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是齊’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使內乎事’ 역시 ‘爲乎事’나 ‘是乎事’, ‘令是乎事’ 등의 ‘-乎事’ 계열과 마찬가지로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大明律直解”에서 ‘使內乎事’가 쓰인 구문은 하나로서 ‘NP₁乙 NP₂使內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30) 先犯徒罪年限未滿爲在人乙并以四年分徒役使內乎事(1:21)

并以(아오로):아울러, 使內乎事(바리온 일):시키온 일

[먼저 범한 徒役罪의 年限이 아직 차지 않은 사람을 아울러 4년만을 徒役시킬 일]

‘使內乎事’도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NP使內乎事’의 선행어로는 사역시킬 대상이 목적어로서 놓인다. (30)에서 ‘先犯徒罪年限未滿爲在人’은 사역을 받을 대상이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四年分徒役’이다. ‘NP使內乎事’의 선행 NP인 ‘NP₁’은 사역의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30)의 구문은 ‘NP₂’에 목적격을 실현 시키면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예의 구문이 하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구문 분석은 하지 않는다.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도 한 개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구문은 주어 한 개에 주격이 두 개 할당되었다는 의미인 이중 주격 구문으로 한다고 말한다.

4. 3. 8 요약

“大明律直解”에서는 문장의 끝이 서술어 ‘是齊’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爲乎事’, ‘爲行臥乎事’, ‘是乎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이 놓였다. 이들은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문법상 가장 큰 특징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을 하나의 서술어로서 취급하여 이들이 이끄는 구문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爲乎事’의 구문 구조에서는 ‘爲在乙良’이 ‘VP爲乎事’의 앞에 놓이면 ‘爲在乙良’의 선행 ‘NP’는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되고, ‘VP爲乎事’는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형벌이 되었다. 그리고 죄인에게 부과할 형벌에 있어서 타법률의 예에 비추거나 형벌의 정도 혹은 죄질의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VP爲在乙良 NP以 VP爲乎事’의 구문 구조가 쓰였다.

한편, 처벌에 있어 예를 들 때는 조격어 앞의 NP를 조사 ‘隱’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사역형인 ‘令是~’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선행구문으로 어떠한 선결하여야 할 일이나 형벌을 두되,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보이며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라고 하는 구문도 찾아졌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을 ~한다’는 식의 구문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VP爲乎事’의 선행 성분이 목적어가 되었다. 또한 조건형 구문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때는 두 가지의 구문 구조가 쓰였다. 그 하나는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VP爲去等 VP爲乎事’이라는 구문 구조이고 또 하나는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하되 예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서 ‘VP爲去等 NP以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보았다. 조건형 구문 구조도 있었는데 이들은 ‘NP是去等 VP爲乎事’, ‘NP乙良 VP爲乎事’의 구문 구조를 가졌다. 그리고 ‘NP₁乙良 NP₂以 VP爲乎事’ 구문 구조처럼 조건형 구문에서 예를 들어 보이는 구문도 찾을 수 있었다.

‘爲乎事 構文’에서는 ‘~에서 ~할 일(이다)’로 해석되는 구문도 있었다. 이는 ‘NP良中 VP爲乎事’ 구문 구조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爲乎事’의 선행어로서 NP만 놓이지는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Numeral)가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사가 오는 구문 중에서 어떤 행위가 전제될 때에 ‘爲去等’이 그 행위를 서술하는 ‘VP爲去等 NP Num 爲乎事’의 구문 구조도 있었다.

수사가 놓인 ‘爲乎事 構文’ 중에는 인물이 행위의 자리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는 ‘是去等’이 이를 서술하여 ‘NP₁是去等 NP₂ Num 爲乎事’이라는 구문 구조를 보였다.

‘爲行臥乎事’이 구문의 종결에서 서술어로서 쓰인 구문에 ‘~하도록 ~하였던 일이다’로 해석되는 구문이 있었다. 이의 구문 구조는 ‘VP爲只爲 VP爲行臥乎事’로 분석되었다. ‘爲行臥乎事’이 쓰인 구문 중에서 행위 중심의 서술로서 선행위와 후행위의 행위자는 동일인 혹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VP爲於 VP爲行臥乎事’ 구문 구조를 보였다.

‘是乎事’의 경우에도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是是乎事’의 경우는 ‘爲在乙用良’나 ‘乙良’ 또는 ‘乙’과 어울려 구문을 이루었다. ‘無乎事’도 문장의 최중에 자리하여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때 ‘無乎事’는 ‘이 세상에 없는 일’ 또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확대의미를 지녔다.

‘使內乎事’도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였다. 이 구문에서는 ‘NP₁乙 NP₂(乙)使內乎事’VP使內乎事’ 구문 구조를 보였는데 이 구조에서 선행어 자리인 ‘NP₁’에 사역시킬 대상을 목적어로서 놓았다.

여기서 살펴 본 ‘爲乎事 構文’의 구문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31) 1. ‘NP乙良 VP爲乎事’

‘A는 B하다’와 같이 단문처럼 분석되는 구문의 구조로서 물품이 ‘乙良’과 통합되어 한정받고 있다.

2. ‘NP₁隱 NP₂以 VP爲乎事’

처벌하는데 있어 어떤 예를 드는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3. ‘NP乙 VP爲乎事’

처벌을 제시하는 경우에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4. ‘NP₁乙良 NP₂以 VP爲乎事’

처벌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의 예에 의거하는 경우이다.

5. ‘NP良中 NP乙 VP爲乎事’

처벌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형벌이나 유사 형벌에서 가감하여 판결하는 경우에 보인다.

6. ‘VP爲遣 NP以 VP爲乎事’

처벌을 시행하기 전에 선결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7. ‘VP令是在乙良 VP爲乎事’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유발시키는 범죄에서 쓰이는 구문 구조이다.

8. ‘VP爲去等 VP爲乎事’

형벌을 내리는데 있어 조건이 있을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9. ‘VP爲在乙良 VP爲乎事’

사건에 대하여 시행할 형을 말하는 경우이다.

10. ‘VP爲去等 NP以 VP爲乎事’

처벌함에 있어서 신문한 결과가 해당 법률을 벗어나는 범죄이어서 다른 법률(坐贓罪)로써 처리해야 할 경우에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11. ‘VP爲在乙良 NP以 VP爲乎事’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예에 비추거나 형벌의 정도 또는 죄질의 정도를 제시할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12. ‘NP是去等 VP爲乎事’

죄수를 처벌함에 있어서 어떤 전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13. ‘NP₁隱 NP₂ Num 爲乎事’

조건을 어길 시에는 형벌이 집행되는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14. ‘NP₁乙良 NP₂ Num 爲乎事’

杖이나笞의 처벌을 ‘乙良’과 통합된 인물로 한정한다.

15. ‘VP爲在乙良 NP Num 爲遣 VP爲乎事’

杖이나笞의 형벌을 시행한 후에 다시 다른 형벌(杖이나笞가 아닌 형벌)을 추가할 때의 구문 구조이다.

16. ‘VP爲去等 NP Num 爲乎事’

일정한 형벌 부과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특정되는 경우에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17. ‘VP爲在乙良 NP Num 爲乎事’

처벌함에 있어서 단서로 범죄행위를 놓는 경우이다.

18. ‘NP₁是去等 NP₂ Num 爲乎事’

처벌을 말함에 있어서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처벌 받을 자를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19. ‘NP_乙 VP爲行臥乎事’
목적어가 놓인 구문으로서 단문처럼 분석되는 경우이다. 목적어로는 국가나 사람이 온다.
20. ‘VP爲乎養以 VP爲行臥乎事’
‘VP爲行臥乎事’의 선행절이 거짓된 행위인 경우에 보이는 구문 구조이다
21. ‘VP爲只爲 VP爲行臥乎事’
‘~하도록 ~하였던 일이다’로 풀이되는 경우의 구문 구조이다.
22. ‘VP爲_於 VP爲行臥乎事’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범죄 행위 중 하나의 행위만을 하거나 두 가지의 행위를 다 하는 경우이다.
23. ‘NP_段 NP是乎事’
한정되는 일에 대하여 지정하는 이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용례만이 있다.
24. ‘NP₁乙良 VP爲遣 NP₂令是乎事’
법률 시행에 있어서 대상이 한정된다. 이때 한정되는 대상은 ‘NP₁’이다.
25. ‘VP爲遣 NP₁亦中 NP₂良中 NP₃令是乎事’
두 가지의 판결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이다.
26. ‘VP爲在乙用良 VP令是乎事’
법률을 따름에 있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보인다.
27. ‘NP₁亦 NP₂無乎事’
단문의 형태로서 어떠한 일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다.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용례만 찾아진다.
28. ‘NP₁乙 NP₂使內乎事’
‘NP₁’에는 사역을 이행할 당사자가 목적어로서 온다. 사역의 내용은 ‘NP₂’에 놓인다. 이 구문 구조는 하나의 예만이 찾아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大明律直解”의 구문분석을 통하여 14세기 중엽 이후부터 15세기 이전까지의 국어 모습을 살펴 본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 보이는 구문에 대하여 서술어와 통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용법과 구문 구조를 분석하였다.

“大明律直解”의 구문에 대한 연구분석에 있어서 먼저 제2장에서는 “大明律直解”가 가지는 문체상 특징과 번역상 특징 그리고 편집상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제3장은 서술어 중심 구문 구조 분석으로서 “大明律直解”에서 찾아지는 구문들에 대하여 서술어 위주로 연구하였다. 3장에서 분류한 구문은 ‘認知 構文’, ‘話法 構文’, ‘存在・所有 構文’, ‘思惟・經驗 構文’, ‘使役・被動 表現 構文’,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 ‘受與 構文’, ‘移動 構文과 方位 構文’ 등이 되었다.

‘認知 構文’에 대한 분석을 보면 동사에는 ‘知’, ‘知想只-’, ‘知不得爲-’, ‘知乎不冬’ 등이 있었으며, ‘知’, ‘知想只-’은 평서문 인지구문을 생성하였고, ‘知不得爲-’, ‘知乎不冬’은 부정문을 이끌었다. 타동사인 ‘知’는 알고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였다. 이때 주어와 목적어는 수의적 생략을 보였다. ‘知想只-’ 역시 목적어를 앞에 두었다. 그러나 ‘知想只- 構文’은 서술어 앞에 의문문을 선행시키는 경우도 보였다. 이때 의문문의 내용은 자신이 우려하는 타인의 행동이 되었다.

‘모르다’에 해당하는 이두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爲-’와 결합된 ‘知不得爲-’가 문법상 ‘모르다’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知不得爲- 構文’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구문에 쓰였다.

‘知不得爲- 構文’에서는 앞에 놓인 명사구와 ‘良中’이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良中’의 통합을 받는 ‘NP’는 무형의 장소뿐이었다. ‘知乎不冬’은 여격어를 구문에 두어 ‘~가 ~에게 아뢰지 아니 하다’라는 구문 구조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때 ‘知乎不冬’의 앞에는 알리지 않을 대상을 두었다. ‘知乎不冬 構文’은 여격어 외에 처격어를 두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목적어로서 알리지 않을 내용이 놓였다.

‘話法 構文’에서는 ‘白傍是-’와 ‘云-’ 그리고 ‘現告爲-’가 서술어로 쓰였다. “大明律直解”에서 ‘白傍是- 構文’은 두 예만 보였다. ‘白傍是- 構文’은 ‘是如 構文’을 피인용

구문으로 하는 구문으로서 ‘-이다’로 풀이되는 ‘是如’에 의해 직접 화법으로 분석되었다. ‘是如 構文’의 선행 NP에는 고백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놓였다. 인용 보문으로서의 ‘是如 構文’은 ‘云- 構文’에서도 보였는데 이때의 ‘是如 構文’은 화자가 주장하는 사물이나 상황에 해당되는 명사구가 ‘是如’의 선행 NP로 왔다.

‘云- 構文’은 인용 보문의 서술어로 ‘是如’가 오는 것과 ‘亦’이 오는 것이 있었다.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일 경우에는 직접 화법이 되었으나, ‘亦’이 왔을 경우에는 ‘亦’이 서술어와 인용 조사의 결합인 ‘이라고’로 풀이되므로 간접 화법이 되었다.

간접 화법으로서의 ‘云- 構文’은 단순 간접 인용 구문인 ‘亦稱 - 構文’과 2중 간접 인용 구문인 ‘亦 稱云- 構文’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직접 인용 구문에서는 ‘是如稱 云-’과 같은 구조의 2중 직접 인용 구문은 쓰이지 않았다.

‘고발하다’, ‘일러바치다’의 의미를 가진 ‘現告爲-’는 구문에 여격어가 놓이지 않고 처격어가 놓이는 특색을 보였다. 이 구문은 구문 내에 인용 보문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화자’, ‘처소(청자)’, ‘내용’에 있어서 이들 요소는 하나 혹은 둘 심지어 모두 생략되기도 하였다.

서술어 ‘有-’, ‘無-’, ‘在-’가 이끄는 존재 · 소유구문에서는, 서술어 ‘有-’가 선행 명사구와의 밀착성이 강하여 주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성분을 개재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용법은 15세기 및 16세기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특이한 것이었다. 存在 · 所有 構文에서는 ‘NP₁亦 NP₂良中 有-’ 구문 구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문 구조는 쓰이지 않았다. 대신 처격어가 주어 앞에 있는 ‘NP₂良中 NP₁亦 有-’의 구문 구조가 사용되었다. ‘有- 構文’에서는 처격어가 주어 뒤에 전혀 위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NP₂良中 NP₁亦 有-’와 같은 구문 구조에서는 처격어가 초점을 받아 주어 앞으로 나왔다고 분석하기 보다는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주어가 초점의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있다’의 높임말인 서술어 ‘在-’는 주어를 보어 앞에 내 놓는지 않았다. 한편, ‘在- 構文’은 ‘주제-평언’의 구성인 ‘NP₁隱 NP₂亦 在-’ 구문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在- 構文’ 어떤 부사도 주어와 서술어간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在- 構文’도 주어와 서술어간의 밀착도가 높은 구문으로 분석되었다.

서술어 ‘無-’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存在 · 所有 構文에 넣었다. 용법에 있어서는 ‘有- 構文’과 동일성을 보였으나 소유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은 ‘有- 構文’과는 다르게 무존재와 무소유의 의미 모두에 두루 사용되었다.

‘無- 構文’도 서술어의 바로 앞 명사구가 격조사를 표지하지 않았고 부사 역시 서

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어의 선행 명사구와 서술어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無- 構文’은 ‘주제-평언’의 유형인 ‘NP₁(叱) 段 NP₂亦 無-’의 구문 구조와 ‘NP₁良中 NP₂亦 無-’ 구문 구조를 보였으나 ‘NP₂亦 NP₁良中 無-’ 구문 구조 보이지 않았다.

‘사유구문’은 ‘望白齊’, ‘向入’, ‘的是爲-’ 등이 사유 동사로 사용되었다. ‘望白齊’는 무엇을 희망하는 서술어이므로 목적어를 구문에 두었다. 그리고 思惟 構文의 서술어인 ‘向入-’ 역시 생각되는 대상을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았다. 그런데 ‘向入- 構文’은 이행하고 싶은 의지로서 의문절을 가지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진 ‘的是-’는 세 차례 보였고, ‘的實爲-’는 한 차례 나타났다.

한편, 經驗 構文을 이루는 서술어로는 ‘聞’, ‘見’, ‘食’을 찾을 수 있었다. 서술어 ‘聞’은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을 목적어로서 구문에 두었다. 그리고 ‘見’ 역시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목적어를 구문에 두었다. 다만 이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한 번만 보였다. ‘먹다’의 의미를 가진 ‘食爲-’ 또한 마찬가지로 “大明律直解”에서 그 용례가 한 차례 보였다.

‘使役·被動 表現 構文’에서 ‘使役 表現 構文’은 의미상 사동구문이지만,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동사어근에 결합된 서술어에 의한 사동구문이거나 서술 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구문이 아니다.

여기서 다른 ‘使役 表現 構文’은 서술어에 [+사역성]이 있어 그 자체의 의미로서 사동구문을 이룬다. 이와 같이 서술어 자체가 지닌 사동의 의미로써 사동구문을 만드는 서술어는 ‘令是-’와 ‘使內-’이다. ‘令是- 構文’은 ‘令是-’ 앞에 VP 대신 NP를 두어 이를 목적어로 하여 이중 목적격 구문을 이루기도 하였다.

‘令是- 構文’은 명령을 내림에 있어 조건을 두기도 하였는데, 이때 신분을 중시하였을 경우에는 ‘NP是去等 VP令是-’ 구문 구조를 사용하였고, 사람의 상태를 중시하였을 때는 ‘NP乙良 VP令是-’의 구문 구조를 사용하였다.

한편, ‘使內-’의 선행 명사구가 사역을 시키는 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중 목적격 구문이 되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어근에 결합된 서술어에 의한 피동 구문은 없었다. 대신 서술어 자체가 지닌 피동의 의미에 의해 피동 표현이 이루어지는 구문은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의 서술어는 當爲-’로서 구문상에는 주어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술어 ‘當爲-’가 ‘어떠한 것을 당하다’라는 의미일 때

는 ‘當爲-’의 선행어로 목적어를 두었다. 그런데 ‘어떠한 것에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當爲-’의 선행어에 ‘良中’을 통합시켰다.

‘審問・逮捕 및 犯罪・處罰 構文’은 “大明律直解”가 지니는 구문상의 특징이 되는 구문이다. 이들의 구문 내용은 모두 법률서에서는 자주 쓰이는 것들이나 일반 생활상에서의 구문으로는 쓰기 힘든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구문은 “大明律直解” 고유의 구문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審問・逮捕 構文’에서는 ‘推問爲- 構文’과 ‘捕捉爲- 構文’을 볼 수 있었다. ‘推問爲-’는 구문의 내용이 심문일 경우에 사용하였고, ‘捕捉爲-’는 체포가 내용이 될 때 사용하였다.

‘犯罪 構文’에는 ‘殺死爲- 構文’, ‘傷爲-構文’, ‘鬪爲-構文’, ‘行姦爲-構文’, ‘謀爲-構文’, ‘逃爲-構文’, ‘隱匿爲-構文’, ‘隱藏爲-構文’, ‘盜爲-構文’, ‘偷取爲-構文’, ‘冒弄爲-構文’ 등이 있었다.

이들 구문 중에서 특이한 구문을 보면, 먼저 패싸움에 대한 구문과 동년배끼리의 싸움에 대한 구문이 구문 구조에서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특색을 들 수 있다. 패싸움에 대한 구문 구조는 ‘NP果 鬪爲-’였으나 동년배끼리의 싸움에서는 ‘NP亦 鬪爲-’ 구문 구조를 보였다. 그리고 和姦과 姦通을 強姦 犯罪를 다루는 ‘行姦爲-構文’에서 같이 다루었다는 특색을 보였다.

숨기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는데, “大明律直解”에서는 이에 대하여 ‘隱匿’과 ‘隱藏’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隱匿’은 숨긴 상태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로, ‘隱藏’은 숨기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법률 집행관을 우롱한 경우에는 ‘冒弄爲- 構文’을 사용하였는데 이 구문은 무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大明律直解”에서는 ‘處罰 構文’으로 ‘論爲-構文’, ‘斬爲-構文’, ‘絞死爲-構文’, ‘坐罪爲-構文’, ‘生徵納官爲-構文’, ‘笞(杖)爲-構文’, ‘徒爲-構文’, ‘流爲-構文’ 등을 두었다. 이들 구문 중에서 특이한 것은 ‘坐罪爲-構文’은 坐罪刑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반대로 ‘누가 坐罪刑을 받는다’라는 뜻의 구문도 쓰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구문은 “大明律直解”에서 하나의 용례만 있었다.

강제노역의 경우에는 徒役의 年限이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구문이어서 구문은 ‘徒 Num年 爲-’의 구문 구조로 쓰였다. 그리고 이들 구문 구조는 ‘笞(杖)爲- 構文’과 반드시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때문에 ‘徒爲- 構文’은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 구문 구조에서처럼 ‘笞(杖)爲- 構文’과 대등접속의 관계로서 다루

어지기도 하였다.

流配刑은 처벌에 있어 유배지까지의 거리가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므로 ‘流 Num里’라는 한문식 구문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국어식 구문 구조인 ‘Num里 流爲-’로는 쓰이지 않았다.

杖刑 및笞刑에서는 매질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쓰이지 않았으나 徒刑은 횟수를 나타내는 ‘年’이, 徒刑은 거리를 나타내는 ‘里’가 쓰이는 특색을 보였다. 한편, ‘流爲- 構文’에서는 거리의 단위로서 어림짐작 거리의 개념인 ‘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受與 構文’은 ‘收入 構文’과 ‘給與 構文’으로 나누었는데, ‘收入 構文’에는 서술어 ‘捧上爲-’가 쓰인 구문이 해당되었고 ‘給與 構文’은 ‘給爲-’가 서술어로 사용된 구문이 되었다.

‘捧上爲- 構文’은 ‘~을 거두어 들이다’와 같은 유형을 지녀 ‘NP乙 捧上爲-’의 구문 구조를 보였다. 이 구조에서 금전이나 물품이 수입의 대상이 되어 목적어로 놓였다.

‘給與 構文’은 ‘~에게 ~주다’의 의 유형으로서 ‘NP亦中 給爲-’ 구문 구조를 가졌다. 이 구조에서는 금전이나 물품이 포상 또는 배상으로서 급여되었다. 그리고 급여물을 받을 대상자가 여격어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을 주다’라는 ‘NP乙 給爲-’ 구문 구조와 ‘어떻게 주다’라는 ‘NP以 給爲-’ 구문 구조도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논항간의 자리바꿈이 자유로운데 이러한 현상을 ‘給與 構文’에서도 볼 수 있었다. ‘給與 構文’에서는 여격어와 목적어, 조격어와 목적어간의 자리바꿈이 자유로웠다. 따라서 논항간의 자리바꿈이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도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給爲-’의 선행어인 급여물품에 ‘乙良’을 통합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乙良’이 예외적 단서가 되어 구문 구조가 ‘NP乙良 給安徐爲-’와 같이 부정형이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품의 급여행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 외로 ‘給爲-’의 선행어에 ‘良中’이 통합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給爲-’의 선행어로 왔다.

‘進- 構文’은 ‘移動 構文’으로서 나아갈 장소가 구문에 놓이는 ‘NP良中 進-’의 구조를 보였으며, 장소는 실재적 장소 혹은 추상적 장소였다. 하지만 나아가는 곳이 사람인 경우가 있어 ‘NP亦中 進-’의 구조도 보였다. 이 외로 나아가는 방법을 조격으로 나타내 구문 구조가 ‘NP以 進-’으로 분석되는 것도 있었다.

어떠한 선행위가 서술어 ‘進-’ 앞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선행위와 후행위가 동시 진행상 혹은 과거 완료상이 되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에는 ‘는/ㄴ’과 같은

이른바 相標示 形態素나 ‘-게, -면서, -고서’ 등과 같은 동작상을 나타내는 어미들이 없으며, 그나마 있는 동작상 어미인 ‘-고’, ‘-아/어’, ‘-려고’의 이두어 ‘遣’, ‘良’, ‘要’도 생략되는 때가 많아 상적인 분석은 문맥에 의존하여야 했으며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의 구문 구조는 ‘VP爲良/爲遣 進-’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어떠한 행위가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VP爲良結 進-’ 구조도 있었다. 다만, ‘爲良結’이 “大明律直解”에서 쓰이지 않은 이두이므로, 이 구문 구조는 ‘進- 構文’에 있어서 잠정적 구문 구조로 처리하였다.

‘移動 構文’에서 ‘오다’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來’로서 이는 ‘來爲- 構文’을 이끌었다. 그런데 서술어 ‘來’는 ‘進’과는 다르게 앞에 명사구를 두지 않았으며, 항상 ‘爲’와 결합하였고 다른 동사와 같이 쓰였다. ‘來爲- 構文’은 구문 구조로 ‘VP爲良 來爲-’와 ‘VP爲遣 來爲-’를 보였다.

‘方位 構文’에는 ‘향하다’ 의미를 지닌 서술어 ‘向爲-’가 쓰인 ‘向爲- 構文’이 속하였다. ‘向爲- 構文’은 “大明律直解”에서 세 개의 용례만 보였으며 이의 구문 구조는 향하여 갈 목적지가 목적어로서 구문에 놓이는 ‘NP乙 向爲-’였다.

제4장은 통사적 구조 중심 구문 분석으로서 “大明律直解”의 구문을 통사적 구조로서 분석하였다. 4장의 연구에서는 否定 構文과 引用 構文 그리고 爲乎事 構文을 다루었다.

‘否定 構文’에 대해서는 ‘指定 構文의 否定’, ‘爲乎事 構文’의 否定, ‘爲- 構文’의 否定, ‘二重 否定 構文’으로 세분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爲乎事 構文’의 否定은 ‘是乎事 否定 構文’, ‘爲乎事 否定 構文’으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爲- 構文’의 否定도 마찬가지로 ‘不冬 爲- 構文’, ‘安徐 爲- 構文’, ‘不得 爲- 構文’, ‘免 爲- 構文’으로 보다 세분하여 연구하였다.

“大明律直解”에는 계사가 표기된 상태에서의 부정문은 없고, 계사가 생략된 상태에서의 부정문은 있었다. 이때 부정소로는 ‘不’과 ‘不喻’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부정소 ‘不’이 쓰인 예는 “大明律直解”에서 두 개의 예만이 있었다.

계사가 생략된 부정문에서는 부정소로 ‘不喻’가 사용되었으며 이때 부정소 ‘不喻’는 체언만을 부정하였다.

부정소 ‘不喻’는 대당되는 한문본의 한자 부정소가 구문마다 다르다는 특색을 보였다. 여기서 부정소 ‘不喻’는 한자어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에 있어서 우리말 감각에 맞추어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是乎事’는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부정문도 이끌고 있는데 이

때는 부정소로서 ‘不喻’가 사용되었다. 다만 ‘是乎事 構文’의 부정문은 하나의 용례만 보였다.

서술어로서의 ‘爲乎事’ 역시 부정문을 생성하였는데 그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사용된 부정소도 다양하였다. ‘爲乎事 構文’을 부정문으로 만드는데 사용된 부정소로는 ‘不, 不冬, 勿, 安徐’ 등이 있었다.

그런데 ‘爲乎事’의 부정형 구문 중에는 ‘VP爲良在等 勿 VP爲乎事’ 구문 구조에서 보듯이 어떠한 행위를 ‘VP爲良在等’에 의해 전제하고 이를 금지사 ‘勿’로써 부정하는 복잡한 부정문도 있었다.

한편, “大明律直解”에는 ‘爲- 構文’의 부정문도 쓰이고 있었다. 이때 사용된 부정소는 이두어 ‘不冬’, ‘安徐’, ‘不得’과 한자어 ‘免’이었다. ‘免’은 본래 부정소가 아니지만 “大明律直解”에서는 부정소처럼 사용하여 형의 집행이나 적용 또는 선고를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爲- 構文’에 부정소 ‘安徐’가 쓰였을 경우, 이에 대당되는 한문본의 부정소는 ‘不’, ‘勿’, ‘免’ 등 다양하였다. 따라서 부정소 ‘安徐’는 한문본의 부정소와는 상관없이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가 있으면 ‘安徐’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安徐 爲- 構文’은 처벌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구문에는 금지하는 형벌이 ‘安徐’의 앞에 위치하였다. 부정소 ‘不得’도 ‘安徐 爲- 構文’을 부정하는데 이때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서는 부정소의 선행 NP에 대한 부정이나 금지 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 따라 부정소를 가려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大明律直解”의 부정문에는 이중 부정 구문도 찾아졌는데 이 경우는 ‘令是- 構文’에서 볼 수 있었다. 이중 부정 구문의 구조는 ‘NP₁亦 禁止 不冬 NP₂乙 令是-’였다. 다만 이 구문 구조는 “大明律直解”에 한 번도 사용되었다.

‘引用 構文’의 분석은 話法 構文에서의 인용 구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모문의 서술어가 화법 동사가 아닌 ‘爲-’인 구문에 한하였다. “引用 構文”에는 인용 보문의 서술어가 ‘是如’인 경우와 ‘亦’인 경우가 있었다. ‘是如’가 인용 보문 서술어로 쓰였을 때는 인용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으로, ‘亦’이 인용 보문 서술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간접 인용 구문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大明律直解”에서만 찾아지는 매우 특이한 용법인 ‘爲乎事’도 다루었다. ‘爲乎事’는 본래 명사구로서 서술어가 아니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를 서술어처럼 사용하였다.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한 명사구로는 ‘爲乎事’, ‘爲行臥乎事’, ‘是乎

事’, ‘令是乎事’, ‘無乎事’, ‘使內乎事’ 등이 있었다. 이들은 반드시 문장의 끝에서만 서술어로서 기능한다는 제약을 받았다.

한편, ‘爲乎事 構文’에서는 수사(Numeral)가 놓이기도 하였다. ‘爲行臥乎事’가 구문의 종결에서 서술어로 쓰인 구문에는 ‘~하도록 ~하였던 일이다’로 해석되는 구문이 있었다. 이때 구문 구조는 ‘VP爲只爲 VP爲行臥乎事’가 되었다.

‘是乎事’도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令是乎事’도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無乎事’도 ‘이 세상에 없는 일’ 또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확대의미로써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使內乎事’도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상으로 우리는 “大明律直解”의 구문 분석을 통하여 단면적이거나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 구문 구조와 구문상 특징을 엿보았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많은 자료의 발굴과 함께 이루어질 15세기 이전의 국어구문 연구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15세기 이후의 국어구문 연구에 있어서도 바탕이 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서울: 한신문화사, p.26.
- 강성일(1966). “大明律直解 吏讀索引,” 「국어국문학」 31.
- 강 영(1998).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末語尾 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pp.8- 55.
- 고재설(1988). 「국어의 합성동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재설(1999). “동사 ‘하-’와 형용사 ‘하-’,” 「국어학」 33, 국어학회, p.146.
- 고정의(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137.
-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p.223-252.
- 김귀화(1994). 「국어의 격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기혁(1989). “국어문법에서 격의 해석,” 「말」 1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pp.5-52.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형태·통어론-」. 서울: 박이정.
- 김두황(1994). 「朝鮮朝 初期의 吏讀研究」-“大明律直解”와 ‘養蠶經驗撮要’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97-187.
- 김민수(1970). “국어의 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8·49 합본호, p.65.
- 김상대(1993). 「口訣文의 研究」. 서울: 한신문화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탐출판사, pp.335-336.
- 김영희(1974). “‘와’의 양상,” 「국어국문학」 65·66.
- 김영희(1978). “삽입절(parentheticals)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 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pp.21-58.
- 김영희(1981). “간접 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기능,” 「한글」 173-74, 한글학회, pp.153-191.
- 김영희(1986). “복합 명사구, 복합 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193, 한글학회, pp.47-77.
- 김영희(1999). “사격 표지와 후치사,” 「국어학」 34, 국어학회, pp.31-58.
- 김완진(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語學研究」 6-2, pp.1-10.

- 김의수(1999). “자립격(Default Case)으로서의 대격 가능성 시고,”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 어학회, pp.987-1018.
- 김정아(1993). 「15세기 국어의 비교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은(1991). “국어에서 주어가 조사없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하여,” 「한글」 212, 한글학회, pp.69-87.
- 김지은(1998).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1, 국어학회, p. 374.
- 김태균(1968). “大明律直解 吏讀註解,” 「京畿」 3, 경기대학교.
- 김태균(1971a). “大明律直解 吏讀 形態分類,” 「京畿大論文集」, pp.57-107.
- 김태균(1971b). “大明律直解에 있어서의 時制研究,” 「文教部」.
- 김태균(1972). “大明律直解에 있어서의 ‘在’의 용법,” 「論文集」 6, 경기대학교.
- 김태균(1975). “養蠶經驗撮要의 吏讀註解,” 「京畿大論文集」, pp.119-137.
- 남기심(1973). 「국어완형 보문법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pp.75-89.
- 남기심(1990). “토씨 ‘와/과’의 쓰임에 대하여,” 「東方學志」 66, pp.221-239.
- 남풍현(1971). “十五世紀 文獻에 나타난 中國語의 文法的 影響과 呼應關係 形成에 대한 考察,” 「논문집」 5, 한양대학교, pp.53-77.
- 남풍현(1972a). “15世紀 國語의 漢字語 借用攷,” 「國語學論集」 5·6 합본,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pp.3-22.
- 남풍현(1972b). “‘杜詩諺解’ 註釋文의 “-로”에 대한 考察 -國語에 미친 漢語의 文法的 影響를 中心으로-,” 「論文集」 6, 단국대학교, pp.7-30.
- 남풍현(1973). “‘杜詩諺解’ 註釋文의 文法的 考察,” 「동양학」 3, 동양학 연구소, 단국대학교, p.75-126.
- 남풍현(1974a). “13世紀 奴婢文書와 吏讀,” 「論文集」 8, 단국대학교, p.15.
- 남풍현(1974b). “古代國語의 吏讀表記,” 「東洋學」 4, 단국대학교.
- 남풍현(1976). “國語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pp.55-81.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 「學術論叢」 6, 단국대학교 출판부, p.62.
- 남풍현(1992). “古文書의 吏讀 解讀(柳墩功臣錄券을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5.
- 민현식(1982). “현대국어 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9, p.16.

- 박성중(1987). “大明律直解의 ‘旨是絃 無亦’와 ‘旨是絃以’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pp.239-259.
- 박성중(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94-325.
- 박순함(1970). “‘격문법’에 입각한 국어의 ‘겹주어’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6-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11-31.
- 박승빈(1935). 「朝鮮語學 講義要旨」. 경성: 조선어학 연구회.(1978. 역대 한국문법 대계, 탑출판사)에 재록, pp.100-102.
- 박승빈(1937). 「簡易 朝鮮語 文法」. 경성: 창문사.(1978. 역대 한국문법 대계, 탑출판사)에 재록, pp.77-78.
- 박양규(1980). “主語의 省略에 대하여,” 「국어학」 9, 국어학회, pp.1-25.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 4, pp.117-145.
- 박희숙(1982). “大明律直解 吏讀文에 관한 研究,” 「論文集」 10, 관동대학교, pp.1-20.
- 박희숙(1984).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7-203.
- 배대운(1984). 「朝鮮朝初期의 吏讀助詞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대운(1988). “이두부사 어휘고,” 「배달말」 13, 경상대학교, pp.67-122.
- 배대운(1989). “이두명사 어휘고,” 「배달말」 14, 경상대학교. pp.107-138.
- 배대운(1997). 「吏讀用言의 活用語尾研究」. 서울: 형설출판사, p.23.
- 배대운(2003). 「역대 이두사전」. 서울: 형설출판사.
- 배희임(1999). “중기국어의 격,”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p.612.
- 서정목(1993). “계사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안병희 선생 회갑 기념논총」.
- 서정목(1994). “국어 경어법의 변천,” 「국어 통사 구조 연구 I」. 서강대학교 출판부, pp.253-290.
- 서정목(1998).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 서울: 태학사.
-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pp.277-304.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pp.57-94.

- 서정수(1992). “기능동사 ‘하-’에 대한 재론,” 「말」 1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 나무, pp.599-604.
- 서종학(1993). “高麗時代의 吏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문학과 지성사, pp.33-44.
- 성광수(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현상에 대하여,” 「문법연구」 1.
- 성광수(1977). 「국어조사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광수(1981). “타동성 목적어와 중목적어 -목적어 중출에 대한 재검-,” 「어문논집」 22, pp.115-127.
- 성광수(1997). “국어 격중출현상의 원인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학논고」.
- 성광수(1998). “國語 格體系의 變遷과 格標識,” 「고려대사대논집」 22, p.171.
-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이유,” 「주시경 학보」 11, 주시경 연구소, p.145.
- 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국어학회, pp.231-258.
- 시정곤(1998). “국어의 부정어와 어휘분해,”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p.220.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 문법연구회.
- 신현숙(1982). “목적격 표시 ‘를’의 의미연구,” 「언어」. 한국언어학회.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서울: 집문당.
-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국어학회, pp.45-47.
- 안병희(1966). “부정격(Casus Infinitus)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성균관대학교 동아문화 연구소.
- 안병희(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東洋學」 7, 단국대학교, pp. 3-22.
- 안병희(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東方學志」 38, pp.57-62.
- 안병희(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奎章閣」 9, pp.1-22.
-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國語學研究選書」 11, 서울: 탐출판사, pp.9-10.
- 안병희(1992). 「國語史 研究」.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339-382.
- 양정석(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p.18.
-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pp.114-120.

- 우순조(1997).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pp.247-250.
- 유구상(1983). 「국어의 주제조사 {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유동석(1984).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pp.119-144.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p.88.
- 유동석(1998). “국어의 격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pp.307-337.
- 유형선(1995). “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유형선(1999). “이중주격구문의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p.718.
- 이강로(1984). “인칭매김법 ‘-在(-견)’에 대한 연구 -대명물직해를 중심으로-,” 「한글」 184, 한글학회, pp.3-52.
- 이관규(1999). “조사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pp.293-306.
- 이광호(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pp.54-191.
- 이광호(1991). “격조사 ‘로’의 기능통합을 위한 시론,” 「문법1」. 서울: 태학사, pp.115-145.
- 이기문(1989). “古代國語 研究와 漢字의 새 김 問題,” 「진단학보」 67, 진단학회, p.98.
- 이남순(1984). “피동과 사동의 문형,” 「국어학」 13, 국어학회, p.75.
- 이남순(1987a). 「국어의 격표지 생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남순(1987b).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p.594.
-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서울: 탑출판사, pp.11-37.
- 이남순(1998). 「격과 격표지」. 서울: 월인, pp.219-267.
- 이동석(1999). “‘-와/-과’의 성격과 기능 분화에 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pp.909-939.

- 이상복(1975). “‘하다’ 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6, pp.131-141.
- 이상복(1986).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pp.132-149.
- 이석주 외(1994).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132.
- 이승녕(1969). “주격중출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어문학」 20.(1999. 문법II)에 재록, pp.13-35.
- 이승욱(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어학논집」 3, 단국대학교.
- 이승재(1989). 「高麗時代의 吏讀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7-131.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국어학회, 서울: 태학사, p.131.
- 이승재(1995).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高麗時代 楞嚴經(朴東燮·南權熙本)」(口訣資料叢書一), 서울: 태학사.
- 이익섭·임홍빈(1983). 「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pp.144-169.
- 이창덕(1984). 「동사 ‘하’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필영(1982). “조사 ‘가/이’의 의미 분석,” 「관악어문연구」 7, pp.417-431.
- 이현희(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신구문화사, pp.16-485.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서울대학교, p.86.
- 임홍빈(1974). “‘로’와 選擇의 樣態化,”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pp.143-159.
- 임홍빈(1979). “用言의 語根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 4-2, pp.55-76.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p.32.
- 임홍빈 외(2002). 「한국어 구문 분석 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pp.239-258.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연찬(1984). “中世國語의 한 助詞 ‘-으란’에 對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pp.1-31.
- 정원수(1989). “‘X+ 하’ 유형의 어형성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6, 충남대학교, pp.285-319.
- 정인상(1980). “현대국어의 주어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4, pp.42-55.
- 채 완(1976). “조사‘-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pp.93-113.
- 채 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p.2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pp.381-657.

- 최호철(1999). “조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p.329.
- 하길중(1999). “비교격에 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 서울: 월인, pp.797-820.
- 하치근(1988). “국어 접미사의 유형 분류,” 「한글」 199, 한글학회, pp.27-45.
- 한상인(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64-157.
- 한상인(1998). 「朝鮮初期 吏讀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보고사.
- 한정환(1994). “「[XP] 하-」 구성의 논리형태와 격,” 「한국어학」 1, pp.445-480.
- 한재영(1996). 「十六世紀 國語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pp.182-348.
- 홍사만(1976). “국어 Postposition의 하위분류,” 「동양문화연구」 3.
- 홍순탁(1974). 「吏讀研究」. 광문출판사.
- 홍윤표(1990). “격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동아출판사, pp.221-232.
- 홍윤표(1991). “方向性 表示의 格,” 「문법 I」. 서울: 태학사, p.97.
- 홍윤표(1999). “도구격 조사,” 「문법 II」. 서울: 태학사, pp.65-103.
- 홍재성(1997). “이동동사와 기능동사,” 「말」 2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p. 131.
- 홍종선(1999). “생성문법과 국어의 격,”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pp.99-112.
- 법제처(1964). 「大明律直解」. 法制資料誌 第13輯.
- 중추원(1936). 「李朝法典考」. 京城: 朝鮮總督府.

부 록

1. 본문 이두색인¹⁵²⁾

1) 이두

* 更良(가식아) : 다시

가늑여<典律3>

가식아<儒必, 吏襍, 吏便>

가식여<才物1>

가시아<吏師>

가스야<吏文2>

가식아<羅麗, 儒必, 吏文1, 典律1.2>

가식야<吏文1, 吏師>

가식여<我吏, 吏文2>

다식여<才物2>

다시<吏方>

다시익<語錄>

* 去等(거든) : 거든, -거든, -는데

* 故只(짐짓) : 고의로

* 庫直(고지기) : 창고지기

* 科科(츠츠) : 낱낱이, 조조이<典律2.3>

* 科科以(츠츠로) : 낱낱이, 조목조목

* 敎是 : 이시, 께서, 께옵서, -이신, -이옵신, -하신, -하옵신, -하옵실

152) 풀이는 장세경(2001)을 주로 따랐다. 본문에서의 讀音 역시 장세경(2001)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讀音이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讀音의 차이는 문제삼지 않는다.

“大明律直解”의 이두에 대해서는 김태균(1968), 박희숙(1982, 1984), 안병희(1985), 고정익(1992, 2003), 한상인(1993), 김두환(1994), 박성중(1996)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샐<吏襍>

이시<語錄, 典律1.2.3>

알들<羅麗, 我吏, 語錄, 儒必, 吏文1, 吏方, 吏師, 吏襍, 吏便, 才物1.2, 典律1.2.3>

* 敎是去等(이시거든) : -이시거든, -하옵시거든, 이옵심이거든, 하옵시거든, 하옵심
이거든

* 及(및쳐) : 및, 이쳐

* 歧等如(가르트리) : 나누는대로

가로드러<吏便>

가로러<吏師>

가르터러<語錄>

가르트리<典律3>

가르트리<典律1.2>

* 己只(씩지) : 까지

* 段(판) : -은/는, -인즉, -판은

단<吏便>

단은<語錄>

판<吏文1>

판은<吏師>

* 當爲(당햏여) : 대햏여, 당햏여

다햏여<儒必>

당햏야<吏便>

* 當爲在乙良(당햏견으란) : 당햏거들랑, 당햏 것을랑

* 斗尺(말치) : 말잡이(양곡의 수량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 等(들) : 들, 무리, 마는, 바를, 거든, 든지

* 等亦(이여) : -들이

* 습是去乙(시기거늘) : 시키거늘, 명령햏거늘

* 습是遣(시기고) : 시키고, 명령햏고

* 습是果(시기와) : 시킨 이와

* 습是敎矣(시기샤되) : 시키시되

* 습是脡(시기며) : 시키며

- * 令是如可(시기다가) : 시키다가
- * 令是臥乎(시기누운) : 시키는
- * 令是臥乎事(시기누운 일) : 시킬 일, 시키는 일
- * 令是在(시기견) : 시킨, 시킨인
- * 令是在果(시기견과) : 시키거니와
- * 令是在隱(시기 견은) : 시킨 것은, 시킨 일은, 시킴은
- * 令是在乙良(시기견으란) : 시킨 것을랑, 시키거들랑
- * 令是在乙良置(시기 견으란두) : 시킨 것을랑도, 시킨 것이라도, 시켰을지라도
- * 令是齊(시기져) : 시키다, 시킴, 시킬 일
- * 令是乎事(시기온 일) : 시킬 일, 시킨 일
- * 令是乎所無去等(시기온 바 없거든) : 시킨 바 없거든, 시킨 바가 없는데
- * 令是乎矣(시기오되) : 시키오되, 명령하오되, 시키더라도, 시키지마는, 명령하더라도, 명령하지마는
- * 望白齊(바라습제) : 바라웁니다
- * 無(어오) : 없다
- * 無去等(업거든) : 없거든
- * 無去乙(업거늘) : 없거늘
- * 無亦(업스른견이여) : 없이, 없다고, 없어요, 없으므로, 없기에
 어로오견이여<我吏>
 어오론견이여<吏師>
 어오이여<儒必>
 업스른견이여<吏襟>
 업스른견이여/이<儒必>
- * 無亦在(어오이여견) : 없은, 없었는, 없다고 하는
- * 無在乙(업견을) : 없거늘, 없는 것을
- * 無在乙良(업견으란) : 없거들랑, 없는 것을랑
- * 無乎事(어오론 일) : 없는 일, 없을 일
 무온일<吏便>
 어오로일업다<典律2.3>
 어오론<我吏>
 어오론일<吏文2, 吏師>

어오른일업다<典律1>

업스온일<儒必>

업스온스<語錄>

업스온일<吏襍>

헉시온일<儒必>

* 茂火(더부러) : 더불어, 다려

더부러<我吏, 語錄, 吏便>

더부러<吏方>

더부러<典律3>

더불어<典律1.2>

더브러<吏師>

더블이<吏襍>

지복너<儒必>

* 門直(문지기) : 문지기

* 白俵(숯다) : 고백하고 다짐두다

숯다<語錄>

숯다<典律1.3>

숯디<吏便, 典律2>

* 犯斤(버금) : 버금

* 別乎(별오) : 분담, 버름, 별러, 분배

버름<我吏, 吏文2, 吏師>

버름<儒必>

버림<吏文1>

버름<羅麗>

별노<羅麗>

별로<吏便>

별롱<吏方>

별옴<儒必, 吏襍, 典律1.2.3>

별옴<語錄>

다리<吏方>

* 並(값) : 아울러

값<儒必>

* 并以(아오로) : 아울러, 함께, 모두

아오로<儒必, 吏文1.2, 吏師, 吏襍, 吏便, 典律2>

아으로<羅麗>

으오로<典律3>

* 并只(다무기) : 모두, 함께

다모기<儒必, 羅麗, 吏襍, 吏便, 典律3>

다목기<典律2>

다무기<儒必>

다므기<吏文2>

* 並只(다무기) : 모두

다모기<我吏, 語錄, 儒必, 才物1.2>

다목기<典律1>

다므기<吏文1, 吏師>

아오로<典律1>

아을우지<吏方>

* 捧上(받자) : 받아들이다, 수입하다

받자<吏師>

받자<儒必, 吏文1.2, 吏方, 吏襍, 典律1.2>

받자<我吏>

받즈<語錄, 典律3>

* 逢音(맞춤) : 마침

* 分是遣(뿐이고) : 뿐이고

* 不冬(안더, 안들) : 아니, 아니하다

안더<吏文1>

안들<語錄, 儒必, 吏文2, 吏方, 吏師, 吏便, 典律1.2.3>

알든<儒必>

알든<吏襍>

앗들<我吏>

* 不得(모질) : 못, 못한다

모딜<吏便, 典律2>

모지<我吏>

모질<羅麗, 語錄, 儒必, 吏文1, 吏師, 吏襍, 典律1>

므딜<典律3>

모잘<吏便>

* 不得爲在(못질ㅎ견) : 못 한, 못하고 있는

* 不得已(부득이) : 부득

* 不喻(아닌디) : 아니, 아니다, 아니라

아닌디<吏便>

아닌지<羅麗, 儒必, 吏方, 才物1>

아인지<語錄>

안닌지<才物2>

* 不喻去等(아닌디거든) : 아니거든, 아니면, 아니라면

* 不喻良置(아닌디라두) : 아니라도, 아닐지라도, 아닌 것이라도

* 不喻齊(아닌디제) : 아니다, 아님, 아닌 것이다

* 不便亦(불편히) : 불편히, 부당하게

* 使內遣(브리고) : 시키고, 행하고, 쓰고, 부리고

* 使內不冬爲良置(브리 안들 ㅎ야두) : 쓰지 아니하여도, 시키지 아니하여도, 행하지 아니하여도

* 使內不冬爲在乙良(브리 안들 ㅎ견으란) : 시키지 아니 한 것을랑, 시키지 아니 하
거들랑, 쓰지 아니했으나, 쓰지 아니한 것이나, 행하지 아니 했
으나, 행하지 아니 한 것이나

* 使內不得爲只爲(브리 못질ㅎ기삼) : 하지 못하도록, 시키지 못하도록, 쓰지 못하도
록

* 使內如可(브리느드가) : 부리다가, 시키다가, 쓰다가, 부리다가

* 使內臥乎(브리누온) : 시키는, 쓰는, 부리는, 행하는

* 使內在(바리느견) : 부리는, 행한, 부린, 부려진, 시킨, 시켜진, 쓴, 쓰인, 부른, 싣
은

* 使內在乙良(브리견으란) : 한 것을랑, 쓴 것을랑, 시킨 것을랑, 시키거들랑, 썼거
들랑, 했거들랑

* 使內齊(브리제) : 시키고(라/다), 시킨다. 시켜라, 쓴다, 써라, 행한다. 행하여라

* 使內只爲(바리느기삼) : 부리도록, 시키도록, 쓰도록, 하도록

- * 使內乎事(바리온 일) : 시키온 일, 쓰온 일, 하온 일
바리온일<儒必>
- * 使內乎所(브리온 바) : 시키온 바, 쓰온 바, 하온 바
- * 使內乎矣(브리오뒤) : 시키옵되, 쓰옵되, 하옵되
- * 私音丁(아름더) : 사사로이
- * 私丁(아름더) : 사사로이
- * 隨去(쫓거) : 쫓아가다
- * 須只(모로미) : 모름지기
- * 是去乃(이거나) : 이거나, 아무렇거나 가리지 않는 뜻
이거나<語錄, 儒必, 吏襍>
- * 是去等(이거든) : -이거든, -이었는데
이거든<語錄, 儒必, 吏襍>
- * 是去乙(이거늘) : -이거늘
이거늘<儒必, 吏便, 才物1.2>
이거늘<語錄>
이거늘<儒必>
- * 是沙(이사) : -이야만은, -이야, -이야말로
이스<儒必>
- * 是良尔(이야금) : -이기에, -인 만큼, -이니만큼, -이므로
이야금<儒必 吏師, 吏襍, 吏便, 典律2.3>
이야며<語錄>
- * 是良置(이라두) : -이어도, -이라도
이라두<語錄, 儒必, 吏襍>
이라드<儒必>
- * 是如 : -이다(이라고), -이라는
이다<羅麗, 我吏, 語錄, 儒必, 吏文1.2, 吏師, 吏便>
- * 是如爲拏(이다ㅎ며) : 이라고 하며
- * 是臥乎(이누온) : -한, -인, -이온
- * 是臥乎事是良尔(이누온 일이야금) : -이온 일인 만큼, 이온 일이므로, 이온 일이기에
- * 是爲(이(ㄷ)ㅎ) : -이다 하여

- * 是乎事(이온 일) : -이온 일, -인 일
이온스<語錄>
- * 是乎所(이온ㅅ) : -이온 바, -인 바
이온ㅅ<儒必>
이온바<語錄, 典律1>
이온바<吏襍>
- * 是乎樣以(이온 양으로) : -인 양으로, -이온 양으로
이온양으로<吏便>
- * 式以(식으로) : 씩으로
- * 安徐(안서) : 아니
- * 樣以(양으로) : -양으로, 모양으로
- * 良中(아히) : -에, 에서, 에게, 곳을 보이는 토, 때를 보이는 토, 일에 관계를 말하는 토, 남에게 대하여 영향을 주는 토 다아외<語錄>
아에<羅麗>
아의<吏方, 才物2>
아히<吏襍>
아히<儒必, 吏文1, 吏師, 吏便, 典律1.2>
으히<典律3>
- * 良中沙(아히사) : 에야
아히사<我吏, 羅麗, 語錄 吏文1.2, 吏師, 吏便, 典律1.2>
아히스<儒必, 典律3>
- * 良中乙良(아히으란) : 곳에설랑
- * 亦(이여/여) : 이/가, 라고, 부사과생접사 ‘-히’, -여, -어요, -야요, -여라, -고, -라고
여<儒必, 吏襍>
이여<吏襍>
- * 亦爲(어햐) : -이라 하여, -라고 하고
- * 亦中(여히) : -에, -에게, 때에, 기회에, 경우에
여히<儒必>
- * 亦中乙良(여히으란) : -에 켜랑, 때엘랑, 경우엘랑
- * 臥平事(누온일) : -는 일<儒必>

- * 用良(쓰아) : 써서, -로써, -을 말미암아, -을 따라서
 쓰아<典律1>
 쓰아<吏便, 典律3>
 써아<典律2>
- * 用使內在乙良(써 버리견으란) : 써 버린 것을랑, 써 버리거들랑, 쓰거들랑
- * 用使爲在乙良(써보헝견으란) : 사용한 것을랑
- * 右(니미) : 위
- * 云(니르) : 말하-
- * 爲去(헝가) : -할까, -한가
- * 爲去乃(헝거나) : -하거나
- * 爲去等(헝거든) : -하거든, -하다면, -한데, -하였는데
 헝가든<吏便>
 헝거든<我吏, 儒必, 吏文2>
 헝결든<吏文2, 吏師>
 헝결등<吏文1>
- * 爲去沙(헝거사) : -하여야만, -하여야, -했어야, -했어야만, -한 것이라야, 한 것
 이라야만
- * 爲遣(헝고) : -하고
 헝고<羅麗, 語錄, 吏便>
- * 爲等如(헝트리) : 통틀어, 합하여, 모두, 다
 헝트리<吏文1, 吏師>
 하더라<典律3>
 허트리<羅麗, 儒必, 吏襟>
 허틀어<才物2, 才物1>
 헝드리<吏文2>
 헝드리<語錄>
 헝르려<吏便>
 헝트려<典律1.2>
- * 爲良(헝아) : -하여, -하여라<吏便>
- * 爲良沙(하아사) : -하여야만, -하여야
 헝아사<吏便>

- * 爲良音可(ㅎ얌측) : -함직하다, -하얌직하다, -할 만하다
- * 爲良在等(ㅎ얏겨든) : -하였거든, -하였다면, -한 것이거든, -한 것이었는데
- * 爲良在乙(ㅎ얏겨늘) : -하였거늘, -한 것을
- * 爲良置(ㅎ야두) : -하여도
 - ㅎ야두<我吏, 吏文2, 吏師, 吏襍>
 - ㅎ야두<儒必>
- * 爲拊 : 하며
 - 허며<語錄>
 - ㅎ며<羅麗, 儒必, 吏便>
- * 爲白遣(ㅎ웁고) : -하시웁고, -하웁고
 - ㅎ웁고<我吏>
 - ㅎ웁구<吏襍>
 - ㅎ웁고<語錄, 儒必, 吏師, 吏便>
 - ㅎ웁고<吏文2>
 - ㅎ웁고<羅麗>
 - ㅎ웁고<才物1>
 - ㅎ웁고<才物2>
 - ㅎ웁고<吏文1>
- * 爲如加(ㅎ다가) : 하다가
- * 爲如乎 : -하다고 하므로, -하다고 하기로, -하다는, -하였다는, -하더니
 - 이든온<羅麗>
 - ㅎ다운<吏便>
 - ㅎ든온<羅麗>
- * 爲如乎等用良(ㅎ다운들쓰아) : -하던 것으로써, -하다는 줄로써, -하다는 바
 - 로써
 - ㅎ누온들노써 <吏文2>
 - ㅎ누온들 <吏師>
- * 爲臥乎 : -하논, -하는
 - ㅎ누온<我吏, 儒必, 吏文1.2, 吏師, 吏便>
- * 爲臥乎等用良(ㅎ누온들쓰아) : -하는 바로써, -하다는 줄로써
- * 爲臥乎事 : -하는 일

ᄃ누온스<語錄>

ᄃ누온일<儒必, 吏襍>

* 爲臥乎事段(ᄃ누온 일썬) : -하는 일판은, -하는 일인즉

* 爲臥乎所(ᄃ누온 바) : -하는 바

* 爲要(ᄃ라고) : 하려고

* 爲有去乙(ᄃ잇거늘) : -하였거늘

ᄃ잇거늘<羅麗, 我吏, 儒必, 吏文2, 典律2.3>

ᄃ인가늘<吏文1>

ᄃ잇거늘<吏便>

하잇거늘<典律1>

ᄃ잇거을<語錄>

* 爲有遣(ᄃ잇고) : -하였고

* 爲有如(ᄃ잇다) : -하였다는, -하였다, -하였다고

* 爲有如可(ᄃ잇다가) : -하였다가

ᄃ잇다가<吏便, 典律1.2.3>

* 爲乙去(ᄃ가) : -할까,

* 爲在(ᄃ견) : -한, -하는, -한 것

ᄃ견<儒必, 吏便>

* 爲在乃(ᄃ견나) : -한 것이나, -한 것이지마는

ᄃ거나<儒必>

* 爲在隱(ᄃ견은) : -한 것은

* 爲在乙(ᄃ견을) : -한 것을, -하거늘, 한 것이거늘

ᄃ거늘<羅麗, 我吏, 儒必, 吏文1, 吏便, 典律1>

ᄃ거를<吏師>

ᄃ거을<吏師2>

ᄃ누온바<羅麗, 儒必, 吏襍, 吏便, 典律1.2.3>

* 爲在乙良(ᄃ견으란) : -하거들랑, -한 것을랑

* 爲在乙用良(ᄃ견을 쓰아) : -한 것으로써

* 爲齊(ᄃ저) : -한다, -할 일(이다), -하라, -한다

ᄃ저<羅麗, 儒必, 吏襍>

ᄃ제<語錄, 儒必, 吏便>

- * 爲只 : -한들, -하여
 ㅎ기<吏便>
- * 爲只爲(ㅎ기암) : -하도록, -하기 위하여
 ㅎ기삼<吏師, 吏襍>
 ㅎ기심<吏文2>
 ㅎ기습<儒必>
 ㅎ기암<我吏, 儒必, 吏文1, 吏便>
 ㅎ기위<語錄>
- * 爲行(ㅎ닌) : -하는, -하 있다, -하였다
- * 爲行如(ㅎ닌다) : -하였다는, -하였다고, -하였다가
- * 爲行如可(ㅎ녀다가) : -하였다가
 하녀다가<吏文1.2>
 ㅎ녀짜가<吏師>
 ㅎ더다가<羅麗>
 ㅎ라다가<典律3>
 ㅎ려다가<語錄, 吏便, 典律1.2>
 ㅎ여나가<儒必>
 ㅎ여짜가<吏襍>
 ㅎ엿다가<儒必>
- * 爲行臥乎(ㅎ닌누온) : 하였는
- * 爲行臥乎事(ㅎ닌누온 일) : -하였는 일, -한 일
- * 爲乎(ㅎ온) : -하기에, -하므로, -하온, -한, -하올, -할
 허호<吏方>
 ㅎ온<羅麗, 我吏, 語錄, 儒必, 吏文1.2, 吏師, 吏便, 典律1.2.3>
- * 爲乎等用良(ㅎ온들쓰아) : -한 바로써, -한 줄로써
 ㅎ온들쓰아<吏便>
- * 爲乎事(ㅎ온 일) : -하온 일, -할 일, -하올 일
 ㅎ온일<吏便>
- * 爲乎所(ㅎ온 바) : -하온 바, -하올 바, -한 바, -할 바
 하온바<吏便>
 ㅎ온바<羅麗, 我吏, 儒必>

- ㅎ온배<吏文1.2, 吏師>
- * 爲乎樣以(ㅎ올 양으로) : -하올 양으로, -한 양으로
 양으로<羅麗>
 ㅎ오량으로<典律2>
 ㅎ온양으로<我吏, 語錄, 儒必, 吏文2, 吏師, 吏襟, 典律1>
 ㅎ올양으로<典律3>
 - * 爲乎爲(ㅎ온삼) : -하려고, -하온 성, -하온 듯, -하기 위하여
 - * 爲乎喻(ㅎ온디) : -하온지, -하올지, -하온 것<吏便>
 - * 爲乎喻去等(ㅎ온디거든) : -하온 것이거든, -하올 것이거든, 하온 것이면, -하온 것이거든, -하온 것인데, -하온 것인 바에
 - * 爲乎矣(ㅎ오딕) : -하오되, -하되, -하옵되
 ㅎ오딕<羅麗, 吏師>
 ㅎ오되<吏便>
 ㅎ오딕<我吏, 儒必>
 ㅎ온딕<吏文1.2>
 - * 有 : 어떤, 있다, 가졌다, -았, -었, -였
 - * 有去等(잇거든) : 있거든, 있으면, 있는데, -었거든, -었으면, -었는데
 - * 有去等沙(이시거든사) : 있거든이야, 있으면이야, -었거든이야, -었으면이야
 - * 猶亦(독혀) : 별도로, 따로, 특히
 - * 有在乙良(이시견으란) : 있거들랑, 있는 것을랑, -였는 것을랑, -였거들랑
 - * 唯只(아즉) : 오직
 아딕<吏文2>
 아즉<儒必>
 아직<吏師, 吏襟>
 오직<羅麗, 我吏, 語錄, 吏文1, 吏方, 典律2>
 - * 隱(은) : 은
 - * 乙(을) : -를/를, -늘
 를<吏襟>
 를<儒必, 吏文1>
 을<吏襟, 吏文1, 語錄, 吏師, 吏便>
 - * 乙良(으란) : 을랑, 은, 인즉

- 으란<吏文1, 吏師>
 을낭<我吏>
 을쇼이<吏方>
 을아<吏便>
 을안<儒必, 吏文1.2, 吏襟, 典律1.2.3>
- * 乙良置(으란두) : -일지라도, -이라도, -까지도
 * 乙用良(을쓰아) : -으로써, -을 말미암아
 을쓰아<語錄, 吏便>
 을쓰와<我吏>
- * 矣
 듀비<吏方>
 의<語錄>
- * 依良(싸라) : 따라
 * 而(마른) : -지만
 * 以(로) : -로
 로<儒必, 吏文1, 吏師, 吏襟>
 으로<儒必, 吏文1, 吏師, 吏襟>
- * 弋只(이기) : 이/가
 가이<羅麗>
 과걸리<羅麗>
- * 因干(지즈로) : 말미암아
 * 仍干(즈출우) : 말미암아, 인하여, 까닭으로, 탓으로
 즈출우<吏方>
 지즈로<我吏, 儒必>
 지즈루<羅麗>
- * 自以(스스로) : 스스로
 * 在白敎是良置(견습이시라두) : 겨웁실지라도, 겨웁심일지라도
 * 的是(마기) : 확실하다, 정확하다
 * 的實(적실) : 확실하다, 정확하다
 * 全亦(전여) : 오로지
 * 傳傳(전전) : 차례차례, 차차

- * 齊(제) : 하라
- * 曾只(일즈기) : 일찍이
- * 知想遣(알녀기고) : 알아차리고
- * 知想是遣(알녀기고) : 알아차리고, 알다
- * 知想只遣(알녀기고) : 알아차리고, 알아 여기고
- * 知想只在乙良(알녀기거을랑) : 알아차리거들랑
- * 知想只乎矣(알녀기오되) : 알아차리되
- * 持是弥(디니며) : 지니며, 가지며
- * 旨是絃(맞이시울) : 上命
- * 旨是絃以(맞이시울로) : 상명에 따라
- * 知乎不冬(알음 안들) : 모르게 하다, 알리지 아니하다
- * 直亦(곧) : 곧, 바로
- * 進去(나아가) : 나아가다
- * 進使內(나사브리) : 나서다, 나서서 행동하다
- * 進叱 :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
 - 나드지<儒必>
 - 낫드괴<吏襍>
 - 낫드러<我吏, 吏語, 儒必, 吏師>
 - 낫들잇<吏便>
 - 닛드괴<吏文2>
- * 進叱有臥乎(낫드러이시누운) : 나아가간, 나아갔는, 진행한
- * 進叱有在(낫드러잇견) : 나아가간, 잘 되어 간, 진행된
- * 叱段(쑤) : -판은, -인즉
- * 次良中(차아히) : 차에
- * 次知(차지) : 책임자, 사무를 담당한 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
- * 初亦(초혀) : 처음에, 처음으로
 - 초여<羅麗>
 - 초혀<吏襍>
 - 초혀<儒必, 吏文1>
 - 초여<吏便>
- * 推考(추고) : 죄인을 신문하여 물음

- * 趣便以(취편으로) : 제 마음대로
- * 巴只(ㄷ록) : 까지
- * 必于(비록) : 비록
바록<儒必>
- * 向入(앗드리) : 생각하다, 생각되다, 미리 예측하다
안들이<語錄, 典律1.2.3>
알들<吏方, 羅麗, 我吏, 儒必, 吏文2, 吏師, 吏襍, 吏便>
앗드리<我吏>
앗드리<儒必, 吏文1.2>
앗드저<我吏>
잇드리<吏便>
- * 向入在乙良(안드려견으란) : 생각들었거들랑, 마음먹었거들랑, 마음먹은 것을랑,
생각하는 것을랑
- * 行臥乎如(헝 닌누온다) : 하였다고
- * 行下(헝차) : 지시

2) 한자어

- * 看審 : 자세히 보아 살핌
- * 工錢 : 물건을 만든 것에 대한 품삯
- * 過越 : 넘어가다
- * 關津 : 관문 나루
- * 權攝 : 임시 직무대리
- * 起送 : 죄수호송
- * 待候 : 기다림
- * 蠱毒 : 毒蟲의 毒
- * 妄作 : 주책없는 행동
- * 文卷 : 공문서
- * 物色 : 물품 · 물건

- * 報狀 : 보고 공문
- * 俯伏 :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 * 斜用 : 마음대로 자기 용도로 충당하는 것
- * 事狀 : 백성이 관아에 제출한 청원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끝에 쓰는 말
- * 色掌(=色員) : 담당 직원
- * 宣喚 : 왕이 명을 내려 부름
- * 總麻 : 五服의 한 種類로 3個月 동안 입는 옷으로서 삶아 익힌 약간 고운 베로 지은 喪服이다
- * 修設 : 연회를 베풀
- * 承差 : 민간에서 선임하는 지방의 네 종류 吏員의 하나(書吏, 承差, 典吏, 攢典)
예문에서는 출장명령을 받은 承差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 試取 :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음
- * 實庫 : 熟作
- * 閱實 : 실지조사
- * 用下 :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 * 委官 : 임시 재판장
- * 依憑 : 의지하고 기댐
- * 作弊 : 꾀를 끼침
- * 齋醮 : 중이나 도사가 단을 설치하고 재를 올림
- * 主掌貪吏 : 맡아지키는 자
- * 重記 : 사무 인계를 할 때에 전하는 문서
- * 進來 : 잡아 옴
- * 陳損 : 荒作
- * 推 : 다른 일로 핑계함
- * 親管處 : 직접 소관에 해당하는 곳
- * 罷職不叙 : 파면하고 다시 임용하지 않음
- * 轄處所 : 문서로써 간섭을 할 수 있는 곳
- * 還退 : 저당물 찾기
- * 驗實 : 사실을 따지며 조사함
- * 現告 : 범죄 사실을 해당 관아에 즉시 알림
- * 顯跡 : 나타난 자취

2. 문헌색인

본 색인의 출전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1. <羅麗> : 羅麗吏讀(「古令釋林」 권40 附錄 外篇). 1789
2. <我吏> : 「蒙隔」의 我東吏讀. 연대 미상
3. <儒必> : 「儒胥必知」. 19세 중엽
4. <吏文1> : 동국대본 「吏文」. 1658년
5. <吏文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吏文」(袖珍本). 연대 미상
6. <吏方> : 「五洲衍文長箋散稿」(권48) 語錄辨證說附錄의 吏讀方言. 현종때
7. <吏師1> : 고대본 「吏文大師」. 18세기 중엽
8. <吏語> : 「註解 語錄總覽」의 부록 吏文語錄. 1919
9. <吏濩> : 동양문고본 「吏文濩例」(국립도서관 영인본). 18세기이후?
10. <吏便> : 吏讀便覽(吏讀資料選集 所收). 1829
11. <才物1> : 규장각 「才物譜(萬物章才)」 夏物(권2)의 里讀
12. <才物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才物譜(萬物章才)」 夏物(권2)의 里讀
13. <典律1> : 규장각(奎4306) 「典律通補」 別編의 吏文(초고본). 1761
14. <典律2> : 규장각(奎1377) 「典律通補」 別編의 吏文(수정본). 1786
15. <典律3> : 규장각(古서5120-26-1) 「典律通補」 別編의 吏文(수정본). 1786
16. <月釋> 月印釋譜
17. <楞嚴> 楞嚴經諺解
18. <呂氏> 朱子增損呂氏鄉約
19. <杜解> 杜詩諺解
20. <六字>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21. <釋譜> 釋譜詳節
22. <金三> 金剛經三家解
23. <續三 孝> 續三綱行實圖
24. <蒙山> 蒙山法語諺解
25. <論語> 論語
26. <孟子> 孟子

3. 句法구조

‘NP₁亦 NP₂乙 知’
‘NP₁亦 NP₂乙 知想只-’
‘S爲乙去 知想只-’
‘NP₁亦 NP₂乙 知不得爲-’
‘NP良中 知不得爲-’
‘NP₁亦 NP₂亦中 知乎不冬’
‘NP₁乙 NP₂亦中 知乎不冬’
‘NP₁乙 NP₂良中 知乎不冬’
‘NP₁是沙 NP₂是如 白傖是-’
‘NP是如 云-’
‘NP₁矣 NP₃乙 NP₂矣 NP₃是如云-’
‘NP亦 稱云-’
‘NP亦 稱-’
‘NP是如稱 云-’
‘(NP₁亦) (NP₂乙) (NP₃良中) 現告爲-’
‘NP₁亦 NP₂亦 有-’
‘NP亦 NP良中 有-’
‘NP₁亦 NP₂亦 在-’
‘NP亦 在-’
‘NP₁亦 NP₂亦 在-’
‘NP₁隱 NP₂亦 在-’
‘NP亦 無-’
‘NP₁亦 NP₂亦 VP’
‘NP₁(叱)段 NP₂亦 無-’
‘NP₂亦 NP₁良中 無-’
‘NP乙 望白齊’
‘NP乙 向入-’
‘VP爲去 向入-’

‘VP爲乎矣 的是-’
 ‘NP亦 的是-’
 ‘NP乙 聞’
 ‘NP乙 見’
 ‘NP乙 食爲-’
 ‘NP亦中 VP令是-’
 ‘NP乙良 VP令是-’
 ‘NP是去等 VP令是-’
 ‘NP₁乙 NP₂(乙) 令是-’
 ‘NP₁亦 NP₂(乙) 令是-’
 ‘NP₁良中 NP₂乙 令是-’
 ‘NP₁乙 NP₂良中 VP令是-’
 ‘NP以 使內-’
 ‘NP乙用良 VP令是-’
 ‘NP乙 使內-’
 ‘NP₁乙 NP₂乙 使內-’
 ‘NP乙 當爲-’
 ‘NP良中 當爲-’
 ‘NP乙 推問爲-’
 ‘NP以 推問爲-’
 ‘NP乙 捕捉爲-’
 ‘NP亦 捕捉爲-’
 ‘NP乙 殺死爲-’
 ‘NP₁乙 (NP₂乙) 殺(死)爲-’
 ‘NP₁亦 (NP₂乙) 殺死爲-’
 ‘NP乙 傷爲-’
 ‘NP(果) 鬪爲-’
 ‘NP(亦) 鬪爲-’
 ‘NP₁亦 NP₂以 NP₃亦 NP₁乙 行姦爲-’
 ‘NP₁亦 NP₂乙 NP₃以 NP₁乙 行姦爲-’
 ‘(NP₁亦) NP₂乙 行姦爲-’

‘NP以 謀爲-’
 ‘NP乙 謀爲-’
 ‘NP亦 謀爲-’
 ‘VP爲只爲 謀爲-’
 ‘VP爲乎爲 謀爲-’
 ‘NP亦 逃爲-’
 ‘NP良中 逃爲-’
 ‘S(爲遣) 逃爲-’
 ‘NP良中 隱匿爲-’
 ‘S爲遣 隱匿爲-’
 ‘NP乙 隱藏爲-’
 ‘NP乙良 隱藏爲-’
 ‘NP良中 隱藏爲-’
 ‘VP爲(良) 隱藏爲-’
 ‘NP(爲遣) 隱藏爲-’
 ‘NP乙良 盜爲-’
 ‘NP亦 爲盜爲-’
 ‘NP乙 偷取爲-’
 ‘NP亦 偷取爲-’
 ‘NP(以[?]) 偷取爲-’
 ‘NP(良中[?]) 偷取爲-’
 ‘NP亦 冒弄爲-’
 ‘NP₁乙 NP₂ 冒弄爲-’
 ‘S 冒弄爲-’
 ‘NP是乎樣以 冒弄爲-’
 ‘NP以 論爲-’
 ‘NP良中 論爲-’
 ‘VP爲在乙良 論爲-’
 ‘VP爲去等 論爲-’
 ‘NP 勿論爲-’
 ‘VP爲在乙良 斬爲-’

‘VP爲去等 斬爲-’
 ‘NP是去等 斬爲-’
 ‘VP令是在乙良 斬爲-’
 ‘VP爲在乙良 斬爲-’
 ‘VP爲在乙良 絞死爲-’
 ‘VP爲去等 絞死爲-’
 ‘NP是去等 絞死爲-’
 ‘NP乙 坐罪爲-’
 ‘NP乙良 坐罪爲-’
 ‘VP爲在乙良 坐罪爲-’
 ‘VP爲良沙 坐罪爲-’
 ‘VP爲在乙 坐罪爲-’
 ‘S 不坐罪爲-’
 ‘NP亦 坐罪爲-’
 ‘NP乙良 坐罪爲-’
 ‘NP乙 當爲 生徵納官爲-’
 ‘NP₁乙 當爲 (NP₂乙) 生徵納官爲-’
 ‘NP以 生徵納官爲-’
 ‘NP乙良 生徵納官-’
 ‘Num 答爲-’
 ‘Num 杖爲-’
 ‘答爲 Num’
 ‘杖爲 Num’
 ‘答(杖) Num 爲-’
 ‘答(杖)爲-’
 ‘答(杖) Num’
 ‘NP乙 答(杖) Num 爲-’
 ‘NP乙良 答(杖) Num 爲-’
 ‘VP爲在乙良 答(杖) Num 爲-’
 ‘Num 答(杖)爲-’
 ‘VP爲乎矣 答(杖) Num 爲-’

‘答(杖) Num爲乎矣 VP爲-’
 ‘NP是去等 答(杖) Num 爲-’
 ‘VP爲去等 答(杖) Num 爲-’
 ‘徒 Num年 爲-’
 ‘徒 Num年’
 ‘Num年 徒爲-’
 ‘杖 Num (爲遣) 徒 Num年 爲-’
 ‘流 Num里 爲-’
 ‘流 Num里’
 ‘杖 Num 爲遣 流 Num里 爲-’
 ‘杖 Num 爲遣 遠流爲-’
 ‘NP乙 捧上爲-’
 ‘NP亦中 給爲-’
 ‘給 NP亦中 爲-’
 ‘NP乙 給爲-’
 ‘NP以 給爲-’
 ‘給 NP以 爲-’
 ‘NP乙良 給安徐爲-’
 ‘NP良中 給爲-’
 ‘NP良中 給爲-’
 ‘NP良中 進-’
 ‘NP亦中 進-’
 ‘NP以 進-’
 ‘NP爲良/爲遣 進-’
 ‘NP爲良結 進-’
 ‘NP爲良 來爲-’
 ‘NP乙 向爲-’
 ‘NP亦 不 Ø齊’
 ‘NP亦 不喻 Ø齊’
 ‘NP亦 不喻 是乎事’
 ‘NP隱 不 VP爲乎事’

‘NP_乙良 不 VP爲乎事’
 ‘VP爲於 不 VP爲乎事’
 ‘VP爲在乙良 不 VP爲乎事’
 ‘NP₁乙良 NP₂乙 不冬 爲乎事’
 ‘VP爲在乙良 NP_乙 不冬 爲乎事’
 ‘NP_乙良 勿 VP爲乎事’
 ‘VP爲在乙良 勿 VP爲乎事’
 ‘VP爲良在等 勿 VP爲乎事’
 ‘NP_乙 安徐 爲乎事’
 ‘NP_乙 不冬 爲-’
 ‘NP₁乙 NP₂乙 不冬 爲-’
 ‘NP_乙 安徐 爲-’
 ‘NP_乙 不得 爲-’
 ‘NP_乙良 免爲-’
 ‘NP_乙 免爲-’
 ‘NP₁亦 禁止 不冬 NP₂乙 令是-’
 ‘NP_乙良 禁止 不冬 爲乎事’
 ‘NP_亦 NP_{是如}爲-’
 ‘NP₁矣 NP₂是如爲’
 ‘NP₁以 NP₂是如爲’
 ‘NP_亦爲’
 ‘NP_亦 NP_亦爲’
 ‘NP_乙良 VP爲乎事’
 ‘NP₁隱 NP₂以 VP爲乎事’
 ‘NP_乙 VP爲乎事’
 ‘NP₁乙良 NP₂以 VP爲乎事’
 ‘NP_{良中} NP_乙 VP爲乎事’
 ‘VP爲遣 NP_以 VP爲乎事’
 ‘VP令是在乙良 VP爲乎事’
 ‘VP爲去等 VP爲乎事’
 ‘VP爲在乙良 VP爲乎事’

‘VP爲去等 NP以 VP爲乎事’
 ‘VP爲在乙良 NP以 VP爲乎事’
 ‘NP是去等 VP爲乎事’
 ‘NP₁隱 NP₂ Num 爲乎事’
 ‘NP₁乙良 NP₂ Num 爲乎事’
 ‘VP爲在乙良 NP Num 爲遣 VP爲乎事’
 ‘VP爲去等 NP Num 爲乎事’
 ‘VP爲在乙良 NP Num 爲乎事’
 ‘NP₁是去等 NP₂ Num 爲乎事’
 ‘NP乙 VP爲行臥乎事’
 ‘VP爲乎養以 VP爲行臥乎事’
 ‘VP爲只爲 VP爲行臥乎事’
 ‘VP爲於 VP爲行臥乎事’
 ‘NP段 NP是乎事’
 ‘NP₁乙良 VP爲遣 NP₂令是乎事’
 ‘VP爲遣 NP₁亦中 NP₂良中 NP₃令是乎事’
 ‘VP爲在乙用良 VP令是乎事’
 ‘NP₁亦 NP₂無乎事’
 ‘NP₁乙 NP₂使內乎事’